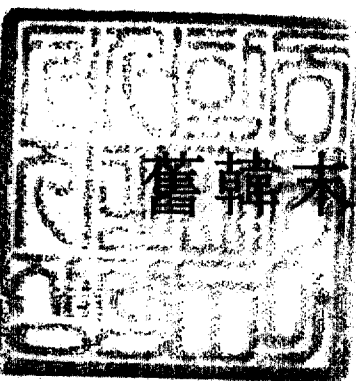


博士學位論文



韓半島中立化論 研究

指導教授 金 昌 洙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朴 熙 琥

1997

博士學位論文

舊韓末 韓半島中立化論 研究

朴 熙 琥

指導教授 金 昌 洙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日

朴 熙 琥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12月 日

委員長	林 榮 正	
委 員	柳 永 益	
委 員	朴 承 錫	
委 員	金 昌 洙	
委 員	金 瑞 鉉	

東國大學校 大學院

目 次

序 論	1
1. 研究의 動機와 研究史의 檢討	1
2. 研究의 目的과 方法・期待效果	6
第 1 章 中立化 一般論	9
1. 中立化의 概念	9
2. 中立化의 可能條件	13
1) ‘中立化可能條件’ 論	13
2) 中立化의 可能條件	16
第 2 章 壬午軍亂~巨文島事件 期間의 韓半島中立化論	27
1. 時代的 背景	27
2. 日本人이 提起한 韓半島中立化論	36
1) 井上毅의 案	37
2) 言論界의 論旨	43
3) 井上馨・竹添進一郎의 言及	46
3. 歐美人이 提起한 韓半島中立化論	51
1) 보아소나드의 案	51
2) 뮐렌도르프의 案	54
3) 부들러의 案	58
4) 오코너・로즈베리의 案	61
4. 朝鮮 朝野의 韓半島中立化論	65
1) 朝鮮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試圖	66
2) 兪吉濬의 案	69
3) 金玉均의 案	77

第 3 章 清・日戰爭 前後期～大韓帝國期の 韓半島中立化論	83
1. 清・日戰爭 前後期の 韓半島中立化論	83
1) 時代的 背景	83
2) 日本政府 當局者の 韓半島中立化 學論	93
3) 英國 領事の 仁川港 戰時局外中立 提案	100
4) 英國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04
2. 大韓帝國의 韓半島中立化 推進 試圖	108
1) 大韓帝國의 對外危機意識	108
2) 駐韓美國 顧問官을 통한 對美 中立化 提議	113
3) 趙秉式의 日本派遣을 통한 中立化 推進 試圖	123
第 4 章 大韓帝國期 러시아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34
1. 러시아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34
1) 러시아 政府의 對 東아시아 狀況認識	134
2) 러시아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39
2. 러시아 海外駐在 外交官들의 韓半島中立化 構想	149
1) 背景 - 日本의 積極的 對外發展政策 -	150
2) 러시아 3 外交官의 韓半島中立化 構想 始末	155
第 5 章 러・日開戰期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外交	165
1. 戰時局外中立 外交의 背景	165
1) 러시아와 日本의 東아시아 政策	166
2) 러・日協商과 韓國의 對應	170
2. 戰時局外中立 外交	175
1)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外交	175
2) 駐英公使 李漢應의 對英 戰時局外中立 外交	181
3.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宣言	184

第 6 章 韓半島中立化論의 綜合的 檢討	195
1. 韓半島中立化論의 性格	195
2. 中立化 挫折의 要因	203
1) 挫折의 對內的 要因	204
2) 挫折의 對外的 要因	221
結 論	232
參考文獻	241
ABSTRACT	258

序 論

1. 研究의 動機와 研究史의 檢討

19세기 이후의 朝鮮은 이른바 西勢東漸이라는 列強의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日本을 비롯한 歐美列國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들어내더니, 뒤이어 전개된 淸日戰爭(1894~1895)과 러·日戰爭(1904~1905)이라는 주변세력 간의 霸權競爭으로 전통적인 對淸事大外交의 와해와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재편입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상황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의 미비를 입증하는 주권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의 존재방식이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었던 바, 그러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淸에 의한 屬邦化論, 일본에 의한 保護國化論, 외세에 의한 領土分割論, 국내외적인 中立化論, 그리고 주체적인 完全自主論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본 연구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韓半島中立化論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最善策이야 물론 완전자주론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방안을 次善策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중립화론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것은 국제체계 속에서의 弱小國이라는 한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언제라도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念願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舊韓末에 제기되었던 중립화론은 역사상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더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둘째, 구한말의 중립화론은 이 당시 한반도의 처리 방안 중 외국이나 朝鮮政府 當局 또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은 범위에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壬午軍亂(1882. 7. 23) 이후부터 韓日議定書 체결(1904. 2. 23)에 이르는 비교적 오랫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러한 만큼 그 散見되는 片鱗들이 시사해주는 다양성과 변

화의 흔적은 그 要因으로서의 動機構造와 推移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또한 이것이 近代韓國의 와해 과정이라는 절박한 시기를 택하여 제기된, 충분한 當爲性을 지닌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좌절되고 말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요약하자면 구한말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한 이와 같은 窮究의 필요성과 상대적인 특성, 그리고 基因에 대한 의문점 등이 곧 본 주제를 설정하게 된 動機이다.

韓半島 中立化論에 관한 研究는 자료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관심을 얻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립화문제 그 자체는 國際關係史 측면에서의 國家自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분단상황의 극복이라는 현실 인식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중립화론에 관한 연구는 일반 史學界 보다 政治·外交學界에서 오히려 활발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學界는 서로 간에 관심도에 있어서나 연구경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한국중립화론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 중 학위논문만 정리하면 총 24편인데 그 가운데서 박사학위논문이 2편, 석사학위논문은 22편이며, 전공별로 보면 史學專攻이 3편이고 나머지 21편은 政治·外交學 중심의 非史學系列이다. 시기별로는 近代 韓末에 관한 논문이 7편, 나머지 17편은 모두 해방 이후의 中立化 統一方案에 중점을 둔 논문이다.¹⁾

1) 한국중립화론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 중 학위논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정치학 전공자의 2편 뿐인데, 姜光植, 〈國際體系的 勢力管理方案으로서 中立化에 관한 研究〉(慶熙大學校, 1987); 劉明喆, 〈韓國中立化論 研究〉(慶北大學校, 1990) 등이다.

석사학위논문으로서 史學專攻者の 논문은 朴成根, 〈舊韓末 韓半島中立論에 관한 一研究〉(延世大學校, 1982); 金銀姬, 〈舊韓末 中立化 問題에 관한 韓美關係研究〉(梨花女子大學校, 1984); 金玉顯, 〈舊韓末 韓半島中立化論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1988) 등 3편이 있고, 나머지 19편은 모두 정치·외교·기타 계열의 非史學專攻者の 논문들로서 다음과 같다.

朴柱仲, 〈國際的 中立에 관한 研究〉(建國大學校, 1982); 金成一, 〈韓半島中立化論議에 對한 批判的 考察〉(延世大學校, 1984); 盧津鎬, 〈舊韓末 韓半島 中立化論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1984); 姜寅奉, 〈合理的 期待假說의 中立性定理와 그 妥當性 檢討〉(慶熙大學校, 1985); 尹泰龍, 〈韓半島 中立化論爭의 比較分析〉(高麗大學校, 1986); 徐東逸, 〈韓半島 中立化 統一의 可能性에 대한 研究〉(東國大學校, 1986); 奇會相, 〈韓半島

이를 다시 요약하면 연구자의 전공별로 볼 때 史學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87.5%는 非史學界列이며, 연구대상 시기별로 볼 때 구한말에 관한 논문이 29%인데 비해 해방 이후에 관한 것은 7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한 연구현황은 정치·외교학계의 주도로 해방이후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학위논문의 발표시기를 보면 1982년에 처음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관심이 점차 고조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과 함께 연구수준의 한계에서 오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본 연구 주제를 설정한 취지에 따라 구한말에 제기되었던 한반도중립화론에만 국한시켜 정치·외교학계를 제외시킨 일반 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겠다.

일반 史學界의 연구경향을 보면 주로 近代의 韓末에 국한시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느 특정 論議에 대한 집중 연구로 그 意味를 분석한 것이 있다.

예컨대 姜萬吉은 兪吉濬의 <中立論>을 집중 분석하여 그 提案 背景을 詳論함과 동시에 부들러(H.Budler)의 中立理論과 비교하여 論理的 異同을 설명하는 등 한국중립론에 대한 微視的 先例를 보였으며,²⁾ 長谷川直子は 壬午軍亂 이후 제기된 日本內의 韓半島中立化論을 분석하여 그것이 淸·韓宗屬關係를 부

中立化 統一方案研究》(延世大學校, 1987); 林載喆, 〈舊韓末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關係와 韓半島 中立化〉(서울大學校, 1987); 金慶銖, 〈周邊四强과 韓半島 中立化 統一方案에 관한 考察〉(延世大學校, 1987); 金種千, 〈舊韓末 東北亞 國際關係와 韓半島 中立化論〉(延世大學校, 1988); 姜奉秀, 〈韓半島 中立化 統一論에 관한 一考察〉(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이재희, 〈韓半島 中立化論議에 관한 研究〉(韓國外國語大, 1988); 嚴敎俊, 〈韓半島 中立化 統一의 當爲性과 實現條件에 관한 研究〉(韓國外國語大, 1989); 송금영, 〈露·日戰爭과 韓國의 中立化 政策에 관한 研究〉(東亞大學校, 1989); 金石河, 〈韓半島 中立化 統一論 研究〉(國民大學校, 1990); 박규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론과 실제〉(漢陽大學校, 1990); 趙誠珪, 〈韓半島 統一方案으로서 中立化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1990); 서정렬, 〈韓半島 統一接近方案에 관한 研究〉(朝鮮大學校, 1990); 徐虎, 〈中立化統一論의 韓半島 適用可能性에 관한 研究〉(高麗大學校, 1991).

- 2) 姜萬吉, 〈兪吉濬의 韓半島 中立化論〉《分斷時代의 歷史認識》, (서울:創作과 批評社, 1979) pp.102~117.

정하는 또다른 包裝이었음을 밝힘으로써 外勢에 의한 中立化 提起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示唆을 주고 있다.³⁾ 梶村秀樹는 러·日 開戰 이전까지의 한국 중립화론에 대한 概括을 통하여 日本의 對韓政策을 비판하면서도 中立化 成立의 內在的 要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좌절된 책임이 한국에도 있음을 교묘하게 지적하고 있다.⁴⁾ 具汰列·김우현의 경우는 자신들이 非史學 系列이면서도 近代韓末의 특정논의를 집중 분석하고 關聯史料를 제시하여 이색적이다.⁵⁾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姜萬吉은 俞吉潸의 <中立論>과 부들리의 중립화안에 관한 제한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史料解題의 인 성격이 짙으며, 長谷川直子の 논문은 일본 내의 한국중립화론의 의도를 곧잘 분석하면서도 그 대상국인 조선의 현실과는 결부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淸·日兩國關係史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梶村秀樹는 중립화 좌절의 요인이 국제정치적 요인과 조선의 내재적 요인에 있었음을 지적하려 하면서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具汰列과 김우현의 경우는 각각 영국 외무성 문서와 독일 외무성 문서 등을 위주로한 몇 개 자료의 집중 분석에 치중하였을 뿐 보충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당시 그들 국가의 대외정책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미흡한 느낌이다.

또 한편 여러 論議를 概括하여 그 發想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이 가운데 徐仲錫은 近代 韓末의 諸 論議에 대한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後續

-
- 3) 長谷川直子,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朝鮮史研究會論文集》32.(東京:綠蔭書房, 1994) pp.139~163. 이 외에도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拙稿, <日本人이提起한 1880년대의 韓國中立化論>,《東國史學》30(東國史學會, 1996) pp.239~264.
 - 4) 梶村秀樹, <朝鮮からみた日露戰爭>《史潮》7·8(1980.9)의 한글판 <러일전쟁과 조선의 중립화론>, 楊尙弦 編,《韓國近代政治史研究》(사계절, 1985) pp.337~366.
 - 5) 具汰列, <李漢應과 韓·英관계-그의 韓半島中立化案을 中心으로->《省谷論叢》16, (서울:省谷學術文化財團, 1985) pp.493~531; 김우현, <P.G.von Möllendorff의 조선중립화구상>《平和研究》8, (慶北大學校 平和問題研究所, 1983.5) pp.47~151. 특히 김우현의 논문은 총 93쪽 분량의 독일 외무성의 외교문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cta betreffend Korea>를 부록으로 소개하여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연구의 端緒를 제공하였으며,⁶⁾ 李鉉淙은 諸 論議들의 概括을 통하여 各個 發想의 底意에 관심을 보였고,⁷⁾ 權寧培는 여러 논문을 개괄하면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갖는 한국중립화에 대한 立場과 중립화안의 提案 目的, 중립화안 提案者의 性格, 제기된 논의의 時期別 特徵 등의 종합적인 성격 규정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연구를 하였다.⁸⁾ 이 외에도 諸 論議에 대한 概括的 接近은 종종 시도되고 있다.⁹⁾

이들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徐仲錫과 李鉉淙의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개척자적인 것인 만큼 여전히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 소개수준에 머무는 감이 없지 않으며, 權寧培가 종합적 성격 규정을 시도하였지만 분석대상의 과다한 설정과 연구목표에서 보인 의욕에 비해 결과는 매우 소략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상의 기존 연구성과가 갖는 공통적인 한계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한말의 중립화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내용의 소개에만 치중하여 중립화에 관한 개념 정립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논의들을 一般外交史 서술의 형태로 엮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두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시비를 가린 나머지 결국 주관적인 기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의 논리를 비약시키거나 이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당시의 諸 論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檢證作業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중립화대상국가인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국제적 현실과 대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제론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연구자¹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6) 徐仲錫, 〈近代極東國際關係와 韓國永世中立國論에 對한 研究〉《慶熙大論文集》4, (1965) pp.283~332.

7) 李鉉淙, 《韓末에 있어서의 中立化論》(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研究報告書, 1978) pp.1~72.

8) 權寧培, 〈韓末 朝鮮에 대한 中立化論議와 그 性格〉《歷史教育論集》17, (大邱:歷史教育學會, 1992) pp.25~68.

9) 盧武志, 〈19世紀 韓半島의 中立化論에 관한 考察〉《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韓國民族獨立運動의 諸問題》, (서울:범우사, 1992) pp.58~72.

10) 국제 정치·외교학계의 보편적인 중립화이론을 近代 韓末의 中立化論에 적용하여 그

그러한 작업이 결여됨으로써 현실적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거나 諸論 자체를 理想論에 머물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2. 研究의 目的과 方法・期待效果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한 결과, 구한말의 한반도 중립화론을 올바르게 천착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첫째, 舊韓末 韓半島中立化論에 대한 연구를 단순한 年代記的인 사실의 확인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나를 밝혀야 한다. 이유인 즉 제안 주체의 다양성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에는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하여 문면상 동일한 표현을 하더라도 提案意圖가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제안 주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안들(특히 外勢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裏面을 정확하게 읽어 냄으로써 제국주의 질서라는 당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거시적 안목에서 鳥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립화론이라는 발상에 대한 적절한 是非와 褒貶도 덧붙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은 곧 제안 내용에 대한 鮮明度를 한결 높이고 合理性의 유무를 판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自家撞着과 先入見이라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도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본래 歷史學이 結果라는 바탕 위에서 그 原因을 찾아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니 만큼 각 제안들의 결과에 대하여 그 요인을 究明해야 한다. 구한말에 있었던 한반도중립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실패로 끝난 역사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그 요인이 밝혀진다

適實性에 대한 檢證을 시도해 본 논문으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劉明喆, 〈朝鮮朝末期에 있어 中立化의 可能條件充足問題〉《논문집》35, (진주:진주교대, 1991) pp.31~52; 拙稿,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國史館論叢》60, (國史編纂委員會, 1994) pp.151~200.

면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구한말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한 천착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섭렵하고, 다시 國內·외의 公文書·私文書(참고문헌 참조)를 폭넓게 활용하여 새로운 사례를 발굴,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다음 이들의 상호 관련성과 발전적인 동태를 파악, 종합적인 성격을 究明해 내고 그 좌절의 요인을 深層的이고 多角的으로 檢證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範圍를, 실제로 한반도 중립화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壬午軍亂 이후부터 그것이 국제적으로 사실상 어렵게된 韓·日議定書 체결 때까지의 20여년간으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第 1 章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한말의 한반도 중립화 諸論에 대한 성격 규정과 각 론에 대한 이해상의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中立化’에 관한 국제법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이어서 그러한 논의들의 실효성에 대한 檢證의 기본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제정치·외교학상의 ‘중립화 가능조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다음 그 이론들을 본 연구자 나름대로 여과·정제·종합하여 가장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독자적인 ‘가능조건’을 제시하려 한다.

第 2 章에서는 壬午軍亂을 계기로 제안되기 시작한 한국중립화 논의가 1880년대를 통하여 內·外國人을 막론하고 同時多發이었던 이유와 저마다의 방안들이 어떤 類型을 選好하였으며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던가, 특히 외국인의 경우 제안 자체에 내포된 眞意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내·외국인의 제안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좌절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점 등을 究明하려 한다.

第 3 章에서는 淸·日戰爭 前後期에 걸쳐 내·외국인에 의해서 제기된 중립화 논의들이 방법론에 있어서 永世中立, 單純·暫定中立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提案 主體의 측면에서 볼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 많았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의 시대적 배경과 發想의 契機를 究明하고, 또한 그것이 散發的인 個別提議에서 점차 政府當路者의 公論으로 收斂되어가다가 드디어 大韓帝國 출범이후의 시대상황의 惡化에 따라 본격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채

택, 국가차원의 외교활동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것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끝내 외면당하게 되는 사정을 살펴보려 한다.

第 4 章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러·日 兩極體制로 고정되어 상호간의 葛藤이 尖銳化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의해서 제기된 일련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日本의 對應策 또한 어떠한었으며 그 대응책이 결국 國際政治構圖 뿐만 아니라 向後 韓半島 運命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었는가를 살펴려 한다.

第 5 章에서는 러·日 對決이 러·日 開戰으로 歸結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대응책은 대내적·대외적으로 어떠한었으며 특히 러·日 開戰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결국 한반도중립화 외교의 결정판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戰時局外中立 宣言이 정부의 公式宣言으로 발표된 경위와 또한 그것이 多數民衆의 오랜 宿願이었던 永世中立이 아닌, 臨時苦肉策의 單純·暫定中立일 수 밖에 없었던 事情 그리고 그것마저 1개월만에 挫折되고 만 배경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 보려한다.

第 6 章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舊韓末의 韓半島 中立化論의 모든 事例를 綜合적으로 檢討하여 그 適實性を 따져 보려 한다. 이를테면 한반도중립화론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본 연구자의 편의대로 類型別 分布·時期別提議의 特徵·選好하는 中立化 모델·提案者の 動機構造·參加國의 樣態 등으로 구분·정리하여 논의의 총체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어서 第 1 章에서 정리한 國際 政治·外交學上的 보편화 된 '中立化의 可能條件에 관한 理論'을 이에 적용하여 그 實効性を 檢證함으로써 挫折의 諸 要因을 밝히고자 한다.

舊韓末 韓國의 體制危機를 目前에 두고 제기되었던 韓半島中立化論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多角度로 그 實相을 究明한다면 提案 背景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是非精紳과 批判意識이 함양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挫折된 참 要因의 파악은 물론 어느 一國이 國家自存 方案의 하나로서, 더욱이 韓半島의 懸案인 統一方案의 하나로서 中立化를 택할 경우 그 先決課題에 대한 解答이 提示되리라 믿는다.

第 1 章 中立化 一般論

1. 中立化의 概念

國家는 전통적으로 ‘國民·國土·主權’의 3요소로 구성되는 單位體¹⁾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것이 國際關係 속에서 하나의 主體로서 위치 지워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그 존재 양식상 ‘主權國’ ‘半主權國’ ‘保護國’ 등으로 구분되며 상호 관계상 ‘孤立’ ‘同盟’ ‘聯合’ ‘中立’ 등의 태도를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中立’(neutrality)이란 어느 一國이 2개국 또는 一群의 국가들 사이에서 戰爭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일컫는다.²⁾ 또한 中立의 개념은 전쟁의 관습만큼이나 오래되어 聖書나 古代 그리스 시대부터 발견되지만 敵과 同志만이 설정되던 로마시대나 義戰(just war)思想이 보편화 된 中世基督教社會에서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와서 中立의 개념은 다시 近代의 意味의 法的 觀念으로 부활하였다. 곧 지중해 상인들의 海法으로 알려진 <콘솔라토 델마레>(Consolato del Mare)에서 中립상업 자유의 원칙이 제창됨으로써 中立法規의 萌芽的 形態가 보이더니³⁾ 17세기에 와서는 드디어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戰爭과 平和의 法》(De Jure Belli ac Pacis, 1625)과 ‘베스트팔리아조약’(1648) 등을 통하여 現代國際法으로 출발하였다.³⁾ 이후 中立法(the law of neutrality)은 18세기에 와서 빈켈스후크(Bynkershoek)·볼프(Wolff)·뱃텔(Vattel) 등에 의해 ‘公平’의 입장이

-
- 1) Philip C. Jessup, *Neutrality: Its History, Economics and Law*, Vol.VI(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6) p.3
 - 2) Syngman Rhee,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12) pp.1~2.
 - 3) Syngman Rhee, *ibid.*, pp.2~4; Hwang, In-kwan,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Korea in Perspective*,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Inc., 1980) p.12;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II, 6th ed. by H. Lauterpacht(London: 1940) p.489.

추가되는 등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다가⁴⁾ 1856년 ‘파리선언’에서 國際的 立法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고 1907년 ‘헤이그 평화회담’과 1908년 ‘런던회의’에서는 戰時中立國 및 中立人의 權利・義務가 상세히 규정되었다.⁵⁾

中立의 구체적 개념은 戰爭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뜻하는 바, 兩 交戰國에 대한 公平과 無差別・無援助를 그 내용으로 한다.⁶⁾ 이를테면 中立은 어느 一國이 전쟁을 전제로 하여 交戰國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때문에 中立國은 交戰國에게 兵力・武器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回避의 義務:abstention)와 中立國의 領域이 交戰國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防止의 義務:prevention), 一方의 交戰國에게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他方의 交戰國이 일정한 制裁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默認의 義務:acquiescence) 등의 公平과 無援助의 義務를 저야 한다.⁷⁾

중립의 종류에는 ‘單純・暫定中立’(simple occasional neutrality)과 ‘永世中立’(permanent neutrality)이 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는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반드시 國家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⁸⁾ 그러나 단순・잠정 중립은 戰時를 전제로 한 限時的인 개념으로서 전쟁의 終息 또는 전쟁에의 참가로 인하여 그 지위가 종료되는데 반해 영세중립은 平時와 戰時를 초월한 개념으로서 恒久的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는 非限時的인 개념이다. 단순・잠정중립은 일반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나 수시로 택할 수 있는 ‘戰時局外中立’으로서 중립의 원래 개념과 大差가 없어 이를 ‘通常中立’(ordinary neutrality)이라고도 한다.⁹⁾ 반면에 영세중립

4) Syngman Rhee, *ibid.*, pp.3~4; Frederick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 Hill, 1969) p.140; 李漢基, 《國際法講義》(서울:博英社, 1977), pp.453~454.

5) 崔鳳潤・盧承禹, 《民衆主體中立化統一論》(서울:전예원, 1988) p.165.

6) 社會科學大事典編集委員會, 《社會科學大事典》13(東京:鹿島研究所出版會, 1971) p.98.

7) 石本泰雄, 《中立制度の史的研究》(東京:有斐閣, 1958) pp.26~32. 回避義務와 防止義務의 양자를 합하여 ‘公平의 義務’(duties of impartiality)라고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李漢基, 앞의 책, pp.448~449.

8) 姜光植, 「中立化政治論」(서울:인간사랑, 1989) pp.37~40.

9) 黃仁寬, 〈韓半島中立化의 蓋然性과 當爲性〉《民族統一》(서울:民族統一促進會, 1985. 7~8) p.4.; Harto Hakovirta, *East-West Conflict and European Neutr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9.

은 관련 당사국들 간의 多邊條約에 의하거나 또는 중립화 할 당사국의 일방적인 선언 후 餘他國家들로부터의 개별적 승인을 얻어 완성된다.¹⁰⁾

‘中立化’(neutralization)라는 개념은 中立과 永世中立의 연관개념으로서 ‘중립의 상태로 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러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바, 그 궁극의 목표는 중립화 조약에 의한 영세중립인 것이다. 그러나 영세중립은 반드시 국가를 단위로 하지만 中立化는 더욱 포괄적이어서 國家는 물론이고 국제적 세력관계에서 중요한 戰略的 價値를 지닌 특정지역 예컨대 河川·運河·海峽 등을 망라한다. 따라서 中立化라 함은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의 侵害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한 국제적 지위를 지칭한 것이다.¹¹⁾ 再論하자면 中立化는 전쟁과 관련된 中立制度의 현대적 존재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中立制度는 원래 戰時國際法 상의 ‘中立’의 慣行에서 출발하여 ‘永世中立’이라는 非限時的 樣態로 발전되었고 그것은 다시 현대적 국제관계 상황에서 ‘中立化’라고 하는 紛爭地域管理制度로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

원래 ‘中立化’는 그 구성요건으로 ‘自體中立化’와 ‘國際 保障’(또는 承認)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共有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缺如되면 ‘中立化’가 아닌 ‘類似中立化’로 분류된다. 예컨대 ‘自己中立化’(self-neutralization)·‘中立主義’(neutralism)·‘非同盟’(non-alignment) 등은 자체중립화의 속성만 있고 ‘非武裝化’(demilitarization)와 ‘國際管理’(international administration) 등은 국제보장의 속성만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中立化의 類概念에 속한다.¹³⁾ ‘自己中立

10) 多邊條約에 의한 경우는 1815년 비엔나 협약에 의한 스위스의 중립화, 1831년 및 1839년의 런던조약에 의한 벨기에의 중립화, 1867년의 런던협약에 의한 룩셈부르크의 중립화, 그리고 1947년 對 이탈리아 강화조약에 의한 트리에스테 자유지역의 중립화가 있고 一方宣言 후 개별 승인을 얻은 경우는 1955년 오스트리아의 중립선언을 미국·소련·영국·프랑스가 순차적으로 승인한 예가 있다. 또한 二邊條約 후 個別承認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1929년 이탈리아·로마교황청 간에 체결한 라테라노(Laterano) 조약과 이에 대한 諸國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바티칸공국이 중립화하였다. 姜光植, 앞의 책, p.39.

11) Cyril E. Black, Richard A. Folk, Klaus Knorr and Oran R. Young,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xi; 姜光植, 위의 책, p.40.

12) 姜光植, 위의 책, p.36.

化'는 다른 국가의 승인이 없어도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계속적인 戰時中立(慣習的인 中立)을 유지하는 경우이고,¹⁴⁾ '中立主義'·'非同盟'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조치 없이 전혀 자율적 결단에 따라 對外政策의 원칙으로 中立政策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¹⁵⁾ 自己中立化와 中立主義는 공통되게 국제법적인 승인이 배제된 '원초적인 중립'의 부활이지만 自己中立化가 사실상의 영세중립인 반면에 中立主義는 중립화의 실제적 기반이 결여된 전혀 정치적인 태도를 의미할 뿐이다.¹⁶⁾ 또한 '非武裝化'와 '國際管理'(委任統治, 國際信託統治)는 強大國에 의해 어떤 특정지역의 軍事權이나 主權이 박탈 또는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國際管理가 기본적으로 弱小國(또는 自存 能力이 결여된 국가적 실체)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非武裝化의 경우보다 더 中立化에 近接하는 屬性이 있다.¹⁷⁾

國家自存 方案으로서의 中立理論에 관한 학술적 개념이 이처럼 정연하지만 실

13) 姜光植, 위의 책, pp.40~41.

14) 自己中立化의 예로는 1815년 이후의 스웨덴, 1918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 2차 대전 이후의 핀란드가 있다. 캄보디아도 1957년에 이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다. Cyril E. Black, et al., op.cit., p.32; 黃仁寬 著, 洪停杓 譯, 《中立化統一論》(서울:新丘文化社, 1988) pp.12~13.

15) 중립주의는 몬로주의(Monroe Doctrine)와 같은 孤立主義를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주로 2차대전 이후 東·西冷戰 체제 하의 제 3 세계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태동되기 시작한 非同盟 路線을 지칭한다. 즉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인도, 버마 등의 중립정책이 이에 속한다. 이들 제 3 세계 지도자들은 '중립주의'란 용어의 역사적·語感 간의 소극성 때문에 이를 '적극적 중립'(positive neutrality), '非同盟' 내지 '不同盟'(un-alignment), '非介入' 내지 '不干涉'(non-commitment) 등으로 표현하다가 1961년 벨그라드회의에서 '중립주의는 비동맹에 가까운 의미'라고 규정지움에 따라 지금은 중립주의와 비동맹은 혼용되고 있다. Myron Weiner, "Neutralism and Non-align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Free Press, 1968) pp.166~167; 姜光植, 앞의 책, pp.41~42; 黃仁寬, 위의 책, pp.13~14. 그러나 중립주의를 비동맹보다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거나 중립주의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 비동맹을 외교정책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다. George Liska, "The Third Party: the Rationale of Non-Alignment," in L. W. Martin (ed.), *Neutralism and Non-alignment* (New York: Praeger, 1962) p.83; Peter Lyan, *War and Peac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161~162.

16) Peter Lyon, *Neutralism* (Leicester, 1963) I, VII; 黃仁寬, 위의 책, pp.12~13.

17) 黃仁寬, 위의 책, p.13; 姜光植, 앞의 책, pp.43~44.

제에 있어서는 ‘第二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하여 法的 概念의 無意味化와 사용상의 혼란에 봉착해 있다. 그것은 兩次 大戰의 산물인 國際聯盟·國際聯合과 같은 集團安全保障體制와 非交戰狀態(non-belligerence)의 개념이 中立의 意味를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¹⁸⁾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상황들이 古典的 理論의 적용 여지를 앗아갈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쟁 양상이 正規戰에서 冷戰으로 변화되었고 네팍트의 전개와 함께 각 국의 관심이 理念的 東西 블록에서 經濟的 南北陣營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中立制度의 白眉로 볼 수 있던 永世中立이 이제는 단순한 法的 意味 이 외에 存在의 意味-國際體系의 勢力管理 方案이라는 政治的·軍事的 含意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¹⁹⁾ ‘中立化’의 개념도 중립국의 지위를 설정·유지하는 중립제도의 전통적 의미 뿐만 아니라 中立主義·非武裝化·國際管理 등 유사개념들을 통칭하여 사용되거나 혼동 사용되고 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따르되 유사중립화 개념만은 제외한 채 古典的인 諸 概念을 ‘中立化’ 개념의 범주 내로 포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 中立化의 可能條件

1) ‘中立化 可能條件’ 論

현재 국내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中立化의 可能조건’에 관한 理論은 매우 다양하여 동일한 내용을 분석하면서도 論者에 따라 개념규정이나 分析裝置의 設定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선 대표적인 理論들을 標本으로 選定, 이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8) Bong-Youn Choy, *A Histro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Illinois: Bradley University, 1984) p.193; 李漢基, 앞의 책, pp.462~463.

19) 崔鳳潤·盧承禹, 앞의 책, p.173; 姜光植, 앞의 책, p.13.

20) 姜光植, 위의 책, pp.30, 41.

- I. 高山岩男 : ① 弱小國・現狀維持國 ② 強大國의 中立尊重의 意志・強大國의 好意의 一致 ③ 中立緩衝地帶 ④ 國民一致의 超黨派의 國是 ⑤ 永世中立堅持의 決意 ⑥ 軍事上 通路가 아닐것 ⑦ 軍備의 充實²¹⁾
- II. 神川彦松 : ① 國際中間地帶: 戰略上의 要衝・列強 間의 緩衝地帶 ② 列強의 均勢政策의 所産 ③ 自衛力의 具備²²⁾
- III. 田岡良一 : ① 內在的 條件- ④ 中立必要에 대한 國民的 信念 ⑤ 信念實現을 위한 행동-신중하고 시종일관된 중립외교정책・軍備充實 ② 外部的 條件- ④ 自然的 事情 ⑤ 列強의 利害關係 一致라는 國際的 必要²³⁾
- IV. Black의 : ① 中立化에 대한 國民的 合意(내부적 상황 : 統合性 및 代表性) ② 최소한의 내부적 自存 能力(내부질서유지 능력) ③ 규모가 小國일 것 ④ 경제자립 ⑤ 관련 국제체계 및 보장국의 保障履行 ⑥ 地政學的 位置²⁴⁾
- V. Karsh : ① 시종일관된 지속적인 中立정책으로 中立에 대한 信賴와 尊重 確保 ② 軍備充實 ③ 弱小國 ④ 地政學的 位置 ⑤ 列強間의 勢力均衡²⁵⁾
- VI. Hägglöf : ① 국가내의 모든 정치집단의 지속적인 中立支持 ② 勢力均衡 ③ 효율적인 防衛體制²⁶⁾
- VII. 姜光植 : ① 環境的 조건- ④ 地政學的 立地條件 및 戰略的 價值 ⑤ 관련국 체계의 환경 ⑥ 내부적 상황(통합성 및 대표성) ⑦ 외부와의 연계적 상황 (사회제도, 이념) ② 技術的 조건- ④ 中立化 協商 ⑤ 中立化 管理機構 ⑥ 中立化 監視・管理方案²⁷⁾

21) 高山岩男, 《國際的 中立의 研究》(東京:原書房, 1980), pp.132~162.

22) 神川彦松, 〈中立主義概觀〉, 日本國際問題研究所 編, 《中立主義의 研究》上,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1), pp.14~15.

23) 田岡良一, 〈스이스〉, 日本國際問題研究所 編, 위의 책, pp.156~176.

24) Cyril E. Black, Richard A. Folk, Klaus Knorr and Oran R. Young,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p.23, pp.151~154.

25) Efraim Karsh, *Neutrality and Small States* (London: Routledge, 1988), pp.98~101, pp.155~169.

26) Gunnar M. Hägglöf, "A Test of Neutrality: Sweden in the Second World War", *International Affairs*, Vol.36, No.2, (1960), pp.166~167.

27) 姜光植, 〈國際體系의 勢力管理方案으로서 中立化에 관한 研究〉(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66~78.

<表 1-1> 中立化 可能條件의 論者別 度數分布表

理 論 \ 論 者	I	II	III	IV	V	VI	VII	중합 백분비
자위력(군사력·경제력)	○	○	○	○	○	○		60
지정학적 위치(요충지·완충지)	○	○	○	○	○		○	60
국민적 합의(통합성·대표성)	○		○	○		○	○	50
일관된 중립화정책(국제적 신뢰·존중)	○		○		○			30
주변국가들의 세력균형		○		○	○	○	○	50
열강 간의 합의·보장	○		○	○			○	40
약소국으로서의 현상유지	○			○	○			30
중립화 관리기구(위임통치·국제신탁통치)							○	10
외적 연계상황의 극복(사회제도·이념)							○	10
군사통로가 아닐것	○							10

※ I ~ VII은 본문의 I.高山岩男~VII.姜光植을 지칭함.

이상의 各論들 가운데서 개념이 유사한 것을 서로 묶어 종합하여 이를 정리하여 보았던 바 <表 1-1>와 같다.

<表 1-1>에서 제시된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60% : 7인 논자의 10개이론에 대한 비율), 중립화 대상 국가는 自衛力을 갖추어야 하는 바 軍備가 충실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財政自立度가 先行되어야 하며, 둘째(60%), 地政學的 位置가 國際 中間地帶로서 戰略上의 要衝이거나 列強 間의 緩衝地帶이어야 하며, 셋째(50%), 중립화 대상국가는 대내적으로 中立化를 위한 巨族的이며 超黨的인 國民的 合意가 있어야 하며, 넷째(50%), 관련 국제체제상 주변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40%), 국제 간 勢力均衡의 바탕 위에서 주변강대국 간의 利害關係의 一致를 통한 中立化에의 合意와 保障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30%), 신중하고 일관된 中立外交政策이 뒤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信賴와 尊重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30%), 중립화 대상국가는 주변 국가와 全面戰을 감당할 수 없는 弱小國으로서 항상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 現狀維持國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가능조건 외에도 중립화 대상국가는 中立化管理機構의 監視·監督·強制的 裝置를 통하여 중립화를 管理·維持할 것,²⁸⁾ 외부세력에 연계된 이

념상의 또는 사회제도상의 二重構造의 特性을 극복할 것,²⁹⁾ 軍事上의 通路가 아닐 것³⁰⁾ 등의 조건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의견은 中立化 管理機構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의견과 大差가 없어서 상호 포함시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예컨대 외부세력에 연계된 상황의 극복 문제는 국민적인 內的 合意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 內包될 수 있으며 軍事上 通路의 可否問題는 後述하는 폴란드의 경우와 같이 緩衝地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地政學的 與件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되어도 좋을 것으로 본다.

2) 中立化의 可能條件

이제 上記와 같은 여러 可能條件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世界史上의 事例-중립화 실현의 가장 성공한 경우로서 이후 모든 중립화 대상국가의 모델화한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을 보기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립화가능조건의 첫번째는 독자적인 힘으로 中立과 獨立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軍事力과 經濟力 곧 自衛力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군사력부터 살펴 본다면, 自體의 防衛力으로 外勢의 개입을 제어하고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³¹⁾

1815년의 「비엔나 협약」에 의해 중립화한 스위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위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30년 전쟁’(1618~1648) 기간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대립으로 국내 세력과 외부 세력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국내 분열과 외세 개입의 위험성이 증대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聯邦 諸 州는 共同防衛의

28) 姜光植, 앞의 책, pp.116~120.

29) 姜光植, 위의 책, pp.137~140.

외부세력에 연계된 이념상의 또는 사회제도상의 2중구조적 특성으로는 개화기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華夷觀’에 연계된 守舊論理와 신흥 일본의 ‘主權國家論’에 연계된 開化論理가 상호 모순되어 갈등을 빚었던 일, 구한말의 이른바 친러파와 친일파의 대립, 그리고 해방 이후의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에 연계된 남북한간의 이질적 체제구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0) 高山岩男, 앞의 책, pp.137~138; 劉明喆, 〈韓國中立化論 研究〉(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p.33.

31) 高山岩男, 위의 책, pp.139~140; Efraim Karsh, op.cit., pp.155~169.

필요성을 切感, 1647년에 처음으로 3만6천명의 군인을 소집하여 聯邦軍을 결성함으로써 武裝中立의 초석을 놓았다.³²⁾ 중립화 이후에도 1907년에 20만 豫備軍을 포함한 28만의 군병력을 창설하는가하면, 1차대전 때에는 20만을 동원하였다. 이만하면 어떤 交戰國도 다른 戰線에 배치된 상당 규모의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서는 스위스를 침공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셈이 되었다.³³⁾ 때문에 1차대전 당시 독일은 ‘스위스를 경유한’ 프랑스에 대한 공격은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³⁴⁾ 뿐만 아니라 2차대전 때에는 現役을 40만명 동원하였으며 예비군과 國民軍을 합쳐 85만에 달하는 철저한 방비태세를 갖추었다. 스위스의 이와 같은 자위력 확보는 중립을 표방하지 않은 주변 국가와 防衛費支出을 비교해보아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는 사실을 <表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表 1-2> 주변국가와 스위스의 防衛費支出比較(1968년도 기준)

국 가	1인당 방위비 지출액(1968년도)	GNP의 방위비 지출%(1968년도)	1968년도 GNP (단위:billions)
오스트리아	19\$	1.2%	\$ 11.3
스 위 스	68\$	2.5%	\$ 16.9
핀 란 드	27\$	1.8%	\$ 7.2
스 웨 덴	128\$	3.8%	\$ 26.5
노 르 웨 이	84\$	3.8%	\$ 8.5
덴 마 아 크	60\$	2.3%	\$ 12.5
유고슬라비아	24\$	5.7%	\$ 9.6

[자료] Thomas O.Schlesinger, *Austrian Neutrality in Postwar Europe*(Wien:Wihelm Braumüller, 1972) p.124.

이처럼 스위스는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이상의 意慾’³⁵⁾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있다.

32) Bonjour, Edgar, *Swiss Neutrality: Its History and Meaning*, translated by Mary Hotinge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6), p.30.

33) Cyril E. Black, et al., op.cit., p.39.

34) Cyril E. Black, et al., ibid., p.36.

35) 현대의 核武器 공포 앞에서도 과연 중립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1958년 7월에 핵보유를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 1960년에

또한 이와 같은 자체방어 능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經濟的 自立이 이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 때문에 그 신뢰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³⁶⁾ 예컨대 중립국은 長期戰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食糧自給이 필요한데 만약 어느 일방에만 이를 의존하다가 중립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기 십상이다.³⁷⁾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고도의 산업국가들로서 경제적 완전 자립이 이룩되어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1961년 10월에 EEC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했는데 그 당시 蘇聯은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모스코바 覺書'(오스트리아·소련비망록, 1955. 4.15)와 '오스트리아 국가조약'(1955.11.15) 등의 영세중립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³⁸⁾ 이에 오스트리아는 EEC와의 조약체결 협상 과정에서 영세중립을 위한 유보조항을 포함시켜 정치·군사적 성격의 유대가 아닌, 경제적 유대관계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난제를 극복, 가입에 성공하였다.³⁹⁾ 이렇게 중립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꾀하고 있다.

中立化를 위한 可能條件의 두번째로는 地政學的 與件에 관한 것이다. 이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중립화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이 국제분쟁의 소지

이를 연방의회에서 가결토록 하더니, 드디어 1962년 10월에는 핵전쟁에 대비하여 연간 20만명의 핵 대피호 건설 12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蘇聯은 核武器 능력은 영세중립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경고하였다. Harto Hakovirta, "The Soviet Union and the Varieties of Neutrality in We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35, (July 1983), p.40; Efraim Karsh, op.cit., pp.174~179; L. Beaton and J. Maddox,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London: chatto & windus, 1962), p.162; P.M.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p.80.

36) Robert A. Bauer, *The Austrian Solution*, (Charlottesville: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2), p.166; Cyril E. Black, et al., op.cit., p.23.

37) David E. Bohn, "Neutrality- Switzerland's Policy Dilemma: Options in the New Europe", *ORBIS*, Vol.21, No.2, (1977), p.347.

38) Daniel Tarschys, "Neutrality and the Common Market: the Soviet 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Vol.7, (1971) p.169; 伊津野重滿, 《永世中立と國際法》(東京:學陽書房, 1982), pp.141~145.

39) Daniel Tarschys, ibid., p.72.

를 갖게되는 데서 비롯되며 그러한 분쟁의 소지는 대체로 地政學的 立地條件이나 그 밖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戰略的 價値가 국제적으로 중요시되는 데서 基因하기 때문이다.⁴⁰⁾ 이를 좀 더 數衍하여 논한다면, 1968년 프린스턴대학의 한 연구팀이 중립화의 자격요건을 지적한 가운데서 “중립화는 우선 두 세 개의 外部因子들이 본질적이며 경쟁적인 이익을 갖고 지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지역에 관련된다.”라고 한것이나 “중립화는 지역적인 경쟁국들 또는 세계적인 경쟁국들 끼리 서로 간에 지배적인 영향력 내지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쟁의 주요 초점이 되거나 될 위험이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국가들에 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定義한 것을 종합해 볼 때⁴¹⁾ 중립화는 지정학적 위치가 列強競爭의 中間地域에 위치함으로써 열강들이 그 약소국이 다른 열강에게로 병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緩衝國(buffer state)에 적합한 것이다.⁴²⁾ 따라서 이 완충국은 열강들에게 있어서는 갈등 억제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

스위스는 중립화 당시 특히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오스트리아 간의 완충국이었고 북쪽의 독일 남쪽의 이탈리아와도 국경을 접하는 중간적 위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강국들이 다른 나라로의 병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중립을 상호 보장하게 되었다.⁴³⁾ 예컨대 프랑스로서는 스위스를 중립화함으로써 스위스를 이용하여 직접 프랑스의 중앙부를 강타하려는 침략세력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만큼 프랑스군의 방어전선을 단축하는 이익이 있었으므로 스위스의 중립화를 승인하였다.⁴⁴⁾ 한편 나폴레옹에 대항한 영국·오스트리아·프로시아·러시아의 동맹국들이 스위스의 중립화에 찬성한 이유는 프랑스가 재기할 가능성이 있고 동맹

40) 姜光植, 앞의 책, p.127.

41) Cyril E. Black, et al., op.cit., pp.66 and V-VI; 黃仁寬 著, 洪倬杓 譯,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韓公營方案: 中立化統一論》(新丘文化社, 1988), p.67.

42) Cyril E. Black, et al., ibid.; Martin Wright, *Power poli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pp.160~161; 高山岩男, 앞의 책, pp.135~136.

43) Efraim Karsh, op.cit., pp.82~83; David E. Bohn, op.cit., p.339; 劉明喆, 앞의 논문, p.33.

44) 田岡良一, 앞의 논문, p.174; 劉明喆, 위의 논문, p.36.

국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가 영구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중립화가 프랑스를 격리시켜 각 각 자국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⁵⁾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체코라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과, 獨逸과 이탈리아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 간의 緩衝國이다. 이를테면, 西歐側에서 볼 때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연결부이고⁴⁶⁾ 東歐側에서 볼 때는 NATO의 북부와 남부 간에 쉼기 역할을 할 수 있게하는 對나토 前哨基地로서⁴⁷⁾ 西歐의 공격으로부터의 緩衝地帶(防壁役割)의 의미가 가장 큰 지역이다.⁴⁸⁾

또한 중립화 할 국가의 地形·地勢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한 약소국이 列強競爭의 中間地帶에 위치한다 해도 軍事的 通路로서 유일한 곳일 경우에는 중립을 유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⁴⁹⁾ 스위스는 전 국토의 75%가 山岳地帶로서 天惠의 要塞가 많기 때문에 大軍이 아니고는 통과할 수 없는 위험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벨기에는 獨·佛 관계에 있어서의 통로로 되어 오히려 獨·佛 양국의 스위스 침공을 회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⁵⁰⁾ 폴란드도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중간지대이지만 이 둘 침략세력을 저지할 천연의 장벽이 전혀 없어서 항상 通路로 활용되어 이들에 의한 分割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세번째 가능조건으로는 中立化에 대한 超黨의 汎國民的인 國內的 支持와 決意- '國民의 內的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⁵¹⁾ 본래 弱小國들 가운데서 중립화 후보지역으로 부상되는 경우는 國家力量의 制約性 이 외에 內部勢力의 분열로 인한 對內的 基盤의 脆弱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通例이다. 이는 中立化 候補

45) 田岡良一, 위의 논문, p.175.

46) William B. Bader, *Austria between East and West 1945~195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p.204.

47) Efraim Karsh, op.cit., p.146.

48) Harto Hakovirta, op.cit., p.107.

49) 高山岩男, 앞의 책, pp.137~138.

50) 벨기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해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군사적 통로였고, 영국을 침략하려는 유럽 강대국은 벨기에를 통과하지 않고는 침략이 불가능한 것이다. 劉明喆, 앞의 논문, p.33.

51) 高山岩男, 앞의 책, pp.139~140; 田岡良一, 앞의 논문, pp.156~162.

地域 자체가 만성적 외부간섭으로 內紛을 겪고 있는 데다가 분열된 내부세력을 외부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內亂이 國際紛爭으로 확대되어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중립화가 쉽게 적용된다는 뜻이다.⁵²⁾

그러나 이러한 후보국가에게 중립화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受容態勢를 필요로 하는 바, 그것은 곧 중립화한 지위를 선호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요구되는 '統合性'(integr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 政治的 統合性이야 말로 중립화의 적합성과 실효성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統合성이 결여된다면 中立化 指向에 대한 國民의 意思形成도 문제이거나, 중립화 협상 과정에서 代表性(representativeness) 문제를 야기시키며 또 그것은 中立化 이후의 前途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⁵³⁾

스위스 연방은 國民構成에 있어서 독일어 계(72.7%)·프랑스어 계(22.1%)·이탈리아어 계(3.9%)·기타 민족(2.3%) 등 다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1910년 현재)⁵⁴⁾ 그들 스스로가 外國 間의 戰爭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민족 별로 분열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만큼 中立性維持를 통한 國民的 統一의 유지가 독립과 영토보전의 절대적인 길임을 이해하고 있다.⁵⁵⁾ 종교적인 면에서도 스위스는 중립을 필요로 하겠끔 되어 있다. 기왕의 '30년 전쟁' 기간에 국내의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교도들은 서로 대립하여, 프로테스탄트는 독일 프로테스탄트와 스웨덴·프랑스 측의 승리를 기대하였고 가톨릭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측의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스위스 내부 분열의 위험성이 고조된 바 있었다.⁵⁶⁾ 이처럼 스위스는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중립화 대상국가의 후보국이지만 內的 合意(國民的 統合性)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변 열강에의 分占 또는 從屬 이 외에 中立과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국가였다. 이에 스위스는 전 국민의 일치된 중립화 주장을 「웨스트팔리아회의」(1648)와 「비엔나회의」(1815)

52) 姜光植, 앞의 책, pp.96~97.

53) 姜光植, 위의 책, p.97.

54) 高山岩男, 앞의 책, pp.167~168.

55) David E. Bohn, op.cit., p.340.

56) 今井潔, 〈스위스의 永世中立〉, 日本憲法研究所 編, 《永世中立の諸問題》(京都:法律文化社, 1969), p.84.

같은 국제회의 때마다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은 없으면서도 주변 열강에게 끈질기게 호소하여 同調를 구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⁵⁷⁾

이에 비해 라오스는 비공식 중립인정(1954)을 거쳐 13개국의 保障으로 아시아 최초의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1961), 이후 대규모의 戰爭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挑戰이 없었던 데도 중립화한지 10개월만에 左派・右派・中道路線 등 3파로 구성된 트로이카 연립정부가 붕괴・분열되어 저마다 외세와 결탁함으로써 중립화의 지위를 지탱하지 못하였다.⁵⁸⁾

네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周邊強大國들 간의 勢力均衡 問題이다. 일반적으로 중립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열강들이 중립화한 국가의 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⁵⁹⁾ 원래 ‘勢力均衡’이란 ‘나폴레옹전쟁’(1797~1815)에 따른 유럽 국제정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곧 각 국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 간의 균등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대륙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와 霸權主義防止를 위해서는 ‘한 집단의 힘은 다른 집단의 힘과 평등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⁶⁰⁾ 따라서 세력균형이라 함은 ‘힘’(Power)이 국가 또는 국제적 행위자(同盟, 블록 등) 간에 거의 비슷하게 균등히 분배되어 있는 실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⁶¹⁾ 이러한 세력균형은 현상유지를 가능케 하며 중립의 외적인 기본 조건인 것이다.

1815년의 비엔나회의 이후 스위스가 中立化 한 것은 스위스를 緩衝國으로 만듦으로써 周邊 強國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Habsburg家) 간의 세력균형이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⁶²⁾ 오스트리아의 中立化는 美國과 蘇聯이 오스트리

57) 劉明喆, 앞의 논문, p.17.

58) 崔鳳潤・盧承禹, 《民衆主體 中立化統一論》(전예원, 1988), pp.186~188; 黃仁寬 著, 洪停杓 譯, 앞의 책, pp.46~51.

59) 高山岩男, 앞의 책, pp.135~136, pp.153~155; 田岡良一, 앞의 논문, pp.174~176; Cyril E. Black et. al., op.cit., pp.44, 152~154.

60) 黃仁寬 著, 洪停杓 譯, 앞의 책, p.94.

61) H.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213; Efraim Karsh, op.cit., p.107; 李相禹, 《國際關係理論》(서울:博英社, 1987), p.239; 劉明喆, 앞의 논문, p.34.

아를 東西의 緩衝地帶로하여 東西 間의 세력균형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들의 利害關係의 一致 때문이었다.⁶³⁾ 이렇게 볼 때 나폴레옹 전쟁 후의 스위스의 中立化와 2차대전 후의 오스트리아의 中立化의 類似性은 勢力均衡을 통하여 국제적 안정을 재설정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각 각 戰後에 지배적이었던다는 점이다.⁶⁴⁾

또한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그 均衡體制가 兩極化할수록 중립화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多極化할수록 증가한다. 왜냐하면 양극체제에서는 중립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압력을 가하기가 쉽지만 다극체제에서는 牽制勢力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는 양극 상호 간의 완전한 세력균형이 유지될 때에만 중립화를 인정하게 되나 다극화는 중립화의 수락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중립국의 행동의 자유를 증가시켜 전체 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⁶⁵⁾

스위스의 中立化를 갈수록 견고하게 한 것은 오스트리아-프랑스라는 東西 間의 勢力均衡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탈리아-독일이라는 남북 간의 세력균형이 수반됨으로써 주변체제가 4 강이라는 多極體制化 한 때문이며, 오스트리아의 中立化가 스위스 같은 자체 능력이나 중립의 전통이 없이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곧잘 유지되는 것은 美·蘇 冷戰이라는 전혀 兩極化 現象 때문이면서도 주변 6국-

62) Edgar Bonjour, op.cit., pp.62, 66~67; Cyril E. Black et. al., op.cit., p.38.

63) William B. Bader, op.cit., pp.204~205; William L. Stearman, "An Analysis of Soviet objectives in Austria", in Robert A. Bauer (ed), op.cit., p.105.

64) Cyril E. Black et. al., op.cit., p.105.

65) 국제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극체제가 효과적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도이치(Deutsch), 싱거(Singer) 등이고, 양극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발쯔(Waltz)가 대표적이다. 로즈크랜스(Rosecrance)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체제는 다극체제와 양극체제의 결합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Karl W. Deutsch and J. David Singer,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XVI, (April 1964), p.390; Kenneth N. Waltz, "International Structure, National Force,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XXI, (1967), pp.223~230; Richard N. Rosecrance,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X, (September, 1966), pp.318~322; 劉明喆, 앞의 논문, pp.34~35 주 91).

독일·스위스·이탈리아·유고·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의 존재 역시 무시될 수 없음이 東西 解氷 이후에 더욱 실감된다.

다섯째의 가능조건으로는 ‘周邊 強大國 間의 利害關係의 一致를 통한 중립화에의 合意와 保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對外的 諸 條件 가운데 비록 緩衝地로서 적합하고 주변 강국 간의 勢力均衡이 잘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均勢體制下의 列強들이 중립국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립화에 대한 합의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립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 달리 말하면 완충지는 가히 숙명적인 것이고 세력균형은 그 자체의 함수관계상 可變의인 것으로서 다소 우연일 수가 있지만 열강 상호 간의 合意와 保障이란 것은 당시의 利害關係로 볼 때에 協商을 통하여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中立國들이 그 宣言의 事前이든 事後이든 간에 모두 국제적인 합의와 보장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스트리아는 美國과 蘇聯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고, 벨기에(1831)와 룩셈부르크(1839)는 아무런 自衛力을 갖추지 않은, 전적으로 영국·오스트리아·러시아·프러시아·프랑스 등의 5 대 강국에 의한 외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중립국이다.⁶⁶⁾

그러나 국제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통한 合意와 保障이란 것은 영구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국제적 共助體制가 깨어질 때는 스위스와 같은 상당한 自救策이 없는 중립국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벨기에는 언제나 그들의 中立을 그 나라 독립의 한 조건으로 부과된, 自國의 主權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制約으로 인식하여 그것이 종결되기를 희망했는데, 이에 독일이 ‘베르사이유조약’(1919.6.28) 제 31조에서 ‘런던의 3각 조약’(1839)의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결국 벨기에의 중립은 끝났으며,⁶⁷⁾ 룩셈부르크도 제 1차 대전과 제 2차 대전에서 거

66) William E. Lingelbach, "Belgian Neutrality: Its Origin and Interpret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October 1933), p.51; Edward Hertslet, *The Map of Europe by Treaty*: (London, 1875~ 1891) Vol III, p.1803.

67) 黃仁寬 著, 洪停杓 譯, 앞의 책, pp.37~38. 벨기에가 5대 강국에 의해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된 것은 1831년부터이지만 사실상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였는데, 1839년의 ‘런던의 3각 조약’ 곧 강대국과 네덜란드, 네덜란드와 벨기에, 벨기에와 강대국 간의 조약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중립국이 되었다.

들 독일에게 점령당함으로서 중립화를 포기하고 벨기에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고 말았다.⁶⁸⁾

여섯번째로는 中立의 歴史的 經驗이나 그와 비슷한 傳統이 있을 때 中立은 성공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시종일관 持續的인 中立政策 追究로 中立에 대한 信賴(credibility)와 尊重(respectability)을 주변 열강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때 中立은 지속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⁶⁹⁾

스위스가 人力 海外進出의 한 방편으로 傭兵을 유럽의 주요국에 공급할 때 公平性を 잃지 않았던 일이나⁷⁰⁾ 30년 종교전쟁 기간에도 外國軍의 無害通過權을 증대한 安保威脅으로 간주하여 外國軍의 스위스領 通過權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武力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던 일,⁷¹⁾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프랑스 왕위계승전쟁’(1735~1737)·‘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7년전쟁’(1756~1763) 등의 거듭된 渦中에서도 中立을 유지했던 일,⁷²⁾ 1870년의 ‘프러시아·프랑스 전쟁’에서도 스위스는 중립 옹호를 선언하고 그 영토에 피난한 8만명 이상의 프랑스 군대를 무장해제하여 終戰 때까지 억류하였던 일, 兩次 世界大戰에서도 중립을 유지했던 일 등 등은 그 어느 것이나 스위스가 中立國으로서 갖는 훌륭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인 것이다.

한편 2차 대전 이후에 닥친 東西危機는 중립국들에게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有無를 시험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東西 葛藤에 있어서도 그 調停者로서 기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들 국가는 동서 간의 중개자역할(bridge-building)과 조정·중재·화해(mediation)를 끝 잘 수행하고 있으며 제네바와 비엔나 같은 훌륭한 국제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⁷³⁾ 특히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같은 중립의 전통이 없지만 중립화 이후에

68) 위의 책, p.38.

69) 田岡良一, 앞의 논문, pp.162~164.

70) 今井潔, 앞의 논문, p.81.

71) 위의 논문, pp.84~87.

72) Edgar Bonjour, op.cit., p.26.

73) Thomas O.Schlesinger, *Austrian Neutrality in Postwar Europe*, (Wien: Wilhelm Braumüller, 1972) pp.142~143.

는 일관되게 中立化政策을 유지하고 있어 스위스와 대등하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중을 얻어내고 있다.

일곱번째로 弱小國이며 現狀維持國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본래 '약소국'이라는 용어는 영토·인구·자원·군사력 등 具體的 指標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체계에서의 相對的 地位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약소국은 강대국이나 초강대국과 대비되는 중·소국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이들 강대국과 비교하여 볼 때, 人口 및 領土面에서는 소규모이며 經濟面에서는 저수준의 GNP·협소한 국내 시장·자본의 대외 의존, 軍事面에서는 대외 의존적 방위체계·저수준의 전쟁잠재력, 國際體系上的 地位面에서는 수동적 대외정책·국제법과 국제기구 의존·국지적 또는 한정된 지역적 이익추구라는 등 등의 특징을 갖는다는 이론이 있다.⁷⁴⁾ 말하자면 自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에 있어서 強大國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弱小國으로 부터의 保障이 필요하지 않지만 弱小國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立을 하려는 나라는 自國의 現 상태에서 만족해야 하며 인구증가나 산업구조의 발전에 힘입어 해외식민지를 획득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고 현재의 영토를 변경하지 않으려 할 때 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⁷⁵⁾

74)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and Co. Ltd., 1981) pp.52~53; 姜光植, 앞의 책, p.68.

그러나 小國이 반드시 弱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국에 속하는 국가도 면적에 비한 인구, 인구에 비한 국민소득, 면적과 인구에 비한 병력 즉 사단의 수, 사단의 수에 비교한 火力 등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경우도 있다. 劉明喆, 앞의 논문, p.32.

75) 高山岩男, 앞의 책, p.134.

第 2 章 壬午軍亂~巨文島事件 期間의 韓半島中立化論

1. 時代的 背景

19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는 세계무역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일대변화를 맞게 되었다. 1840년대에 淸이 英國에 문호를 개방하였고 1850년대에는 琉球와 日本이 각각 歐美勢力과 통상조약을 맺었는가 하면, 1870년대에는 朝鮮이 일본에 의해 개방됨으로서 바야흐로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中華帝國 秩序에서 벗어나 이른바 西洋式的 ‘萬國公法’¹⁾ 論理에 따른 새로운 近代外交體制로 再編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1871년 9월에 체결된 ‘淸·日修好條約’은 淸·日 양국 간의 平等과 互惠를 명시하였던 바,²⁾ 이는 종래의 華夷질서를 淸스스로가 부정하는 단서로 되어 이후 동아시아 국가 상호 간에도 朝貢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조약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주변국가와의 조약체결에 적극성을 띠게끔 길을 텅 셈이 되었다.³⁾

일본은 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국가의 기틀을 다진 후 재빨리 대외팽창을 서둘렀다. 1874년 2월경 大久保利通(1830~1878), 岩倉具視(1825~1883) 등은 ‘조선에 대한 武力開港政策’⁴⁾을 결정하는 한편 淸·러의 對韓關心을 희석시키려는

1) ‘萬國公法’은 미국법학자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hiladelphia, 1838)를 미국 선교사로서 北京同文館總敎習이었던 마틴(W. A. P. Martin)이 1864년에 漢譯하면서 비롯된 명칭인데 ‘萬國律例’라고도 하였다.

주 내용은 ①釋公法之義明其本源題其大旨, ②論諸國自然之權, ③論諸國平時往來之權, ④論交戰條規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國際法을 가리킨다. 同治3年 京都崇實館存板, 《萬國公法》, (東京:老皂館印刊, 1871): 李光麟,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p.148.

2) Key-Hiuk Kim,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p.144~150.

3) 일본이 淸·일 수호조약 체결을 서두른 목적은 양국 원수를 동격화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서열상 우위를 확립하려는데 있었다.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6 (日本國際連合協會, 1954) pp.144~145, 195.

4) 《岩倉具視關係文書》4 (日本史籍協會, 1940) pp.464~466.

작전을 세워 그해 3월 러시아에 사할린 문제의 협의를 명분으로 榎本武揚(1836~1908)을 파견하더니 4월부터는 臺灣에 3600명의 兵力을 투입, 앞서 있었던 臺灣人の 漂流 琉球人 殺害事件(1871.12)을 빌미로 侵略을 감행하였다(臺灣事件).⁵⁾ 일본이 이러한 동시 다발적인 교란책동으로 臺灣侵略을 시도한 것은 淸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淸은 러시아와의 新疆紛爭 등 각지에서 西歐列強과 대치상태⁶⁾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말았다.⁷⁾ 이와같은 ‘淸의 無力’⁸⁾은 장차 일본이 조선 및 琉球 진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일본은 특히 朝鮮開港을 위해서 동아시아 정세를 면밀히 탐색하여 이를 이용

-
- 5) Key-Hiuk Kim, op. cit., pp.190~202; 石井孝, <日本軍臺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有隣堂, 1982) pp.67~71.
臺灣事件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栗原純, <臺灣事件(1871~74)-琉球政策の轉期としての臺灣出兵>, 《史學雜誌》 87~9(1978); 金城正篤, <臺灣事件(1871~74)についての一考察-琉球處分の起點として> 《琉球處分論》(沖繩タイムス, 1978).
- 6) 淸의 영토인 新疆地域에 대하여, 러시아가 1871년에 그 일부인 伊犁를 점령하고 카시 가르를 거점으로한 야쿵벡(Ya'qūb Beg; 阿古柏)이 또한 伊犁를 제외한 天山北路 일부 및 天山南路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 이 지역의 淸朝의 세력을 일소함에 따라 淸은 新疆收復作戰을 국가의 1차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버마(현재의 미얀마)에 대한 지배력을 발판으로한 영국이 중국 남서의 雲南 진출을 노리던 중, 역시 1871년에 그들의 雲南 탐험대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다. Kim Ho-dong, "The Muslim Rebellion and the Kashghar Emirate in Chinese Central Asia, 1864~1877", (An Unpublished Thesis Presented to Harvard University, 1986) pp.209~222; Liu, Kwang-ching & Simth, R.J., "The Military Challenge: The North-West and the Coast", J. Fairbank et al.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221~225, 235~243; 崔紹子, <伊犁事件에 對한 考察-事件發生前後의 經緯 및 新疆出師를 中心으로> 《梨大史苑》 5(1964) pp.64~82.
- 7) 1874년 8월 일본의 전권대신 大久保利通이 北京으로 가서 일본군의 출병을 ‘保民의 義舉’로 인정하고 피살민에 대한 위로보상금(撫恤金) 10만냥과 일본측이 臺灣 점령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댓가 40만냥을 淸朝로부터 지불받는다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崔熙在, <中華帝國秩序의 動搖>,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中國史》 V-中華帝國의 動搖-, (지식산업사, 1989) p.212.
- 8) 日本軍臺灣出兵事件의 이 같은 해결은 淸朝가 사실상 ‘침략을 당한데 대한 보상’을 침략자에게 약속한 것으로서 內外에 淸의 無力함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Morse, Hosea B.,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2. (Shanghai, 1910, Taipei Reprint, Book of World Co., 1963) p.275.

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예컨대, 일찍이 副島種臣(1828~1905) 등이 淸·日修好條約의 비준교환을 위해 北京을 방문했을 때(1873.4~7) 조선의 대외교섭에 대한 淸의 입장을 떠보고, 淸이 조선에 대해서는 朝貢관계에 있으나 조선의 대외권리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선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⁹⁾ 1874년 11월에는 러시아로 파견됐던 榎本武揚으로부터 朝·日 間の 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해인 1875년 3월에는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신 千島列島를 할양받는다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조약체결까지 하였다.¹⁰⁾

이처럼 일본은 조선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충실히 한 후 1875년에 들어와 한편으로는 雲揚號事件 등 對韓 武力示威를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淸에 森有禮(1847~1889)를 보내어 淸의 개입을 막기로 하였다.¹¹⁾ 1876년 1월에 森有禮는 淸과 접촉한 결과 淸이 조선을 그들의 屬邦으로 주장하나 조선의 內政에 간섭하지 않고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의 自主에 맡긴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내세움으로써 청을 배척하는 논거로 이용하되 조선은 萬國公法 하의 半主權國¹²⁾ - 세르비아가 터키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 이기 때문에 朝·日 間に 불평등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극비로 본국에 조언해 주었다.¹³⁾

이렇게 해서 체결된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江華島條約:2월27일)와 附屬條約(7월16일)에는 조선이 ‘自主之邦’이며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규정되어있지만 (제1조) 구체항목으로 領事裁判權이나 無關稅 등이 규정됨으로써 불평등한 내용

9) 金城正篤, 앞의 논문, pp.38~39.

10) 《日本外交文書》10, pp.446~447.

11)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서울: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pp.515~530; 장팅푸저음, 김기주·김원수 옮김, 《淸日韓外交關係史》(민족문화사, 1991) pp.81~87.

12) 만국공법에서의 半主權國에 대한 정의는 田中彰 編, 《近代日本思想史大系》I - 開國, (岩波書店, 1991) pp.61~64 참조.

13) 《日本外交文書》9, pp.163~164; 金光玉, 〈近代開港期 日本의 琉球·朝鮮政策〉《港都釜山》11(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4) pp.14~15.

이 대부분이었다.¹⁴⁾ 특히 제1조의 의미 부여에 있어서 조선측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측은 이와 상반되게 다만 淸의 개입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해석하여 이를 마치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淸의 개입을 끊기 위하여 조약문에 베트남의 독립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¹⁵⁾ 일본관료 가 뒷날 강화도조약을 自評하여 “일본이 각 국과 체결한 조약 중 이처럼 일본에 유리한 조약은 없었다”¹⁶⁾라고 한 데서 조약의 성격을 간파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1878년 9월부터 본격화한 淸·日 간의 琉球紛爭을 계기로 琉球에 대한 武力併合을 서둘렀다. 드디어 1879년 3월 松田道之(1839~1882)는 경찰 160명, 군인 400명으로 琉球를 무장 봉쇄하고 미리 마련된 ‘合併政策’¹⁷⁾을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이에 淸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던 李鴻章(1823~1901)은 러시아와의 新疆問題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군사대결 대신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여 일본에게 ‘청의 속방이며 자립국인 琉球를 일본이 병합함은 청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주지시킨 다음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그들의 속방임을 내세워 거절하면서¹⁸⁾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았다.¹⁹⁾

14) 金敬泰, 〈丙子開港과 不平等條約關係의 構造〉 《梨大史苑》 11 (1973) pp.13~29.
 15)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 (塙書房, 1969) pp.74~75; 崔永禧, 〈江華島條約의 締結과 그 影響〉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83) p.127.
 16) 原敬全集刊行會, 《原敬全集》 上; 金義煥, 《朝鮮近代對日關係史》 (景印文化社, 1973) p.449; 金光玉, 앞의 논문, p.17.
 17) 伊藤博文의 지시로 松田道之가 마련한 琉球武力併合計劃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① 琉球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여 琉球國을 縣으로 하는 廢藩置縣을 선언하고 琉球王國의 모든 사무를 접수한다.
 ② 琉球王을 東京에 거주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처리한다.
 ③ 민중들이 저항할 경우 무력을 동원하여 진압한다.
 松田道之, 〈琉球處分, 1879〉, 下村富士男 編, 《明治文化資料叢書 4: 外交編》 (1962); 金光玉, 위의 논문, p.19.
 18) 西里喜行, 〈洋務派外交と亡命琉球人(Ⅰ)〉 《琉球大學教育學部紀要》 36-III (1990) pp.70~71.
 19) 당시 竹添進一郎은 “① 琉球는 척박한 땅이므로 일본이 이를 얻는다 해도 얻는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② 琉球를 청·일의 兩屬으로 해두면 러시아나 독일 등 서구열강이 끼여 들 우려가 있다. 동중 동문관계인 청·일이 단결해서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李鴻章을 설득하려 했다. 西里喜行, 위의 논문, pp.83~84. 이에 대하여 金光玉은 “일본 내에서 琉球産 혹사당의 운송문제로 치열한 경쟁이 있

이제 淸은 점차 허물어져가는 中華帝國秩序를 부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以夷制夷정책을 쓰는 수 밖에 없었다. 1882년의 ‘朝·美修好通商條約’(5.22)은 곧 러·日의 조선침투를 동시에 막기위한 以夷制夷정책을 활용한 李鴻章 外交의 소산이었다.²⁰⁾ 따라서 朝·美條約이 일단 체결되자 이후 불과 1개월 여 만에 ‘朝·英修好通商條約’(월스조약:1882.6.6)과 ‘朝·獨修好通商條約’(브란트조약:6.28)이 차례로 체결될 수 있었으며 李鴻章은 “외교의 지평선은 맑다.”²¹⁾고 豪言하였다.

조선이 각 국과 修交會談을 하는 과정에서 李鴻章은 조선이 淸의 속방임을 조약에 명시하도록 끈질기게 주장했는데²²⁾ 이것은 조선에서 淸의 宗主權을 인식시켜 朝鮮政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은 물론이지만, 당시 베트남에서의 청과 프랑스가 청의 종주권 문제로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서의 ‘屬邦’ 확인이 베트남에서의 청의 논리를 더욱 유리하게 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었다.²³⁾

이러한 가운데 朝鮮內의 保·革 葛藤이 빚은 壬午軍亂(1882.7.23)은 결과적으로 淸의 對朝鮮 優位權 確保의 전환점이 되었다. 군란으로 일본의 군사 교관이 피살되고 공사관이 소실되는 등의 소식을 접한 일본이 군대를 출동시키고 井上馨(1835~1915) 외무경이 東京을 떠나 下關으로 향하자 淸에서는 일본의 움직임 크게 걱정하여 군함을 급파했다.²⁴⁾ 결국 淸國軍이 서울에 入城하여 大院君을 체포, 淸으로 호송하고 亂黨을 剿討함으로써 사태는 진정되었다. 淸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청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였지만, 이번에도 일본이 琉球武力占領때와 마찬가지로 조

던 시기에 이와같은 논리를 편 것은 그들의 침략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짐짓 琉球의 경제성을 무시한 것이었으며, 유럽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이 연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金光玉, 앞의 논문, p.21.

20) 장탕푸, 앞의 책, pp.88~99.

21) 崔文衡, 〈列強의 對韓政策과 韓末의 情況-특히 1882~1894년의 美·英·露의 態度를 中心으로-〉《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p.5~6.

22) 장탕푸, 앞의 책, pp.94~95.

23) 金光玉, 앞의 논문, p.25.

24) 〈井上馨이 伊藤博文에게 보낸편지〉(1882년 11월경으로 추정됨),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伊藤博文關係文書(一)》(塙書房, 1974) pp.177~178.

선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고²⁵⁾ 또한 조선이 청에게는 戰略의 要衝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新疆地方에서의 무력분쟁도 조약으로 타결된 이후여서 병력출동이 쉬워졌기 때문이었다.²⁶⁾

그러나 임오군란은 적어도 韓國史에 관한 한 일사적이고도 단순한 內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긴 후유증은 지속적이고도 복잡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로 인하여 일본의 駐兵權 및 淸軍의 주둔이 허용되었고, 청의 內政介入의 시작은 조선으로 하여금 자주적인 富國強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 이후 外勢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弊習이 일게 되었다.

특히 청은 내정개입을 통하여 그들의 종주권을 재확인하려 했다. 이를테면,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8.23)을 강요하여 조선왕을 北洋大臣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조선측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종의 관세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열강에 대해 조선의 문호를 사실상 폐쇄하려 하였다.²⁷⁾ 뿐만아니라 天津駐在 獨逸領事 뮐렌도르프(P.G.von Moellendorff, 穆麟德: 1847~1901)와 中書舍人 馬建常을 외교와 관세전문가로, 道員 陳樹棠과 唐廷樞를 각각 商務와 鑛床關係를 자문하도록 派韓한 다음 吳長慶 제독으로 하여금 監國과 같은 역할을 비밀히 부여하여 조선국의 모든 施政을 감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주권을 행사하였다.²⁸⁾

25) <竹添進一郎이 伊藤博文 앞으로 보낸 편지> (1882년 12월 27일), 위의 문서(六) p.148; 金光玉, 앞의 논문, p.27.

26) 청은 1881년 2월 24일의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 조약(The Treaty of St. Petersburg)을 통하여 新疆地域인 伊犁의 대부분을 반환받는 대신 價金 900만 루블을 러시아에 지불하기로 했다. 陳博文, 《中俄外交史》, pp.30~32; 窪田文三, 《支那外交通史》 p.267; 金景昌, 《東洋外交史》(集文堂, 1984) pp.246~256.

27) 故宮博物院 編,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上, (臺北:文海出版社 印行, 1970, 民國 59년) p.153 光緒 8년 8월 29일; F.C.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Unpublished Ph.D.Dirssertation, University of Harvard, 1935) p.470.

關稅率에 있어서 紅蔘에 대한 從價 15%의 과세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에 있어 다같이 從價 5%로 규정함으로써 파격적인 저율이었다. 따라서 淸은 英·獨에게 이미 朝·美條約의 경우를 본받아 생활필수품에 從價 10%, 사치품에 從價 30%의 관세율을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이 세율을 따르게 하려 했다. 崔文衡, 앞의 논문, pp. 6~7.

28) 金允植, 《陰晴史》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6 (探求堂, 1971) 高宗 19년 10월 7

이처럼 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淸에 대하여 高宗은 美國의 힘을 빌어 청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을 위한 ‘介入’이 아닌 ‘居中調停’의 태도²⁹⁾를 보일 뿐만아니라 ‘조선이 간청한 외교고문과 군사고관의 派韓’³⁰⁾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에 高宗은 미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여 1884년 중반부터는 마침내 조선의 독립유지를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고문 뮐렌도르프의 주선으로 天津駐在 러시아 영사 베베르(K.I.Waeber 韋貝)가 입국(1884.6.24), 조선정부와의 修交 교섭을 추진하여 마침내 7월 7일 ‘朝·露修好條約’이 전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처럼 신속하게 성사된 조·러 접근의 이유를 조선측에서 찾는다면 러시아는 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당장에 유용함은 물론, 장차 일본과 영국에 대한 그것으로도 필요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으며, 반면에 러시아 측으로서도 1884년초에 코로프(Baron Andrei Nikolaevich Korf)가 프리아무르 총독으로 취임한 이후 동아시아 정책을 이미 적극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未久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淸·佛戰爭이 일본에게 韓半島占取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³²⁾

결과적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조·러 수교란 이른바 ‘朝鮮策略’적 사고방식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요, 李鴻章 식의 以夷制夷 정책이 아니라 高宗 식의 對淸 견제용의 以夷制夷 정책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러시아는 조·러 수교를 통해 일거에 淸·日·英·美 등과 나란히 조선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³³⁾

일, 14일, 16일條: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上, p.161 附件 2, 3; 蔡中默, 《韓國外交史》(蜚雪出版社, 1993) pp.149~151.

29) R.T.Pollard, "American Relations with Korea, 1882~1895",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VI, No.3(October, 1932) p.471.

30) Ibid., p.433; Jones, op.cit., p.412; Yur-bok Le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86~1887* (New York, 1970) p.59.

31) 崔文衡, 앞의 논문, p.15.

32)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編, 《舊韓末의 條約(下)》(서울:新書苑, 1989) pp.1~55;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25.

33) 崔文衡, 앞의 논문, p.16.

뜻밖의 壬午軍亂으로 한반도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일본은 곧 바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妙案을 찾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1884년 3월 말부터 베트남에서 청과 프랑스간의 무력 대결이 점차 확산되더니 동년 8월에 마침내 全面戰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일본은 中立을 유지하기로 했다가³⁴⁾ 곧 표변하여 프랑스와 청의 양측으로 하여금 일본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이 국면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측의 거둬진 對淸共同戰線構築의 요청에도 일본은 ‘프랑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프랑스 측의 일본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키는 정책’³⁵⁾을 썼고, 청국과의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 당시의 懸案인 琉球分割 問題를 유리하게 해결하려 했다.³⁶⁾

또한 일본은 淸·佛戰爭으로 朝鮮駐屯 淸兵의 절반이 프랑스 함대의 北上에 대비하여 遼東半島로 철수한 틈을 이용, 조선에서의 새로운 정책 전환을 모색하였다. 동년 10월 주조선일본공사 竹添進一郎(1842~1917)은 일본이 프랑스와 연합하여 청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조선의 정치가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急進開化派들이 일본세력을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킨 것이 이른바 甲申政變이었다.(1884.12.4)³⁷⁾

정변의 결과 일본은 조선과 ‘漢城條約’을 체결(1885.1.9)하여 일본인이 입은 손해 보상금을 받아내고 淸·佛戰爭에서 청이 패했다는 상황을 이용, 伊藤博文(1841~1909)을 天津에 보내 청·일 양국의 조선주둔군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것

34) 野瀬和紀, 〈甲申政變の研究(一) - 淸佛戰爭と日本外交 -〉《朝鮮學報》82 (1977) pp.144~156.

35) 《沖繩縣史》15, pp.363~366; 野瀬和紀, 위의 논문; 金光玉, 앞의 논문, p.28.

36) 高良倉吉, 〈琉球處分と朝鮮・東南アジア - 淸佛戰爭と琉球問題との關連を中心に -〉《沖繩歷史論序說》(三一書房, 1980); 西里喜行, 〈琉球分割交渉とその周邊〉《新琉球史 - 近代・現代編》(琉球新聞社, 1992) pp.59~60.

37) 田保橋潔, 앞의 책, 上, pp.924~927.

갑신정변의 원인은 淸·佛 戰爭을 배경으로 하여, 청군 철수를 틈탄 한국 개화파의 쿠데타 계획, 프랑스가 일본의 自由黨과 한국의 개화파를 움직여 한반도에서 거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淸國에 대한 제 2전선을 펴겠다는 의도, 그리고 일본정부가 자유당의 계획을 先取하여 對韓消極政策을 적극정책으로 바꾼 다음, 한국개화파를 지원한다는 政略 등이 서로 복합한 데서 찾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金榮作, 〈韓末 내쇼날리즘과 金玉均〉《法政論叢》4(國民大學校 法學研究所, 1981) pp.231~232.

을 골자로 하는 ‘天津條約’ 체결에 성공하였다.(1885.4.18)

한편 조선정부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개화파가 去勢됨으로써 청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자 러시아와의 제휴를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朝·露密約說’이었다.

1885년 1~2월경에 있었던 조·러 밀약은 ‘조선이 러시아 군사교관의 派韓과 청·일 충돌 때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永興灣을 조차해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바,³⁸⁾ 이는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對韓積極進出로 받아들여져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결과적으로 이 밀약은 英·日 양국의 對朝鮮政策變化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니, 이를테면 일본으로 하여금 청보다 훨씬 강대한 러시아로 부터의 위협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청과의 조속한 異見調停(天津條約締結)을 서둘게 하였고, 영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 국경문제로 실질적으로 이미 對러시아 전쟁을 결심하고 있던 처지여서 巨文島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구실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1885년 4월 15일 영국 해군이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西洋帝國主義列強의 弱小國에 대한 만행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으며, 조·러 밀약의 실현을 위한 러시아의 스페에르(Alexis de Speyer, 士貝耶)와 朝鮮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의 교섭(6월 예정)을 無爲로 끝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淸의 對韓宗主權強化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를테면, 李鴻章은 주청 러시아 대리공사 라디젠스키(N.F.Ladyzhenskii)와 수

38) 한·러 밀약의 추진경로는 두 갈래로 논의되고 있다.

그 하나는, 한국왕이 밀사를 블라디보스톡에 보내 지방관헌과 접촉하게 한 후 다시 뮐렌도르프로 하여금 來韓한 주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 스페에르와 협의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Malozemoff, op.cit., pp.29, 31; Fredrick Foo Chien, *The Opening of Korea: A Study of Chinese Diplomacy 1876~1885* (Handen, Conn: The Shoe String Press, 1967) pp.176~177; 重吉萬次, 〈鮮露保護密約締結の企に就いて〉《稻葉博士 還歴記念滿鮮史論叢》, pp.323~324.

다른 하나는, 왕명을 받은 뮐렌도르프가 東京에서 주일 러시아공사 다비도브(A.P. Davydov)와 수차례 접촉하여 협의했다는 것이다. Jones, op.cit., p.447; C.J. Eugene Kim & Hankyo Kim, *Korea and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62; 重吉萬次, 위의 논문, pp.328~329; Chien, Idid., p.177.

39) Jones, Idid., p.451.

차에 걸친 담판을 하여 그로부터 “러시아는 거문도를 비롯한 朝鮮領의 어느 부분도 차지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口頭誓約을 받아냄으로써 영국의 철수 명분을 이끌어 냈고 마침내는 조·청 간의 기존 관계의 유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李·라디겐스키 協約(天津協約)’을 성립시켰다.(1886. 10.6)⁴⁰⁾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1880년대의 동아시아 정세는 전통적인 中華秩序 대신 西歐式의 萬國公法 論理에 따른 帝國主義秩序가 강요된 결과 琉球가 일본에 점령되고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마저 청·일본·러시아·영국의 각축장으로 변모되었다.

2. 日本人이提起한 韓半島中立化論

앞에서 살펴 본 대로 弱肉強食의 국제무대에 아무런 豫備 없이 노출된 조선의 존재양식을 둘러싸고 中立化 問題가 맨 처음 제기된 곳은 일본에서였다.⁴¹⁾

조선에서 壬午軍亂이 발발하던 당시 일본의 국내외 정치상황은 일대 시련에 직면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야당과 재야의 자유민권운동이 절정기에 달하여 明治維新體制가 위기를 맞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이미 강화도 조약을 성사시켜 對朝鮮進出에 적극성을 보이던 것이 임오군란이란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로 청에게 優位를 빼앗기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해소책으로 일본 정부는 임오군란의 사후처리에 모든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켜 특히 국내의 자유민권운동을 희석시키려 하였다.

임오군란 발발직후 일본정부는 閔氏政權이 존속된다는 예상 하에 온건한 사후처리 방침을 취했지만 민씨정권의 붕괴, 大院君 政權의 수립 등 일련의 보도를 접한 후에는 강경방침으로 선회하였다.⁴²⁾ 외무경 井上馨이 사후처리를 위하여

40) 李鴻章 撰, 吳汝綸 編, 《李文忠公全集》5, 譯署函稿 卷18 (臺北:文海出版社印行, 1962) p.471 (譯俄使續交改訂照會內三條 光緒 12년 9월 初9일 到): Jons, Idid., p.473.

41) 이 당시 일본인이 제기한 한국중립화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천착한 논문으로는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42) 高橋秀直, 〈壬午事變と明治政府-江華條約より壬午事變までの朝鮮政策の展開-〉 《歴史學研究》601 (1989) pp.6~8.

下關으로 향한 후⁴³⁾ 東京에서는 外務大輔 吉田清成(1845~1891)과 청국공사 黎庶昌 사이에 조선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때 청·일 양국 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다름아닌 淸·韓宗屬關係였다. 즉 청 측은 “일본공사관이 우리의 屬邦 때문에 暴舉를 받았으므로 청국이 파병하여 공사관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병과 정치개입의 명분으로 屬邦論을 들고 나왔고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該國을 待함에 自主國으로서 함으로, 사후처리도 조약에 바탕을 두어 행하고 공사관 보호도 자국에 의함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獨立論을 주장하였다.⁴⁴⁾ 조선을 둘러싼 이러한 양국 간의 상반된 주장은 급기야 日本 朝野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淸의 속방론을 부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 곧 한국중립화 구상이었다.

1) 井上毅의 案

일본인이 제기한 한국중립화론의 대표적인 경우는 井上毅의 案이다. 井上毅(1843~1895)⁴⁵⁾는 參事院 議官으로서 임오군란의 사후처리차 서울에 파견되어 조선과 교섭을 벌인 일이 있는 인물인데 귀국한 다음날인 1882년 9월 17일부터 〈朝鮮政略〉⁴⁶⁾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을 통하여 그는 한국 중립화에 관한 자신

43) 武田勝藏, 《明治15年 朝鮮事變と花房公使》(東京:花房子爵家刊, 1929) pp.36~38.

44) 《日本外交文書》15, No.102~107, pp.163~166.

45) 井上毅는 1881년에 일본 太政官의 중추로서 諸 政策을 발의, 조정, 통할했으며 參事院을 창설하여 그 議官으로서 伊藤博文이 주도한 憲法·皇室典範의 기초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琉球 귀속을 둘러싼 청·일 교섭, 조약개정 등 明治 전반기의 중요문제에 관여하였으며,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화도사건 후 일본 정부가 만든 조사위원회에 보아쑈나드·伊藤과 함께 참여하였고 임오군란·갑신정변 후의 외교교섭에 있어서도 筋書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井上毅와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中島昭三, 〈井上毅と朝鮮問題〉《國學院法政論叢》6(1985); 多田嘉夫, 〈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江華島事件及び壬午甲申京城事變をめぐって(一)~(四)〉《國學院法政論叢》18~21(1991~4)·〈甲申政變と井上毅〉《明治國家形成と井上毅》(木鐸社, 1992) 등의 논문이 참고된다.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56의 주1)

46) 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 編, 《井上毅傳》-史料編1, (國學院大學圖書館, 1966) pp.312~313. 이 문헌은 후에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日本近代思想體系12-對外觀-》(岩波書店, 1988)에 再録되었으며 井上毅의 한국중립화론 연구에 기본사료가 된다.

〈朝鮮政略〉에 관한 연구는 津田多賀子, 〈1880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

의 이론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29일에 쓴 <擬與馬觀察書>⁴⁷⁾ 등의 書簡에서도 중립화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그의 중립화 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중립화를 구상하게 된 동기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조선의 내외사정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은 政府와 人民의 상황으로 보아 수십년 이내에 독립유지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틈 타 영국·미국·독일 등이 조선의 요지를 점령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아 국가가 베트남·버마(현재의 미얀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할 것은 필연적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가 두렵다고 하였다.⁴⁸⁾

둘째로는, 地政學的인 여건상 東海의 要衝地인 조선이 타국에 의하여 베트남·印度처럼 침략당한다면 청·일 양국은 물론 동양 전체가 이익될 게 없으므로 '東洋之長計'는 조선을 보호해야 하는 바, 청국에 의한 보호는 萬全의 道가 아니라는 것이었다.⁴⁹⁾

셋째는, 청의 屬邦論에 대응할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청이 屬國의 名義로써 조선을 일일이 간섭하고 외국에 사죄하도록 하여 외국에 기회와 名義를 제공하고 보호를 통한 응분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바, 이는 당치 않는 일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에게 불리한 일이므로⁵⁰⁾ 일본으로서는 청의 속방

開と列強》《史學雜誌》91-12(1982.12):中島昭三, 위의 논문: 芝原拓自, 〈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위의 책: 永井秀夫, 《明治國家形成期の外政と内政》(北海道大學出版會, 1990): 多田嘉夫, 위의 논문〈二〉(1991~4)·위의 논문(1992)등이 있다. 長谷川直子, 위의 논문 p.156의 주2)

47) 《梧陰文庫(井上毅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 No.A-856 (원본은 國學院大學圖書館 소장) 長谷川直子は <擬與馬觀察書>의 題名 아래에 附記되어 있는 '花房鄂國行ノ内命アリト聞ク同人發劄ノ日ニ施行ノ體ニ認ム'라는 내용에 따라 이 문서를, 井上毅가 花房義質이 주 러시아 공사로의 內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후 花房의 名義를 빌어 馬建忠 앞으로 보낸 書簡의 草稿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47.

48) 長谷川直子, 위의 논문, pp.144~145.

49) …朝鮮蕞爾之邦, 本無足道, 第地當東海之衝, 爭海利者之所久朶頤也, 若有一朝歸于他人之手, 爲安南印度之續, 則既非貴國之利, 又非敝國之福 而東洋全局 幾無可爲矣, 此不待智者而後知也, 故爲東洋之長計, 不得不護朝鮮, 蓋貴國之護朝鮮者 甚力矣, 而終非萬全之道…

井上毅, <擬與馬觀察書>《梧陰文庫:井上毅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 No.A-856.

50)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45.

론을 무슨 방법으로든 不許한다는 意志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⁵¹⁾

넷째로는, 당시 日本의 國家諮問役이었던 프랑스인 보아쏘나드(Gustave Emil Boissonade de Fontarable:1825~1910)의 이른바 ‘3國同盟論’이 그에게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었다. 이 당시 보아쏘나드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보다도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더욱 위험하므로 청·일 양국에 조선이 포함된 朝·清·日 3국 동맹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⁵²⁾ 이에 井上毅는 “조선은 同盟協力할 힘이 없고 청국 역시 함께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防俄 手段으로서의 3국동맹은 현실성이 없다”라든가 “3국동맹설은 하나의 夢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단은 비판하였다. 그러나 井上毅는 결국 이에 자극받아 동양평화를 유지할 方策으로 한국중립화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동기를 요약하면, 동해의 요충인 조선이 자체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허약한 데다 주변 외세의 위협마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일본의 조선진출에 장애가 되는 청의 종주권 행사가 점차 심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을 列強의 保障에 의한 中立國化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擬與馬觀察書〉에는 萬國公法에 근거하여 ‘自主’와 ‘半主’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조선이 중립화해야 할 당위성을 논하고 있다. 즉 ‘自主國’은 타국과 평등한 교섭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自主獨立國을 말하며⁵³⁾ ‘半主國’은 內治는 自主에 의하면서도 外交는 上國에 의해서 행해지는 나라를 말하는 바, 조선은 타국과 조약을 맺고 公使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半主國이 아닌 자주독립국이며 古來의 ‘義’에 바탕을 둔 ‘藩屬’의 명칭도 현재의 ‘法’의 기준에는 혼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⁴⁾

51) 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 編, 《井上毅傳》- 史料編 4, (國學院大學圖書館, 1971) pp.659~660.

52) 《日本外交文書》15, p.172;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二): 壬午事變》(原書房, 1979) pp.177~179.

53) …在公法 一國自主 卽得與他國平等交涉 自主也, 平等也, 其勢相依故與他國平等交涉 卽可以徵明其國之爲自主也, 天下豈有與他國平等交涉而獨不得爲自主獨立之邦者乎哉…
《梧陰文庫(井上毅文書)》 마이크로필름 No.A-856.

54) …乃謂公法有半主之例歟 所謂半主也者 內治任其自主 而外交由上國主持之謂也, 若使外交猶將其自主 而不受上國管束 卽結約渝約, 唯其所欲 而上國之主權安在焉, 故外交任其自

이러한 동기와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그의 중립화 구상은 시기적으로 볼 때, 朝鮮國特命全權大臣 兼 修信使로서 渡日한 朴泳孝(1861~1939)와 修信使節團 顧問 金玉均(1851~1894) 등이 조선의 개화자주독립을 위하여 원조요청을 함에 따라⁵⁵⁾ 일본정부가 10월 말 경부터 이를 논의하기 위한 閣議를 열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일본정부의 입장 표명이 요망되던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⁵⁶⁾

井上毅는 한국중립화를 위한 네가지의 方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淸・日・美・英・獨 5개국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벨기에・스위스 형의 중립국으로 만들 것을 회의로써 정한다. 둘째, 5개국 가운데서 이 약속을 破하는 국가가 있으면 他國들이 죄를 묻는다. 셋째, 5개국 이 외의 국가가 조선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5개국이 동맹하여 이를 방어한다. 넷째, 청은 조선의 上國이고 조선은 청의 貢國이지만 屬國은 아니며 하나의 獨立國이다. 따라서 청은 다른 4개국과 함께 보호국이기 때문에 4개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할 수 없다. 이 상과 같이 되면 주변정세가 안정되고 조선은 영구중립국으로서 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청은 조공국의 명의를 보존함으로써 虛名과 實力이 상호 수반된다고 하였다.⁵⁷⁾

이러한 논리 위에 井上毅는 그 실현을 위한 몇 차례 시도를 하였다. 우선 그는 임오군란 후에 청국을 假想敵國으로 하여 陸海軍 擴張을 上申한 일이 있는 山縣有朋(1838~1922) 參議에게 <朝鮮政略> 집필 6일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書簡을 보냈다.

主 而猶待以半主之邦 公法所無也…

此卽朝鮮非半主之邦也明矣, 朝鮮既非半主之邦 而爲自主之國 卽藩屬之名未當 藩屬與自主其勢相反 不可相諧, 此古義與今法混 而不可以通于萬國…

위의 문서, No.A-856.

55) 宮內省臨時帝室編修局 編, 《明治天皇紀》5 (吉川弘文館, 1971) p.840.

56) 위의 책, p.842; 高橋秀直,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 《史林》72-5 (1989.9) p.56 ; 森山茂德, 《日韓併合》(吉川弘文館, 1992) pp.19~20.

57)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45; 林子候, <朝鮮壬午軍亂之探討(下)> 《食貨》16, No. 5~6 (中華民國, 1987) p.234.

청국에 있어서 조선 간섭의 深淺은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영구적일는지 일시적일지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判然해진 후가 아니면 我國 政略의 針路가 결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차 我國은 청국이 意表한 바와 같은 遠大한 長策을 세우지 않고 다만 눈앞의 猜忌로 싸움만 벌이고 헛되이 많은 일을 저지른다면 無益할 것입니다. 저번에 제출한 영구중립안은 벨기에·스위스의 先例를 모방하여 공동보호를 하자는 것으로서 드디어 바꿀 수 없는 上策으로 생각합니다.⁵⁸⁾

여기서 井上毅는 당장의 일보 후퇴와 장래의 遠慮深謀가 필요함을 말하면서 조선의 중립화가 上策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井上毅는 〈朝鮮政略〉을 花房義質(1842~1917)·伊藤博文에게도 보냈는데 특히 伊藤에게 보낸 날짜가 11월 9일이어서⁵⁹⁾ 하필이면 그 시기가 朝鮮援助問題에 관한 閣議中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강한 실현의지를 엿볼 수 있고, 역시 〈擬與馬觀察書〉도 前述한 바와 같이 井上毅가 花房義質 명의로 청의 馬建忠(?~1899)에게 보낸 서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의 중립화 구상은 일본 정부에의 建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하여 淸側에도 자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립화 실현을 위한 그의 꾸준한 시도는 山縣 참의에게 이를 다시 제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가 보낸 1883년 5월의 의견서와 6월부터 7월에 걸친 서간에는 베트남을 둘러싼 청·불 양국관계의 긴박화와 琉球藩王 복위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을 공법상의 중립국화 하도록 청 측에 자문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⁶⁰⁾ 그 가운데는 이를 黎庶昌 주일 청국 공사에게 사적으로나마 자문해 줄 것을 권한 것도 있다.⁶¹⁾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井上毅의 한국 중립화 구상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상

58) 井上毅, 山縣有朋宛 明治 15年(1882) 9月 23日 附書簡, 《井上毅傳》-史料編 4, (1971) pp.614~615.

59) 花房義質宛書簡, 위의 책, pp.482~483.
伊藤博文宛書簡, 같은 책 1, pp.69~71.

60) 위의 책 1, pp.355~356의 〈安南事件意見〉, 明治 16(1883)年 5月 12日 附書簡; 같은 책 pp.617~619의 明治 16(1883)年 6月 14日 附書簡·7月 7日 附書簡

61) 위의 책, 〈安南事件意見〉.

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계기로 청이 생각하는 국제질서를 급격하게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을 확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조선을 형식적으로는 청의 조공국으로, 실질적으로는 청의 간섭이 배제된 독립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井上毅의 한반도중립화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모순이 숨어있다. 왜냐하면 그가 제기한 한국중립화론은 한 마디로 淸・韓宗屬關係의 부정에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일본은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朝鮮에 江華島條約을 강요하여 조선을 自主獨立國으로 명시함으로써 淸의 對韓宗主權行事に 제동을 걸었으나 壬午軍亂이란 뜻하지 않은 사태의 발생과 그에 따른 淸國軍의 朝鮮出兵으로 사태가 반전되었다. 이에 일본이 韓半島에서 청을 제쳐두고 優位權을 확보하기란 아직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全 朝野에 걸쳐 共感하게 될 때에 그가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중립화론은 청・한 종속관계를 부정하는 방편이었지 조선의 실질적 독립을 전제로 한 진정한 韓半島中立化論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井上毅가 비록 자신의 주장을 성사시키려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노력했다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베트남 문제의 再燃이라는 好機會에 편승하여 조선의 중립화를 論緒함으로써 琉球問題를 해결하려는 그의 또 하나의 底意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⁶²⁾

따라서 井上毅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그들의 國益을 전제로 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러한 만큼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淸・日 共助體制를 기초로 하는 이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론 따위는 얼마든지 食言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吐露한 “청국이 琉球藩王 復位를 주장할 경우에는 속히 軍國의 준비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⁶³⁾는 公言에서도 충분히 짐작된다.

62) 《井上毅傳》- 史料編 4, pp.617~619 明治15년 7월 7일부 書簡.

63) 위의 책, 明治15년 6월 14일부 書簡.

2) 言論界의 論旨

井上毅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日本政界에 한국중립화 구상이 한창 일고 있던 시점에 언론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잇따랐다. 임오군란 발발 직후 일본 언론계에서는 官僚派・民權派를 불문하고 조선측의 책임을 묻는 논설이 게재되었는데,⁶⁴⁾ 군란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淸軍이 개입하여 사정이 달라지게 되자 논의의 초점은 淸・韓宗屬關係로 옮겨져 마침내는 조선의 독립 인정을 둘러싸고 각 양의 논의가 沸騰하였다.

官僚派 신문인 《東京日日新聞》은 임오군란으로 청국군이 진주하면서 서울에 ‘朝鮮爲中國藩服之邦’이란 告論文을 게시한 것에 주목하여 조・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⁶⁵⁾ 이어서 조선의 청에 대한 조공관계로서 조선을 萬國公法상의 隸屬國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의 초점으로 하여 이 문제를 다룬 〈朝鮮獨立論〉⁶⁶⁾이란 社說을 연일 게재, 조선이 독립국임을 증명해 나갔다. 이를테면, 조선이 비록 冊封을 淸朝로부터 받아 正朔을 奉하고 朝貢使를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있지만 실제로 청의 법률이 조선에 적용된 일이 없고 역시 조약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일본을 비롯한 歐美各國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⁶⁷⁾ 따라서 조공관계가 있더라도 內治・外交가 모두 自主인 이상 半獨立國이나 屬國은 아니라고 하였다.⁶⁸⁾ 결국 이 신문은 조선이 독립국이란 것이었다.

한편 民權派 신문에서도 종속관계를 주제로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自由黨 기관지 《自由新聞》은 종속관계를 부정⁶⁹⁾함은 물론, 특히 〈大陸關係〉⁷⁰⁾라는 題下

64) 이에선 조선에 대한 즉시 출병을 주장하는 논설과 이를 비판하는 논설(내정간섭반대논설)이 대립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長谷川直子, 〈壬午軍亂後の自由民權派の朝鮮論〉, 津田塾大學, 《國際關係學研究》別冊 16 (1990.3) 참조.

65) 《東京日日新聞》 1882년 9월 13일 사설 〈馬建忠ノ告論(第二)〉.

66) 위의 신문, 1882년 9월 27~30일 사설.

67) 위의 신문, 1882년 9월 27일 사설 〈朝鮮獨立論 第一〉・9월 29일 같은 사설 〈第三〉.

68) 1882년 9월 30일 위의 사설 〈第四〉.

69) 《自由新聞》 1882년 9월 2일 사설 〈淸國政府ノ舉動〉・9월 10일 사설 〈再ビ淸國政府ノ舉動ヲ議ス 第二〉.

의 社說을 통하여 아시아 東海의 一衝地로서의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하면서 만약 조선을 청국에 맡긴다면 러시아를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이 청에게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여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 歐美諸國과 通商和親條約을 체결토록하고 연합국의 힘으로써 러시아의 南下를 제어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신문은 비록 조공관계가 있더라도 속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의 확보를 列強을 포함한 方策에 의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自由黨系의 《朝野新聞》역시 청국이 비록 조선을 명의상 속방으로 보더라도 국왕이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內政・外交를 처리하고 있는 이상, 조선이 독립국임은 일본을 비롯한 歐美諸國이 승인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하였다.⁷¹⁾ 따라서 청국의 개입은 朝・清 간의 일이므로 불문에 붙이고, ‘一步를 양보하여 영원한 평화를 보증할 계획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선에 있어서 그 영원한 평화를 보증할 계획이란 곧 중립화를 示唆하는 외에는 다른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신문 가운데서 조선문제에 대한 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 준 신문은 立憲改進黨의 기관지인 《郵便報知新聞》이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청・일 양국은 ‘東洋諸國과 러시아와의 爭野’에 있는 조선을 보호하는 일을 ‘東洋之大計’로 삼아 양국 간에 있어서의 조선의 위치 - 청국의 屬藩인가 獨立된 一國인가 - 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⁷²⁾

따라서 이 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具體策으로서, 조선이 유럽의 大國 사이에서 자주독립을 保持하고 있는 스위스・벨기에와 같은 지위를 가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독립 자주의 실력을 갖는데 있어서 名義上 貢國 또는 屬邦으로 칭하더라도 朝・清・日 3국 관계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⁷³⁾ 말하자면 조선이 所屬의 虛稱이 있으면서도 內治・外交의 自主權을 갖고 있기 때문에 萬國

70) 위의 신문, 1882년 9월 13일 사설.

71) 《朝野新聞》1882년 9월 7일 사설 〈支那ニ對スル政略如何(前號ノ續)〉.

72) 《郵便報知新聞》1882년 9월 13일 사설 〈日清兩國ハ向後如何ニ朝鮮ヲ處置スベキカ 第一〉.

73) 1882년 9월 19일 위의 사설 〈第六〉

公法을 근거로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74) 또한 이를 위한 方策으로서 조선과 淸 및 英·美·獨·佛에 의한 列國會議을 東京에서 개최하여 조선의 ‘虛名所屬 實勢獨立’의 위치를 확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75)

역시 立憲改進黨系 신문인 《東京橫濱毎日新聞》도 차제에 조·청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案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베를린 회의’(1878)에서 불가리아가 터키의 朝貢國이면서도 內治·外交는 自主權을 가질 것을 명확히 한 것처럼 淸·英·美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조선도 불가리아와 같은 권리를 가질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6) 이것은 베를린 조약이 불가리아를 술탄(Sultan)의 主權 하에서 자치권을 가지며 貢金의 義務를 진 公國으로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착안한 것이었다. 77) 따라서 同紙 역시 열국과의 협의에 의해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이 확정되어야 함을 주장한 셈이다.

이상에서 본 언론계의 論旨을 요약하면, 《東京日日新聞》·《自由新聞》·《朝野新聞》 등의 論旨은 조선이 내치·외교가 자주인 이상 만국공법상 자주독립국의 조건이 되므로 열국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郵便報知新聞》·《東京橫濱毎日新聞》 등의 논지는 淸·韓宗屬關係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列國의 힘으로 조선의 내치·외교상의 실질적인 자주독립을 확보하려는 보다 현실적인 것인 바, 이러한 論旨들은 中立化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前述한 政界의 중립화론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論旨은 어느 것이든 中立化對象國家의 自衛力 確保와 國民情緒 같은 기본적 성립요건을 외면함으로써 결국 청·한 종속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또 다른 包裝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할 뿐이었다.

74) 1882년 9월 14일 위의 사설 〈第二〉.

75) 1882년 9월 20일 위의 사설 〈第七〉.

76) 《東京橫濱毎日新聞》 1882년 9월 10일 사설 〈日韓及ビ淸國ノ關係ヲ論ズ 第二〉·9월 17일 같은 사설 〈第五〉

77) 今井淳子, 〈1878年 ブルガリア公國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津田塾大學, 《國際關係學研究》 11 (1985.3) p.51.

3) 井上馨・竹添進一郎의 言及

지금까지는 일본의 政界와 언론계에서 일고 있던 한국중립화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정작 외교 현장의 실무자들인 일본외교관들의 견해는 어떠하였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데는, 일선 외교관들의 개별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한국중립화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던가하는 단순한 호기심 외에도 그들의 關心如何는 곧 既述한 諸 論議의 반영정도를 가늠해 보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당시의 외교관들 가운데 특히 對朝鮮政策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외교 총수인 외무경 井上馨과 외교 일선의 최첨병인 주조선일본공사 竹添進一郎의 這間의 외교행각을 통하여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원래 井上馨 일본 외무경의 對 朝鮮政策은 '江華島條約'에 입각하여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표방,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면서 적극적인 조선진출을 기도하는 이른바 積極政策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壬午軍亂의 발발로 한반도에서의 청·일 간의 우위 다툼에서 상황이 반전됨에 따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외무경 井上馨은 對朝鮮政策 三個案을 太政大臣 三條實美(1837~1891)에게 제출하여 伊藤을 비롯한 정부 원로들의 高見을 구했다.⁷⁸⁾ 제 1 안은 관계 열강과 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시킬 것, 제 2 안은 청·한 종속문제에 관해서 청국과 직접 교섭할 것, 제 3 안은 朝鮮의 革新派에게 원조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獨立의 實을 올리게 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은 紛紛했다. 岩倉具視는 제 2 안이 청·일 간의 정면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대신 제 1 안과 3 안을 채용해야 하는 바, 이 또한 급격한 수단을 취하면 청·일 간의 마찰을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문화적 방면부터 서서히 지도 원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이러한 견해는 흔히들 消極論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伊藤博文은 “조선의 독립은 긴급의 필요가 있으므로 그 희망에 따

78) 平塚篤 校訂,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朝鮮交渉資料》上, (秘書類纂刊行會, 1936) pp. 251~254; 田保橋潔, 앞의 책, 上, pp. 903~904.

79) 《岩倉公實記》下, pp. 907~908; 徐仲錫, 앞의 논문, pp. 286~287.

라 보조를 주고 同國으로 하여금 公然 독립을 선언케 할 것이며 前에 同國王으로부터 발표된, 조선이 청의 藩屬이라는 聲明의 照會를 철회해야 한다”⁸⁰⁾고 말하여 이른바 積極論을 폈다.

이와 같은 兩 論에 대해 長考를 거듭한 井上馨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테면 일본의 원조로 독립을 완수하고자 하는 조선 측의 請願은 要人數名의 주장일 뿐 廟議는 아니며 전통적인 청·한 종속관계 역시 상존하므로 지금 조선을 독려하여 자주독립을 성명토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정부가 굳이 조선의 독립자주를 완수시키려면 그 內治·外交에 간섭하고 지도자적 지위에서 청·한 종속관계를 폐기시킬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바, 이럴 경우 틀림 없이 청·일 간의 정면 충돌을 초래하여 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 할 터인즉 과연 이렇게 까지 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촉진시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정부도 此際에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朝·美修好通商條約을 비준하려고 하므로 (일본은) 조선정부를 適宜指導하여 각 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토록 하고 徐徐히 獨立의 實을 올리게 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였다.⁸¹⁾ 井上馨의 이러한 결론은 그가 문의한 3개안 중 제 1 안을 채택한 것으로서 이는 1882년 10월을 기점으로 하여 壬午軍亂 이전의 적극정책을 버리고 소극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그의 대 조선 소극정책은 淸에 대한 상대적 열세라는 현실을 인정, 청·한종속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조선으로 하여금 자주독립의 지위에 오르도록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는 二重的인 것으로서 지극히 모순된 책략에 불과하였다.⁸²⁾

井上馨은 그의 이러한 대 조선정책 수행에 있어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구체

80)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上, p.251.

81) 위의 책, pp.251~254.

82) 井上馨이 뒷날 조선공사시절(1894.10~1895.4)에 취했던 대조선 소극정책과 적극정책의 의미는 이와 다르다. 이 때의 소극정책은 反日세력(동학농민군·대원군 계열 등)의 탄압책이었고 적극정책은 보호국화 실현이었다. 柳永益, 〈淸日戰爭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井上馨公使의 朝鮮保護國化 企圖를 中心으로-〉《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p.142~170.

적인 방안으로서 조선의 중립화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은 東京駐在獨逸外交官인 체드비드(Chedwid)가 自國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Schönhausen :1815~1898) 재상에게 1882년 11월 24일 자로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 내용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곳 프랑스 공사 트리쿠(Tricou) 씨가 최근 본인에게 전달해 온 바에 의하면, 일본 외무경은 그에게 청국 측이 주장하는 대 조선중주권에 관하여 문의함과 함께 유럽 열강들이 조선의 중립화를 보장할 의향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또한 井上氏는 이 기회에 '동아시아의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 관하여도 언급했는데 프랑스 공사로부터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회피적인 답변을 받았나 봅니다.⁸³⁾

이로보아 井上馨이 임오군란 직후부터 그의 대조선 소극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조선의 중립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井上馨의 이러한 모순되고 이중적인 대 조선정책에 따라 이를 집행할 외교 당사자는 외교적인 동시에 정치적 수완을 겸유한 인물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中國通이 우선이었다. 이에 井上은 外務大書記官인 竹添進一郎을 적임자로 생각하여 駐朝鮮日本辦理公使로 임명하였다. 竹添은 北洋要人 間에 知己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종전부터 청국 관헌과의 교섭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⁸⁴⁾

1883년 1월에 着任한 竹添은 조선정부의 뮐렌도르프와 在朝鮮清國官憲 吳長慶 제독 및 그 幕僚들과 교유하면서 일본의 희망대로 懸案들을 처리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그 역시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중립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1884년에 발발한 淸·佛戰爭과 그로인한 淸廷內의 일시적 권력 변동으로 對朝鮮內政干涉에 위력을 떨치던 청이 국제적으로 위축되는 듯하자 조선에서는 '일본 신뢰의 기색'⁸⁵⁾이 보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기회로 대조선외교정책의 수정을

83) Akten des Auswärtigen Amtes.A.7168 Pr. 獨逸外務省文書, 1882년 12월 1일; 崔鍾庫, 〈舊韓末의 韓獨關係-政治的·文化的 側面-〉, 韓國史研究協議會 編, 《韓獨修交 100年史》(正和印刷文化社, 1984) pp.93~94.

84) 田保橋潔, 앞의 책, 上, p.907.

85) 대원군의 귀국설로 왕실과 척족이 불안에 떨던 중 그해 4월 28일 高宗은 島村久 대리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⁸⁶⁾ 이 무렵 竹添은 1883년 12월부터의 賜暇歸國을 끝내고 근 1년만인 1884년 10월 30일자로 조선에 재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 도중에 “나는 조선을 장차 一永久局外中立國으로 할 것이다. 조선으로 하여금 스위스·벨기에와 같은 一永久局外中立國으로 하려는 것은 井上 외무경이 항상 희망하는 바였다.”⁸⁷⁾라고 하였다.

그는 11월 2일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도 淸·佛戰爭의 大要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선의 국외중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설득하였다.

今日까지는 淸·佛 兩國 共히 아직 公然한 開戰을 하지 않기 때문에 他國에 있어서는 우선 무관계하지만 만일 사태가 더욱 절박하게 되면 반드시 公然하게 開戰의 宣告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近隣인 貴國과 我國에 있어서는 실로 容易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 때에 이르러서 프랑스에 左袒하면 淸國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고 淸國에 偏袒하면 프랑스에 抗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西洋諸國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偏頗하지 않고 국외중립을 지키는 것인데 이 외에는 自國의 安寧을 보전할 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一方國에 偏好하게 될 때에는 他方國으로부터 강력한 敵對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리 熟慮하여 用意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⁸⁸⁾

이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국왕은 “모조록 淸·佛의 和好가 절실히 희망되는 바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국외중립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된다.”⁸⁹⁾고 하여 거부 의사를 내 비친 다음 重臣들의 견해를 물었는데 開化獨立派의 金玉均·洪英植(1855~1884)·徐光範(1859~?) 등은 淸國과의 관계를 끊고 자

공사를 불러 明治維新 이래 일본의 진보개혁을 찬양하면서 韓·日 양국의 국교가 날로 敦厚를 더해감을 기뻐한다는 뜻을 말하고 “장래 양국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이를 보조하여 쉽게 終局될 것을 깊이 믿는 바이다. 더욱 의외할 것도 있을 것”이라 한 다음 이 취지를 일본정부와 日王에게 轉奏할 것을 외뢰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지 않자 島村의 의견에 따라 일본에 공사관을 설치하여 親密親書를 전달하는 방안을 廟議에 붙이기도 했다. 田保橋潔, 앞의 책, 上, pp.921~922.

86) 金景昌, 앞의 책, pp.304~305.

87) 井上角五郎, 〈漢城之殘夢〉한상일 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p.44.

88)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上, p.260.

89) 위의 책.

주독립의 實을 올릴 것을 주장하였고 閔泳翊(1860~1914)·閔台鎬(1834~1884)·韓圭稷(?~1884) 등 事大派는 조선은 중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 청국에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⁹⁰⁾

이와같이 당시 조선의 朝野에서는 일부 개화파를 제외하고는 청국과 프랑스 양국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선은 도저히 중립을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차라리 청국에 복종하여 청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다.⁹¹⁾

한편 井上馨은 1884년 12월 4일 甲申政變이 일어나자 조선정부와 善後條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日本特命全權으로서 來韓하였다. 그 때 그는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내세워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조선을 중립화할 의사를 내 비쳤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주조선독일부영사인 부들러(Hermann Budler, 卜德樂: 1846~1893)가 井上을 방문, 조선의 영세중립화를 제의하여 동의할 때 井上은 이에 동의했으며⁹²⁾ 井上 자신이 天津駐在 波多野承五郎 영사에게 보낸 文句에도 “조선을 중립국으로 할 것 같으면 그를 위해서나 아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好策이라고 생각하지만”⁹³⁾이라고 표현하였다. 뿐만아니라 李鴻章에게 書簡文으로 送付된 부들러의 中立論 가운데서도 “日使 井上이 前 在朝鮮하여 亦 以此法으로 爲妙라 하였으니 想必 일본도 자못 請願하는 바이라. 今日에 特派大使하여 前 赴淸國하니 或은 조속히 此法을 제의하는 지도 알 수 없다.”⁹⁴⁾라고 했는데 이는 井上의 中立化 同意가 곧 일본의 공식 입장화하여 그것이 청·일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뜻이다. 역시 같은 글에서 井上은 한국중립화에 관하여 수차례나 ‘然하다’ ‘頗善’ ‘日本の 所願’ ‘甚好’ 등으로 찬성하였으며 有事時를 假想하여 조선은 마땅히 戰時局外中立이어야 할 것을 예를 들어 강

90) 申基碩, 〈安全保障과 韓末政局〉 《國際法學論叢》 11-1 (1966) pp.289~290.

91) 井上角五郎, 앞의 책, p.43.

92) 《日本外交文書》 18, No.202 附記, pp.357~369.

93) 위의 책, No.18, 機密 41호 〈朝鮮問題ハ慎重ニ言議アリタキ旨回答ノ件〉, p.390, 1885년 18년 9월 15일.

94)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15: 德案 I, (高麗大學校出版部, 1966) No.95, pp.49~50.

조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중립화가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對朝鮮外交의 先鋒에서 활약하였던 井上馨 외무경과 竹添進一郎 주조선변리공사 등이 직접 간접으로 조선을 중립화하기 위한 그들의 의사를 여러번 闡明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井上馨을 필두로 한 일본 외교팀의 한반도중립화 언급은 임오군란 이후 한반도에서의 그들의 淸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데 대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이른바 대조선 소극정책의 표현이었던 만큼 어디까지나 自國의 戰列整備를 위한 시간확보 전략 내지는 침략세력 상호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限時的인 구호였을 뿐, 실질적 독립을 인정하려는 중립화 구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침략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3. 歐美人이提起한 韓半島中立化論

이 당시 일본인 외에도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중립화문제를 거론한 외국인은 더러 있었다. 비록 그들의 중립화 구상이 自國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주로 국제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던 외교관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判斷의 的確性이란 측면에서 주목할만 하다.

1) 보아쑈나드의 案

프랑스는 조선정부의 프랑스 신부 살해 등 천주교 박해사건 때문에 일찍이 江華島를 침략하여 丙寅洋擾(1866)를 일으킨 일이 있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원래부터 베트남과 마다가스카르 식민지 경영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조선진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再論하자면, 조선에서 취할 이익이 별로 없어 天主教 傳敎問題만 논의하였던 관계로 歐美 各國에 비해 ‘朝・佛修好通商條約’締結(1886.5)도 그만큼 늦었던 것이며 1895년 이후의 새로운 상황 - 열강의 對韓利權爭奪과 조선의

일시적 親佛性向 - 이 있기까지는 對韓外交의 消極性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1880년대에 프랑스 인의 조선진출은 天主教 傳敎者들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보아쏘나드는 프랑스의 法學者로서 1873년에 渡日하여 봉건적인 법관념을 타파하는 자연법학설을 일본에 이식하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拷問制度廢止, 治罪法(형사소송법)·刑法의 제정, 民法草案의 起草 등 法典整備를 도맡았으며 일본의 臺灣出兵에 따른 大久保利通의 清國行에 수행하였는가 하면, 조선의 壬午軍亂 때는 일본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면에서도 공헌하였다. 또한 그는 井上 외무경의 外國人 司法官 任用案에는 정부의 법률고문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일본의 조약개정에 유익한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和佛法律學校·明治法律學校 등에서 法學教育에 盡力했다. 이와같은 공로로 1895년에 귀국할 때 일본정부로부터 勳一等瑞寶章과 年金 2千圓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日本國家의 諮問役으로 활약하는 동안 그는 前述한 바의 朝·清·日 3국동맹론 주장 뿐만 아니라 뒤이어 한국중립화론도 제기하였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井上毅가 伊藤博文에게 보낸 書簡을 비롯한 몇몇 史料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아쏘나드는 井上毅가 〈朝鮮政略〉을 저술한 5일 후, 〈永久中立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놓았다.⁹⁵⁾ 거기서 그는 벨기에·스위스·룩셈부르크가 영구중립국으로 된 것은 각 국의 협의에 의한 것이며 한번 중립국으로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가한 一國이 異意를 주장해도 회의가 해산하지 않는 한 결의가 효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참한 一國이 異意를 주장해도 결의를 번복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95) 平塚篤 校訂,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外交篇》上, (秘書類纂刊行會, 1934) pp.618~620.

이 문서 자체에는 의견서라는 기록이 없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별도 문서에 '영구중립에 관한 의견서가운데 미심쩍은 점에 붙이는 응답' (같은책, p.620)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하여 보아쏘나드가 무언가의 의견을 구하려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48의 주57).

이와같이 중립국 일반론을 밝힌 다음 10월 29일에 다시 〈恒守局外中立新論〉⁹⁶⁾을 집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외중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의 設問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의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조선이 청구하지도 승낙하지도 않는데 국외 중립을 宣告해야 할 것인가? 만약 선고한다면 어떤 국가에 의해서 선고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의 질문으로, 조선이 국외중립을 원할 경우 어떤 국가를 향하여 청구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 그 결과는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첫 번째의 답으로서, 조선이 국외중립을 원하지 않아도 선고될 수 있으며 선고할 수 있는 국가는 조선에 가장 이익이 걸려 있는 청국과 러시아라고 하였다. 이럴 경우 조선은 이러한 선고에 구속되지 않지만 이것을 立定한 公會와 조약을 조인한 諸 大邦은 구속받으며, 諸 大邦가운데서 어느 一國이 조선을 침략할 경우에는 다른 諸 大邦이 이 나라에 대하여 征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선이 만약 어느 一國과 攻守同盟을 체결한다면 其他 大邦은 구속을 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번의 답으로, 조선이 스스로 국외중립을 인정하고 保證을 請願할 경우, 그 청원의 대상은 타국이 조선에 대하여 불공정한 조치를 취함을 두려워하는 大邦들이므로 마땅히 청·러시아·일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중립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을 침략한다면 조선이 국외중립을 고수하는 한 關聯 他邦은 러시아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응징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을 감안할 때 비록 조선에 커다란 이익을 갖지 않아 국외중립에의 관여를 꺼릴 歐美 諸 大國이라 할 지라도 조선은 그들을 公會에 임하도록 하여 그들의 보증을 얻어 내는 것이 最良의 對策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보아쏘나드는 특히 러시아를 警戒하여, 청·러·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가들의 인정에 따라 조선이 영세중립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중립화의 모형으로는 스위스·벨기에·세르비아·룩셈부르크의 4개국을 들고, 이들 국가가 중립국으로 된 것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96)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 pp.223~229.

그 隣國이 他國에는 손해가 될 절대적인 利益을 그 나라에서 발견함으로써 그 나라에 가하게될지도 모를 併呑을 豫防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⁹⁷⁾

2) 뮐렌도르프의 案

전술한 바와 같이 東京駐在 獨逸外交官인 체드비드가 1882년 11월 24일자로 본국의 비스마르크 재상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독일은 이미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사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日本外相의 中立國 云云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하면 조선을 중립화 함이 좋을 것으로 관측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⁹⁸⁾ 뿐만아니라 1885년의 天津條約 체결 직후에 주청독일공사 브란트(Max Von Brandt:1835~?)는 청·일 양국의 同時撤兵이 초래하게 될 제 3국(러시아)의 간섭을 우려하여 淸·日 共同保護論을 주장한 일이 있다.⁹⁹⁾ 그러나 獨逸帝國의 1880년대의 식민정책은 비스마르크의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조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분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¹⁰⁰⁾

이와는 달리 독일 외교관으로서 당시 조선에 건너와 활동을 하고 있던 뮐렌도르프나 부들러의 경우를 보면 조선의 중립화를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구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뮐렌도르프는 조선정부가 채용한 외교 고문(外衙門 協辦)이고 부들러는 독일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부영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뮐렌도르프의 한국중립화 구상은 일반적으로 부들러의 것 만큼 그렇게 알려져

97) 위의 책, pp.223~224.

보아쑤나드는 세르비아가 1856년 파리조약으로 중립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치권을 확인받았을 뿐이다. 그는 터키·세르비아의 관계를 청과 조선의 관계로 비교하여 종속국의 자치권이 열강에 의해 확인된 데 주목, 이렇게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49의 주 59)

98) 주 83) 참조.

99) 《日本外交文書》18, No.169, 5월 6일 淸國駐劄榎本公使ヨリ井上外務卿宛〈朝鮮ヲ日淸合同保護ノ件〉.

100) 崔鍾庫, 앞의 논문, p.94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 實在가 여러 문헌에서 散見되는 것으로 보아 부들러 못지 않게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가 구상한 한국중립화의 대강을 알려주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들러는 1885년 1월 14일 발로 본국정부에 이렇게 보고하였다.

뮐렌도르프는 강대국들 특히 청국·일본·러시아가 보장하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벨기에가 강대국의 보장으로 중립화된 것과 같이 조선을 중립화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일본 외무경의 意中에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있을 청국과 일본의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¹⁾

또한 後述하는 바와 같이 부들러 자신이 1885년 2월 7일에 그의 중립론을 자세하게 제시할 때 “이 뜻은 穆麟德(뮐렌도르프)에게 알려 분명한 논설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¹⁰²⁾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구상이 뮐렌도르프와 연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1885년 2월 18일자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가 北京發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조선에 머물고 있는 뮐렌도르프가 강대국들이 벨기에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일본·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음이 아마도 다른 경로로 殿下께 이미 보고되었을 것입니다.”¹⁰³⁾라고 하고 있다. 또한 주조선독일총영사인 켄부쉬(Otto Zempsch :1841~1911)가 1885년 6월 29일 서울발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도 조선의 무독판 金允植(1835~1922)이 동년 5월 20일 자신을 찾아와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 가운데 뮐렌도르프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101)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cta betreffend Korea(이하 Pol. Arch.A.A., Korea로 약칭) I, Bd.4 A 1559 pr.9.März 1885(Söul, den 14. Januar 1885); 김우현, 앞의 논문, p.63. 부록 4.

102) 《舊韓國外交文書》15: 德案 I, No.95, p.49.

103) Pol.Arch.A.A., Korea I, Bd.4, A3016, 21.April 1885(Peking, den 18. Februar 1885); 김우현, 앞의 논문, p.50의 주17).

강대한 이웃과 우방의 공격에 대항하여 단독으로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국가의 상황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는 유럽에서 벨기에의 위치를 알고 조선도 그와 비슷한 안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뮐렌도르프 씨는 앞서 여러차례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선의 중립화에 대한 생각을 제기했습니다.¹⁰⁴⁾

이처럼 여러문헌에서 뮐렌도르프가 조선을 러시아·청·일본의 공동보장 하에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그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곧 ‘構想의 始末’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뮐렌도르프 文書》¹⁰⁵⁾에 의하면, 그가 한국중립화를 제의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곧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정치세력이 너무나 강대하여 조선으로서는 사실상 독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일 이외의 제 3국을 끌어들여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良策이란 것이다.¹⁰⁶⁾

그렇다면 그 대상국으로서 어느나라가 적당할까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서 그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 간의 力學關係를 고려하여 관계 列國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다음 결론을 얻고 있다.

미국은 거리가 너무 멀고 군사력도 충분치 못하며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로의 팽창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청과 적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1885년에는 淸·佛戰爭까지 유발하였다. 독일은 국제정치에서 아직도 이렇다 할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영국은 서남아시아 문제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는 반면 일본과는 본래부터 동맹국이다. 이들 국가에 비해 러시아는 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의 국경이 태평양까지 뻗은 이래로 일본과는 스스로 적대관계에 서서 자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이 자주국이 되어 하나의 緩衝國으로서 존재해 주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⁷⁾

104) Pol.Arch.A.A., Korea 2, Bd.2 A6926 pr.24.August 1885 p.m.(Söul,den 29.Juni 1885);김우현, 위의 논문, pp.76~77, 부록 12.

105) 1930년에 라이프찌히에서 첫 출판된 이 문서는 흔히 ‘뮐렌도르프自傳’으로 불려지지만 사실은 그가 조선에 재직하던 당시에 남긴 일기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대본으로하여 그와 꼭 같은 체험을 나눈 아내 로잘리(Rosalie von Moellendorff)가 회상의 형식으로 쓴 傳記이다. 뮐렌도르프夫婦 지음, 申福龍·金雲卿 옮김, 《뮐렌도르프文書》(서울:평민사, 1987) p.1.

106) 위의 문서, pp.67, 85.

즉 淸·日 양국의 角逐戰 하에서는 그 제 3국으로서 러시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이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해서 선택된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단독 보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청·일과의 공동보호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러시아의 단독보호를 택하게 되면 조선이 러시아를 우대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므로 이는 조선을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엄격한 '中立狀態'에서 모든 국가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은 열강과의 조약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바, 그 결과로 열국의 외교사절이 조선에 계속 체류한다면 청·일 간의 충돌 속에서도 內政上의 安堵를 취할 수 있게된다.¹⁰⁷⁾

또한 그는 조선의 중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를 1885년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天津條約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청의 내정간섭과 일본의 무력 시위가 없어질 것이고 그만큼 조선으로서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⁰⁸⁾

그는 중립화 실현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러시아의 주도로 조선의 중립화를 실현하되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조선문제에 관여할 것인지는 러시아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조선이 案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 위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조선정부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고문인 자신으로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韓半島中立化規程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첫째, 조선의 중립 및 不可侵에 대하여 청과 일본이 공동으로 보장하고 對

107) 위의 문서, pp.67~68.

108) 위의 문서, p.68.

109) 김우현, 앞의 논문, p.50.

淸・對日에 관한 상호 보장관계의 유지, 둘째, 군사적 방위관계, 셋째, 조선영토 불가침에 대한 일반적 관계의 보장 등이었다.¹¹⁰⁾ 여기서 특히 '군사적 방위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러시아의 장교·하사관을 초빙하여 군대를 훈련하고 러시아의 힘으로 청의 간섭과 일본의 야심을 막아야 한다는 자신의 持論을 함축한 것이었다.¹¹¹⁾ 따라서 그의 중립론은 조선의 자위력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비교적 발전된 중립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뮐렌도르프는 이와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引俄拒淸策을 펴면서 조선독립의 實을 올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비록 설득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히 그것이 정식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지, 더욱이 한반도에 처음 진출하여 기반 확보에 여념이 없었던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을 지가 의문이다.¹¹²⁾ 거기다가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에 의한 巨文島 事件 이후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질 뿐만 아니라¹¹³⁾ 그 자신마저 조선과 러시아 간의 密約說의 책임을 지고 1885년 7월 27일 외교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가 구상했던 벨기에 형의 한국중립화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霧散되었다.¹¹⁴⁾

3) 부들리의 案

뮐렌도르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부들리는 한국중립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長文으로된 제안을 내어 놓아 유명하였다. 부들리는 1884년 4월 20일 자로 독일정부로부터 조선으로 발령을 받아 6월 24일부터 濟物浦 주재 부영사로서 활동을 개시하던 중 그 해 10월 14일 쟈부쉬가 서울주재 총영사로 부임함에 따라 서울영사관으로 옮겨 근무하였다. 그는 1년 남짓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1886년 1월 27일자로 스와토(Swatow)주재 부영사로 전임되었는데 그때까지

110) 《뮐렌도르프 文書》, p.85.

111) 위의 문서, p.86.

112) 김우현, 앞의 논문, p.50.

113) *Pol.Arch.A.A., Korea 1*, Bd.6 A8061 pr.22. September 1885 p.m.

114) 《뮐렌도르프 文書》, pp.88~90.

독일외교의 창구역할을 맡았었다.¹¹⁵⁾

부임 초부터 주조선외교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는 功名心이 강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독일의 利權을 얻기 위해 濟物浦에 설립된 世昌洋行(Edward Meyer Co.)의 조선책임자인 世稱 ‘濟物浦의 王’(König von Chemulpo)인 독일인 볼터(Carl Wolter)를 앞장 세워 광산개발·무역 등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甲申政變으로 조선이 혼란에 빠지고 조선문제로 인한 청·일 간의 각축전이 첨예화하는 상황에 이르자 한반도에서의 독일의 우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¹¹⁶⁾ 갑신정변의 사후 수습차 來韓한 井上馨 일본 외무경을 수차례 방문, 조선을 영세중립국화 하려는 제의를 하여 그 동의를 얻어내기도 하였다.¹¹⁷⁾

이어서 그는 1885년 2월 7일 金允植 외무독판에게 <清·日 交戰에 朝鮮이 中立傍觀하기를 勸告하는 意見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내외에 큰 호응을 얻었다.

살피건대 유럽에서는 2, 3개 小國이 있어 각 大國이 서로 조약을 맺어 보호하되 영원히 서로 평안 무사하니 小國으로서는 利得이 많았습니다. … 이를테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1870년의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 8만이 패하여 프랑스 변경에 있는 스위스(蘇斯國)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일개 소국으로 이미 문서를 갖추어 조약을 마련해 두고 각 국과 서로 조약을 맺는 가운데 만약 다른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는 토지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명백히 記載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가 프랑스 군대를 공격함에 길을 빌어 이 나라에서 힘을 쏟는 것이 비교적 가깝고 편하나 끝내 멀리 돌아 전진한 것은 각 국이 서로 조약 맺은 것을 위배할 수 없어서였습니다.¹¹⁸⁾

이와같이 부들러는 약소국이 중립화함으로써 당사국의 안전보장은 물론 그 受惠가 실로 큼을 말하고 그 역사상의 예로서 1870년 獨·佛戰爭 당시의 스위스를

115) 崔鍾庫, 앞의 논문, pp.84~85.

116) 洪淳鎬, 《韓國國際關係史理論》-時代狀況의 力學構造-, (서울:大旺社, 1993) pp.351~352.

117) 《日本外交文書》18, No.202 附記, pp.357~369.

118) 주 109).

떠올렸던 것이다.

또한 그는 “조선은 청국의 뒷 뜰이요 또 러시아와 일본의 변방과 나란히 연결되어 세력이 서로 만만하지 않으니 전쟁이 있게 된다면 천만인이 조선에 주둔한다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조선이 처한 地政學的인 여건을 들어 중립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가 말씀드리면, 西洋의 例에 비추어 成法하고 淸·러시아·일본이 相互立約하여 조선을 영원히 보호하며 설혹 어느 날 他國의 攻伐이 있더라도 조선에서 길을 빌 수 없게 하고, 조선은 날마다 수천병력을 파견하여 해안과 국경을 방비하고 나라 안을 순찰하며, 영원히 和約한 국가와 通商한다면...¹¹⁹⁾

여기서 청·러시아·일본 보장 하의 영세중립국, 국가자위력 확보, 列國과의 修好通商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前述한 뮐렌도르프의 중립화 요건과 일치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하면 “조선으로서는 영구한 보호와 두터운 이익이 될 것이고, 청국으로서는 그릇된 염려를 면할 수 있어 쌍방이 손해될 것이 없으니 좋지 않겠습니까”¹²⁰⁾라고 하여 그 期待效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정부와 주조선외교사절에게도 외교문서를 발송하여 조선에 대하여 청·러시아·일본 3국이 중립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¹⁾

그의 한국중립화제안은 이처럼 논리 정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뮐렌도르프의 벨기에 형보다 진일보한 스위스 형의 것이었다.¹²²⁾ 뮐렌도르프가 引俄拒淸의 방편

119) 위의 문서.

120) 위의 문서.

121) 洪淳鎬, 앞의 책, pp.351~352.

122) 벨기에는 오랜 기간 주변 강국에 번갈아 병합되다가 네덜란드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위한 1830년 7월 폭동을 계기로 주변 강국이 개입, 드디어 1839년 5월의 런던조약에 따라 영국·러시아·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 5대 강국이 공동보장하는 영세중립국으로 되었다. William E. Lingelbach, "Belgian Neutrality: Its Origin and Interpret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October, 1933) pp.48~50.

반면에 스위스는 17~18세기에 이미 자체 중립화 조치를 완결한 다음 나폴레옹전쟁(1798~1815) 戰後處理를 위한 비엔나 회의(1815.1)를 통하여 스위스 중립화를 위

으로 러시아 主導의 러·淸·日 保障下의 中立論을 구상했다면 부들러는 당시의 급박한 동아시아 정세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통찰한 다음 淸·러·日의 共同保障 下에 한국중립화를 구상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시기적으로 조선 문제로 인한 天津에서의 李鴻章·伊藤博文 會談 개시 직전에 조선외무독판 金允植을 통하여 조선정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청이 까닭 없이 군대를 증강하여 이웃나라의 의심을 질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일본 역시 평화유지를 위주로 하여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金允植으로 하여금 원본을 반환케 하였다.¹²³⁾ 그 후 그 사본이 다시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송부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역시 거부됨으로써 결국 하나의 이론 제시로 끝난 셈이었다.¹²⁴⁾

4) 오코너·로즈베리의 案

1880년대 초반의 英國은 對朝鮮政策에 관한 한 前例 없이 청국과 호흡을 같이 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의 南進政策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은 日·美·獨과는 달리 청국의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기 위한 助言을 아끼지 않았다.¹²⁵⁾

한 5개국 위원회(위의 5대강국)의 구성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8개국(5개국 외에 스웨덴, 스웨덴, 포르투갈 포함)에 의한 중립보장선언(1815.3), 역시 8개국에 의한 파리조약(1815.11) 등의 절차를 거쳐 그들의 영세중립화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Bonjour, Edgar, *Swiss Neutrality: Its History and Meaning*, translated by Mary Hotinger(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46) pp.54~63; William.E.Rappad,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NewYork, London and Toronto: D.Van Nostrand Company Inc., 1936) pp.132~133; 高山岩男, 《國際的 中立の研究》(東京:原書房, 1980) pp.166~168.

따라서 벨기에의 중립화가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이 아닌 외부세력들 간의 국제공약 위주로 성립된 타율적인 비무장중립인데 비해, 스위스의 중립화는 자율적인 무장중립을 외부세력들이 공인한 경우이다.

123) 《舊韓國外交文書》15: 德案 1, No.99, p.51.

124) 李鴻章은 공식적으로는 부들러가 일본과 손 잡을 위협이 있고 또한 조선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에 반대하였다.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8, No.369-附件 1, p.2 光緒 11년 3월 1일

125) 영국이 淸의 對韓宗主權을 인정하는 태도는 이 때 뿐만 아니라 1894년의 청·일전쟁

그러나 1880년대 중반에 들어와 朝·러 修交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이 현저해지자 영국은 淸의 對朝鮮掌握力에 懷疑를 느낀 나머지, 朝·淸 間에 존재하던 기존의 종속관계에 상관 없이 조선의 영토적 보존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내 비쳤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외교관들은 이 당시 조선의 중립화보다는 共同保護論을 먼저 제기하였다. 갑신정변의 사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일 간의 天津會談이 개시되기 전인 1885년 2월, 주청영국공사 오코너(Nicholas-Roderick O'Connor)는 한반도에로의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공동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조선이 自主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청·일 양국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자주 質을 나타낸 후가 아니면 도저히 스위스·벨기에와 같은 영세중립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¹²⁶⁾ 이와같은 견해는 청·일 양국이 同時撤兵하면 반드시 러시아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코너의 先保護 後中立論은 뜻을 같이하는 주청일본공사 榎本武揚을 통하여 井上馨 외무경에게 건의되었다. 이에 井上은 동년 2월 8일자로 “조선국에는 유력한 族門이 많아서 각 각 정권을 잡으려고 하나 그들 자신은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청국 또는 일본국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공동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不和의 씨를 뿌리게 할 것이며, 조선국에 대한 청·일 양국의 政略의 目的과 傾向이 역시 서로 정반대인데 (이를테면) 일본은

때까지 일관되었던 바, 임오군란 발발 후 청국이 조선파병을 위하여 영국의 의사를 타진했을 때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Sir Thomas F. Wade)는 강경진압을 위한 군대 파병을 권고 하였다. F.C.Jones, op.cit., pp.331~332, 또한 조선이 自主를 얻고 세계에 독립국임을 알리기 위하여 朴定陽을 특명전권공사로 미국에 파견하려 했을 때 도 조선주재 영국 총영사서리인 베버(E. Colborne Baber)는 조선 정부의 조치가 淸의 國益에 有害하다고 생각하여 “만일 청국이 이에 나태하면 조선은 또 다른 安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장팅푸, 앞의 책, pp.132~133, 뿐만아니라 非政府要員인 淸國稅關 總稅務司 하아트(Robert Hart)는 기회있을 때마다 청국이 조선을 통합 또는 병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H.B.Morse, op.cit., vol 3, p.16; 高柄翊, 《東亞交渉史의 研究》(서울대出版部, 1970)〈朝鮮海關과 淸國海關과의 關係의 變動〉pp.468~469.

126) 《日本外交文書》18, No.114, 169.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청국은 종주권을 保持하려고 하는 까닭에 상호협동을 통한 조선의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이 때문에 井上 자신의 의견으로서는 “조선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內地治安을 확보하기 위하여 4, 5백명을 一隊로 하는 憲兵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선과 크게 관련이 없는 영국·독일이나 미국으로부터 수명의 士官을 초빙, 이를 훈련케 하면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를 회신하였다.¹²⁷⁾ 이처럼 井上이 조선의 自衛力 向上을 優先視함으로서 淸·日共同保護論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榎本公사는 天津條約 체결 후인 5월 6일에 井上에게 그의 先自衛力 向上이 현실성이 없음을 들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① 양국 철병 후에 조선국에 내란이 일어나면 조선의 병력으로서 스스로 진압할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청·일 양국이 공동 출병하여 난을 진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② 향후 外國武辦을 고용하여 5, 6백명의 헌병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困乏한 조선의 財政이 견디지 못할뿐더러 정작 조선국이 內亂外寇에 대비하려면 결국 1만 이상의 精兵이 있어야 할 터인즉 그 비용은 도저히 自辦하지 못할 것이라 ..
-128)

그러나 井上이 朝鮮內 政派들의 의세 의존적인 성향과 조선에 대한 淸·日의 숨은 의도가 워낙 다름을 強辯하고 있고 만약 그의 先 自衛力 向上 주장이 前述한 바의 한국중립화구상으로 귀결되는 手順으로 가정한다면, 또한 청의 속방론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榎本을 통한 오코너의 先保護 後中立論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영국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의 본격적인 제의는 거문도사건 이후였다. 영국·러시아 간의 아프간 분규가 동년 10월에 이르러 양국의 충돌 없이 수습되었으나 영국은 거문도를 계속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청은 영국정부에 철수문제를 거

127) 《日本外交文書》18, No.114.

128) 《日本外交文書》18, No.169.

론하여 답판한 바 있었다. 그 때 영국 수상 솔즈버리(Robert Gascoyne -Cecil Salisbury, 1830~1903)는 李鴻章의 照會에 대하여 “청국정부가 만약 巨文島 諸島를 타국에 점령시키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다면 영국은 곧 同島를 철퇴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¹²⁹⁾

또 1886년 3월 11일에는 주영 청국공사 曾紀澤(1837~1890)이 영국정부에 “주청러시아공사는 누차 청국정부에 英兵을 거문도로부터 철퇴할 것을 촉구하고 영국이 만약 점령을 계속한다면 러시아는 조선의 어느 일부를 점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귀 정부의 意見 如何를 들을 것을 희망한다.”라고 照會했는데 이처럼 거문도 사건에 대한 영·청 간의 외교적 답판은 점차 무르익어 갔다.¹³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영국의 철수조건으로 한반도 중립화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신 외상 로오즈베리(Archibald Philip Primrose Rosebery)는 4월 중순경 전 수상 솔즈버리의 언질을 정식 조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발의를 하였다.

청국 정부가 거문도를 외국에 점령시키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다면 영국 정부는 同島占領의 一目的을 이미 달성한 것이다. 만약 청국정부가 이 책임을 질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마땅히 러시아 및 關係 諸國에 향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증하는 국제조약 체결의 조회를 할 것을 요청한다. 이 조회가 허용됨에 이르러서는 영국 정부는 물론 이에 가입하고 거문도는 조선령의 일부로 인정받는다는 默契로서 즉시 同島를 퇴거할 것이다.¹³¹⁾

영국 외상이 이와 같이 거문도 철수조건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관계 제국과 조선독립을 보증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것은 영국 외무차관 커어즌(George Nathaniel Curzon)이 記述한 바 “영국은 어느 나라든지 조선국을 침략하거나 併呑한다면 벨기에를 정복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129) 徐仲錫, 앞의 논문, p.302.

130) 渡邊勝美, 〈巨文島外交史〉《普專學會論集》1 (1935) pp.40~41.

131) 渡邊修二郎, 〈東邦關係〉, p.325; 徐仲錫, 앞의 논문, p.302.

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¹³²⁾

당시의 <런던 타임즈>가 “今日 바야흐로 日・英・淸 3국 간에 攻守連衡策을 세우려함은 李鴻章 畢世의 大望중의 하나로서 숨길 수 없는 일이다.”¹³³⁾ 라는 표현으로써 은연중 李鴻章을 내세워 日・英・淸 3국의 공동보호로 조선의 중립화를 시사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외교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영국 외교관 오코너의 先保護 後中立論, 뒤이어 나온 영국 외상 로즈베리의 中立論 등은 그것이 흡사 영국 정부에서 나온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경위야 어떻든 어느 것 하나도 조선의 독립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보호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지 러시아의 南下沮止나 자국 해군의 巨文島 撤收修件을 만들기 위한 획책에서 나온 것일 뿐이며 더 넓게는 大英帝國의 동아시아 정책의 수행상 조선에서의 均勢를 취할 필요에서 제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³⁴⁾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前述한 바와 같이 李鴻章과 주청 러시아공사 라디겐스키 간의 협약에서 러시아가 거문도를 비롯한 조선령의 어느 부분도 차지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서, 곧 러시아의 조선 영토 점령 가능성이란 (영국으로서는) 절박한 상황이 소멸됨으로써¹³⁵⁾ 원인 무효처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4. 朝鮮 朝野의 韓半島中立化論

前述한 바의 외국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론에 대하여 朝鮮 朝野의 반응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淸・佛戰爭 당시 竹添進一郎이 제기한 戰時局外中立 勸告를 국왕과 사대파들이 묵살했던 일이나 부들려의 중립론에 대하여 조선 외교당국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이유

132)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 p.176, 칼손氏 抄譯〈極東問題〉.

133) 위의 책, 上, p.688〈七月二十七日 倫敦 타임스新聞拔抄〉.

134) 徐仲錫, 앞의 논문, p.302.

135) 《舊韓國外交文書》13: 英案 1, No.396, pp.215~216; 中國近代史資料集 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民國 61년), No.1189-附件1, pp.2179~2180; 渡邊勝美, 앞의 논문, p.40.

인 즉 조선정부가 국가안전문제를 淸·韓宗屬關係에 입각하여 청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自主外交方針을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壬午軍亂 이후 심화된 청의 내정간섭에 반발, 開化派들이 자주 독립론을 주장하여 事大派의 청·한 종속론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왕실측이 갑신정변후 引俄拒淸의 경향을 띠어 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등 외교정책상의 다양한 試圖이 있긴 했지만 이것 역시 어느 일방만을 택하는 기존의 偏向된 外交路線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현실은 여전히 청·한 종속론이 우세하였고 그런만큼 중립론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태동은 아직도 시기상조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국에 의한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사정이 淸·日·러·英의 4強에 포위당하는 듯한 형국을 보이게 되자 조선의 朝野에서는 중립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 朝鮮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試圖

1885년 2월에 부들리의 중립화론을 거부하여 그 원본을 반환했던 외무독판 金允植은 동년 4월에 들어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조선을 유럽에서의 벨기에와 같이 중립화하려는 뜻을 비쳤다. 이를테면 1885년 5월 20일 金允植은 주조선독일총영사 켄부쉬를 찾아가서 거문도 점령에 대처하여 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상의하면서, ‘조선은 강한 이웃나라의 침해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弱小國이므로 뮐렌도르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바와 같이, 조선을 유럽에서의 벨기에와 같은 지위를 만들고자 한다’는 뜻을 말했다.¹³⁶⁾

이에 대해 켄부쉬는 다음날 私見임을 전제하면서 거문도 사건의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書翰을 보냈다.

대체로 이 나라(영국-인용자)가 귀국의 땅을 점령하고 저 나라(러시아-인용자)

136) Pol.Arch.A.A., Korea 2, Bd.2 A 6926 pr.24. August 1885 p.m.(Söul, den 29. Juni 1885); 김우현, 앞의 논문, pp.76~77, 부록 12.

를 방어하려 한다면 저 나라 뿐만 아니라 동맹한 각 友邦들도 각자 聲明을 내고 참작하여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領事의 의견으로는 먼저 방어하고 있는 나라에 알려주고 道義에 근거하여 변론하고 설명할 것이며, 그래도 승인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호관계를 가진 각 국 정부에 알려줌으로써 각 국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섬을 차지한 것이 귀국의 所願이 아니었을까 하는 疑心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¹³⁷⁾

곧 조선이 영국정부에 항의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들에게도 영국의 행위가 不法임을 알려서 諸 列強으로부터 妥結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助言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정부는 중립화하려는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켐부쉬가 1885년 5월 25일 본 국에 발송한 다음의 보고서에서 나타난다.

조선정부는 조선을 중립화하기를 원한다. 영국에 의한 거문도 점령사건은 조선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안을 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약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장하여 이 제안을 실현시키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¹³⁸⁾

조선의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켐부쉬가 1885년 6월 1일(양력)자로 上海를 거쳐 본국에 발송한 전보에서 또다시 “조선이 중립화를 원한다.”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된다.¹³⁹⁾

137) 《高宗實錄》 고종 22년 4월 8일; 《舊韓國外交文書》 15: 德案 I, pp.58~60, 고종 22년 4월 8일; 吳汝綸 編, 《李文忠公(鴻章)全集》, 譯署函稿(臺北:文海出版社, 1965) (이하 《李譯》으로 약칭) 권17 〈中國商務總辦陳樹棠覆函〉附 〈德國總領事會額德覆函〉, 光緒 11년 4월 8일; 《Pol.Arch.A.A., Korea》 2, Bd.2, A6923 Pr.24. August 1885 p.m. Anlage 2. 이 인용문을 보면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이 마치 조선이 영국을 고의로 끌어들이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뮐렌도르프는 그의 일기에서 ‘東京과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는 영국 외교관들이 영국이 조선정부의 허가를 얻어 거문도를 점령한 것처럼 서사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申福龍의 역, 《뮐렌도르프 문서》, 앞의 책, p.26; 具仙姬, 〈開化期 朝鮮의 對清政策 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p.75.

138) Pol.Arch.A.A., Korea 2, Bd.1 A 5726 pr.13. Juli 1885 p.m.(Söul, den 25. Mai 1885); 김우현, 앞의 논문, pp.66~68, 부록 9.

139) Pol.Arch.A.A., Korea 1, Bd.5 A 4385 pr.1. Juni 1885 a.m.(Shanghai, den 1. Juni 1885); 김우현, 위의 논문, p.66, 부록 8.

그러나 공식적인 중립화 의사표시는 1885년 6월 25일(양력)에 조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발송한 외아문독판 金允植 名義의 다음의 글에서 이루어 졌다.

다른 나라들 사이에 紛爭이 생겼을 때에는 조선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또한 조선은 어떠한 국가에게도 국토를 빌려주든가 일시적인 점령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은 국제법에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귀하(서울주재각국 총영사-인용자)에게 이 글을 보내오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귀국정부의 공정한 판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¹⁴⁰⁾

또한 1885년 6월 27일(양력)에는 제 2차의 문서를 보내고 6월 25일에 보낸 문서를 회수하였다. 6월 27일의 문서는 6월 25일자 문서와 같았으나 전번 문서의 '이러한 이유에서...' 부분만 아래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나(金允植-인용자)는 이러한 사건(거문도점령사건-인용자)을 서울 주재 모든 나라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글을 보내오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友好條約 제 1조에 규정한 대로 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조약 제 1조의 내용은 조약을 맺은 국가 중의 하나가 제 3국의 국가와 紛爭을 하게 되면 다른 조약당사국은 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 友誼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의적인 회답을 바랍니다.¹⁴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85년 6월 25일자의 1차 문서와 6월27일자의 2차 문서에서는 조선중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은 없고 단지 6월 27일자의 2차 문서에서 조약국들의 조약에 따른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중립화를 外交路線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를 각 국과의 修好條約內에서 찾는 간접 화법을 구사한 것임을 의미한다.

140) Pol.Arch.A.A., Korea 2, Bd.2 A 6923 pr.24. August 1885 p.m.(Söul, den 25. Juni 1885) Anlage 3; 《舊韓國外交文書》15: 德案 1, p.73, 高宗 22년 5월 13일(음).

141) Pol.Arch.A.A., Korea 2, Bd.2 A 6923 pr.24. August 1885 p.m. Nachschrift.

이와 같이 조선정부가 표면상 중립화를 직접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淸國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미 李鴻章이 부들리의 조선중립화안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한 이상 조선정부로서는 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나 거문도사건을 조약국들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조선의 장래가 벨기에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면 조선이 청의 보호망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은 뻔한 일이므로 이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약국들에 대한 우호적인 노력만 당부할 수 밖에 없었다.¹⁴²⁾

결국 조선정부측이 시도한 이러한 내용과 방법은, 國家自衛力을 바탕으로 直接 中立化를 이룬 스위스의 예를 택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현실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強大國들의 합의에 의하여 非武裝中立이 보장된 벨기에의 예를 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兪吉濬의 案

兪吉濬(1856~1914)은 1880년대에 韓國中立化案을 제사한 內國人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881년 봄 朝士日本視察團(속칭 紳士遊覽團)의 朝士 魚允中(1848~1896)의 隨員으로 渡日하여 慶應義塾에 입학, 1년반 가량 修學함으로써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고 1883년에 다시 報聘使의 正使 閔泳翊의 隨員으로 渡美, 담마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서 1년간 수학하던 중 정부로부터 귀국명령을 받아 1885년 12월 16일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 보다 한 달 앞서 조선에 着任한 '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1859~1916)의 對조선 開化抑制政策 때문에'¹⁴³⁾ 그는 도착하자마자 右捕使 韓圭高(?~1930)의 집에 감금되고 이어서 閔泳翊의 별장인 翠雲亭 부근의 가옥으로 移監되는 등 이 후 7년간 연금생활을 당하였다. 그는 이 기간에 《西遊見聞》을 비롯한 많은 論·疏를 집

142) Pol.Arch.A.A., Korea 2, Bd.2 A 6926 pr.24. August 1885 p.m.(Söul, den 29. Juni 1885).

143) 柳永益, 《韓國近現代史論》(一潮閣, 1992)〈『西遊見聞』과 兪吉濬의 保守의漸進改革論〉 p.127.

필하여 당대의 時務家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이처럼 미국에서 돌아온 兪吉濬은 때마침 절정에 달한 淸國의 대조선 간섭정책에 휘말려 억울하게도 행동의 자유를 잃었으나 다행히 그는 재능을 아껴주는 高宗과 개명한 정부 당국자의 숨은 비호를 받아 오히려 ‘창조적’인 知的 活動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¹⁴⁴⁾

그가 저술한 「中立論」은 제목 밑에 ‘乙酉’라는 附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885년 말 안의 어느 날까지 곧 그가 도착한 직후에 탈고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이미 써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이 중립론은 일본·미국·유럽을 주유하는 동안 국제정세를 목도하면서 쓴 첫 작품이란 점에서 그의 外交政策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알려 준다.¹⁴⁵⁾

이하에서는 이 「중립론」을 비롯한 그의 나머지 글들을 참고하여 그가 구상한 한국 중립화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우선 한국중립화를 위한 배경설명으로 당시의 주변정세를 詳論했는데, 러시아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烙印하였다. 예컨대 “러시아인은 사납기가 범이나 이리와 같아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지 벌써 여러해 되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지 구실이 없기 때문이다”¹⁴⁶⁾라든가 “러시아인은 暴戾하고 … 강대하며…틈만 노리는 존재”¹⁴⁷⁾ “러시아는 특히 無道하기 때문에 천하가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로 지목하고 있는 데도 그 虎狼之心은 오히려 더욱 왕성하여져서 그칠 줄 몰랐다”¹⁴⁸⁾는 등의 표현으로 온갖 惡意에 찬 文句를 구사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있지만 청국에 비해 그 형세가 부족하고 힘도 미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전하기에 겨를이 없을 뿐, 실제로 있어서는 정보다 더 심하게 조선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天津條約으로 撤兵한다 해도 언젠가는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은 혹자

144) 위의 논문, pp.121~129.

145) 姜萬吉, 〈兪吉濬의 韓半島中立化論〉《分斷時代의 歷史認識》(서울:創作과批評社, 1979), p.104.

146)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IV: 政治經濟編, (一潮閣, 1971)〈言事疏〉, p.68.

147) 〈言事疏〉, p.70.

148) 《兪吉濬全書》IV: 政治經濟編, 〈中立論〉p.321.

들이 ‘조선과 友誼가 두터우니 도움을 받을 만 하다.’고 하지만 워낙 먼 大洋의 저 편에 있고 조선과 별로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먼로주의’(蔓老約)¹⁴⁹⁾의 표명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조선이 위급해지더라도 말로만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단지 通商의 상대로만 친할 수 있을 뿐이며 위급을 구해주는 友邦으로서의 믿을 바가 못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청국만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조선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⁰⁾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바야흐로 위협의 수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國家安保政策을 어느 특정 강대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때 늦은 조치이므로 차라리 강대국들의 보장하에 중립화하는 편이 好策이라고 판단하였다.¹⁵¹⁾ 따라서 그가 내 놓은 구상은 청이 주도하는 한국중립화방안이었다.¹⁵²⁾

그는 청국이 조선의 중립화를 지지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동적

149) 〈中立論〉 p.323, ‘먼로주의’(Monroe Doctrine)는 1823년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먼로(James Monroe: 1758~1831)가 의회에 보낸 年頭敎書의 일부로서 미국 외교의 기본정책을 밝힌 것이다. 그 내용은 유럽제국의 對아메리카 불간섭 원칙·對아메리카 非植民 원칙, 미국의 對유럽 불간섭 원칙의 3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이래의 孤立主義를 명확하고도 대담하게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미국 외교의 지침이 되었다.

150) 〈中立論〉, pp.323~324,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兪吉濬이 일본과 歐·美지역을 돌아 갖 귀국한 처지이고 더욱이 자신을 감금한 장본인은 청의 袁世凱인데도 〈中立論〉 전 편에 걸쳐 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尊華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151) 姜萬吉, 앞의 논문, p.108.

152) 兪吉濬이 中立論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러시아를 가장 적대시하고 우려한 것은 러시아의 對韓進出 움직임에 대한 그 자신의(1883년 이후부터의) 危懼心과 당시 閔氏政權의 급격한 친러경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고, 일본을 不信한 것은 갑신정변 때 목격한 일본의 경솔한 태도 뿐만 아니라 福澤諭吉이 「脫亞論」 저술 이후 보인 조선에 대한 冷淡 때문이며, 淸國을 그 상대적인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왕의 종주국과 달리 다만 조선에 대한 중립보장국의 주도국 정도로 취급한 것은 청의 지배강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閔泳翊 등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月脚達彦, 〈開化思想の形成と展開－兪吉濬の對外觀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綠蔭書房, 1991.3) pp.13~14.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버마(緬甸)나 베트남(安南)이 청국과 그다지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들 국가가 각 각 영국과 프랑스에 침략당하였을 때 청국의 위신이 크게 손상을 입었는데 만일 조선이 러시아에 침략당한다면 위신 손상의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청 스스로가 받는 患難은 이가 입술을 잃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강이 조선의 영토를 탐낸다면 청이 피흘려 싸워서 조선을 보존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方策이 되며, 이 때문에 朝·淸 상호 간의 관계가 4천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년간 服事하는 동안 청이 內亂 같은 작은 문제도 구원해 주었는데 하물며 外憂存亡의 階梯엔 물론이란 것이다.¹⁵³⁾

그렇다면 실제로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청은 조선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에 俞吉濬은 “모든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最上”이라 하였다. 침략이 시작되고 난 뒤 派兵한다면 先後가 이미 갈라져서 勝敗를 알 수 없으며 설혹 러시아軍을 국경 밖으로 내어몬다해도 병력과 비용의 소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良策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리 派兵하여 조선 북변에서 러시아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구실을 주게 되며 일본 또한 妄動을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도리어 평지 풍파를 일으켜 禍亂의 단서를 재촉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¹⁵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중립화를 적극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대내적인 사정을 보아서도 조선정부가 차제에 아시아의 중립국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자체 진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재 세계 각 국은 通章結約하여 친목을 표방하고 반드시 商務를 확대함으로써 自國의 富強을 도모하며, 兵政을 확장함으로써 자국의 守備를 굳건히 한다. 따라서 內修를 잘하지 못하면 남들이 국가라 하지 않고, 外交에 信義가 없으면 남들이 교류하려 하지 않으며, 兵政과 商務가 황폐해져 흥성하지 못하면 국가가 빈곤하고 약

153) 〈中立論〉, p.325.

154) 〈中立論〉, p.325~326.

해져서 자립하기 어렵다.¹⁵⁵⁾

이와 같이 內修自強하지 못한 약소국으로서 다만 여러 나라와의 조약에 의지하여 간신히 자국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책을 도모한다면 이 또한 매우 구차한 것이니 이러한 조선의 형세를 파악해 볼 때 오직 중립화만이 자국을 지키는 方策이 된다는 것이었다.¹⁵⁶⁾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진단한 바탕 위에서 그는 한국중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서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국이 조약의 주창자가 되고, 영국·프랑스·일본·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이 회동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그 조약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¹⁵⁷⁾

이는 곧 淸 주도 하의 열국 공동보장에 의한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의 중립화 모델로는 벨기에 형과 불가리아 형의 절충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로서 그는 먼저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 또는 국제정치적 위치가 이들 국가와 같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咽喉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유럽에서의 벨기에(比利時)와 같으며, 그 국제적 지위로는 중국의 貢邦이어서 불가리아(發佳利亞)와 터키(土耳其)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同等之禮로 세계 각 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불가리아는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 貢邦의 班列에서서 외국의 冊封을 받는 일은 벨기에의 경우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體勢는 실로 벨기에와 불가리아 양국의 典例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¹⁵⁸⁾

155) “…現今宇內各國 通章結約 以表親睦 而必廣商務 以謀自富 必張兵政 以固自守 是故內修不善 人不謂國 外交無信 人不與友 兵政商務 廢而不舉 國貧且弱 難以自立…”〈言事疏〉, p.63.

156) 〈中立論〉, p.326.

157) “…此不可自我而倡之 則其宜請於中國而辦理之乎…乞中國之爲盟主 會同諸國 如英法日俄之有關係於亞土者 而進我於其間 共訂其盟款乎…”〈中立論〉 p.327.

이렇게 하여 조선이 중립화되면 국제적인 寄與度가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테면, 그는 “불가리아를 중립화한 조약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南下를 막으려고 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고, 벨기에를 중립화한 조약은 유럽강대국들 상호 간의 자국 보호를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따진다면 조선이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이 실로 러시아를 막는 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강대국들의 相保政略도 되는 이중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¹⁵⁹⁾

그렇다면 조선을 中立化하는 데는 어느 시기가 적당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俞吉濬은 朝·러密約說과 天津條約 締結, 巨文島事件 등 淸·日·러·英의 角逐이 절정에 달하던 1885년 이후야말로 중립화 할 最適의 時期이고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淸에 요청하면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樂觀하면서¹⁶⁰⁾ 대내외적인 기대효과도 클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이는 러시아인의 匈心を 우호적인 외교관계에서 가만히 제거하여 살벌한 분위기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이로 바뀌게 될 것이며, 중국은 군대를 쓰지 않고도 동쪽에 대한 우려를 영원히 끊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믿음직한 長城을 얻은 것과 같아 앉아서 萬世의 利得을 얻게 되는 것이다.¹⁶¹⁾

요컨대 俞吉濬의 中立化案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와 日本 특히 러시아의 침략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淸의 군사적 능력과 미국의 관여도가 가지는 한계성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¹⁶²⁾ 朝·淸 간의 전통적인 朝貢體制로는 더 이상 조선의

158) “...今我邦 以地則處亞洲之咽喉 若比利時之於歐羅巴 以位則爲中國之貢邦 如發佳利亞之於土耳其 然用同等之禮 結約各國之權 發佳利亞之所無 而我邦有之 在貢邦之列 受冊他邦之事 比利時之所無 而我邦有之 是故 我邦之體勢 實兼比發兩國之典例也...”
〈中立論〉 pp.320~321.

159) 〈中立論〉 p.321.

160) 姜萬吉, 앞의 논문, p.916.

161) “...此乃陰折俄人之匈心於玉帛之間 殺伐之氣 可變以爲談笑 而中國則不煩一兵 永絕東顧之憂也 我邦則恃如長城 坐收萬世之利也...” 〈中立論〉 pp.327~328.

162) 姜萬吉, 앞의 논문, pp.110~111.

安全保障이 유지될 수 없다는 危懼心과 함께 조선의 불행은 곧 淸國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淸측의 상황인식을 이용, 국제법 체제 속의 새로운 朝·淸관계를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兪吉濬의 한반도 중립화안은 그가 남긴 <中立論> 외의 다른 저술을 참고하여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발상에서부터 논리전개에 이르기까지 再考의 여지가 많다.

우선 그의 前歷이 淸·韓宗屬關係 타파를 구상했던 變法的 開化派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립화안 거론 당시 자신의 身柄이 公人이 아닌 재야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淸을 중립보장국으로 상정한 자체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개화파들이 무척이나 기대를 걸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충격과 함께 天津條約 체결 이후에도 청이 여전히 건재한 현실을 절감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에서 밝힌바 대로 兪吉濬 자신으로서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차체에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국제법 가운데서 위치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이 감지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兪吉濬은 그의 持論인 ‘贈貢國’의 論理로서 청과의 종속관계를 전제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贈貢國은 어느 한 약소국가보다 다른 강대국에 대하여 공물을 매개로 침탈당한 토지를 반환받거나 재 침략의 방지를 보장받는 경우를 일컫는데¹⁶³⁾ ‘屬國’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속국은 타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증공국은 다른 독립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속국은 領事와 貿易事務官은 파견할 수 있어도 公使·總領事는 파견할 수 없는데 비해 증공국은 조약에 따라 각 급 사절을 파견할 수 있다. 증공국은 ‘交戰·結和의 宣告’가 가능하지만 속국은 불가능하다. 증공국은 隣國이 兵을 일으킬 때 ‘中立’이 가능하지만 속국에는 服事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가 없다. 증공국은 ‘受貢國’에 사절과 영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속국은 服事하는 나라에 대하여 그 권리가 없다.¹⁶⁴⁾ 따라서 증공국이 이와 같

163) 《兪吉濬全書》Ⅳ：政治經濟編, 〈國權〉 pp.31~32.

164) 〈國權〉, p.37.

은 諸 權利를 보지하는 한 독립국과 다를 바 없으며 만약 청국의 주도로 조선이 '중립국'이 되면 '非獨立自主之國 不能享有中立之權'¹⁶⁵⁾이라는 그의 논리대로 조선은 자연스럽게 국제법상의 독립국으로 승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그 기대만큼이나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우선 양국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宗屬關係의 원리와 적어도 명목상이나마 각국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國際法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¹⁶⁶⁾ 이 때문에 俞吉濬은 벨기에 형과 불가리아 형을 예로 들어 그 절충형을 취한다고 했지만 불가리아는 국제법상 중립국이 아닐뿐더러¹⁶⁷⁾ 벨기에는 그 保障國들이 상호 평등하여 主導國家가 없다. 따라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한 채, 중공국으로서의 중립화를 표방하고, 여기서 다시 벨기에 형의 모델을 지향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이다. 결국 俞吉濬의 이 같은 案은 理想論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政情에도 파문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었다. 이를테면 청국의 지배강화를 싫어하여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왕과 왕비를 비판하는 결과로 비취질 수가 있고¹⁶⁸⁾ 더욱이 조선의 청에 대한 전통적인 종속관계(屬國)를 근대적인 종속관계(自主屬邦: 半主國)로 전환하려는 李鴻章의 공식 입장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袁世凱와의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다.¹⁶⁹⁾ 俞吉濬이 그의 「中立論」의 冒頭에 “이 논의는 큰 계

165) 〈國權〉, p.29.

166) 月脚達彦, 앞의 논문, p.17.

167) 제6차 러·터전쟁(1877~1878) 이후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터키 주권하의 自治公國으로 만들자 1878년 영국·프랑스 등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베를린 회의를 열어 터키와의 종속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터키군의 불가리아 주둔을 금지하는 등 불가리아를 일종의 완충지역화 하였다. In Kwan Hwang, "A Translation and Critical Review of Yu Kil Chun's On Neutrality", *Korean Studies*, Vol.9 (1985) p.10.

따라서 불가리아는 공법상으로 자치권만 획득하고 외교권을 上國인 터키에 의존하는 '半主國'에 해당될 뿐이었다. 그러나 俞吉濬은 그의 일련의 저술에서 “세계 각 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불가리아는 갖고 있지 못하나…”라든가, “불가리아를 중립화한 것은…”, 또는 “독립자주국이 아니면 中立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불가리아는 바로 터키에 공물을 바치는 일개 소국이며… 중립권을 갖고 있으니, 이는 공법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바이다.”는 등의 표현을 써서 스스로 모순됨을 인지하면서도 불가리아를 중립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中立論〉 pp.320~321; 〈國權〉 p.29.

168) 月脚達彦, 앞의 논문, p.14.

169) 당시의 淸廷內에서는 조선을 두고 張佩倫 등의 '완전속국화론'과 李鴻章 등의 '속방자주론'이 대립되어 있었다. 俞吉濬의 '贈貢國'의 논리와 李鴻章의 '屬邦自主'의 논리는

획(石劃)이라 할 수 있지만 크게 꺼리는 바 있어 잠시 지워버리는 편이 좋겠고 家藏하는 경우에는 지워버릴 필요가 없다.”¹⁷⁰⁾라고 써두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한 흔적을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의 중립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1887년 이후에 발생한 ‘朴定陽事件’¹⁷¹⁾을 계기로 본연의 反淸運動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3) 金玉均의 案

兪吉濬의 조선중립화 주장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화파 金玉均도 조선 중립화를 주장하였다.¹⁷²⁾

논리전개에 있어서 궤를 같이 하지만 根本底意에 있어서는 다르다. 兪吉濬은 국제법의 원리에 따라 朝貢國의 독립주권을 논증하려 하였고 李鴻章은 국제법상의 屬國의 명의를 피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속방규정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李炳柱, 〈李鴻章의 對韓政策〉《論文集》2(陸軍士官學校, 1965) pp.197~198; 月脚達彦, 위의 논문, pp.14~15, 17.

170) “此篇議論 可謂石劃 而大有碍眼 姑刪之爲好 唯家藏即不必刪” 〈中立論〉 p.319.

171) ‘朴定陽事件’이란 (초대) 駐美特命全權公使 朴定陽이 1887년 11월(음력) 이후 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청국정부가 조선측에 강요한 이른바 ‘另約三端’을 위반했던 것이 이유가 되어 袁世凱의 忿怒를 사 1889년 7월(음력)에 본국으로 소환당한 사건을 말한다. ‘另約三端’의 내용은 ① 조선 공사가 처음으로 각 국에 도착하면 마땅히 먼저 청국 공사관으로 나아가 具報하고 청국 공사와 함께 外部로 나아가서 그 뒤에는 拘定하지 않는다. ② 朝會公宴 및 酬酌交際 등이 있을 때 조선 공사는 마땅히 청국 공사의 뒤를 따라야 하며 ③ 交涉事大에 관계되는 긴요한 일은 조선 공사가 먼저 청국 공사에게 협상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등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조건은 모두 屬邦分內에서 應行할 체제로서 각 국과는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兪吉濬은 朴定陽의 입장을 변호하는 조선정부의 청국정부 앞 照會書 3통을 기초한 후 데니의 『China and Korea』(《淸韓論》, 1988年刊)를 정독하고 이에 기초하여 〈國權〉을 썼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4, No.1291, P.2381b, 光緒 13년 9월 26일, No.1294, pp.2385b~2386a, 光緒 13년 10월 16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권10, No. 578, p.39, 光緒 13년 9월 24일; 《李電》권 9, 〈寄朝鮮袁道〉, 光緒 13년 9월 24일; 《李奏》권 61, 〈籌議朝鮮通使各國摺〉, 光緒 13년 11월 11일; 朴定陽, 《從宦日記》,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朴定陽全集(竹泉稿)》2(亞細亞文化社, 1984) pp.624~625. 丁亥年 十月 一日條; 柳永益, 앞의 논문, pp.128~129; 宋炳基, 〈소위 “三端”에 대하여〉《史學志》6(1972) pp.94~102.

172) 慎鐸廈는 한국중립화론이 金玉均의 개화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金玉均을 조선 최초의 중립화론자로 단정하였다. 氏는 그 근거로서 兪吉濬이 1883년에 쓴 〈國權〉이란 글을 예로 들어, 그 글은 국권의 구성요소 중에 ‘中立之權’이 있음을 설명한

金玉均은 周知하는 바대로, 壬午軍亂 이후 淸의 지나친 내정간섭을 체험하면서 淸국의 屬邦化를 분쇄하고 富國強兵을 통한 完全自主獨立國家의 실현을 표방, 1884년의 淸·佛戰爭을 그 好機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을 뿐만 아니라 甲申政變 때의 ‘革新政綱’에서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對淸朝貢을 폐지하고 심지어 政敵인 大院君의 送還要求까지 제 1의 綱令으로 채택할 정도로 철저한 反淸獨立派였다.

한편 그는 “일본이 동방의 영국 노릇을 하려하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어야 한다.”¹⁷³⁾면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의 건설을 염원하기도 하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일본(和)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조선(箕)은 당연히 지형·면적·인구가 같은 이탈리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른바 ‘箕和形勢’를 논하거나¹⁷⁴⁾ 朝鮮·淸·日本 3국의 連帶로 歐美東漸의 침략을 방어해야 한다는 ‘三和主義’¹⁷⁵⁾내지 《興亞策》¹⁷⁶⁾을 논했다고도 한다.

이처럼 金玉均은 갑신정변 이전부터 안으로는 부국강병을 통한 완전 자주독립국, 밖으로는 국제질서에서의 참여와 상호 연대를 지향했는데 이는 그가 언급한 바, “서양 각 국은 모두 독립국가이다. 어떠한 국가든지 독립한 연후에야 비로소 타국과 화친할 수 있는 것이다”¹⁷⁷⁾라는 자신의 持論과 합치되는 것이었다.

것일 뿐 ‘조선의 중립화’를 주장한 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兪吉濤를 최초의 論者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金玉均이 ‘중립’을 공식적으로 云謂한 것이 兪吉濤의 〈中立論〉 발표(1885) 후인 1886년임을 감안할때 氏가 굳이 金玉均의 중립론에 대하여 최초 云云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46·47·48 合輯,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5.6) pp.199~201.

173) 徐載弼 手記, 卞榮魯 譯, 〈回顧甲申政變〉, 閔泰瑗, 《甲申政變과 金玉均》(1947) pp. 84~85.

174) 《漢城旬報》15號, 朝鮮開國 493년(1884) 2월 21일 國內私報條 〈論箕和形勢〉 이 내용에 대해서 李光麟은 池錫永의 ‘時務에 관한 上疏’(《承政院日記》高宗 19년 8월 23일條) 중의 ‘我國校理臣金玉均所輯箕和近事’라는 표현을 근거로, (현존하지 않는) 金玉均의 《箕和近事》를 이 신문에 옮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李光麟, 《開化黨研究》(一潮閣, 1980) pp.186~188.

175) 近藤吉雄, 《井上角五郎先生傳》(1943) p.117.

176) 李光麟은 井上角五郎의 回顧錄(〈故友金玉均의 回想〉《古筠》創刊號, 東京: 古筠會, 1935.3. p.8)·修信使 金弘集의 歸國復命書(〈修信使日記〉《修信使記錄》, 國史編纂委員會, 1958.11)·《東京日日新聞》의 1882년 6월 23일자 기사 등을 근거로하여 金玉均이 《興亞策》을 지어 국왕에게 바쳤고 그것이 곧 《箕和近事》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李光麟, 위의 책, pp.187~190.

이러한 그의 국가관이나 세계관, 특히 그의 '開國外交重視'¹⁷⁸⁾ 태도에 주목하여 그가 이미 중립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⁷⁹⁾ 그러나 아직은 적어도 갑신정변 때까지는 '중립'이란 용어를 공연히 云謂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1884년 11월 9일 金玉均은 일본공사 竹添進一郎을 만나 '자신이 일전에 국왕의 소명으로 洪英植과 入內하여 일본측의 壬午倂償金 返還風說에 대한 眞意如何를 上奏했다는 사실과 그 때 그가 서양 각 국 중 荷蘭・白耳義・瑞西 등의 예를 인용하여 조선의 조속한 독립을 강조하였음'을 들려줄 때도¹⁸⁰⁾ 중립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그의 중립화 의도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甲申政變 실패 이후의 일이었다. 즉 天津條約으로 인한 淸・日의 세력균형과 거문도 사건으로 인한 英・러시아 간의 대치라는 지극히 多邊化한 주변 정세를 目睹하면서 小國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나머지 조선 중립화를 공식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⁸¹⁾

그는 1886년 7월에 망명지인 일본에서 <與李鴻章書>라는 글을 통하여 그의 한국중립화론을 밝혔다.

그러한 즉 각하는 어찌하여 대청국 황제 폐하를 추존하여 천하의 맹주로 삼아
구미 각 대국들에게 公論을 펴고 그들과 더불어 연속하여 조선을 중립국으로 세워
서 만전무위의 땅으로 만들지 아니하는가¹⁸²⁾

177)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鞠案>中の 申重模 供述, 《推案及鞠案》30冊, p.588.

178)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金玉均全集》(亞細亞文化社, 1979) p.111.

179) 慎鏞廈, 앞의 논문, p.201.

180)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上, p.276. 같은 책 <筆記第二, 十一月 九日 金玉均氏來訪 竹添進一郎談話要略> 가운데 金玉均이 竹添에게 “또한 조선이 조속히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으로서 서양 각 국 중 荷蘭・白耳義・瑞西 등의 예를 들어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렸더니 그 때 왕비께서는 ‘金玉均의 말은 대양 大節 뿐이어서 親切함이 없다’고 하셨다.” 라고 한 말을 徐仲錫은 竹添의 말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錯誤이다. 徐仲錫, 앞의 논문, p.291의 주14) 別記.

181) 趙景達, <朝鮮における大國主義と小國主義の相剋-初期開化派の思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綠蔭書房, 1985.3) p.76.

182) 然則 閣下 何不推尊大清國皇帝陛下 爲天下之盟主 布公論於歐美各大國 與之連續 立朝鮮爲中立之國 作萬全無危之地…『金玉均全集』, <與李鴻章書>, p. 152.

그는 이 글에서 조선을 중립국화하여 萬全無危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조선 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청국이 주도하여 구미열강들과 공론을 형성, 외교적으로 국제열강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청국 주도 하의 영세중립을 구상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글에서 조선이 열강의 합의에 따라 중립국이 된다면 그 파급효과도 클 것임을 강조하였다.

각하의 노련한 수단이 이어져서 善隣 友睦의 情誼를 다하고 진실로 輔車의 맹약을 맺음으로써 동아의 정락을 펼친다면 이는 곧 조선 단독만의幸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또한 귀국의 得策이 될 터인즉...183)

이처럼 金玉均은 諸 列強의 勢力均衡이라는 현실의 사태를 깊이 통찰하여 그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생각한 다음 조선 중립화 구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金玉均의 조선중립화 구상은 위의 一次的인 자료 외에도 그의 정치적 경륜이나 외교감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데서 나온 몇몇 研究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는 金玉均이 1894년 3월에 李鴻章과 담판하러 淸國行을 결심했던 이유에 관한 분분한 유추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⁴⁾ 이를테면, 金玉均의 知己로서 스스로 그와 義兄弟라고 자칭했던 일본인 渡邊元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金玉均의 上海에서의 横死는 金玉均 본인을 위해서나 일본을 위해서나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대한 그의 理想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여 동양의 公團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러시아를 이용하고 러시아가 강하게 나오면 일본을 이용하는 식으로, 러·일 양국을 조종하여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 이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¹⁸⁵⁾

183) …閣下 繼以老練手段 盡善隣友睦之誼 固結輔車之盟 以展東亞之政略 則此不獨朝鮮之幸恐亦爲貴國之得策…〈與李鴻章書〉

184) 金玉均의 上海行은 그 자신의 ‘三和主義’- 朝·淸·日의 連帶-를 李鴻章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近藤吉雄, 앞의 책, p.117.

185) 葛生玄暉 編, 《金玉均》(東京:民友社, 1916); 金榮作, 〈韓末 내쇼날리즘과 金玉均〉

당시 金玉均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간의 대립이 언젠가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 대립의 형태로 첨예화 될 것을 예측하고 중립국으로서의 독립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⁸⁶⁾

또한 그의 淸國行은 그가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일본에서 전쟁준비를 목격했던 만큼 청국의 패전을 미리 내다보고 조선을 중립국화함으로써 조선의 兩國交戰場化와 그로 인한 일본의 지배를 막아보겠다는 최후의 노력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⁸⁷⁾

이상과 같은 推論들은 결과론적인 大勢論 차원에서 후見처럼 생각되나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데가 있다.

첫째, 金玉均의 淸國行 목적 그 자체가 아직도 확연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金玉均의 上海行은 경우에 따라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선의 개혁과 독립을 구상하려는 그의 평소의 決意대로 李經芳의 초청을 이용해서 李鴻章을 설득한 다음, 그 활로를 개척해 보려는 革命兒的 정치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¹⁸⁸⁾라는 비교적 심도있는 해석이 있지만, 그러한 결행의 구체적인 목적으로써 한반도중립화 제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유추 해석은 없다.

둘째, 유일한 1차 사료인 <與李鴻章書>의 내용과 그의 淸國行은 시대 정서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與李鴻章書>는 이미 8년 전의 구상이

《法政論叢》4 (國民大學校 法學研究所, 1981) pp.238~239.

186) 金榮作, 위의 논문.

187) 慎鏞廈, 앞의 논문, pp.200~201.

188) 金榮作, 〈金玉均 暗殺事件과 韓·淸·日 三國 - 既存學說에 대한 批判的 再檢討 -〉 《김옥균암살·감오개혁·청일전쟁 100주년 학술대회》(한국정치외교사학회·동북아문화연구원, 1994.11) pp.233~234.

金榮作 교수가 金玉均의 上海行 동기를 해석해 낸 것은 김옥균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한 말, 淸의 李經芳이 그를 초청하면서 “東洋之事에 관하여 우리들은 불가불 상호 제휴하여야 한다. 지금 조선의 내정이 크게 문란한대 吾國으로서도 韓廷에 한편의 도움이 되고 싶다. 때문에 와서 서로 만나 더불어 도모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라고 한 내용 [王信忠, 《中日甲午戰爭之背景》(臺北:文海出版社, 1937) p.138; 《玄洋社史》, 玄洋社史編纂委員會, (1917) p.433.], 그리고 그 외 당시의 그에 관한 일본 내 여론 등을 종합하여 추론한 것이다.

고 특히 그 글에서 강조한 ‘청국 주도 하의 중립을 희망한 내용’은 그 당시 시대 상황, 이를 테면 밖으로는 淸·日·러·英 간의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안으로는 청의 내정 간섭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1894년의 상황은 淸·日 간 또는 러·日 간의 대치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갈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국행을 결행할 당시 그의 조선중립화 구상에 관한 1차 사료의 발굴이나 아니면 그동안 그 자신의 時局觀의 변화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과거 구상의 연장 선상에서 시도되는 推論은 무리일 것 같다.

셋째, 金玉均의 조선중립화 구상은 1886년의 구상이든 청국행에 따른 臆斷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空想이었다. 왜냐하면 淸은 그들이 淸·日戰爭의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완전 퇴각할 때까지 전통적인 淸·韓宗屬關係의 固守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玉均의 청국행을 한반도중립화 문제에 결부시켜 推論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第 3 章 清・日戰爭 前後期～大韓帝國期の 韓半島中立化論

1. 清・日戰爭 前後期の 韓半島中立化論

1) 時代的 背景

清・日 兩國軍의 朝鮮撤收를 위한 天津條約과 巨文島事件의 해결을 위한 清・러시아 간의 ‘李・라디젠스키 協約’은 결과적으로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再論하자면 이 두 協約으로 淸・日 간의 角逐戰이 중지되고 러・英 간의 대치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표면적으로 평화 무드가 유지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여 淸의 內政干涉이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淸의 宗主權 行事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던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데는 이 두 協約의 위력 때문만이 아닌 보다 큰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후 이러한 국면을 활용하려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이해타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특히 거문도 사건으로 충격 받은 러시아는 1886년에 들어와 청과 ‘李・라디젠스키 協約’을 체결함으로써 영국군의 거문도 철수 명분을 이끌어 내었지만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현상 유지를 묵인하기로 하였다. 이유인 즉 영국에 의한 거문도점령이 곧 세계 제일의 英國海軍力이 보여준 東亞海上에서의 對 러시아 시위였으며 게다가 일본 해군력에 의한 對馬島海峽의 봉쇄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길마저 막혀버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無力화된 자국의 海軍力 대신 陸軍力의 활용 쪽으로 작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시베리아 관통 철도의 건설이 1886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러시아 軍의 作戰變更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에 때 맞춰 러시아에서는 조선 문제를 놓고 프리아무르지방 총독 코르프(Baron Andrei Nikolaevich Korf)와 외무성 아시아 국장 지노비예프(Ivan Alekseevich Zinoviev) 간에 회담이 있었는데(1886.4.26) 여기서 '조선은 지리적으로나 시장규모로 보아 러시아에 이득이 크지 못하며 러시아의 재정능력으로는 조선의 資源을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沿海州 주둔병 15,000명으로는 조선의 긴 해안선을 경비할 수 없으므로 조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對韓政策의 基本路線이 확립되었다.²⁾ 이것 역시 韓半島의 安定을 청국에 맡겨두겠다는 의지의 표현 외에 다른 아니었다.

日本 측도 甲申政變을 통하여 벌인 청과의 군사대결에서 상대적인 열세가 露 露되자 天津條約을 주도, 청·일 양국의 동시철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왕의 긴장상태를 소강상태로 전환시킨 다음³⁾ 한반도에 있어서의 對淸牽制役割을 은근히 러시아에 전가시키고 당분간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⁴⁾ 이를테면 일본은 그들의 對韓政策의 근본인 '韓國 獨立維持政策'이 그나마 在韓 美國人 外交官들에 의해 잘 代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安堵하면서⁵⁾ 오히려 이 기간을 이용, 조선에 있어서의 利權競爭에 뛰어들거나 列强과의 不平等條約의 改正에 치중하고 특히 防衛力增強에 전념한다는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⁶⁾

- 1) Andrew Malozemoff,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p.33~35.
- 2) A.L.Popov, & S.R.Diamant, ed., "First Steps of Russian-Imperialism in Far East 1888~1903, From Krasny Archiv, Vol.LII. pp.54~124",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XVⅢ, No.2(July, 1934) pp.236~237.
- 3)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朝鮮植民地化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7) p.12.
- 4) 崔文衡, 〈列强의 對韓政策과 韓末의 情況-특히 1882~1894년의 美·英·露의 態度를 中心으로-〉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26.
- 5) R.T.Pollard, "American Relations with Korea. 1882~1895".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VI. No.3(October 1932) p.441; Harold Noble, "The United States and Sino-Korean Relations 1885~1887",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Ⅱ. No.3(September 1933) p.295 .
- 일본의 대조선정책에 결과적으로 협조적이었던 미국인 외교관으로는 뮐렌도르프 해임 이후 일시적으로 조선외부의 실권자였던 주한 미국임시대리공사 포오크(Foulk)와 李鴻章의 추천에 의해 외교고문으로 왔던 데니(Denny)등 이었다.

美國 역시 조선에 대해서는 商業的으로 利得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地理上 淸의 宗主權을 견제하기가 어렵고 설령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제휴한다 하더라도 淸·英·日의 저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嚴正中立’ 태도로 일관하였으며,⁷⁾ 英國은 조선의 독립이 곧 러시아에의 隸屬化를 의미할 것이므로 淸 宗主權下의 현상유지가 최선이며 더욱이 자국의 버마 경영에 대한 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서라도 淸의 對朝鮮 宗主權 행사를 시종 묵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⁸⁾

이상과 같은 周邊 列強의 利害打算 때문에 淸의 종주권 행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그 좋은 예가 韓廷의 親러 경향을 빌미로 淸의 袁世凱가 자행한 ‘朝鮮國王廢位企圖’⁹⁾ 및 이른 바 ‘제2차 朝·러 密約事件’ 波紋이었다.¹⁰⁾

- 6) Tyler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1922) pp.482~483; Payson Treat, "Early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1, No.1(March, 1932) p.30.
- 7) F.C.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Unpublished Ph.D. Dir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35) pp.482~483.
- 8) John W.Cassey, "The Mission of Charles Denby and International Rivalries in the Far East 1885~1898"(Unpublished 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59) pp.255~256; Jones, op.cit., p.472.
- 9) 袁世凱의 高宗廢位 陰謀에 관해서는 林明德, 《袁世凱與朝鮮》(臺北:中央研究院, 1970) pp.155~156; 李瑄根, 《韓國史:最近世篇》(乙酉文化社, 1961), pp.820~830; 柳永益, 〈大院君과 淸日戰爭〉《淸日戰爭의 再照明》(춘천: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6) pp.77~78 참조.
- 10) 제2차 한·러 밀약사건이란 조선관리와 러시아공사 간에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밀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1886년 8월 13일자로 袁世凱가 李鴻章에게 그 경위를 보고한 데서 사건화되었다. 즉 袁世凱는 閔泳翽으로부터 들은 바라면서 조선이 러시아공사에게 “조선은 자주독립국이지만 언제나 청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타국과 一律平等하도록 지원을 해주되 만약 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함을 파견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는 요지의 文憑을 보냈다고 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國寶와 總理內務府事 沈舜澤의 圖書까지 捺印된 문서 사본을 閔泳翽으로부터 입수하였다면서 이를 李鴻章에게 보낸 다음⁽¹⁾ 고종과 대신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온갖 협박을 다하였다.⁽²⁾ 그러나 고종은 전혀 아는바 없다고 변명하였고 러시아 정부도 하등의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함으로써 결국 그 진상이 밝혀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종이 문서 날조책임자를 下獄시킨 점과 閔妃의 연동으로 보아 고종이 연루되었다는 설,⁽³⁾ 袁世凱가 고종폐위를 통한 조선합병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날조했다는 설,⁽⁴⁾ 영국군의 거문도 주둔을 연장하기 위한 서울 주재 영국 공사 베이커의 위조설⁽⁵⁾ 등으로 그 파문이 컸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당시의 서울 외교가에서는 전후 사정을 보아 원세개의 작난으로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1) 李鴻章 撰, 吳汝綸 編, 《李文忠公全集》(臺北:文海出版社印行, 1962), 海軍函稿 2:7

한편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外見上으로는 平和를 謳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暴風前夜의 고요’였을 뿐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軍備擴張과 淸의 北洋艦隊建設은 天津條約을 사실상 空文化시켰음은 물론, 머지않아 닥칠 淸・日戰爭을 예고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1894년에 발발한 淸・日 戰爭은 그 정후로 볼 때 이미 1880년대 중반의 淸・일 양국 사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외견상으로는 일본의 井上馨의 제안인 ‘조선 내정을 淸・일 공동으로 간섭하자’는 이른바 ‘朝鮮弁法八條’를 淸의 李鴻章이 동의하여 大院君의 조선 송환과 뮐렌도르프의 해임을 실천함으로써 抗露 協調 政策의 기초를 닦는 듯 했으나,¹¹⁾ 실제로는 淸이 袁世凱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의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일본을 假想敵國으로 하여 북양艦隊의 건설속도를 재촉하였다.¹²⁾ 이에 일본도 일시 對韓干涉政策을 단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들의

a~b, 光緒 12年 7月 14日 附.

- (2) 重吉萬次, 〈韓露保護密約締結の企に就いて-1884年より1886年に至る-〉, 《稻葉博士還歴記念滿鮮史論叢》(1937.6) pp.344~345.
- (3) Payson J. Treat, "China and Korea, 1885~1894", *Political Science Quarterly* 49・4 (December 1934) p.531; Krasny Archiv, "First Steps in Russian Imperialism in Far East",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8 (July 1934) p.240; 重吉萬次, p.747.
- (4) Robert R. Swartout, Jr., *Mandarins, Gunboats, and Power Politics: Owen Nickerson Denny and the International Rivalries in Korea*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pp.83~85; Payson J. Treat, p.527.
- (5) J. チェン 著, 守川正道 譯, 《袁世凱と近代中國》(東京:岩波書店, 1980) p.31; Lee Yur-Bok,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66~1887*(New York: Humanities Press, 1970) pp.139~140; Synn Seung-Kwo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1876~1904* (Seoul: Yuk Phub Sa, 1981) p.56.
- 11) 李瑄根, 《韓國史:最近世篇》(서울:乙酉文化社, 1962), pp.800~803;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東京:岩波書店, 1966), pp.75~78; 柳永益, 《甲午更張研究》(서울:一潮閣, 1990), pp.32~33; 森山茂徳, 앞의 책, p.13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정무를 淸・일 공동으로 감독한다. (2) 宮中・府中の 구별을 지어서 府中の 관여 내지 宮中으로부터의 密詔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 (3) 조선정부는 金弘集, 魚允中, 金允植 등을 지도자적 지위에 임명한다.
- 12) Young Ick Lew, "Yüan Shin-K'ai's Residency and the Korean Enlighten-

朝鮮內政干涉論議는 日本 朝野에서 계속 되었다. 곧 福澤諭吉(1834~1901)은 1885년의 '脫亞論'에서 일본의 對韓干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¹³⁾ 1887년에는 조선을 '일본의 藩屏'으로 할 것을,¹⁴⁾ 드디어 1892년에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¹⁵⁾ 《自由新聞》역시 韓·日 連帶를 통한 간섭론을 폈다.¹⁶⁾ 이러한 조선내정간섭 논의는 1894년에 와서 드디어 陸奥宗光(1844~1897)의 공식적인 淸·日 共同改革案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¹⁷⁾

淸·일에 의한 조선간섭론쟁이 시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보아 淸·日 開戰의 遠因이 되었다면 일본 軍部の 실력자인 山縣有朋¹⁸⁾의 정치적 부상은 그 직접적인 원인 곧 近因이 될 수 있다. 山縣은 이미 1888년 1월에 '對政府意見書'를 발표하여 "동양사정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⁹⁾고 함으로써 러·일 대립을 예고했는데, 그러던 그가 1889년에 第1次 山縣內閣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對韓無關心態度가 일시에 러·일 대결의 분위기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야말로 러·일 간의 '好感의 時代'는 종말을告한 셈이었다.²⁰⁾ 그의 이러한 對露強硬路線은 1890년 3월의 이른바 '山縣有朋軍備意見'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는데 그 내용인즉 "우리의 利益

ment Movement(1885~1894),"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1984), pp.65~86; Lin, T.C., "Li Hung-Chang: His Korean Policies, 1870~1885",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IV, July 1935, p.233;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大學出版會, 1973) pp.307~392.

13) 《時事新報》1885년 3월 16일 사설.

14) 위의 신문, 1887년 1월 6일 사설.

15) 위의 신문, 1892년 10월 1일 사설.

16) 《自由新聞》1884년 4월 18일 사설, 12월 18일 사설.

17) 陸奥宗光, 《蹇蹇錄》(東京:岩波書店, 1933) p.83;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東京:日本國際聯合協會, 1947~1954) 27-1, pp.569~572.

18) 山縣有朋은 伊藤博文과 더불어 明治日本の 二大支柱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後者가 69세를 일기로 1909년 安重根에게 암살된 데 反해 前者는 1922년 天命을 다할 때까지 85세의 생애를 통해 약 60년 이상을 日本軍部와 政界를 주름잡았다. 申東俊, 〈近代日本軍部の 獨走原因〉《史學研究》36, (惠庵柳洪烈博士古稀紀念論叢, 1983. 4) p.277, p.280; 崔文衡, 앞의 논문, p.34의 주118)

19)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國際政治》1957 秋季)〈資料紹介山縣有朋意見書(一)〉: 梅溪昇, 〈日本則からみた日淸戰爭一補論〉《歷史教育》10卷 2號(1962) p.23;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pp.196~200.

20) Malozemoff, op.cit., p.35.

線의 焦點은 실로 조선에 있으며 … 조선의 독립은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는 날에는 살얼음을 딛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²¹⁾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곧 시베리아 철도의 준공일이 러시아의 조선침략 개시일이라는 메시지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준공 이전에 무엇보다도 對淸國問題를 우선 처리해야만 했다. 말하자면, 러·일전쟁이 본 게임이라면 청·일전쟁은 오픈게임이므로 緒戰格인 淸과의 결말부터 먼저 서둘러야만 했던 것이다.²²⁾ 이런 입장에서 볼 때 1889년은 일본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東亞政局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해였다. 이를테면 이 해에 들어와 軍部實力者인 山縣의 執權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軍備擴張도 계획대로 종결되어 1883~1889 년간의 艦船建造 실적이 6척의 巨艦을 포함, 20척 이상으로 증가하였다.²³⁾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공공연히 조선의 防穀畝를 사전화하여 淸 宗主權下의 조선에 대한 강경 자세를 취하였다.²⁴⁾ 조선에 대한 그들의 强硬態度는 곧 對淸戰爭挑發을 위한 計略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이러한 시대분위기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가 1891년 5월 31일자로 착공되었다.’는 정보의 입수는 그들로 하여금 淸·日戰爭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발맞춰 주일 영국공사가 “시베리아 철도의 완성으로 러시아가 자유롭게 태평양 연안에 접근하기 이전에 日本은 淸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둘 필요가 있다.”²⁵⁾고 한 언급은 일본의 이러한 결심을 웅변으로 대변한 것이었다. 그들이 1893년 5월 19일자로 ‘戰時大本營條例’를 발포한 사실이나 조선에서의 東學農民軍蜂起(1894)를 계기로 淸·日 양군이 조

21) 大山梓 編, 앞의 책, pp.196~200. 山縣은 1890년 3월 제1차 帝國議會에서 ‘국가독립을 지키고 國勢를 확장하자’라는 모두 연설에서 이를 위해서는 陸海軍에 의한 主權線과 利益線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2) 崔文衡, 앞의 논문, p.34.

23) Malozemoff, op.cit., pp.34~35.

24) Jones, op.cit., p.523; William L.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New York, 1972) p.172.

25) David J. Dallin, *The Rise of Russia in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p.36: 당시 러시아의 대장상 위테(Sergei I.Witte)도 “일본이 전쟁을 기도한 것은 我國이 시베리아철도의 건설을 시작한 결과였다.”라고 말했다.

ベ・ア・ロマーノフ 著, 山下義雄 譯, 《滿洲に於ける露國の利權外交史》(原書房, 1973) p.96.

선에 출병했을 때 淸兵이 약 2,800명인데 비해 日本軍은 약 8,000명으로서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上陸地點도 동학농민군봉기와 관련 없는 仁川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뒤이어 빚어진 일본의 청·일전쟁 도발이 사전 준비에 의한 것이었음을 感知할 수 있는 것이다.²⁶⁾

급기야 일본은 주한 일본공사 大鳥圭介(1833~1911)의 거듭된 兵力増派中止要請과²⁷⁾ 袁世凱의 청·일 양군 공동철수 제의, 영국의 중재노력²⁸⁾ 등을 묵살하고 1894년 7월 25일 조선 서해상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청·일전쟁을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연전 연승하였고 戰場의 대륙확산을 우려한 열강의 외교적 개입을 받아들여 청과 ‘下關(馬關)條約’²⁹⁾을 체결(1895.4), 戰勝國으로서의 이익과 영예를 누린 반면 老大國 淸國의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하였다. 이를테면, 일본은 下關條約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시킴으로써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26) 柳永益, 앞의 책, pp.4~7; 朴宗根 著·朴英宰 譯, 《淸日戰爭과 朝鮮-外侵과 抵抗-》(서울:一潮閣, 1989), pp.13~14. 청·일 양국의 동원병력 통계가 일정하지 않다. 청군이 3,000명, 일본군이 13,800명으로 파악된 예도 있다.

R.S.MoCordock, *British Far Eastern Policy 1894~1900* (New York, 1931) pp.79~80. 또한 청군이 1,500명, 일본군이 10,400명이라고도 한다. C.I.Eugene Kim and Hankyo Kim, *Korea and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78.

27) 《日本外交文書》27-2, No.535, 538; 田保橋潔, 앞의 책, p.322.

28) 영국은 청국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현상유지를 바랬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청·일 간의 분규를 해결하고자 중재에 나서서 ‘청이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과 영토보전을 승인하면 영국은 각 국과 공동으로 일본정부에 撤兵을 강제할 것’이라고 청을 설득했다. 이에 청은 응하는 듯 했으나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갈수록 청의 先撤兵 後改革 주장과 일본의 對朝鮮 정치·通商上の 均沾 주장이 극한 대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일본의 무성의와 決戰 의지로 말미암아 사태만 긴박해졌다. 이에 영국외상 킴벌리(John W.Kimberley)는 최후 수단으로 7월 22일 청·일 양국에 조선을 공동 점령시킴으로써 청·일 분쟁을 해결하자는 안을 제의했다. 이를테면 청·일 양군이 한반도를 점령하되 점령군 간의 충돌방지를 위해 양국 점령지역 중간에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분할점령안을 마련하여 일본군은 서울에서 仁川 또는 남부지방으로, 청군은 牙山에서 平壤으로 후퇴할 것을 요망했다. 그러나 일본측의 일방적인 묵살과 전쟁도발로 이것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故宮博物院 編,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上 (臺北:文海出版社印行, 1970) No.1059·1062·1093·1103·1150·1155.; 陸奧宗光, 앞의 책, pp.76~77, 84~86;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서울: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pp.495~500, 524; 信夫清三郎, 《日本外交史》1, (東京:毎日新聞社, 1974) p.174.

29) 《日本外交文書》27-2, No.1098, pp.363~373.

행사에 중지부를 찍었고 遼東半島와 臺灣・澎湖列島를 淸으로부터 할양받음으로써 淸의 淸 領土분할에 유리한 남북의 전략적 요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淸・日修好條規’에서 규정했던 ‘일본에 있어서의 청국의 領事裁判權’을 철폐하고 淸國에서의 最惠國 待遇를 획득하는 등 淸日條約 관계를 불평등 관계로 개정함으로써 일본이 청국에서 西歐諸國과 동등한 특권을 향유케 되었으며 또한 2억兩의 배상금을 얻어내어 자국의 金本位制 시행은 물론 군비확장을 주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³⁰⁾ 따라서 下關係約은 일본으로 하여금 新興帝國主義國家로서 西歐列強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한 반면 淸과 조선을 半殖民地 또는 식민지로 전환되게 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특히 淸과 조선이 반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利權・租借地・開港場・不平等條約 등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제국주의적 분할의 대상이 되었던 점이 그 원인이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³¹⁾

그러나 下關係約에 의한 일본의 遼東 割讓은 이미 중국 분할을 준비하고 있던 西歐列強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滿洲 진출에 여념이 없던 러시아는 4월 8일 각 국에 통첩을 보내 “일본의 旅順港 취득은 淸・日 양국의 친선관계를 저해하고 동아시아 平和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방해가 될 것이므로 일본에게 그것을 포기하도록 권고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그 당시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었으므로 쉽게 응하였고, 독일은 자국에 대한 ‘러・佛 同盟’(1891~)의 압력을 감소시키려면 러시아의 관심을 동아시아 지방으로 돌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戰後에 나타날 열국의 중국 분할 경쟁에도 뒤지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역시 응하였다. 다만 영국은 일본의 대륙진출 보다 러시아의 南下를 더 두려워하여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였다.³²⁾

드디어 4월 23일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M. A. Hitrovo)・프랑스 공사 하

30) 藤村道生, 《日清戰爭-東亞細亞近代史の轉換点》(東京:岩波書店, 1973) pp.170~171; 中塚明, 〈日清戰爭〉《岩波講座 日本歴史》17, (1962) pp.149~160.

31) 朴宗根 著, 朴英宰 譯, 앞의 책, p.348.

32) 藤村道生, 앞의 책, pp.164~167; 李光麟, 《韓國史講座》5: 近代篇 (一潮閣, 1982) pp.357~358.

르망드(J.Harmand) · 독일공사 구드슈미트(Baron Felix von Gudschmid) 등은 일본의 외무차관 林董을 방문하여 “일본의 遼東半島 領有는 淸國의 首都를 위태롭게 하고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며 동아시아의 영구적 평화에 장애가 되므로 포기하라”고 제의하였다.³³⁾ 이러한 ‘3國干涉’에 직면한 일본은 하는 수 없이 5월 4일 “3국 정부의 우호적인 권고대로 遼東半島의 永久占領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며 淸과 ‘遼東還附條約’(9.22)을 체결, 3천만 兩의 배상금을 받고 포기하고 말았다.³⁴⁾

이처럼 일본은 이른 바 “러시아의 야심과 李鴻章의 哀訴와의 混血兒”³⁵⁾라는 3국간섭으로 遼東占有를 포기하게 되었으나 곧 바로 對러시아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우선 청 · 일전쟁에서 결집되었던 舉國一致의 戰爭熱을 3국간섭의 주도국인 러시아에 대한 敵對感情으로 승화시켜 ‘臥薪嘗膽’이란 구호 밑에 국민적인 對러시아報復感情으로 키워 나갔다.³⁶⁾ 또한 배상금 2억량 중 84.5%를 군사비에 투입하는가 하면 1896년과 99년 전후 2회에 걸쳐 稅金增額을 단행, 군비확충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增稅總額 7,559 만원은 청 · 일전쟁 전의 조세수입 총액과 맞먹는 거액이었다.³⁷⁾

한반도를 둘러싼 러 · 일 간의 대립은 점차 첨예화되어갔다. 러 · 日 양국의 霸權競爭에 따라 조선정부가 친일적 또는 친러적 성향으로 표류하다가 특히 俄館播遷期(1896.2~1897.2)에 이르렀을 때 러 · 일 협상은 마야흐로 질질해져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러 · 일 양국이 「베베르 · 小村覺書」(Waeber-komura Memorandum, 1896.5.14)³⁸⁾를 체결하여 俄館政府의 適法性を 인정하고 한반도에 서의 러 · 日 同數의 駐兵權을 규정함으로써 러시아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가 싶더니 뒤이은 「로바노프 · 山縣議定書」(Lobanov-Yamagata Protocol, 1896.6.

33) 《日本外交文書》28-2, No.671 附記 · 672, pp.14~18.

34) 《日本外交文書》28-2, No.1173, pp.515~518.

35) Paul Clyde, *International Rivalries in Manchuria, 1689~1922*, (Ohio, 1922) pp.41~42; 田村幸策, 《世界外交史》上卷, (有斐閣, 1960) p.321.

36) 朴宗根, 앞의 책, p.348.

37) 中塚明, 앞의 논문, pp.164~165.

38) 日本外務省, 《小村外交史》(東京:原書房, 1966) pp.88~89.

9)39)와 그 '秘密條項'40)에서는 조선에서의 兩國 占領軍 간의 緩衝地를 설정하여
 조선을 그들의 '聯合保護領'41)내지는 '共同占有領'42)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의 滿洲通過權과 遼東에서의 항만 획득 등 「리·清密約」
 (Russochinese Secret Alliance, 1896.6.3)43)에 근거한 그들의 滿洲集中 政策에 따라
 조선을 對日 홍정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44)

그러나 청이 독자적인 철도건설의 용의를 보이는 등 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45) 러시아는 다시 한반도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 군사교관을 증파하고 알렉세
 에프(Kir Alekseevich Alexeev)를 財政顧問 겸 海關監督으로 임명하고 한·러은
 행(1898. 3)까지 설립하는 등 對韓政策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中國 膠州
 灣 占領(1897.11.14)을 기회로 돌연히 旅順을 기습·점령해버렸다(1897.12.19). 이
 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열강들 간에 滿·韓 同時經營으로 비쳐져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46) 이에 러시아는 특히 英·美·日의 對러 連帶可能性이
 우려되어47)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滿洲集中經營을 채택

39) 베·아·로마노프, 앞의 책, p.194.

40)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p.634.

41) 崔文衡, p.21.

42) Malozemoff, op.cit., p.88.

43)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5-支那における列強の角逐-, (東京:鹿島平和研究所, 1970) pp. 25~26.

44) 拙稿, 〈大韓帝國期(1896~1898)의 韓·러關係-韓國朝野의 反러化過程과 러시아의 對應策을 中心으로-〉《史叢》31, (高大史學會, 1987.6.) pp.16~17.

45) ヴェ, 아브알린, 《列強對滿工作史》(東京:原書房, 1973) p.43.

46)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1896년의 「로바노프·山縣議定書」에 의한 滿洲 집중정책과 그의 유보에 따른 1897년의 한반도 적극 진출 등은 모두 대장상 위태의 평화적 침투정책이었는데 비해, 1897년 같은 해의 돌연한 旅順占領사건은 황제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받게 된 外相 무라비요프(Mikhail N. Muraviev)의 무력침략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그것이 정부 기능에 따라 수행되기보다는 이처럼 황제의 측근에 의해 왕왕 수행됨으로 해서 정책상의 혼선을 빚는 일이 많았는데 이럴 때면 으레 대외적으로 이중정책 또는 남득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비쳐지기 일수였다.

베·아·로마노프, 앞의 책, p.214; 《小村外交史》p.113.

47) 《日本外交文書》31-1, pp.267~270; Seung Kwon Synn, op.cit., p.254; 宋麟在, 〈韓半島를 圍繞한 列強間의 交渉關係: 1805~1902〉《省谷論叢》7, (省谷學術文化財團, 1976) p.383; 崔文衡, 〈美國의 필리핀 占有過程〉《金聲近博士還歷紀念西洋史

하고 한반도를 일본에 양보해야만 했다.⁴⁸⁾ 이에 따라 러시아는 1898년 3월에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을 철수시키고 한·러은행을 폐쇄한 다음 드디어 4월 25일에는 일본과 이른바 「로젠·西協定」⁴⁹⁾을 체결, 일본에게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포함한 사실상의 우위를 인정해주고 말았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의 推移로 보아 일본에게 조선침략의 길을 보장해 준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2) 日本政府 當局者の 韓半島中立化 學論

이 당시 日本 朝野에서는 한국중립화론이 소수인에 의해서지만 논의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외강경론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되던 군부실력자 山縣有朋이 일시적이거나 그의 정치적 부상과 함께 한국중립화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그것은 그가 1890년 제1회 제국의회에서 「外交政略論」⁵⁰⁾을 발표하여 러·

學論叢》(1969) p.355: 〈Theodore Roosevelt의 極東政策에 대한 一考究〉《史學論志》(1973) p.9.

48) 《日本外交文書》31-1, pp.116~117.

49) 《日本外交文書》31-1, pp.182~184.

1895년 4월 25일 東京에서 주일 러시아 공사 로젠(Baron Roman Romanovich, Rosen)과 日本外相 西德二郎 사이에 調印된 이른바 「로젠·西協定」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러·日 兩國은 韓國의 主權 및 自主性を 전적으로 인정하며 内部 問題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
 - ② 장래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러·日 兩國은 한국이 러시아나 日本에 助言 및 援助를 요구할 경우, 상호 동의 없이 군사교관이나 財政專門家を 파견하지 않는다.
 - ③ 한국에서 상당수의 일본인이 거주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商業 및 産業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 정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 이 협정은 곧 한반도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러·日 양국이 동등하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실질적 지위를 묵인한 것인데,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킨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우위 인정이란 것이 정치적·외교적 우위까지를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더욱 굳혀 나갈 수 있었다.

50) 山縣有朋의 〈外交政略論〉正本은 흔히 《陸奧宗光文書》에 수록되어 있는 山縣의 〈軍備意見〉을 말하는 바, 《梧陰文庫:井上毅文書》가운데 그 起草稿本이 있는 것으로 보아 井上毅가 기초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餘他 〈外交政略論〉을 보면 〈軍備意見〉과 조선중립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장의 순서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井上文書》에 있는 〈軍備意見〉은 〈山縣首相自衛議〉로 되어 있는데 생략부분이 많다. 《井上毅傳》-史料編 6, pp.206, 204~206; 《梧陰文庫》A-339, A-463; 梅溪昇, 〈教育

일 대결을 公言하면서 동시에 淸·日의 紐帶로 한국중립화를 보장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山縣이 한국중립화를 구상하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관통 철도건설의 착수에서부터 접근해야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관통 철도 건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불안을 느끼면서 대책마련에 腐心했던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를테면 일본은 朝·日 修好條規에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路線에 따라 天津條約의 성립에 이르렀지만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의해 그 독립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런 만큼 '청국은 새로운 사태에 총력으로 대항할 결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天津條約의 유지는 앞으로 지극히 어려운 문제만 야기시킨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⁵¹⁾ 따라서 그로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장래의 長策이 무엇인지? - 과연 天津條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있을지, 아니면 一步를 나아가 聯合保護의 대책을 세워서 조선으로 하여금 公法上 恒久中立의 위치를 갖게 하는 데 있을지 그것이 문제였다.⁵²⁾

결국 山縣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중립화론을 선택하였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井上毅와 보아소나드의 한국중립화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음의 정황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술한 바와 같이 井上毅가 그의 「朝鮮政略」 저술 직후인 1882년 9월 23일에 山縣에게 벨기에·스위스를 모방한 영세중립국을 제안하는 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⁵³⁾ 1883년 5월과 7월 사이에는 베트남을 둘러싼 淸·佛 양국관계의 緊迫化와 琉球藩王 復位 問題를 배경으로 하여 역시 山縣에게 조선을 공법상의 중립국으로 만들 것을 청측에 자문해 주도록 거듭 요청한 일이 있다.⁵⁴⁾ 또한 보아소나드의 한국중립화 방법론인 「恒守局外中立新論」도 그 내용이 山縣의 「外交政略論」

勅語成立の歴史的背景》《明治前期政治史の研究》(未來社, 1963) pp.292~293.

51) 長谷川直子,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朝鮮史研究會論文集》32(東京:綠蔭書房, 1994) p.155.

52) 위의 논문.

53) 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 編, 《井上毅傳》- 史料編 4, (國學院大學圖書館, 1971) pp.614~615, 山縣有朋宛井上毅, 明治 15년(1882) 9월 23일 附 書簡.

54) 위의 책 《史料編》1, pp.355~356, 《史料編》4, pp.617~619.

에 소개되어 있다.⁵⁵⁾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山縣의 한국중립화구상이란 것은 井上毅의 구상이 임오군란 직후와 1883년 봄 이후 수차에 걸쳐 山縣에게 자문의 형식으로 제안되었지만 별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1890년에 이르러 山縣 자신이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실감함에 따라 그의 의견으로 되살아난 것이며 그 가운데 보아쓰나드의 이론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⁶⁾

山縣은 그의 「外交政略論」에서 '조선을 청의 속국화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청이 이미 획득한 거대한 세력은 용인할 것'이라고 하여 淸의 對朝鮮支配 강화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를 단념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청·일 양국의 연대를 통한 공동보호로 조선의 영세 중립화를 도모하려 했다.⁵⁷⁾ 이어서 그는 중립화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아쓰나드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중립화할 나라 자신의 요구 여하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이해가 걸려 있는 隣邦이 중립화를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중립화 成約에 조인한 각국의 의무 등을 덧붙이고 있다.⁵⁸⁾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이러한 한국중립화안은 동시에 표출된 그의 이율배반적인 軍擴論理에 묻혀 버리고 현실적으로는 오로지 그들의 팽창주의 정책에 의해 저질러질 청·일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⁵⁹⁾ 이를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山縣有朋이 1890년에 제안한 한국영세중립론은 한마디로 一口二言의인 欺瞞行爲였다. 그것은 山縣 자신이 군부실력자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이미 1888

55) 國學院大學圖書館 所藏《梧陰文庫:井上毅文書》A-463;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55.

56) 長谷川直子, 위의 논문, p.155.

57)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高橋秀直, 〈1880年代の朝鮮問題と國際政治-日淸戰爭への道をめぐって-〉《史林》71-6, (1988.11) pp.48~57; 長谷川直子, 위의 논문, p.140.

58) 주 55).

59)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갑신정변 전후부터 6개년간(1883~1889) 군비확충에 주력하였고, 1890년에는 山縣 자신이 조선의 중립화를 구상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을 일본의 利益線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일본은 1893년에 총 지출액의 32%를 군사비로 편성할 뿐만 아니라 出師準備品取扱委員會를 구성하고 戰時大本營條例를 제정하여 對淸開戰의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

년에 ‘對政府意見書’를 제출, 러·일 대립을 예고했고 1889년에는 제1차 山縣 內閣을 구성하면서 1단계 군비확장계획을 종결지었는가 하면, 공공연히 조선에 防穀令事件을 일으켜 청의 내정간섭에 도전, 노골적인 反淸行爲를 자행해오던 중 드디어 1890년 제1회 帝國議會에서 소위 ‘山縣有朋軍備意見’을 발표하여 러·일 대결을 公言함과 동시에 청·일 공동보장하의 한국중립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정치 행태를 감안할 때, 그가 제기한 중립론은 (그의 표현대로) 시베리아 철도건설의 착수로 조선의 독립이 위협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청의 총력대비 태세가 되어 있을 수록 天津條約의 유지가 難望’이라는 자기판다⁶⁰⁾에서 나온 응급처방으로 一見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뒤이은 그의 행보는 이와는 전혀다른 軍擴論理의 관철 그것 뿐이었다. 재론하자면, 山縣이 현실적으로 제1회 제국의회에서 군확의 입장을 호소한 후 러·日戰爭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淸·日戰爭까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⁶¹⁾ 동시에 그가 구상했던 조선중립화 구상은 참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모순된 것이었다.⁶²⁾ 따라서 그의 한국중립화안은 러·일전쟁의 緒戰格인 청·일전쟁 준비를 위한 은폐수단이거나 일시적 속임수 내지 음흉한 二重性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모순된 입장은 결국 論者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 이를테면, 壬午軍亂 이후 형성된 청·일 대결구도가 巨文島事件을 계기로 영·러 세력의 동아시아침투에 대한 대항구도로 전환되었으며 그러한 분위기가 제1차 山縣內閣(1889.12~1891.4)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시각에 있어서 이 주장은 그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증거로 활용되었다.⁶³⁾ 따라서 이 주장은 곧이어 발발한 청·일전쟁을 전혀 조선 내부사정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돌발적인 군사 충돌 때문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되었다.

60) 長谷川直子, 앞의 논문, p.155.

61) 大日本帝國議會誌刊行會 編刊, 《大日本帝國議會誌》第一卷(1926) p.469.

62) 永井秀夫, 《明治國家形成期の外政と内政》(北海道大學出版會, 1990) p.19.

63) 高橋秀直, 앞의 논문, pp.48~57.

한편 청·일전쟁 초기 일본 정부는 열국과의 외교관계와 불투명한 戰局의 장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확고 부동한 對 朝鮮 정책을 채택할 수 없었다.⁶⁴⁾ 더욱이 ‘[우리의] 對朝鮮政略은 외래사정에 밀려 언제나 물러서거나 연기되는 등 느슨했다.’는 그들의 자평 뿐만 아니라 왕왕 다른 사건과 연루된 副題들의 속출로 기존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⁶⁵⁾ 그러나 7월 28일에 陸奧宗光 외무대신이 大鳥公使에게 내린 訓令 중에서 大院君 政權 내에 日本顧問官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라고 한 것은⁶⁶⁾ 일본정부가 朝鮮을 保護國化(‘埃及化’)⁶⁷⁾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최초의 徵表라고 말할 수 있다.

日本內閣은 朝鮮의 장기적 내지 근본적 처리방안을 8월 17일에 가서야 정식으로 거론했는데 이 날의 日本 閣議에서 陸奧은 4개의 ‘조선문제에 관한 장래 일본의 정책 결정을 위한 閣議案’⁶⁸⁾을 제출하였던 바 그 내용 중에 한국중립화 구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내용인 즉 그는 伊藤博文 수상에게 4箇案의 代案을 제시하면서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⁹⁾

첫째, 朝鮮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자국의 운명을 전혀 自力에 맡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朝鮮의 능력이 워낙 부족하므로 자칫 청의 간섭과 친청 정부의 등장과 같은 종속관계의 재현이 가능하여 청·일 간의 전쟁 재발이 우려된다.

둘째, 朝鮮을 장차 명의상의 독립국이 되도록 일본이 이를 보호해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열강들의 비난과 시기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들이 朝鮮을 침략한다면 일본 단독으로 보호하기가 불가능하다.

64) 《蹇蹇錄》 p.130; 柳永益, 앞의 책, p.14.

65) 《蹇蹇錄》 p.131.

66) 《日本外交文書》 27-1, No.425, p.632.

67) 柳永益, 앞의 책, p.14. 일본의 위정자가 1894~1895년 간에 장래의 朝鮮을 영국 보호하의 埃及(이집트)에 比較·考量한 사실은 다음 史料에서 추측된다. 《日本外交文書》 27-1, No.289, p.47; A.M.Pooley, ed., *The Secret Memoirs of Count Tadasu Hayashi*(New York and London: G.P.Putnam's Sons., 1915), p.49.

68) 《日本外交文書》 27-1, No.438; 《日本外交文書》 28-1, No.298;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下, pp.91~96.

69) 《蹇蹇錄》 p.129, pp.134~138; 柳永益, 〈清日戰爭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井上馨公使의 朝鮮保護國化 企圖를 中心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清日戰爭을 戰後한 韓國과 列強》 (1984) pp.133~134.

셋째, 영국이 권고한 바에 따라 청·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 영토를 보전해 준다. 이 경우에 만약 청국에 있어서 이미 잠재의식화된 그들의 종주권 주장이 되살아난다면 양국 협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공동 출병과 공동 내정간여 그 자체도 상호 충돌의 소지가 있어 역시 청·일전쟁의 재연이 우려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열국 보장에 의한 영세중립국화 방안이다. 陸奧는 이 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이 자력으로 독립국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제국이 獨力으로서 이를 보호함을 이롭지 못하다고 하고, 역시 日·清 양국이 그 독립을 담보한다는 것도 마침내 피차의 협동 일치를 얻을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는 조선으로 하여금 세계의 중립국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歐美 諸國 및 청국을 불러들여 조선국을 마치 유럽에서의 벨기에·스위스와 같은 위치에 세우는 일 뿐이다.⁷⁰⁾

내용인 즉 위의 세가지 제안 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한 네번째 대안은 한반도 중립화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보았다.

조선국에 가장 이해관계가 큰 것은 일·청 양국으로서 이번의 교전 같은 것도 일·청 양국 간의 이해 충돌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전쟁의 결과에서 파생된 명예와 이익이라는 것은 본래 다른 歐洲 各國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를 나누어주려 한다는 것은 속담에 이르는 바대로 '개뼉을 잘라 매먹이로 준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제국의 손실이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비쳐져 제국민들이 매우 불만족해 할 터인 즉, 제국정부가 大兵을 동원하고 거액의 軍資를 쓴 결과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도저히 여론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게 될 것이다.⁷¹⁾

陸奧의 이같은 변명은 조선중립화론이 조선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선택일지라도 일본 국내 여론 앞에는 굴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여기서 陸奧는 일본

70) 《蹇蹇錄》, p.138; 《日本外交文書》27-1, No.438, pp.636~649.

71) 《蹇蹇錄》, pp.138~139.

의 청·일전쟁 도발 의도를 스스로 고백한 셈인데 이것은 그 자신만이 아닌 당시 일본정부와 일본인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合理와 矛盾의 混淆는 전적으로 輿論 때문만도 아닌, 개인적인 情緒에서 나온 것임을 그가 스스로 고백한 다음의 글이 증명해 주고 있다.

조선을 적당히 개혁시켜 작지만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체면을 서게 해주어 훗날 우리나라가 청국 또는 러시아와 문제가 생겨날 때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보장적 성격으로 도와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아주 경솔한 의견(인용자 방점)이긴 했으나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列國會議을 소집하여 조선을 유럽에서의 벨기에·스위스처럼 열강국이 보장하는 중립국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⁷²⁾

곧 陸奧는 《蹇蹇錄》에서 그 자신이 마지막 代案이라고 한 韓國中立化論을 스스로 ‘아주 경솔한 의견’으로 비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중립화안은 원초적으로 淸의 對韓宗主權을 배제하고 중립국으로 만든 다음에 일본의 보호국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모순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底意 때문에 마지막 代案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립화 안은 당시의 각료회의에서는 가결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陸奧의 4개 案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일본 내각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他日로 미루되, 당분간 제2안(乙策)의 大意를 對韓政策의 지표로 삼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乙策은 곧 陸奧의 지론인 보호국화 안이었다. 일본정부는 청·일 전쟁 종결 후 잇따른 (1895년 5월 25일과 6월 4일) 閣議를 통하여 對韓政策을 새로 정립할 때까지 대체로 이 안 대로 추진해 나갔다. 곧 陸奧가 大鳥公使로 하여금 조선과 <暫定合同條款>이란 利權관계 條約과 <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이란 군사동맹 등을 8월 20일과 26일에 각각 체결케 한 것도 이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⁷³⁾

72) 위의 책, p.47.

73) 위의 책, pp.129~130, 139.

3) 英國 領事の 仁川港 戰時局外中立 提案

조선정부가 東學農民軍에 의한 全州城의 함락으로 1894년 6월 4일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청국은 6월 8일 군사 약 2,800명을 牙山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天津條約을 근거로 동년 6월 10일 약 8,000명의 대군을 동학농민군 봉기와 관련 없는 仁川으로 급파함으로써 사태는 심각해졌다⁷⁴⁾ 더욱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全琫準(1854~1895)이 6월 11일에 全州城을 자진 철수함에 따라 출병 명분이 퇴색되었는데도 일본군은 袁世凱와 조선정부의 공동철병 제의를 묵살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청과의 개전을 노리고 있었다.⁷⁵⁾

袁世凱는 6월 17일에 大鳥圭介공사를 만나 양국군의 동시철병 문제를 다시 협의하였으나 아무런 전진을 보지 못하자 은밀히 각 국 외교관들에게 동시 철병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임시대리 공사는 프랑스 이사관과 함께 大鳥공사에게 天津條約에 근거한 동시철병의 이행을 촉구하였다.⁷⁶⁾

한편 일본은 열국 외교관들이 일본의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들의 진의를 살피기 위하여 6월 23일에 러시아와 프랑스의 외교관들을 초청, 향응을 베풀고 일본의 입장을 여러 모로 설득해 보았지만 그들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⁷⁷⁾

이처럼 청·일 양국군의 조선진주로 양국 간에 전운이 감돌게 되자 조선주재

74) R.S.McCordock, *British Far Eastern Policy, 1894~19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1) pp.79~80; 金昌洙, 〈東學農民革命과 外兵借入問題〉《東國史學》15·16, (1981.5) pp.38~50.

이때 파견된 청·일 양국군의 수를 청국군 1,500명, 일본군 10,400명이라고도 한다. C.J.Eugene Kim and Han-kyo Kim, *Korea and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78.

75) 《蹇蹇錄》, pp.35~43; 《日本外交文書》27-2, No. 550 부속서 2·548.

76) 杉村濤, 〈明治二十八年在韓苦心錄〉, 한상일 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건국대학교 출판부, 1993) p.109.

77) 위의 책.

각 국 외교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태도를 밝혀야만 했다. 이를 즈음에 조
 선주재 영국 부영사 폭스(Harry H. Fox)와 濟物浦(仁川) 주재 영국 부영사 윌킨
 슨(W. H. Wilkinson)은 각 국 대표들에게 자국의 권익보호라는 명분 하에 仁川
 港의 戰時局外中立을 제의했던 것이다.⁷⁸⁾ 굳이 영국이 먼저 제의한 것은 영국이
 對淸貿易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경제적·상업적으로
 큰 권익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894년 당시 열강의 대청무역에
 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4%, 총 수출입상품의 영국상선 이용율은 85%이었
 다.⁷⁹⁾ 따라서 영국영사들은 仁川港이 서울의 關門일 뿐만 아니라 各國居留地의
 설정 등으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큰 곳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仁川港 전체를 중
 립항(neutral port)으로 하여 일본군의 상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군수품·양식 운
 반을 포함한 군사행동 등 일본의 팽창을 불허함으로써 금명간에 발발할 것 같은
 청·일 전쟁의 戰禍를 피해보려 하였다.⁸⁰⁾

영국의 적극적인 인천항 전시국외중립 제안은 결국 열국 외교관회의에 상정되
 어 7월 7일 이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가 서울의 外衙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
 의의 주요 안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천의 각 국 거류지 안에서의 일본군의
 숙박을 거절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인천주둔 일본군이 일본거류지 밖의 각 국
 거류지 내 일본인 가옥에도 다수 숙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인
 천항 전체를 국외중립지로 선언하여 일본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문제였다.⁸¹⁾

이에 太鳥 공사는 일본이 제시하는 몇 가지 조건을 열국이 승락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이를테면, 첫째, 인천항에 있어
 서 일본의 兵力과 軍器 등의 상륙 및 乘船에 장애가 없을 것, 둘째, 同港 일본거
 류지 내의 인민을 보호함에 필요한 일본 兵員을 주둔시킬 것 등이었다. 또한 이
 러한 조건을 열국이 승락하면 일본은 조선병 또는 외국병이 와서 일본병을 공격

78) 洪淳鎬, 《韓國國際關係史理論》- 時代狀況의 力學構造 -, (서울:大旺社, 1993) p.353.

79) William L.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 (New York: Alfred A. Knopf, 1972) p.167.

80) 仁川府廳 編纂, 《仁川府史》(京城:近澤商店, 1933) p.411; 洪淳鎬, 앞의 책, p.353.

81) 〈在韓苦心錄〉 p.109; 《新聞集成明治編年史》9 (東京:財政經濟學會, 1937) pp.182~183 明治 27년 7월 7일, 明治 27년 回顧의 日記.

하거나 병력으로써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때 이에 항거하여 일본인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該 港 駐在 日本兵은 결코 각 국 거류지를 향하여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도 하였다.⁸²⁾

두 가지 案件을 놓고 열국 대표들이 협의한 결과 첫째 안은 가결되었으나 둘째 안인 인천항 전체의 국외중립선언 문제는 일본군에 대한 방해공작으로 이해됨으로써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 짓지 못하고 7월 10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⁸³⁾

그러나 제 2차 회의도 우연히 韓·日 간의 ‘老人亭會議’⁸⁴⁾와 겹치는 바람에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려 7월 16일 외아문에서 제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일본공사 大鳥는 三井 交際官試補와 國分象太郎 書記生을 대동하고 회의에 참석하였고 청국 대표로 참석하려던 袁世凱는 공사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다.⁸⁵⁾

이 날 회의에서도 영국 영사는 仁川港의 중립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여타 국가가 보인 반응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였다. 미국측은 주영 미국공사 바야드(Thomas F. Bayard)가 “미합중국은 寬大中立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청국에 강박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동맹조약 또는 그 같은 結合에는 참가하지 않겠다.”⁸⁶⁾고 밝힌 것처럼, 청·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은 물론 인천항 국외중립선언 등과 같은 집단행동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⁸⁷⁾ 독일 측은 일본주재 독일특명전권 공사 구드슈미트를 통하여 본국으로

82) 이 때 大鳥 공사가 내린 결단은 일본 정부의 훈령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그 자신의 包攬를 담은 案에 의한 것이었다. 《仁川府史》 p.412.

83) 〈在韓苦心錄〉 p.109.

84) 1894년 7월 10일부터 서울 남산에 있는 閑泳驛의 별장 老人亭에서 일본이 ‘강요한 조선내정개혁안’에 대하여 조·일 양측이 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회의는 조선측이 일본군의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개혁을 위하여 7월 13일 枚正廳을 설치함으로써 결국 결렬되었다. 《日省錄》 高宗 31년 6월 13일 條: 〈在韓苦心錄〉 pp.110~114.

85) 〈在韓苦心錄〉 p.114; 《新聞集成明治編年史》 9, p.100. 明治 27년 7월 18일 仁川の局外中立地否決さる袁世凱の列席拒絕.

86) 《新聞集成明治編年史》 9, p.123. 米國は寬大中立 明治 27년 8월 26일 時事; 李鉉宗, 〈韓未에 있어서의 中立化論〉 國土統一院特殊課題研究報告書,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1978) p.16.

부터 국외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요지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였으며,⁸⁸⁾ 프랑스는 이미 영국 외상 킴벌리(John W.Kimberley, 1826~1902)로부터 청·일전쟁에 대한 국외중립태도를 권유받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에 응할 뜻을 회답해 놓은 상태였다.⁸⁹⁾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러시아공사 웨베르(K.I.Waeber)의 강력한 반대였다. 따라서 인천항국외중립선언에 관한 회의는 이번의 제 3차 회의로써 완전 결렬되고 말았다.⁹⁰⁾ 러시아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심지어 일본 측에서도 ‘그 까닭을 지금 깊이 탐구할 여가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⁹¹⁾고 할 정도로 전후 사정의 설명이 없는 전격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다 앞선 7월 13일 北京에서 조선으로 귀임한 웨베르가⁹²⁾ 14일 주한 일본공사관을 방문하여 大鳥공사를 면담한 다음 떠나면서 공사관 서기관인 杉村濤에게 은밀히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청국은 老國이지만 그 군대는 방어에 강하므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귀국이 만약 청국과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기가 지연 되면 청국의 군비가 점점 정비될 것이다. 현재 청국정부는 밖으로는 평화를 희망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안으로는 몰래 군비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⁹³⁾

사실 조선정부와 청국의 袁世凱는 웨베르가 청에서 귀임하면 자기들 편을 들어 강력히 원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웨베르는 귀임후 얼마동안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 그들의 기다림을 보람없게 만들

87) 전쟁이 임박하자 주미 조선공사 李承壽가 6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그레삼(Walter Q. Gresham) 미국 국무장관을 방문, 미국의 개입을 요청했으나 7월 9일 그레삼은 이에 대해 “엄정하고도 편파성 없는 중립”(Strict and imparital neutrality)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불개입을 표명하였다. 洪淳鎭, 앞의 책, p.352.

88) 《新聞集成明治編年史》9, p.128. 明治 27년 9월 2일 時事, 獨逸に局外中立.

89) 위의 책 9, p.148. 明治 27年 10월 3일 時事. 英國は各國に向つて局外中立を懲懲.

90) 《在韓苦心錄》p.114.

91) 《仁川府使》p.412.

92) 웨베르는 청국 주재 러시아공사가 부재중이어서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1894년 6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北京에 갔는데 조선의 형세가 긴박해지자 다시 본국의 훈령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在韓苦心錄》p.113.

93) 위의 책, p.113.

더니 이제와서 이처럼 은근히 일본에게 開戰을 촉구하였던 것이다.⁹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영사에 의해 제기된 인천항국의중립 노력이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됨으로써 한 때 영국 영사측의 불만표시가 있었던 것 같으나⁹⁵⁾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며 각 국은 다만 뒤이어 발발한 청·일전쟁에 불개입 태도를 표방하면서 사태를 관망할 따름이었다.

청·일전쟁을 목전에 두고 제기되었던 仁川港局外中立運動에 있어서 조선주재 영국 영사들이 적극적이고 독일·프랑스 측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러시아 공사가 유독 반대에 나서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청을 둘러싼 영·러 양국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영·러 양국이 일본의 급격한 군비증강을 목도했기 때문에 만일에 청이 패배라도 한다면 地政學上으로 이웃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들의 중국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판단했고, 반대로 영국은 당시 그들이 확보해 놓은 인천항의 物動量⁹⁶⁾ 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淸이라는 거대한 독점시장이 타격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결과적으로 청의 패전 직후에 나타난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3국의 對 일본 외교적 간섭 때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나 그 후 청에 대한 열강 간의 세력범위설정이 본격화됨으로써 영국의 활동영역이 실제에 있어서 전보다 제한되었던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4) 英國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890년대에 있어서 한국중립화론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은 것은 1894년의 격동기(청·일전쟁)와 1895년 10월의 (일본에 의한) 閔妃弑害事件을 거친 1896년의 국면에 들어서서였다. 이 당시 외교차원에서 국제보장 하의 한국중립화 논의의

94) 위의 책, p.113.

95) 영국영사는 청국을 위하여 仁川 각 국 거류지에 일본병의 屯宿을 금하고 일본의 군용 전선의 통과를 막았으며 더구나 부인을 동반하여 까닭 없이 일본 哨兵線을 犯하여 故意로 일본군의 행동을 방해했다고 한다. 《仁川府史》 p.412.

96) William L. Langer, op.cit., p.167.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영국이었다.⁹⁷⁾

영국은 동아시아에 걸쳐 있는 그들의 막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1880년대에 오코너의 先保護 後中立論, 로즈베리의 열국보장 하의 중립론 같은 주장을 러시아의 남하저지와 巨文島 撤收의 조건으로 내어 놓았었고⁹⁸⁾ 청·일전쟁 직전에는 전쟁방지를 위한 중재역할을 자임하여 청·일 양 점령군 간의 中立地帶 설정 또는 仁川港局外中立 宣言을 제의한 일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⁹⁹⁾

그러던 영국이 俄館政府 시기인 1896년 5월 1일에 또다시 주일 영국공사관을 통하여 일본의무대신 陸奧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금일 조선의 형세는 러시아로 하여금 그 보호권을 선언하도록 만들거나 조선국 왕 스스로 청국의 속방임을 선언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또는 열강 담보 하의 독립국으로 선언하는 제안에 동의할 것인가?¹⁰⁰⁾

陸奧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조희에 회신하기에 앞서 주영 일본공사 加藤高明(1860~1926)과 주일 영국공사 사토우(Ernest Satow)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확인하고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첫째, 영국정부가 이 일에 진정으로 주동적 역할을 할 것인가, 둘째, 이미 다른 열강에게 협상을 시도했는지 또는 그 중 어느 국가와 함께 시도할 것인지, 셋째,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聲援을 얻었는지 또는 얻을 것인지, 넷째, 러시아의 의향은 어떠한지 하는 것 등이었다.¹⁰¹⁾

이에 영국정부는 이런 저런 다양한 반응을 보여 왔다. 동년 5월 4일 사토우 공사는 陸奧를 만나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국중립화에 대한 영국의 주동적 역할이 훈령의 문면으로 보아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선문제를 둘러

97) 梶村秀樹, 〈러일전쟁과 조선의 중립화론〉, 楊尙弦 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사계절, 1985) p.342.

98) 《日本外交文書》18, No.114, 169; 渡邊修二郎, 《東方關係》p.325; 徐仲錫, 〈近代極東國際關係와 韓國永世中立國論에 對한 研究〉《慶熙大論文集》4, (1965), p.302.

99) 주 28) 참조. 1-3) 참조.

100) 《日本外交文書》29, No.300, p.582.

101) 《日本外交文書》29, No.301·303·304, pp.582~585.

싼 러·일 협상을 거론, 그것이 타국과의 새로운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는지 염려된다고 하였다.¹⁰²⁾ 이 무렵 영국 외무성의 차관과 차관보도 각자 加藤 공사를 통하여 일본이 동의한다면 영국은 솔선 진력할 것이고, 또한 이미 독일·미국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제의하였으며 오로지 러시아만 반대할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외무차관보 벨치는 일본의 山縣有朋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Nicholai II, 1868~1918)의 대관식에 참석 차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증거로 러·일협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몹시 신경을 썼다.¹⁰³⁾ 5월 13일에는 영국 외상이 加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번 제안에 일본이 주동이 되어 달라는 뜻은 없고 참여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본 것 뿐이며, 또한 조선의 근황이 워낙 불안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영국은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이익이 러시아·청·일본에 비해 미미한 만큼 발의자로서는 부적당하므로 영국으로서만 열국 간의 협상에 적극 협력하여 추종할 따름이라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 일의 성사에는 독일을 포함한 열강 간의 협상이 상책이라하고 특히 러시아가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는 그들의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전에는 한반도 침략에 대한 적극성을 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문도사건 때의 약속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¹⁰⁴⁾ 이에 加藤은 러시아의 약속은 청과의 약속일 따름이며 그나마도 청은 현재 그 국제적 위상이 저하되어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외상은 러시아의 해군력으로서만 한반도 침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휴지처럼 취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 다음,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의 滿洲通過權을 얻을 것이라는 풍설이 있다 하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通商上の 목적일 것이며 게다가 청국의 승낙이라도 얻는다면 타국이 방해할 수는 없고 또한 러시아가 廣大無邊한 領土國家로서 海岸出口를 희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¹⁰⁵⁾ 같은 날 차관보 벨치는 加藤을 다시 만나 일본은 영국의 참뜻 즉 한

102) 《日本外交文書》, No.304, pp.584~587.

103) 《日本外交文書》, No.302-305, pp.583, 587.

104) 《日本外交文書》, No.312, pp.583~595.

국중립화로 인한 이해 득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러·일 양국 간의 협상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 놓았다.¹⁰⁶⁾

이와 같은 영국측의 반응을 검토해보면, 조선에 있어서 俄館播遷이라는 새로운 국면 곧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영국으로서 조선이 혹시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懼心이 생긴데다가, 더욱이 山縣有朋의 모스크바 행이 러·일 협상의 가속화를 예감케 하는 것이어서 동아시아 정세의 함수관계상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재론하자면 영국은 조선으로 하여금 어느 일방에 기울어지지 않은 현상 그 자체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러·일 협상을 저지하는 대신 일본을 끌어들인 열강 보장 하의 한국중립화 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陸奧 외상은 주일 영국공사에게 山縣의 러시아 행에 따른 러·일 협상 云云은 반대파 신문이 퍼뜨린 풍설로서 실제로 아무런 협상이 없으며 다만 조선문제가 있어서 당장 방치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어떤 일시적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¹⁰⁷⁾ 러·일 쌍방이 자제해야 하는 (俄館政府下의) 현실에서는 영국의 중립화 제안과 같은 행위의 실천에는 영

105) 위의 문서.

106) 위의 문서.

107) 을미사변(1895.10.18)으로 優位를 점했던 일본이 俄館播遷(1896.2.11)으로 사태가 역전되자 러시아에 협상을 제의하여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는데, 그 결과로 러·일 간에 채택된 「베베르·小村覺書」(Waeber-Komura Memorandum, 1896.5.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왕이 환궁하더라도 그 안전에 대해 疑懼를 품지 않을 때가 되면 還宮을 進言하고 일본 대표자는 日本 壯士들의 단속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보증한다. ② 관대온화한 인물을 내각에 등용할 것을 국왕에게 추천한다. ③ 釜山·漢城間의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日本衛兵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위병을 될수록 빨리 철병하고 憲兵을 두나 그 총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국정부가 안녕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각지로부터 撤退할 것 ④ 만일 한국인으로부터 습격될 경우에 대비하여 각 개항장의 일본인이나 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漢城에 2개 中隊, 釜山에 1개 中隊의 日兵을 두나, 단 1개 中隊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거류지 습격의 우려가 없지 않으면 점차 이를 撤退할 것. 러시아도 또한 각지에 日本兵員 수에 초과하지 않는 수의 위병을 둘 수 있으나 諍謐해지는대로 撤退한다. 이 각서에서 러·일 同數의 駐兵權이 규정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본은 그 만큼 減員과 撤收를 甘受해야 했고, 러시아는 새로운 권리를 獲得한 셈이 되었다. 《小村外交史》 pp.88~89; 拙稿, 〈大韓帝國期(1896~1898)의 韓·日關係-韓國朝野의 反러化過程과 러시아의 對應策을 중심으로-〉 《史叢》 31, (高大史學會, 1987) pp.3~4.

국이 술선하고 일본이 招誘되는 현상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¹⁰⁸⁾

지금까지 영국이 제안한 한반도중립화안에 대하여 영·일 양국 간에 설왕설래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俄館播遷期間이라는 비상사태하의 조선정부가 그 구상에 호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러·일 대립이라는 양 극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한에서는 한반도에 實 利益이 적은 제 3국이 중립화를 주장한다는 것도 한 갓 일방적인 공상에 불과할 뿐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은 향후 비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중립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차 그 열의가 식어가서 마침내 영·일 동맹의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⁹⁾

2. 大韓帝國의 韓半島中立化 推進 試圖

1) 大韓帝國의 對外危機意識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公使館에서 환궁한 高宗은 동년 8월에 연호를 光武로 고친 다음 10월에는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大韓帝國으로 바꾸어 이를 선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오군란 이래로 국가의 주권을 위협해 오던 淸·日本·러시아 등의 外勢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갖는 시대적 사명은 기본적으로 외세의 내정개입과 열강의 이권침탈을 저지시키고 나아가서는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질 때에 열강의 침략을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民族自衛力量을 배양하도록 체제를 개혁하는 일이었다.¹¹⁰⁾

108) 《日本外交文書》29, No.304, p.586.

109) 梶村秀樹, 앞의 논문, p.343.

더욱이 이 시기는 1896년의 「베베르-小村覺書」와 「로바노프-山縣議定書」의 체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간의 세력균형이 모처럼 이루어진 이후여서 알렌의 지적처럼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 종주국이 없었던 시기”¹¹¹⁾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 간의 관계정상화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1899년 淸에서 義和團事件이 발발함에 따라 한국의 이러한 기대는 일시에 무너져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청·일전쟁 이후 이미 열강에 의한 영토분할의 각축장이 된 청국에서 동년 11월 山東에서 義和團이 봉기하여 배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독일·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8개국은 그들의 이권과 교민의 보호를 이유로 연합군을 조직하여 동년 8월 15일 北京을 점령하였다.¹¹²⁾ 그런데 義和團事件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파동이 滿洲에까지 미치게 되어 결국 러시아 군의 개입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東北亞 情勢를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고 그만큼 한국의 위기의식은 수위를 높혀 갔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심화된 열국의 중국분할을 주목하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危懼心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義和團事件과 같은 民亂이 한국 내에 일어날 경우 이의 진압을 이유로 열국이 출병하게 되고 그것이 조선분할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파탄되고 열국 간 상호 견제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던 평화가 쉽게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高宗은 義和團事件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열국의 출병이 청국의 분할을 가져올 가능성을 걱정하여 열국의 주한 사신들에게 사건의 귀추에 관하여 타진한 일이 있다.¹¹³⁾

110) 慎鐸廬 〈光武改革論의 問題點〉 《創作과 批評》 49, (1978 가을), pp.143~183.

111) 알렌은 1896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를 유일하게 한국에 종주국이 없었던 시기라고 하였다. 뉴욕시립도서관 소장, 「알렌文書」 The Horace Newton Allen Manuscript Collection(이하 Allen MSS) 중 미국해군대학 강연내용, 1906년 6월.

112) 《小村外交史》 pp.164~165.

또한 1900년 6월 13일에는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브(A. I. Pavlov)가 高宗을 알현한 자리에서 滿洲에서의 자국 군 大部隊의 활동을 배경으로, 러·일은 군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바, 러시아가 호랑이라면 일본은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비유하면서 조선이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亡國으로 연결되는 처사라고 서슴없이 경고했다. 이것은 러시아의 새로운 협박의 시작이었다.¹¹⁴⁾

드디어 1900년 7월에는 러시아군에게 쫓긴 義和團徒가 한국북부에 침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¹⁵⁾ 이에 고종은 이미 러시아의 東清鐵道에 대해 위협을 느껴왔고 러시아군의 滿洲 침입은 조선침입의 前兆라고 생각하던 터였으므로¹¹⁶⁾ 러시아군이 틀림없이 義和團徒를 추격, 한국에 침입할 것으로 예견하여 몹시 불안해 하였다. 실제로 7월 22일에는 러시아공사 파블로브가 義和團徒의 진압을 이유로 러시아군의 越境을 허가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해 왔다. 그는 러시아군의 한국 영내 진입허가 요청 사실을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칙명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¹¹⁷⁾ 공연히 한국 북부의 방위는 러시아가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言明하기도 하였다.¹¹⁸⁾

이와 같이 주한 러시아공사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정보가 한국의 朝野를 더욱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국문제에 관한 ‘러·日密約說’이었다. 이를테면 러·일 양국이 한국분할에 관하여 모종의 양해에 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한국에 出兵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이러한 한국측의 우려는 결국 杞憂가 아니었다. 7월 30일자 的《皇城新聞》이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한국문제에 관련된 모종의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¹¹⁹⁾ 이러한 정보의 震源地가 러시아임을 밝혔다.

113) 山脇重雄所藏,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號, pp.122~124, 1900년 6월 28일부 靑木宛林機密信.

114) 위의 기록, pp.110~111, 1900년 6월 20일부 靑木宛林 機密信.

115) 《日本外交文書》33 별책 3, p.384, 1900년 7월 6일, 18일부 靑木宛機密信.

116) 〈竹內綱自敘傳〉, 吉野作造外 編, 《明治文化全集》22: 雜史編, (日本評論社, 1923) p.460.

117) 《日本外交文書》33 별책 2, pp.390~392, 1900년 7월 24일부 靑木宛林 電報.

118) 《日本外交文書》33 별책 2, pp.394~396, 401~402, 1900년 7월 24일, 8월 2일부 靑木宛林 電報.

119) 《皇城新聞》光武 4年 7월 30일 記事.

사실인즉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세력범위 확정을 제안했던 것이다. 1900년 7월 파블로브가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1860~1939)에게 러·일 양국 간 한국의 세력범위 확정과 각자의 세력범위 내에서의 질서보존을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¹²⁰⁾ 이러한 제의는 東京에서도 동시에 행하여졌다. 곧 주일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A.P. Iswolskii, 1856~1919)가 青木周藏(1844~1914) 외상을 위시하여 山縣有朋 수상과 伊藤博文에게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¹²¹⁾ 러시아 외교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북부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었는가를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러시아가 내어 놓은 한국에 있어서의 勢力範圍 劃定案은 일본측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伊藤博文·山縣有朋·井上馨 등이 러시아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바¹²²⁾, 山縣은 1900년 8월 20일자 '北淸事變善後策' 이라고題한 意見書에서 한국에서의 러·일 양국의 세력범위로써 西로는 大同江, 東으로는 元山港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함이 적당하다고 논하였고,¹²³⁾ 井上은 일본의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러·일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세력범위 확정론을 지지하였다.¹²⁴⁾ 伊藤 역시 井上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 시기에 한국북부를 러시아에 맡겨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¹²⁵⁾

한편 외무대신 青木周藏과 주러 공사 小村壽太郎은 러시아가 滿洲를 계속 점령한다면 일본은 한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분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滿·韓 交換을 주장하였다.¹²⁶⁾ 특히 小村은 이미 7월 22일자로

120) 《日本外交文書》33 별책 2, p.386, 1900년 7월 19일부 青木宛林 電報.

121) 《日本外交文書》33 별책 2, pp.390~392, 1900년 7월 23일, 24일부 青木宛林 電報; 淺野長武外 編, 《近衛篤磨日記》第3卷(鹿島研究所出版會, 1968) p.247.

122) 《近衛篤磨日記》3, p.247.

123) 德富蘇峰 編述, 《公爵山縣有朋》下卷, (山縣有朋公記念事業會, 1933, 原書房 復刻, 1969) p.486;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pp.262~264.

124) 井上馨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5권 (內外書籍, 1934, 原書房復刻, 1968) p.3.

125) 日本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 《都築馨六關係文書》수록, 1901년 1월 9, 10일부 都築馨六宛井上馨書翰;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87) p.120.

126)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856~1905, Microfilm F. O.46, No.528, Despatch 1900 (August October), pp.15~21, Satow to Salisbury, August 6, 1900(No.122); 《日本外交文書》33, p.700, 小村駐露公使

靑木 외상에게 보낸 전보에서 러시아가 일본과의 협정을 바란다면 일본은 이에 응해도 좋지만 그러할 경우 러·日이 한국과 滿洲에서 각자의 ‘自由行動權’(free hand)을 가질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¹²⁷⁾

일본의 육·해군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이를테면 일본이 義和團事件을 기회로 한국에 출병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한국을 보호국화 해야한다는 강경론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고, 다른 한편 한국을 三分하여 北部 2 道를 러시아의, 南部 3 道를 일본의 영토로 하고 中部 3 道는 한국의 고유영토로 한다는 식의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상안을 생각하는 자도 있었다.¹²⁸⁾

이러한 정부나 군 내부의 의견에 대하여 러시아의 제안을 전면 거부해야한다고 정부를 강압한 것은 近衛篤磨(1863~1904)를 중심으로 하는 ‘東亞同文會’였다.¹²⁹⁾ 이들은 차라리 이 기회에 한국에 출병해야 한다거나 近衛篤磨처럼 ‘韓·

宛靑木電報：角田順，《滿洲問題と國防方針》(原書房，1967) pp.36~37.

127) 《日本外交文書》33, p.699, 1900년 7월 22일부 靑木宛小村電報.

128) 《近衛篤磨日記》第3卷, pp.207~209, 1900년 7월 4일：日本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齋藤實關係文書》1, 海軍關係書類, 2005~2025, 2029 〈1900年日記〉卷末.

129) 東亞同文會는 이 당시 일본의 大陸政策에 관여하던 민간단체인데 기존의 東亞會와 同文會를 1898년 11월에 통합하여 발족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1897년 봄에 조직된 東亞會는 정치적으로 중국에의 관심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청의 變法派와 革命派를 원조하는, 곧 淸의 자강 내지는 혁명의 지원을 주장하는 단체였고, 같은 해 6월에 조직된 同文會는 귀족원 의장 近衛篤磨를 회장으로 설립되어 경제·교육·문화활동을 통한 淸·日 有志들 간의 提携를 도모하자는, 곧 淸廷의 원조를 주장하는 단체였다. 이 두 단체가 통합한 것은 당시 大隈重信 內閣의 적극적인 對淸姿勢에 고무되어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자금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자는 이들 단체의 淸策에서 나온 발전적인 해체·개편이었다. 특히 이 시기의 東亞의 懸案이던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관한 문제는 東亞同文會가 별도로 조직한 ‘國民同盟會’가 맡았다. 1900년 9월 近衛篤磨를 사실상의 회장으로 하여 조직된 國民同盟會에는 東亞同文會에 참가하고 있던 기존 각 정당(주로 憲政本黨·帝國黨)과 귀족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玄洋社의 首領 頭山滿이 이끄는 ‘靑年國民同盟會’ 중심의 젊은 내쇼날리스트 그룹, ‘全國同志記者同盟會’로 결집된 신문·잡지 기자들, 그리고 近衛篤磨와 접촉하고 있던 金井延 등 수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였다. 이 國民同盟會는 滿洲問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정부요리에 對露强硬政策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일을 주 목표로 하여 활동했다. 따라서 이 단체의 활동은 滿洲에 관한 露·淸密約說이 유포된 전후인 1900년 가을부터 1901년 봄에 걸쳐 가장 활발하였다. 《近衛篤磨日記》全5卷 및 付屬文書에서 要約.

日國防同盟'의 체결을 통한 '朝鮮扶植論'을 주장하였다.¹³⁰⁾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각축전이 이처럼 領土分割論, 滿·韓 交換論, 韓半島 出兵說 내지 朝鮮扶植論 등으로 첨예화하자 대한제국은 朝野를 막론하고 위기 해소책에 腐心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駐韓美國 顧問官을 통한 對美 中立化 提議

대한제국정부는 未久에 닥치게 될 위기를 예방하는 方案으로써 일찍부터 美國을 이용하는 方책을 講究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이미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내정간섭을 시도한 적이 있고 日本이 '로젠-西協約'에 따라 한국에서의 상공업상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美國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朝·美修好通商條約'의 제1조에 의거하여 한국에 정치적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¹³¹⁾

1899년 무렵의 국내 언론도 열강의 정세변화에 대단히 민감하였던 바, 《皇城新聞》을 보면 歐美列強의 對淸 이권침해 및 領土侵略에 대하여 이를 주시하면서 커다란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¹³²⁾ 동시에 이 신문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 사실과 미국이 對淸 영토분할에 타 열강과 더불어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動靜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으며,¹³³⁾ 특히 이권확장을 주장하는 맥킨리(W. McKinley, 1843~1901)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 데 대하여 미국이 앞으로 취할 외교정책과 특히 대아시아 관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시하고 있었다.¹³⁴⁾

130) 《近衛篤磨日記》第3卷, pp.207~209(1900년 7월 4일), p.243(7월 19일) pp.289~290(1900년 8월 29일); 坂井雄吉, 〈近衛篤磨と明治三十年代の對外硬派-《近衛篤磨日記》によせて-〉《國家學會雜誌》83권 3·4호(1970.8), pp.73~88.

131) 慎鐸廈, 〈光武改革論의 問題點〉《創作과 批評》49(1978 가을) pp.143~183.

132) 《皇城新聞》光武 3年 9월 28일, 4년 6월 30일, 4년 8월 8일, 8월 27일.

133) 《皇城新聞》光武 3年 9월 6일, 13일, 19일, 10월, 11월, 12월, 11월 3일, 20일, 21일, 22일, 23일, 光武 4년 1월 8일.

134) 위의 신문, 光武 4년 12월 22일.

이처럼 당시 한국의 朝野는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動靜을 지대한 관심으로 살피고 있었다.

일찍이 高宗이 정부의 각 부처 고문으로 미국인을 선호했던 사실이나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Horace N. Allen)과 러시아 신임공사 스페이어(Alexis de Speyer, 士貝耶)·전임공사 웨베르(Karl Waeber, 韋貝) 및 친미·친러파 등이 共謀하여 거사한 俄館播遷(1896.2)도¹³⁵⁾ 친미적인 ‘貞洞俱樂部’¹³⁶⁾ 회원들이 주도한 ‘春生門事件’(1895.11)의 후속 거사였음을 상기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패권경쟁에서 淸이 이미 탈락되고 러·日의 각축이 尤甚한 189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에 의지하려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마지막 선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俄館播遷 時期 前後부터 對美 의존태도가 두드러져 미국측에 상대적으로 많은 利權이 讓與되었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했던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 이권을 양여했기 때문이다.¹³⁷⁾ 알렌은 당시 고종의 이러한 親美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35) 李鉉淙, 〈俄館播遷〉《韓露關係100年史》(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pp.159~163. 아관파천이 위기에 처한 고종을 동정한 웨베르와 몇몇 친미·친러파 인사들의 협조로만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그 동기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對韓政策 곧 일본의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한국에 대한 ‘현상보전’ 및 ‘독립보존’ 정책이 한국측의 引俄拒日의 입장에 따른 협조 요청을 계기로 실현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2 vols,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pp.575~601; 崔文衡, 〈閔妃弑害以後의 列強과 朝鮮〉《明成皇后弑害事件》(民音社, 1992) pp.204~209; 李玟源, 〈俄館播遷前後의 韓露關係: 1895~1898〉(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3) pp.55~68.

136) ‘貞洞俱樂部’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韓哲昊, 〈甲午更張中(1894~1896) 貞洞派의 改革活動과 그 意義〉《國史館論叢》36(國史編纂委員會, 1992) pp.35~36.

137) 이 때 미국에 양여된 利權으로는 1895년 7월에 미국인 모오스(James.R.Morse)와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던 雲山金鑛 채굴권이 1896년 4월에 재허가 되었으며 같은 해 3월에 모오스에게 京仁鐵道 부설권이 양여되었다. 운산금광은 1898년 5월 13일 헌트(L.S.Hunt)를 대표로 하는 버어지니아주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에 양도되었는데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採鑛이 시작되어 총 생산량이 1897~1915년까지만 해도 3,986,772톤, 생산고는 49,568,632圓이었다. 이와 같은 이권의 對美 양여는 결국 러시아·프랑스·영국·독일 등의 열강들로 하여금 미국측과 유사한 이권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리하여 俄館政

어느 쪽이(러시아 혹은 일본) 한국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더라도 나에게서는 관계가 없다. 황제는 나를 항상 찾고 있고 다른나라 사람들이 황제를 위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모든 일을 미국인에게 의뢰하고자 한다.¹³⁸⁾

이처럼 대한제국은 러시아·일본으로부터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위하여 對美依存政策을 선택, 미국정부를 통한 영세중립과 주권 유지를 얻어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大韓帝國政府는 이미 1890년 11월부터 주일 조선대리공사 金嘉鎮(1846~1922)의 名義로 알렌을 통한 對美中立化外交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¹³⁹⁾ 이번에도 역시 알렌을 仲介者로 하여 美國主導의 韓國中立化實現을 기대하였다.

1899년 봄 알렌이 賜暇歸國次 美國으로 출발하기 직전 高宗을 알현했을 때,

府 당시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요 이권은 열강에게 침탈 당했던 것이다.

E.W.Mills, "Gold mining in Korea", *The Transaction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 7(Seoul: May 1916) p.27; Certificate, July 15 1895. in *The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 Report*, (New York, 1921); F.H.해링튼 著, 李光麟 譯, 《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 1983) pp.162~164, 169~170; 李培鎔, 〈舊韓末美國의 雲山金鑛採掘權獲得에 대하여〉《歷史學報》50·51合輯, (歷史學會, 1971) pp.62~72, 87~89.

- 138) Despatches from U.S.Consul to Korea: 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the U.S. representatives in Korea. 1883~1905.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7, 1897, August 31, 1900; W.F.Sands, *Undiplomatic Memories*(New York:Whittlesey House McGraw-Hill Book Co. Inc, 1930) p.48.

金銀姬, 〈舊韓末中立化問題에 관한 韓美關係研究〉(梨花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4) p.31.

- 139) 당시 주일조선대리공사 金嘉鎮은 주조선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에게 "청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조선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열강들 간에 협정을 맺어 스위스와 같은 형태로 중립화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조용히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조선의 사심 없는 친구이므로 미국이 앞장 서서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과 손을 잡은 뒤 청국·러시아·영국에게 이 일의 성사를 위하여 협조를 구해보라고 요청하였다. 알렌은 이러한 사실을 1891년 6월 3일 자로 미국 국무성에 보내는 비밀 서한에서 자세히 밝혔다.

F.H.해링튼 著, 李光麟 譯, 《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 1983) pp.339~340; 具永祿·裴永洙 編, 《韓美關係:1882~1982》(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82) p.24.

高宗은 미국신문의 ‘미국이 中國의 영토를 보전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과연 중국영토를 보전하려는 것인가를 알렌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高宗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列強의 협조를 얻어 영토를 보전하고 중립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해줄 것’을 희망하면서 이를 알렌공사가 직접 미국정부에 교섭하도록 요청하였다.¹⁴⁰⁾ 이에 대해 알렌은 ‘미국에 의한 중국의 영토보전’云云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高宗은 한국의 영토보전과 중립화 보장에 관한 약속만은 미국정부로부터 반드시 얻어내 줄 것을 알렌에게 다시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알렌은 미국의 레이크 챔프레인(Lake Champlain)으로 가서 맥킨리 대통령과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미국이 솔선하여 他列強과 協約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한 高宗의 親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맥킨리 대통령과 헤이 국무장관은 그들의 전통적인 불간섭·중립주의를 이유로 내세워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¹⁴¹⁾ 따라서 주한 미국 공사를 통한 고종의 對美中立化推進外交는 이번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알렌은 한국의 중립화를 위한 對美要請이 미국정부에 의해 거부된 것이 알려지면 한국의 對美依存도가 감퇴되고 한국 내 미국의 利權保護 및 새로운 이권 획득에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맥킨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회답을 高宗에게 애매모호하게 전달하였다.¹⁴²⁾ 때문에 한국정부의 外交上的 對美依存政策은 알렌의 이 같은 태도로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皇權을 강화하고 황실 중심의 治政을 함으로써 宮內府 세력이 대단히 커졌을 때 하필이면 1899년 10월 21일자로 宮內府 顧問官 자리에 미국인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山島)를 임명한 것과도 연관된다.¹⁴³⁾

한국정부는 이처럼 대미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遷延될 뿐만 아니라

140) Despatches,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2, 1900, Enclosure, Allen to Mr. Buck.

141) Ibid.,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2, 1900; F.H.해링튼, 앞의 책, p.340.

142) Ibid., October 2, 1900, Enclosure, Allen to Mr. Buck.

14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12: 美案Ⅲ, (高麗大學校出版部, 1967) 光武 3년 10월 30일; 黃玿,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料叢書 第一卷, 1955) p.128.

러시아에 의한 러·일 양국의 韓半島 勢力範圍劃定 提案이 目下 유포되는 시점에서 陽動作戰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일본과의 ‘韓·日國防同盟案’을 표면화시키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중립화 실현을 위한 內實다지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었다.

高宗은 1900년 7월에 宮內府 侍從 玄暎運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玄暎運 派日의 표면상 목적은 일본 皇室制度의 조사에 있었지만 實質的 使命은 일본의 對韓政策을 타진,¹⁴⁴⁾ 韓·日 提携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玄暎運은 일본에 착하자마자 伊藤博文을 우선 방문하여 韓廷이 채택해야 할 대외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구한 다음 東亞同文會 會員인 國友重章·恒屋盛服 등과 차례로 회견하여¹⁴⁵⁾ 韓·日國防同盟案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⁴⁶⁾

이에 대한 日本 朝野의 반응은 상반되었다. 이를테면, 일본정부는 玄暎運의 對日提議에 대하여 의혹을 품었다. 왜냐하면 이미 주한 공사 林權助로부터 ‘玄暎運의 渡日은 嚴淳妃의 요망에 따른 것이며 그 진짜 목적은 일본에 주재하면서 한국 황제로 될 가능성이 있는 義和君(垺, 義親王:1877~1955) 등 망명자의 귀국을 실현시키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¹⁴⁷⁾ 따라서 日本 外務省 通商局長 杉村濤은 玄暎運과의 회견에서 “이 일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귀하의 사명은 전혀 嚴貴人(純獻皇貴妃:1854~1911) 派의 의도에 따라 庶出 皇子 垺(英親王:1897~1970)을 미래의 皇位에 앉히기 위하여 그에 방해되는 義和君과 李垽鎔(1870~1917) 두 사람을 물리칠 계략에서 나온 것이다.” “日·韓國防同盟條約 云云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인 假辭로 끝 날 뿐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진실로 일본과 국방동맹을 바란다면 정식으로 政府間の 交渉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¹⁴⁸⁾ 이러한 일본정부의 부정적 태도

1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호, pp.122~128, 1900년 6월 28일 青木宛林 機密信.

145) 위기록 88호, pp.39~44, 1900년 8월 7일 林宛青木 機密信; 《近衛篤磨日記》3권, p.247(1900년 7월21일)

1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8호, 8월 7일 林宛青木 機密信.

147) 위의 기록, pp.204~205, 218~223 1900년 8월 25일, 9월 17일 林宛青木 機密信.

148) 註 146) 참조.

에 비하여 다만 東亞同文會측 만이 오히려 '한국측의 제안이 한국에 있어서의 러·일 세력범위 확정을 위한 러시아의 제안과 동시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관철시키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을 뿐이다.¹⁴⁹⁾

韓·日國防同盟案은 성사될 수 없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측에서도 이 안은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고 高宗이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의향을 탐지한 다음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정식교섭을 개시해 보겠다는 사전 탐색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玄暎運의 사명은 외부대신 朴齊純(1858~1916)이나 주일 공사 李夏榮(1858~1919)도 몰랐던 일이다.¹⁵⁰⁾ 그런만큼 韓國政府 自體內에서도 충분한 합의가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인 고문관을 통해서도 미국에 의한 한국의 중립화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다.¹⁵¹⁾ 재론하자면 한국정부가 샌즈를 궁내부 고문관으로 고용한 목적은 그를 美國出身 顧問官 중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통한 미국정부의 정치적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즉 미국이 일본과 러시아 및 기타 열국의 仲裁者로써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데 있었다.¹⁵²⁾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정부는 리렌드로(Charles W. LeGendre, 李仙得)의 死後 그 후임으로 러시아·일본·프랑스·벨기에 등의 自國人出身 고문관 고용 요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 주한 공사 던스모어(Hugh A.Dinsmore)에게 초빙교섭을 하게 되었고¹⁵³⁾ 그가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자 샌즈를 궁내부 고문관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샌즈는 궁내부 고문으로 고용될 당시 주한미국공사관 서기관이었으며 알렌의 일시 귀국 시기인 1899년 4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한 미국공사관의 代理公

149) 《近衛篤磨日記》 3권 pp.243(1900년 7월 19일), 247(1900년 7월 21일), 253(7월 27일)

1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 81호 pp.125~128 1900년 6월 28일 青木宛林 機密信.

151) 文一平 著, 李光麟 校註, 《韓美五十年史》(探求堂, 1975) pp.249~251.

152) W.F.Sands, p.118.

153) Ibid., p.126.

使職을 맡고 있었다.¹⁵⁴⁾ 그는 당시 25세의 청년이었으며 주한 미국임시대리공사 포어크(George. C. Foulk)가 개항기에 이미 淸國의 宗主權 주장에 반대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마음 먹었으며 그것은 곧 한국의 중립화 실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內政과 敎育의 改革이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할 課題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이익은 막연한 것이므로 한국으로 하여금 중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중립화에 우호적인 동의를 얻고 한국과 세계국가들 사이에 절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행정과 교육의 개혁이다.¹⁵⁵⁾

따라서 그는 1899년 10월 21일 宮內府顧問官에 취임하자마자 구체적으로 정부의 고관들을 향하여 한국이 러·日 양국의 對立의 場으로 化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중립화를 위한 열강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의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추진력의 源泉이 되는 國家自衛力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借款을 도입하여 내정개혁과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¹⁵⁶⁾

샌즈의 이러한 구상 곧 先 內政改革 後 中立化實現의 구상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後援者 내지 背後勢力의 도움도 컸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高宗이 강력한 후원자였고 閔商鎬(1870~1933)·閔泳煥·閔泳綺(1858~1927) 등의 親美派와 자신의 中立化案에 同調했던 일부 皇室權力·駐韓外國人 그리고 정부 내의 外國人 顧問官 등이 바로 그의 同調勢力이었다.¹⁵⁷⁾ 특

154) H.N.Allen(『출판년도미상』)에 의하면 샌즈는 새로 부임해 온 모간(Edwin V.Morgan) 공사가 서울에 도착하는 1900년 3월 29일 이전까지 미 대리공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金銀姬, 앞의 논문 p.38의 주 87)참조.

155) W.F.Sands, op.cit., p.120.

156)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 제8卷, (巖南堂書店, 1964) pp.402~405; W.F.Sands, ibid., pp.122~124.

157) W.F.Sands, ibid., pp.120~121.

히 閔商鎬·李載允(1849~1911)·李允用(1854~?)·姜錫鎬 등은 샌즈의 고문 임명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며,¹⁵⁸⁾ 閔泳煥은 언제나 정부 내에 개혁추진자가 없음을 우려하여 미국에 접근해야 할 필요를 지적함과 함께 일본과 러시아의 侵略主義에 대한 警戒가 무엇보다도 불가결하다고 주장해왔었다.¹⁵⁹⁾

샌즈는 1900년 1월 15일 황제 직속의 法規校正所 議定官에 임명되었다.¹⁶⁰⁾ 그가 구상한 內政改革으로는 國立銀行을 설립하여 財政基盤을 調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軍隊를 신설하며, 또한 警務廳을 內務로 이전시키는 등의 行政機構를 개편하는 일이었다.¹⁶¹⁾ 教育制度의 개편으로는 各國公使館 관할 하의 外國語學校를 정부 산하로 통합시킴으로써 政府 財政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¹⁶²⁾

그는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년 9월에 들어 헌트(Leigh Hunt)·콜브란(Henry Collbran)·보스트윅(Harry Bostwick) 등으로 구성된 미국인 신디케이트(Syndicate)에게 海關稅收入을 담보로 1000만 달러(1000萬圓)라는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려 하였다.¹⁶³⁾

그러나 샌즈의 內政改革은 벽에 부딪혔다. 우선 宮廷內에서부터 不正利得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嚴淳妃는 종래부터의 친미파와의 대립 때문에 차관도입에 비판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란을 틈 타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朝廷의 관리들도 친러파든 친일파든 모두 한가지로 弊政改革을 방해하였다.¹⁶⁴⁾

158) 國史編纂委員會 編, 《尹致昊日記》第5卷 (서울:探求堂, 1977) pp.250~251, 1900년 12월 14일

159) 國史編纂委員會 編, 《閔忠正公遺稿》(1969) pp.45~48, 66.

160) 《日省錄》光武 3년 12월 15일; 《承政院日記》光武 3년 12월 15일 《高宗實錄》光武 4년 1월 15일.

161) 《尹致昊日記》5, pp.250~251, 1900년 12월 14일; 澁澤青淵記念財團龍門社 編, 《澁澤榮一傳記資料》16, (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pp.98, 107; W.F.Sands, op.cit., pp.120~124.

162) W.F.Sands, ibid., p.121.

16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espatch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 1883~1905. Microcopy No.134(이하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5, Allen to Hay, Novemver 18, 1899. Roll No.16, Allen to Hay, June 6, 1900, Roll No.16, Allen to Hay, August 31, September 25, 1900.

164) 《日本外交文書》32, pp.948~951, 1899년 11월 26일, 青木宛林 機密信, 같은 책 33, pp.107~109, 1900년 7월 14일 青木宛林 機密信.

또한 샌즈가 동조자로 기대했던 駐韓外國公館마저 프랑스 영사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국의 이익과 결부시켜 美國借款에 의한 개혁추진에 찬성하지 않았다.¹⁶⁵⁾ 이를테면, 러시아의 파블로브 공사는 9월 26일 高宗을 알현하여 “대저 外債의 일은 매우 慎重熟慮를 要하고 또는 輕忽하게 조치를 내리면 한국의 前途를 그르치므로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차관계획을 비난하는가 하면, 이 차관으로 한국정부가 軍備를 增強시키려 한다고 판단, 高宗에게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¹⁶⁶⁾ 주일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도 海關稅收入을 담보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의 독립을 害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염려하였다.¹⁶⁷⁾

영국도 한국의 ‘현상유지’라는 입장에서, 한국과 어느 特定 一國과의 強力한 結合으로 보이는 借款에는 반대하였다. 곧 영국인 總稅務司 브라운(J.Mcleavy Brown, 柏卓安)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관리하는 해관세수입을 담보로 한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弊政改革을 주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는 입장이었고¹⁶⁸⁾ 주한 영국임시대리공사 가빈스(J.H.Gubbins)는 國立銀行 설립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반대하였다.¹⁶⁹⁾

일본 역시 미국차관에 반대하였다. 第一銀行長 澁澤榮一(1840~1931)은 즉각 “(미국 차관으로 인하여) 當 銀行이 지금까지 수년 간 취급해 오고 있는 海關收入의 事務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해관세는 타국의 責任이 되므로 我國의 한국에 대한 通商上의 권리에도 관계되어 실로 쉽지 않은 일” 이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고,¹⁷⁰⁾ 林權助 공사는 高宗에게 한국의 議政府가 아무도 이 일에

165) 金銀姬, 앞의 논문, p.40.

166)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호, pp.228~229, 1900년 9월 26일 青木宛林 機密信.

167) 위의 기록, 88호 〈明治 33年 機密本省來信〉(월6권) p.59, 1900년 12월 26일 林宛加藤 機密信.

168) British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 China, 1848~1922*, Microfilm F.O.405, No.99, p.54, Gubbins to Salisbury, September 25, 1900; 《日本外交文書》33, pp.144~145, 1900년 9월 20일, 21일 青木宛林 電報.

169)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6, Allen to Hay, September 25, 1900; F.O.405, No.99, pp.52~53, Gubbins to Salisbury, September 21, 1900.

170) 《澁澤榮一傳記資料》16, p.99.

관여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면서 해관세 수입이 일본의 甲午借款 未濟分の 담보가 되고 있는 이상, 미국차관의 담보로 설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¹⁷¹⁾

이렇게 하여 미국차관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샌즈의 內政改革은 추진될 수가 없었다.

샌즈는 그의 內政改革案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그의 持論인 先 內政改革 後 中立化企圖가 어렵게 되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이제는 중립화만의 실현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는 곧 한국을 스위스·벨기에와 같은 영세중립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으로 한국의 중립화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과 관계 열국과의 조약체결을 서둘렀다.¹⁷²⁾ 그가 제기한 한국중립문제는 기왕의 貞洞俱樂部에서 토의된 것 보다 얼마만큼 眞劍味를 띠게 됨으로써 외교상의 一問題로 부각되었다.¹⁷³⁾ 그러나 이에 대한 러시아공사 파블로브와 일본공사 林權助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샌즈는 영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런던으로 직행하기에 앞서 주한 영국공사 조단(Sir John Jordan)을 만나 자신의 永世中立案을 설득시켜 보았으며 다시 伊藤博文과도 만나 자신의 案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案을 지지하는 관계 열강은 하나도 없었다.

샌즈는 마지막 단계로서 자신의 영세중립안에 대하여 가장 이해를 잘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정부에게 지지를 요청하였다.¹⁷⁴⁾ 이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 헤이는 “미리 明言하여 둘 것은 귀하 개인으로 인하여 如何한 분규가 일어나든지 미국 정부에서는 결코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귀하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미국을 대표하지 못한다. 다시 明言하여 둘 것은 정부로서는 귀하를 다만 一 冒險者로 간주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샌즈를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개인으로 간주한다는 絶緣狀을 보냄으로써 그의 제안을 가차없이

171) 《日本外交文書》33, p.144, 1900년 9월 20일 青木宛林 電報.

172) 徐仲錫, 앞의 논문, p.307.

173) 文一平, 앞의 책, pp.249~251.

174) W.F.Sands, op.cit., pp.225~232.

일축시켜 버렸다. 샌즈는 국무장관 헤이가 보낸 이러한 서신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이 서신의 내용을 알았으면 낙망하였으리라. 한국 정부의 요구는 미국인 개인의 고문관이 아니요, 미국 정부의 원조였었다.”라고 푸념을 늘어놓았을 뿐 별 도리가 없었다.¹⁷⁵⁾

샌즈의 중립화안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줄은 대한제국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주재 열국의 외교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헤이가 샌즈의 중립화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공식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은밀히 헤이와 샌즈 간에 모종의 默契가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인데 얼마 후 그 真相을 알고 모두 意外로 여겼다.¹⁷⁶⁾

高宗은 자신이 가장 믿고 있던 알렌 공사마저 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샌즈의 중립화안을 후원하지 않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샌즈의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으며 샌즈의 안을 지지하던 한국인들도 크게 실망하여 개중에는 차라리 러시아·일본 중 어느 한 편에 의존해 보고자 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샌즈의 중립화안은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와 일본공사 林權助의 강력한 반대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 당하였다.¹⁷⁷⁾

이렇게 하여 주한 미국공사관이나 미국인 고문관을 통하여 대미 중립화외교를 시도하려던 한국정부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3) 趙秉式의 日本派遣을 통한 中立化 推進 試圖

주한 미국외교관을 통한 對美中立化外交의 실패는 전적으로 미국의 冷淡과 제3국들의 방해 때문으로만 돌릴 수 없는 國內事情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제국 정부는 워낙 異質的인 政府構成員과 그들의 外勢依存的 성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그 口號만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일정한 外形만 갖추었을 뿐 內實은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175) 文一平, 앞의 책, pp.250~251.

176) W.F.Sands, op.cit., p.118; 文一平, 앞의 책, p.251.

177) W.F.Sands, ibid., p.123.

특히 대외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政派別의 相異한 주장에 따른 混線만 되풀이 될 뿐이었기 때문에 舉族의이고 超黨의인 國民的 合意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당시의 政派別 政治路線이 워낙 산만하여 이를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내적인 王位繼承紛爭과 대외적인 外交路線을 기본 축으로 하여 구분해 본다면 대체로 親美派와 反親美派聯合으로 大別될 수 있다. 이를테면, 친미파는 황태자 垺을 옹호하면서 중립화정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고 반친미파 연합은 垺을 옹호하면서 韓・日國防同盟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¹⁷⁸⁾

高宗은 한국중립화외교의 재 시도를 위하여 이러한 政派對立을 전제로 한 새로운 활동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곧 정파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함으로써 지지를 받는 정파가 정부 내에서 압도적 우위의 입장에 서는 것을 방지하려고 양파의 주장을 각 각 받아들인 折衷案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주일 공사에 李夏榮의 후임으로 趙秉式(1832~1907)을 임명함으로써 反親美派聯合의 사람을 받아들인 다음 그에게 부여한 사명은 자파의 주장인 韓・日國防同盟案 체결이 아니고 親美派가 주장하는 중립화 실현을 위한 대일・대미 접촉이었다.¹⁷⁹⁾

178) 당시 韓廷內에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정파가 있었다. 곧 姜錫鎬・閔泳煥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파와 閔鍾默・閔景植・趙秉式 등의 친러파, 金永準 등의 친일파, 閔丙奭 등의 중간파, 그리고 尹容善 등의 보수중진들로 서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왕위계승문제가 개재됨으로써 그로 인한 상호갈등은 양분현상을 보여 그것이 그대로 대외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친미파는 황태자 垺(나중에 純宗)을 옹호하면서 당장의 내정개혁과 중립화정책을 표방하였는데 비해, 嚴淳妃派는 황태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황자 垺을 그 계승자로 할 것을 기도하면서 장차 이에 장애가 될 일본에의 망명황족인 李垺鎔과 義和君(塏)의 귀국실현을 위하여 일본과 한・일 국방동맹안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친미파와 엄순비파의 대립에 여러 정파가 엄순비파에 가담함으로써 세칭 친미파와 반친미파 연합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 81호, pp.125~128, 137, 198~203, 218~223, 1900년 6월 28일, 7월 4일, 8월 20일, 9월 17일, 靑木宛林 機密信; 같은 기록 88호, pp.39~40, 8월 7일 林宛靑木 機密信; 같은 기록 102호, p.65, 1901년 9월 17일 曾禰外相宛林 機密信; 같은 기록 104호, pp.1~3, 34~36, 80~86, 91~97, 213, 1901년 1월 6일・18일, 加藤外相宛山座駐韓代理公使 機密信, 1901년 3월 6일・22일, 10월 8일, 加藤宛林 機密信;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伊藤博文關係文書》 6(塙書房, 1973~1981) pp.404~406, 9월 17일 伊藤博文宛林權助 書翰.

179)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 81호, pp.198~203, 1900년 8월 20일 靑木宛林 機

이렇게 해서 탁지부 대신 趙秉式은 1900년 8월 7일자로 駐劬日本國特命全權公使로 임명되었다.¹⁸⁰⁾

그러나 趙秉式이 주일 공사로 임명된 데는 일본측의 제략에 가까운 裏面의 활동도 대단했었다. 예컨대 漢城申報 주필 菊池兼讓은 別入侍인 具完喜로 하여금 고종에게 趙秉式 派日의 필요를 內奏케 하였다.¹⁸¹⁾ 역시 東亞同文會 회원으로서 이 시기에 渡韓해 있던 大內暢三도 菊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종을 알현, 趙秉式을 염두에 두면서 ‘一流의 人物’ 과견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趙秉式으로 낙찰되자 그는 일본으로 동행까지 하였다.¹⁸²⁾ 이들의 底意가 東亞同門會의 持論인 韓・日國防同盟案을 차제에 성사시키려는 데 있었음을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趙秉式이 지명되기를 도왔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여 준 林 공사의 표리부동한 행동은 당시 일본 외교정책의 欺瞞性을 여지 없이 드러내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는 고종이 ‘샌즈 案’의 실패로 失意에 빠지게 되자 고종을 알현하여 東京에서 열리는 列國使臣會議에 한국의 고위관리를 보내 그 곳에서 일본과 영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 받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제의하였다.¹⁸³⁾ 알렌은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한국의 중립유지가 오히려 한국 宮廷에 있어서의 일본측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오는데 유익할 것으로 林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였다.¹⁸⁴⁾ 그러나 林 공사는 이와 정반대 되는 행동을 또한 연출하였다. 내용인 즉 그는 菊池와 大內 등의 활동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자신도 어느 덧 한국중립화가 아닌 한・일 국방동맹안의 지지자가 된 듯이 고종이 지금이야말로

密信.

180) 《日省錄》光武 4년 7월 13일; 《承政院日記》光武 4년 7월 13일; 《舊韓國官報》光武 4년 8월 7일 號外.

181)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호, pp.218~223, 1900년 9월 17일, 青木宛林 機密信; 《近衛篤磨日記》3권, p.284(1900년 8월 24일).

182) 위와 같음;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未刊行,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TEL.1900, p.3121, 1900년 9월 16일, 青木宛林 電報.

183) Despatches,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31, September 10, 1900.

184) Allen MSS, Allen to Fassett, Novemver 3, 1900.

망명자 귀국을 일본에 요청하기 위해 이 동맹안을 교환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가 이 안을 실현할 좋은 기회라고 上申했다.¹⁸⁵⁾ 뿐만 아니라 그는 드디어 趙秉式이 渡日하자 고종이 趙秉式의 활동보고 여하에 따라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趙秉式을 일본에 유용한 수단으로 만들 공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¹⁸⁶⁾ 이렇게 하여 林 공사는 趙의 사명인 한국중립화안에 대하여 쟁그리 무시하면서 靑木周藏 일본 외상에게 1900년 9월 14일 부의 전보를 통하여 趙의 중립화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망하였다.¹⁸⁷⁾

趙秉式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측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그의 정반대되는 행동은 日本 朝野를 몹시 경악케하고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이를테면 近衛篤磨 등이 한·일 국방동맹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도 그는 이에 관해서 아무런 제안도 행하지 않았던 데 비해 중립화안에 관해서는 극히 열심이었다. 우선 그는 8월 29일의 近衛와의 회견에서 “中立의 件을 유일한 문제로 命 받았다.”고 하면서 “한·일국방동맹은 무의미하다”고 하는가 하면¹⁸⁸⁾ 靑木 외상과의 회견에서는 오히려 일본측이 한국중립화안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⁹⁾

일본정부는 한국의 중립화주장을 정식으로 거절하였다. 특히 東亞同文會의 近衛 등은 중립화안의 배후에 러시아를 상정하여 러시아가 滿洲를 장악한 다음 반드시 한국에 진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얻는 수단으로서 趙秉式을 사주하여 한국중립화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⁹⁰⁾ 일본정부는 차제에 중립화의 전 단계로서 ‘日本軍의 지휘를 받는 韓國軍 5만명의 양성’을 골자로 하는 韓·日攻守同盟의 체결이 실질적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내정개혁 자금 1000萬圓의 借款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趙秉式에게 알렸다.¹⁹¹⁾

1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 81호, pp.218~223, 1900년 9월 17일.

186)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 Tel.1900, p.2657, 1900년 8월 15일 靑木宛林 電報.

187) 위의 자료, p.3103, 1900년 9월 14일 靑木宛林 電報.

188) 《近衛篤磨日記》 3권, pp.282~290, 1900년 8월 29일.

189)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 Tel.1900, p.1383, 1900년 9월 14일 林宛靑木 電報.

190) 《近衛篤磨日記》 3권, pp.289~290, 1900년 8월 29일; 坂井雄吉, 앞의 논문, pp.84~85, 87.

191) Despatches, Allen to John Hay, September 25, September 10, 1900; 《澁澤

고종은 이러한 사실을 趙秉式으로부터 보고 받고서 ‘先自衛力確保 後中立化實現’이라는 종래의 ‘샌즈案’대로 일본측으로부터의 차관제의를 수락한 다음, 宮內·外務 兩大臣이 副署한 勅書를 보내어 趙秉式으로 하여금 한·일 국방동맹안을 제안하도록 했다.¹⁹²⁾ 또한 정부는 이를 대비해서 1900년 10월 22일과 24일 사이 군대 양성을 담당할 관리로 당시 元帥府 軍務局 總長 陸軍副將 李鍾健(1843-?)을 警部大臣 겸 軍務局 總長에 임명하고 陸軍二等監督 張華植을 元帥府 軍務局 副長에 임명함과 동시에 5만명의 常備軍을 보유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으로 열강들이 한국의 중립화를 보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로 했다.¹⁹³⁾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이처럼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던 중 東京의 趙秉式으로부터 借款件이 실패한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¹⁹⁴⁾ 이유인 즉 일본측이 한국으로서 이러한 조건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이 제안은 再考되거나 또는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식의 뜻밖의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일본측의 갑작스런 차관공여 취소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만큼 구구한 원인분석이 뒤따랐다. 趙秉式은 분명히 일본측의 제의에 따라 자신이 파견되었고 일본측의 주장인 한·일국방동맹안을 결국 수용했는데도 차관도입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차관제의 자체가 본래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궁정 내의 친일세력부식을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던 만큼 그것이 여의치 못한 때문으로 생각하였으며,¹⁹⁵⁾ 알렌은 그 당시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와 러시아 公使館員들의 저지책이 주원인일 것이라고 했다.¹⁹⁶⁾

사실 이당시 일본의 伊藤博文은 한국과의 국방동맹이 러시아와의 대립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對韓借款도 반대하여 이러한 계

榮一傳記資料》16, pp.87, 107.

192) 徐仲錫, 앞의 논문, p.307.

193) 《日省錄》光武 4년 8월 29일 '閏8월 1일'; 《承政院日記》光武 4년 8월 29일; 《高宗實錄》光武4년 9월 22일; 《舊韓國官報》光武 4년 9월 23일자 號外, 9월 27일.

194) Despatches,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2, 1900.

195) Ibid., October 11, 1900, Enclosure, Buck to Allen.

196) Ibid.,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31, October 2, 1900.

획을 중지할 것을 차기 내각의 인수조건으로 하였다.¹⁹⁷⁾

일본을 통한 중립화 외교의 시도가 실패되고 韓・日政守同盟 및 차관도입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고종은 趙秉式에게 귀국할 것을 훈령하였다.¹⁹⁸⁾

그런데 趙秉式으로 부터 ‘주일 미국공사 버크(Alfred.E.Buck)를 만났으며 그에게 한국중립화문제를 거론,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의외의 보고가 한국정부에 도착되었다.¹⁹⁹⁾ 내용인 즉 趙秉式 자신이 버크공사에게 한국의 중립화실현을 미국이 주도해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버크가 한국의 중립화 보장문제는 일본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열국에 제의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며 그 자신이 미국에 귀국할 때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제의하겠다고 수락했다는 것이다.

한국중립화 문제에 관해서 주일 미국공사 버크를 통한 對美要請이 수락되었다는 보고는 황실로 하여금 미국측 지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끔 하여 당시 황실은 환희로 떠들썩했으며, 이에 고종은 趙秉式에게 중립화문제를 주일 미국공사와 더불어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²⁰⁰⁾

그런데 버크를 통한 趙秉式의 對美 協助要請은 사전에 주한 미국공사관과 상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알렌은 버크에게 趙秉式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²⁰¹⁾ 이에 버크가 알렌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趙秉式・버크 會談」의 全貌가 밝혀졌다. 버크의 해명에 의하면, 趙秉式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한국중립화 문제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 趙秉式은 한국이 스위스와 같은 형태의 중립국이 되어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이는 열강의 보장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주선을 받고자 자신의 도움을 원한다고 提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버크 자신은 이 문제를 워싱턴 주재 한

197) 《近衛篤磨日記》3권, p.347 (1900年 10月 8日).

198) Despatches, op.cit., September 25, 1900.

199) Ibid., October 2, 11, 1900 ;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87), pp.125~126.

200) Ibid., October 2, 1900, Enclosure, Allen to Mr.Buck, Allen to John Hay, October 2, 10.

201) Ibid., October 20, 1900, Enclosure, Allen to Mr.Buck.

국공사관을 통하여 미국정부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자신은 이 문제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자신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때 趙秉式은 일본이 장차 한국을 병합하려고 획책할 뿐만 아니라 러·日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고 하는가 하면, 일본은 우선 한국 황실 내의 세력부식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한국중립화문제를 제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중립화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²⁰²⁾

버크는 趙秉式과의 회담 내용 곧 한국중립화 문제에 대한 趙秉式의 협조요청, 이에 대한 對美直接 接觸의 勸告, 그리고 日本의 韓國 併合劃策에 대한 趙秉式의 豫見 등을 1900년 10월 3일자로 미국 국무장관 셔먼(John Sherman)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국 한국중립화요청은 미국정부로부터 묵살당하였다.²⁰³⁾

이렇게 하여 주일 미국공사 버크를 통한 對美中立化 外交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지만 주변세력 곧 러시아·일본이 가세된 총체적인 방해활동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일 미국공사 버크는 趙秉式과의 東京會同에서 언급한 “중립화안과 같은 제안은 한국의 駐美使節이 직접 미국정부에 제의할 일이다.”라는 내용 그 이상의 어떠한 협력도 한국을 위해 하지 않았음이 그가 국무장관에게 송부한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²⁰⁴⁾ 그런데도 趙秉式은 버크가 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해야 하고 그 자신이 본국 귀임시 대통령에게 직접 제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한국정부에 보고했던 것이다. 따라서 趙秉式의 요청에 대한 버크의 답변이 정확하게 통역되지 않아 趙秉式 스스로의 바람에서 버크의 말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는지 알 수 없다.²⁰⁵⁾

202) Ibid., October 11, Enclosure No.1, Buck to Allen, October 1, 1900.

203) 具永祿·裴永洙 編, 앞의 책, pp.26~27.

204)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6, Allen to John Hay, October 2, 11, 1900.

205) 뒷날 주미 일본공사 高平小五郎은 小村 일본 외상에게 ‘趙秉式·버크회담’에 관해서 “年前에 趙秉式 氏가 渡日하여 한국중립화를 제안, 우선 東京駐在 美國公使에게 이를 內議했을 때 미국공사는 다만 그 설명을 傾聽할 뿐 하등의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 데도 趙秉式 氏가 東京주재 露國公使에게 마치 미국공사가 전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더욱이 주한 미국공사 알렌은 버크의 解明電文을 받고 高宗에게 버크 발언의 취지를 직접 전하여, 중립화 문제에 대한 황실의 對美 支援獲得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고종의 對美期待感を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²⁰⁶⁾ 이미 알렌은 전년 1899년에 賜暇歸國할 때에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중립화안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그 때 미국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그 후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²⁰⁷⁾

趙秉式이 한국중립화 문제에 관한 對美 支援要請을 주일 미국공사를 통하여 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렌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趙秉式은 알렌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혀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었다.²⁰⁸⁾ 그러나 알렌은 親美派의 巨頭인 閔商鎬를 통하여 이미 들은 바 있었고 다만 「趙秉式·버크 會談」의 실제 진전 내용을 버크에게 해명을 요청하여 확인하였을 뿐이다. 알렌은 趙秉式的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구상이 러시아공사 파블로브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이를테면, 미국 공사관 보고서의 알렌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종은 파블로브를 빈번히 만나 러시아만이 한국의 친구이고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단지 한국을 해칠 계략으로 이른바 중립화를 제의한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제 일본과 더불어 대한제국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²⁰⁹⁾

럼 전해버린 일로써 미국공사는 한 때 괴로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라고 打電한 바 있다.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 9, (原書房, 1981) pp.318~319, No.246, 小村宛高平 機密 130號 〈韓國中立問題ニ關シ露國外交官ノ提案ニ關スル件〉 1902년 11월 4일.

206)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6, and Allen to John Hay, October 9, 11, 20, 1900.

207) Ibid., Allen to John Hay, October 2, 29, 1900.

208) Ibid., Allen to John Hay, September 10, October 11, 1900.

209) Ibid., Allen to John Hay, October 20, 1900.

러시아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주한 공사 파블로브와 주일 공사 이즈볼스키 간에 이미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조선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었다.²¹⁰⁾ 이를테면 파블로브는 9월 26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중립화안의 불가를 논하였는데 일본측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헛 수고에 속할 뿐이다. 현금과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중립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로는 가능하나 실행이 불가능한 議論이다. 이 같은 문제는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하였다는 것이다.²¹¹⁾ 이즈볼스키도 한국정부가 중립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²¹²⁾ 파블로브는 일본에서의 「趙秉式·버크 會談」에서 버크가 한국중립화 문제를 미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趙秉式의 보고에 한국 황실이 흥분했다는 소식을 듣고 1900년 10월 5일 알렌을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코자 알렌의 의견 표명을 요청하였다. 즉 파블로브는 알렌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로 문의하였다.

東京 駐在 러시아 공사 이즈볼스키로부터 보내 온 전보에 의하면 주일 미국공사 버크가 한국중립문제에 관해서는 “워싱턴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이미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확신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어떠한가?²¹³⁾

이에 알렌은 한국중립화 문제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確言하였다.²¹⁴⁾ 이 대답에 파블로브는 안심하면서 이 계획은 틀림없이 일본측의 책략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으로서는 원래부터 한국의 중립과 영토보전을 핑계로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일 국방동

210) 《日本外交文書》33-別冊 2, p.425, 1900년 9월 11일 青木宛林 電報: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호, pp.198~203, 8월 20일 青木宛林 機密信.

2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81호, pp.228~229, 1900년 9월 26일 青木宛林 機密信.

212) 위 기록 88호, p.59, 1900년 12월 26일 林宛加藤 機密信.

213) Despatches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9, 2-Enclosure Allen to Mr.Buck, Allen to Hay, October 9, 1900.

214) Ibid., Allen to John Hay, October 9, 8-Enclosure Allen to Mr.Buck, 1900.

맹안의 성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계획은 믿을만한 근거가 된다고 우려하였다.²¹⁵⁾ 이처럼 파블로브는 한국중립화안의 배후에 일본을 상정하여 한국의 중립화가 사실상 한국의 對日接近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¹⁶⁾ 또한 파블로브는 1900년 10월 1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여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한국과 타 열강 간의 정치·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러시아에 통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일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재론하자면 한국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제의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정부로부터의 사전 양해를 얻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²¹⁷⁾

일본측도, 그들의 추천에 의해서 趙秉式이 파견되었는 데도 마침내 그들의 주장인 (위장된) 韓國中立化 實現, 韓·日國防同盟案 締結, 借款供與 提議 등을 그들 스스로 묵살해 놓고는 한국의 對美 中立化 實現 外交가 탐지되니까 그것이 러시아의 使囑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를테면, 전술한 바와 같이 東亞同文會는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日本 朝野의 분위기조차, 趙秉式 자신이 이미 1897년에 주한 러시아공사 스페에르(Alexis de Speyer)의 압력으로 入閣한 친러파라는 점과 이즈볼스키가 1900년 12월 20일 일본외상 加藤高明과 처음으로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趙秉式의 한국중립화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사실 등을 근거로, 趙秉式의 중립화 외교를 이즈볼스키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 말하자면 我田引水格인 偏見으로 흐르고 있었다.²¹⁸⁾

215) Ibid., Allen to John Hay, September 12, October 9, 1900.

216) 《駐韓日本公使館記錄マイクロ》 81호, pp.269~272, 1900년 10월 31일 加藤宛林 機密信: 角田順, 앞의 책, p.38;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6, Allen to John Hay, October 9, 1900; F.O.405, No.99, pp.48~49, Gubbins to Salisbury, September 14, 1900, pp.49~50, Whitehead to Salisbury, September 18, 1900.

217) Despatches Allen to Hay, October 20, 1900.

218) 《日本外交文書》 35, pp.411~413, 1902년 11월 4일 小村宛林 機密信: 角田順, 앞의 책, p.38; F.O.405, No.99, p.49, Whitehead to Salisbury, September 18, 1900.

이처럼 한국의 對日・對美 中立化 推進 外交는 美・日・러 3국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과 그들 상호간의 의심 때문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趙秉式의 渡日活動이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함으로써 귀국명령이 내려졌다. 고종에 의한 趙秉式 소환명령에 대하여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內閣 更迭 때문이라고 논평하였으나 실제로 내각 경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²¹⁹⁾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화 문제로 인한 ‘趙秉式 派日活動 問題’를 마무리 짓는 회의를 1900년 10월 28일 가졌으며 여기서 趙秉式은 依願免職 절차를 밟아 宮內府 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당분간 관직에서 물러났다.²²⁰⁾

219) Ibid., October 29, 1900.

220) 《承政院日記》光武 4년 9월 5일; 《高宗實錄》光武 4년 6월 27일; 《舊韓國官報》光武 4년 10월 28일 號外, 10월 30일; Despatches Allen to John Hay, October 29, 1900.

第 4 章 大韓帝國期 러시아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1. 러시아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前述한 바와 같이 滿洲문제로 인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은 그 여파가 韓半島에 미치게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러·日 角逐戰이 어떤 양상으로 재연될 것인가 하는 것과 그것이 한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寸刻의 지체도 없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韓國의 中立化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러시아 외교정책으로 보아 전례 없는 일이어서 국제사회의耳目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달리말하면, 1900년 말부터 1901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日本에 대하여 제안한 한국중립화안은 러시아 해외주재 외교관이 일찍부터 한국중립화안을 전혀 무시했던 일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 정부의 방침의 전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러시아 政府의 對 東아시아 狀況認識

러시아는 왜 하필이면 滿洲문제를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이 시기에 한국중립화를 제안하였을까? 도대체 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주제 해결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당시 러시아 정부 안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帝政러시아의 정치 형태는 왕왕 제도적 기능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짜르(Czar:황제)의 신임을 받는 관료들에 의해 실권이 장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政局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大藏相 위테(Sergei Iu Witte)였다. 따라서 위테의 對韓半島構想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 본다면, 러시아 政府의 對韓政策決定理由가 자명해진다. 위테는 1900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골몰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종래 러시아가 채용하여 왔던 것처럼 韓國問題를 韓·日 양국 간의 문제로 내버려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문제에 歐美列強을 개입시켜 중립화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위태는 고심 끝에 당시의 동아시아 사정상 전자가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자를 택하였다.¹⁾ 이는 위태의 對 동아시아 정책의 근본이 滿洲의 권익보호에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滿洲占領政策의 전제 조건은 한반도의 안정화였고 이를 위해서는 그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곧 한반도의 중립화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대두되고 있던 장애요소란 어떤 것이었을까? 行論의 순서상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한다면 그 당시 위태가 판단한 장애요소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 政府內의 宮廷派들이 한국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近衛將校 베조브라조프(Alexandre Bezobrazov)로 대표되는 군정파들은 이미 1898년 3월에 한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의 필요성과 私的 또는 半官的 企業에 의한 경제적 진출의 실현 가능성을 니콜라이 2세(Nicholai II)에게 역설,²⁾ 그의 승인을 받아 낸 것을 계기로 하여³⁾ 1898년 5월에는 鴨綠江 연안의 森林採伐權을 買收하였고⁴⁾ 6월에는 한반도 북부의 金鑛採掘權獲得을 목적으로 侍從武官 네포로조네프(N. Neporozhnev)가 이끄는 遠征隊를 파견, 高宗을 알현토록 하여 咸鏡道 등지의 鑛山採掘權을 요구한 일이 있으며⁵⁾

-
- 1)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sangels, 1958) pp.144, 163~165.
 - 2) Vonliarliarsky, A.M., "Why Russia Went War with Japan, the Story of the Yalu Concession", *Fortnightly Review*, (May and June, 1900) pp.821~824; Malozemoff, *ibid.*, p.179.
 - 3) Vonliarliarsky, *ibid.*, pp.824~825; Malozemoff, *ibid.*, p.179.
 - 4) Vonliarliarsky, *ibid.*, p.826; Malozemoff, *ibid.*, p.180.
 - 5) Vonliarliarsky, *ibid.*, p.827; Malozemoff, *ibid.*, pp.180~181; British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 China, 1848~1922*, Microfilm F.O.405(이하 F.O. 405), No.99, pp.2~3, Jordan to Salisbury, December 9, 1899;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33, (日本國際聯合協會, 1954) pp.134~138, 1900년 4월 12일, 青木宛林 機密信

1899년 여름에는 藏相 위테에게 鑛山利權獲得과 그에 필요한 借款供與를 陳言하였다.⁶⁾ 뿐만 아니라 1900년 3월에는 한반도에서의 利權을 기초로 한 ‘東亞産業會社’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러시아 宮廷派의 策動에 대하여 위테와 外相 무라비에프(M.N.Muraviev) 등은 시종 시기 상조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였고⁸⁾ 그 중에서도 東亞産業會社의 설립에 대해서는 위테가 특별히 義和團事件의 돌발을 이유로 반대하였다.⁹⁾ 이로써 궁정과 들의 借款競爭을 통한 한반도북부진출 계획은 일단 좌절된 듯 하였다. 그러나 궁정파의 정책은 변함 없이 유지되었고 언제 부활할는지 예측할 수 없었다.¹⁰⁾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한다면 이는 당연히 일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일본과의 전쟁 위험을 발생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둘째는 러시아 軍隊의 韓半島出兵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브(Alexandre Pavlov)가 고종을 만나 滿洲駐屯 러시아군을 과시하여 ‘러시아군은 호랑이, 일본군은 원숭이’ 云云한 것이나,¹¹⁾ 이 외에도 義和團徒의 한반도북부침입 징후에 대하여 황제 니콜라이 2세와 陸相 쿠로파트킨(Alexei Kuropatkin) 등이 義和團徒를 한국영토에까지 추격할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라든지,¹²⁾ 파블로브가 皇帝勅命을 云謂하면서 의화단도의 진압을 병자하여 러시아군의 한국영내진입 허가를 요청하고¹³⁾ ‘한국북부의 방위를 러시아가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¹⁴⁾는 식의 책임있는 당국자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극히 호전적인 언동을 일삼는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滿洲駐屯軍의 韓半島出兵은 그렇게 짐작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6) Vonliarliarsky, *ibid.*, pp.1032~1035.

7) Malozemoff, *op.cit.*, pp.182~183.

8) Vonliarliarsky, *op.cit.*, pp.821, 823, 827, 829~830, 1031, 1033~1034;
Malozemoff, *ibid.*, pp.181~182, 184.

9) Malozemoff, *ibid.*, p.184.

10)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87) pp.83, 128.

11) 山脇重雄 所藏, 《駐韓日本公使館紀錄スィクロ》81號, pp.110~111, 1900년 6월 20일부 靑木宛林 機密信.

12) Malozemoff, *op.cit.*, pp.144, 163~165.

13) 《日本外交文書》33-別冊 2, pp.390~392, 1900년 7월 24일부 靑木宛林 電報.

14) 위의 책, pp.394~396, 401~402, 1900년 7월 24일, 8월 2일부 靑木宛林 電報.

이에 러시아정부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東清鐵道の 보호와 그로 인한 淸國 政府와의 교섭의 필요 등 懸案들이 山積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列國間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위테는 陸相 쿠로파트킨에게 러시아군이 출병하더라도 이유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¹⁵⁾ 이에 쿠로파트킨이 장래에는 한국을 러시아의 保護國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시기에 그것을 단행하는 것이 上策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¹⁶⁾ 일단은 위테의 설득에 동의한 셈이었다.

셋째는 러시아의 현지외교관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러·日 양국 간의 勢力範圍劃定을 제안하거나 共同管理案(Dual Control)을 거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日本 朝野의 반응 역시 극히 즉각적이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7월에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브와 주일 러시아 공사 이즈볼스키(Alexandre Izvolsky)가 서울과 東京에서 각 각 政界要路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세력범위 확정과 각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질서의 보전을 제안한 일이 있고¹⁷⁾ 이즈볼스키가 이와는 별도로 1900년 12월에 日本의 신임 加藤高明 외상에게 러·일 양국에 의한 한국의 공동 관리안을 타진한 일이 있는데,¹⁸⁾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 日本 朝野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和答이 百出하였다. 곧 山縣有朋은 大同江·元山灣線(39°)을 경계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¹⁹⁾ 井上馨과 伊藤博文은 막연하나마 러시아의 案에 지지하였는가 하면²⁰⁾ 日本軍部內에서도 韓半島의 三分說을 내어 놓았다.²¹⁾

15) Malozemoff, op.cit., pp.135~142.

16) Ibid., pp.137, 144; 椎川龜五郎 編, 《クロバトキン回想録》1, (東京:偕行社, 1910) pp.98~100.

17) 《日本外交文書》33-別冊2, p.386, 1900년 7월 19일부 青木宛林 電報, pp.390~392, 1900년 7월 23일·24일부 青木宛林 電報; 《近衛篤磨日記》第3卷(東京:鹿島研究所出版會) p247.

18) Malozemoff, op.cit., pp.163~165.

19) 德富蘇峰 編述, 《公爵山縣有朋》下卷, (山縣有朋公記念事業會, 1933, 原書房 復刊, 1969) p.486;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東京:原書房, 1966) pp.262~264.

20) 井上馨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第5卷 (内外書籍, 1933~1934, 原書房 復刻, 1968) p.3; 日本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 未刊行資料, 《都築馨六關係文書》收錄, 1901년 1월 9~10일부 都築馨六宛井上馨 書翰.

21) 《近衛篤磨日記》第3卷, pp.207~209; 日本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 《齊藤實關係

위태는 러시아 在外公館員의 이러한 구상이 만약 실현되었다고 해도 이는 결과적으로 러·日 간의 직접적인 군사대립을 촉발하는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으므로 심히 우려하였다. 다시말하면 장래에 있어서 러시아의 한국진출 그 자체는 위태 자신도 반대하는 바가 아니지만, 이 시기에 한국에서의 상황변경을 초래하게 될 다양한 획책은 장차 러시아의 한국진출 가능성을 오히려 잃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²²⁾

네번째는 日本政府當局의 對 동아시아정책의 방향이 전혀 새로운 滿·韓 交換論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상 青木周藏은 러시아가 滿洲占領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한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韓國分割이 아니라 차라리 滿·韓 交換을 주장하고 나섰다.²³⁾ 이러한 青木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주러 일본공사였던 小村壽太郎이었는데, 小村은 이미 7월 22일자로 青木外相에 보내는 전보에서 러시아가 日本과의 협정을 바란다면 日本은 이에 응해도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日本이 한국에서, 러시아가 滿洲에서 누릴 수 있는 각 각의 '자유행동'(Freehand)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⁴⁾ 드디어 小村은 1900년 10월에 와서 위태와의 회담을 통하여 명확히 滿·韓 交換論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로서는 滿·韓 交換論이 현상으로부터의 커다란 후퇴를 강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위태는 小村에게 한국의 독립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滿洲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고 러시아의 이익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회답했던 것이다.²⁵⁾

文書》1, 海軍關係書類, 2005~2025, 2029 〈1900년 日記〉 卷末.

22) Malozemoff, op.cit., pp.163~165.

23)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856~1905*, Microfilm F.O.46, No.528, Despatch 1900(August-October) pp.15~21, Satow to Salisbury, August 6, 1900 (No.122); 《日本外交文書》33, p.700, 1900년 7월 30일, 8월 18일, 小村駐露公使宛青木電報: 角田順, 《滿洲問題と國防方針-明治後期における國防環境の變動-》(原書房, 1967) pp.36~37.

24) 《日本外交文書》33, p.699, 1900년 7월 22일 青木宛小村 電報.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録 マイクロ》101호, pp.4~11, 1900년 10월 2일 〈小村全權公使ト露國大藏大臣ウイツテ氏トノ談話要領〉

다섯째는 日本 朝野의 輿論이 러시아의 滿洲占領을 永久的인 것으로 받아들여 反露的 態度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陸海軍內部的 少壯幕僚들 간에는 오히려 義和團事件의 기회를 이용, 한국에 출병하여 한국을 保護國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특히 東亞同文會는 러시아의 滿洲占領에 반발, 그 회원들이 政府高官들을 방문하여 러시아외교관들이 제기한 韓半島에서의 勢力範圍劃定案조차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인 반러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⁶⁾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일본 국내의 韓國進出論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진정시켜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위테는 그들의 滿洲占領을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했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장애요소인 러·일 대결양상-러시아 宮廷派의 對韓經濟進出企圖, 러시아軍의 韓國出兵可能性, 러·日 양국 간의 韓半島分割論, 日本의 滿·韓 交換論, 러시아의 滿洲占領에 대한 일본의 반러운동을 중지시켜야 했던 바, 그 방법이 한반도를 열국의 개입에 의한 중립국으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짜르의 “한국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발판이 되는 것이 싫을 뿐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같은 위테의 판단을 재차 立證해 주는 것이었다.²⁷⁾

2) 러시아 政府의 韓半島中立化 提案

드디어 1900년 10월에 위테의 한국중립화 구상이 그가 內相 시피아긴(Sipyagin)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더니, 주일 러시아 참사관 파크레프스키(Poklevski)도 일본의 對러 提携論者인 伊藤博文·井上馨 등에게 러·日의 共同保護下에 한국을 중립국으로 하려는 案에 대한 意向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중립화 제안은 1901년 1월에 들어와서부터였다. 곧 위테의 한국중립화 구상이 그 구체

26) 註 21)의 《齋藤實關係文書》1 참조. 《近衛篤磨日記》제3권, pp.207~209, 247(1900년 7월 21일), 251(7월 25일), 附屬文書, pp.64~67.

27) K.Krupinski, "Russland und Japan, ihre Beziehungen bis zum Frieden von Portsmouth, 1940", 《日本國家學會雜誌》55-上,(1940) p.58; 鹿島守之助,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東京:鹿島研究所, 1959) p.619.

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新任 外相 람스돌프(Vladimir N. Lamsdorf)가 주일 공사 이즈볼스키에게 한국중립화 실현을 일본정부에 제의하도록 훈령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²⁸⁾

이에 이즈볼스키는 훈령을 받자마자 加藤高明 일본외상에게 보다는 伊藤과 井上 등 이른바 저들 穩健派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본 다음,²⁹⁾ 동년 1월 7일자로 일본정부에 內密히 한국의 영세중립화 보장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열국의 공동보장 하에 한국을 중립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의하는 것으로써 得策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本件에 관하여 어떠한 수단을 취함에 앞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이해관계 및 러·일 양국 간에 현존하는 협상에 비추어 기왕에 발표한 계획이 실행될 조건을 內密로 또한 友誼下에서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을 여기 제의하는 바이다.³⁰⁾

그는 또 加藤 외상에게 “한국을 중립화한다는 것은 일본의 疑懼 즉 러시아의 滿洲併合과 한국침입의 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정치적이며 소극적이다. 요컨대 한국 땅에 強隣을 두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뿐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³¹⁾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당면한 對韓政策으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러·일간의 기존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열국의 공동보증에 의한 한국중립화안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伊藤과 井上은 러시아의 對 日本 접근이 일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환영하고 매우 호의적이었으며,³²⁾ 특히 井上の女婿인 都築馨六은 러시아의

28) Malozemoff, op.cit., pp.164~165; Krupinski, ibid, p.57; 沼田市郎, 《日露外交史》(大阪:屋號書店, 1943) p.149.

29) Union of Sovie Socialist Republics, *Tsentral'nyi Arkhiv, Krasnyi Arkhiv [Red Archive](이하 Krasnyi Arkhiv)* XVIII, (Moscow, 1922~1941) pp.8~11, Izvolsky to Lamsdorf, January 4, 1901 (Tel, Secret, No.2, Despatch), p.11, Lamsdorf to Izvolsky, January 17, 1901 (Tel).

30) 《日本外交文書》34, No.393 〈韓國ノ永久中立保障ニ關シ提議ノ件〉.

31) 伊藤正徳 編, 《加藤高明》(加藤高明傳記 編纂會, 1929, 原書房復刊, 1970) pp.416~420.

32) 日本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 〈井上馨關係文書〉1901년 1월 8~9일, 井上馨宛都

한국중립화 제안 그 자체만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이 협상을 계기로 러·일 양국의 대립을 피하고 나아가서 러시아의 한국진출을 방지하려는 생각에서 이 교섭을 성사시키려고 진력하였다.³³⁾

그러나 加藤 외상은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갔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 날짜로 歐美各國駐在 日本公使와 駐清・駐韓日本公使에게 통보하여³⁴⁾ 자세한 정보와 대책을 독촉하는가 하면, 國內要路의 의견 수렴에도 열심이었다.

이에 대하여 駐英 林董(1850~1913) 公使는 9일부터 계속하여 “그 같은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제의는 아마도 英・獨 兩國의 默約下에 제기된 것이리라”라는 臆測을 본국에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英・獨 양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각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 상호관계에서 설명하였다. 즉 林董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독일이 ‘露・佛 體制’의 틈바구니에서 併立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멀리할 수 없는 입장이며 영국 역시 독일이 비록 ‘外交上の 猶太人’이지만 그들 ‘獨・澳・伊 체계’로부터의 助力을 얻기 위해서는 和親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로서는 만약 한국이 일본에 점령된다면 러시아만 淸國에 크게 진출하게 되던 기왕의 ‘三國干涉’ 현상－독일에게는 別無利得이던 후회 막급한 현상－이 재현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반도에서의 러・日 갈등에는 엄정중립이 上策인 바, 러시아의 한국중립화안을 好策으로 생각할 것이며, 영국으로서는 러시아가 황실 간의 親近・인종・풍속・종교・무역면으로 보아 일본보다는 자국에 훨씬 가까울 뿐만 아니라 ‘南阿戰爭’(South African War: Boer War, 1899~1902) 수행 때문에서라도 동아시아 분쟁에는 엄정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터에 러시아의 한국중립화안을 역시 찬성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었다.³⁵⁾

築馨六 書翰: 〈都築馨六關係文書〉 수록 1901년 1월 9~10일 都築宛井上 書翰.

33) 〈井上馨關係文書〉 1901년 1월 14일, 井上馨宛都築馨六 書翰.

34) 《日本外交文書》 34, No.394, 1901년 1월 8일 加藤外務大臣ヨリ在歐美各日本公使宛電報 「露國ノ韓國中立保障提議ニ付通報ノ件」.

35) 《日本外交文書》 34, No.395, 1월 9일 英國駐劄林公使ヨリ加藤外務大臣宛電報 「露國ノ韓國中立保障提議ニ關シ英獨ニ於ケ默諾ノ模様情報ノ件」;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外務省記錄》 MT.1.4.1.30 (韓國ノ永久中立ニ關スル露國ノ提議一件), 108~112, 1901년 1월 14일 加藤宛林董 機密 5호 「朝鮮國ニ就テ外務次官補ベルチー談話ノ件」.

駐韓臨時代理公使 山座圓次郎(1866~1914)도 1월 1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今回は韓・露 양국 간에 하등 사전에 相議 있는 形蹟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양국 상호관계는 한층 불만족인 것 같다. 러시아 정부의 眞意는 단지 시기를 遷延하든가 혹은 한국의 歡心을 얻으려고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 반도에 있어서의 실제 정황은 파블로브 씨 자신으로부터도 지난 날 本官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전혀 가망이 없는 것으로써 貴電과 같은 企圖를 전연 행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³⁶⁾

또한 주청공사 小村도 1월 11일자로 加藤 외상에게 자신의 의견을 具申하여 왔다.

러시아가 제의한 한국의 중립은 본관의 의견으로는 중대한 障害를 생기게 할 것이다. 즉 첫째,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다소 유효하게 억제할,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의 현 위치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日本國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상 및 상업상의 최대 이익을 保持하려고 하는 결심과 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일본국의 위신에 夥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러시아가 該 제의를 한 것은 滿洲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를 희망함에 基因하리라는 것이 명확함으로 해서 이를 滿洲문제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한국문제의 해결은 만족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滿洲도 중립지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의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 극히 긴요하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본국은 한국에, 러시아는 滿洲에 각자 세력범위를 분할할 것을 주장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상의 의견은 삼가 이를 각하의 고려를 위하여 제공한다.³⁷⁾

小村의 이와 같은 意見具申中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문제와 滿洲문제를 관련시켜 봄으로써 종래 滿洲문제와 한국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려고 한 青木 전 외상의 방책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加藤 외상에게 상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36) 《日本外交文書》34, No.396, 1901년 1월 11일 韓國駐劄山座臨時代理公使ヨリ加藤外務大臣宛「韓國ノ永久中立報障ニ關スル露國公使ノ態度ニ關スル件」.

37) 《日本外交文書》34, No.397, 1901년 1월 11일 淸國駐劄小村公使ヨリ加藤外務大臣宛電報「滿韓對策ニツキ意見具申ノ件」.

이후 일본 외교당국자들 사이에 滿・韓 問題를 不可分一體의 것으로 포착하는 사상이 나타난 최초의 흔적이었다.³⁸⁾

그리고 滿・韓 同時中立을 주장하면서 그 차선택으로 滿・韓 交換論을 제기했는데 이 滿・韓 交換論은 그가 이미 1900년 7월 22일에 제기했던 그의 持論이라는 점에서 同時中立 주장은 그의 견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러시아의 반대를 예상한 억지논리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東亞同文會를 비롯한 民間 世論도 러시아의 제안 내용을 알자마자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³⁹⁾ 東亞同文會와 國民同盟會는 滿洲의 현상이 청국 보전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그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韓國中立化는 한국으로서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⁴⁰⁾

加藤 외상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의 滿洲撤兵을 필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이를테면 청국의 문호개방과 영토보전을 규정한 「英・獨協商」에 일본이 참가한 사실에서 명확해진 것처럼 加藤은 러시아의 在滿行動에 대한 강한 의혹을 불식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英・獨協商」참가는 그로 인해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⁴¹⁾ 지금 만약 러시아의 한국중립화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일본이 스스로 滿洲에 관한 露・清 間の 協定을 승인하는 꼴이 되므로 그러한 假想이 더욱 두려웠던 것이다.⁴²⁾ 요컨대 小村도 加藤도 모두 한가지로 러시아에 유리한 듯한, 滿洲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한국중립화안에는 반대였다.

이러한 日本 朝野의 여론을 수렴한 후 加藤 외상은 伊藤 등 러시아의 제안에

38) 徐仲錫, 〈近代極東國際關係와 韓國永世中立國論에 對한 研究〉《慶熙大論文集》4(1965) pp.309~310.

39) *Krasnyi Arkhiv*, LXVIII, pp.7~11, Izvolsky to Lamsdorf, December 18, 1900(No.48, Despatch), January 4 and 14, 1901(Tel.Secret and No.2, Despatch).

40)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78) pp.133, 139~143.

41) 角田順, 앞의 책, pp.29~30; *Krasnyi Arkhiv*, LXVIII, pp.13~16, Izvolsky to Lamsdorf, February 9, 1900(letter).

42) F.O.405, No.114, pp.6~7, Japanese Minister to Lansdowne, January 29, 1901; *Krasnyi Arkhiv*, LXVIII, pp.13~16, Izvolsky's Letter.

호의적인 인사들을 설득한 다음 1월 17일에는 정부의 공식입장으로서 小村의 의견을 채용하여 다음과 같은 「對露回答口上書」를 주러 일본공사 珍田捨己를 통하여 전달했다.

러시아 정부가 遼東半島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한 用益權은 그 期限이 일시적이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고 그 사용지역 또한 韓國邊境에 접근하지 않는 부분에 국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該 用益權의 취득으로 러시아가 향유하는 位格은 앞 서 列國이 日本에게 奉天省으로부터 撤退할 것을 勸告하기 위하여 제공한 이유의 제2항-三國干涉 때(1895.4.23)의 口述覺書中 “그것은 한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It renders illusive the independence of Korea)”는 부분-과 반드시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로 日本이 1898년 4월 25일의 議定書(「로젠·西協定」:필자주)에서 러시아와 서로 約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滿洲에 있어서의 現下 러시아의 태도는 全然 이와 別異의 觀象을 나타내어 自然 他國으로 하여금 不安의 念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그나마 다소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실로 러시아가 滿洲에서 철퇴할 의사를 확연히 聲名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1898년의 議定書는 아직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일본측에서 이를 보면 그 運行이 옳음을 잃지 않아 우선 現下의 事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情勢가 이미 이와 같으므로 일본정부는 中立의 宣行에서 繼發할 수 있는 諸種의 推測과 論斷을 防遏할 목적으로써 中絶의 상태로 복귀하고 따라서 外邊의 事由에 妨碍됨이 없이 자유로이 交渉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本案의 相議를 연기하는 것이 得策임을 믿는다.⁴³⁾

이 회답의 요지는 「로젠·西協定」이 여전히 유효한 현 시점에서 한국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으며 러시아가 滿洲에서의 原狀을 회복할 때까지는 한국중립화안에 관한 交渉을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加藤 외상은 같은 날에 주일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와도 회합을 가지면서 주러 일본공사에게 보낸 「對露回答口上書」의 취지를 구술한 다음 滿洲問題에 관한 피차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였다.

加藤:러시아가 滿洲로부터 철퇴할 것이라는 것은 수차 또는 단언 귀국정부가 선언한

43) 《日本外交文書》34, pp.526~528, No.399, 1901년 1월 17일, 加藤外務大臣ヨリ露國駐劄 珍田公使 電報「韓國ノ中立保障提議ニ對シ露國政府へ回答書傳達ノ件」.

것이며 … 그 선언은 不遠 실행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한국중립의 일은 滿洲에 관한 귀국의 선언이 실행된 후에 이를 議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思考하는 바이다.

이즈볼스키: 滿洲문제는 한국중립의 議와 전혀 별개 문제가 아닌가.

加藤: 나는 이 두개의 문제는 상호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二事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이즈볼스키: …….

加藤: (私見임을 전제하고) 만약 중립보증의 범위를 滿洲에까지 미칠 의사를 러·일 양국이 갖는다면 이 역시 본 문제를 해결할 一方法일 것이며, 혹은 權勢區域을 相互 分割할 의사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즈볼스키: …….(44)

이 대담내용을 보면 滿·韓 問題를 둘러싼 당시의 러·일 양국의 태도가 확연해진다. 어쨌든 이 對러 回答口上書의 전달을 훈령 받은 주러 珍田 공사는 1월 22일 이를 러시아 외상 람스돌프에게 手交하였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로부터의 회답은 1월 24일에 口頭로 들을 수 있었다. 이 때 람스돌프는 일본측의 회답에 만족한다는 뜻으로 珍田 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에 관한 현행의 러·일 협상으로써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며 該 문제에 관해서 타국의 간섭을 회피해야 함은 역시 擇하는 바이다. 일본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려는 우리 러시아의 제안은 小村 전 공사가 말한 바에 따라 알 수 있듯이 일본국이 현재 韓國의 事務局에 불만을 품는 것 같으므로 그 意衷에 부응하려는 一偏의 희망에서 發한 것이지 他意 있는 것이 아니다. 中立이라는 觀念의 發意는 러시아 자신의 희망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무엇인가 흔쾌히 供與하려는 바 讓與의 하나로서 한 것이다. 만약 일본국이 한국문제에 관하여 의견의 우호적 교환을 하려고 희망한다면 러시아는 즉시 이에 응할 것이다.⁴⁵⁾

이에 珍田 공사가 “그렇다면 귀국의 호의적 의견이란 비단 한국의 중립화만이

44) 《日本外交文書》34, No.400, 1901년 1월 17일 露國公使·加藤外務大臣會談筆記「韓國ノ永久中立ニ關スル件」(1901년 1월 17일 外國公使來談要領筆記拔抄) 參照.

45) 《日本外交文書》34, pp.529~531, No.401-404-406, 1901년 1월 23-25일 加藤宛 珍田電報: F.O.405, No.114, pp.6~7, Japanese Minister to Lansdowne, January 29, 1901, p.7, Lansdown to MacDonald, January 29, 1901.

아닌 餘他の 기본적인 문제도 망라한다는 뜻인가?”라고 다짐삼아 확인했더니 람스돌프는 “전적으로 그렇다. 中立 云謂의 事案은 결국 귀국정부의 희망을 假想하고 協商案件의 一例로서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珍田은 다시 “러시아 정부가 한국중립문제에 관하여 주일 러시아공사에게 훈령한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해명해 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람스돌프는 “한국문제에 관하여 러·日 간에 상호 의혹을 풀고 쌍방 간에 만족스런 협상에 도달하도록 호의적 의견을 교환하려면 ‘列國의 保障下에 한국을 중립화 시킬 데 대한 주제’가 일본의 희망에도 부합되는 기초적인 議題로서 나쁠 것이 없을 것 아니냐는 뜻에서 훈령했을 따름이다.”라고 변명하였다. 이처럼 러시아 외상이 처음과 다른 모호한 답변을 늘어놓자 珍田은 기왕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이즈볼스키 주일 러시아 공사가 訓令範圍를 벗어난 恣意的 行動을 함으로써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보았다.⁴⁶⁾

그러나 러시아 外相의 이 같은 言及은 당시 러시아가 한국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정으로 한국의 중립화를 바란 것이 아니라 滿洲保護를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시킬 러·日 協商의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에 의한 韓半島中立化 提案은 滿洲問題의 해결 때까지 그에 관한 相議를 연기하자고 하는 일본측의 회답에 러시아 정부가 이처럼 만족의 뜻을 표시해버렸으므로 그대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번의 러·日 交渉過程에서 확립된, 한국과 滿洲 문제에 대한 일본의 政策的 態度가 向後 그들의 대륙침략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곧 한국 문제와 滿洲 문제가 不可分一體의 것이라고 하는 정책의 基本線이 확립되었으며 이후의 加藤 외교는 한국 문제 또는 滿洲 문제라는 것은 없고 다만 불가분의 滿·韓 問題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⁷⁾

46) 《外務省記錄》MT.1.4.1.30, 133~143, 1901년 1월 28일, 加藤宛珍田 機密 2號「朝鮮中立ニ關シ露國政府ノ商議ニ關スル回答ノ件」.

47) 滿·韓 問題가 日本의 국가적 利害에 관계되는 國策上의 重大 案件으로서 공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토의되기는 1901년 3월 12일 加藤 외상이 伊藤 수상에게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당국의 중립화 제안은 一見 좌절된 것 같으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동년 7월에 들어 아직도 러·일 외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위테가 직접 한국중립화 교섭을 재개하려고 나섰다. 그 이유는 이 시기 滿洲에 관한 淸과의 協約交渉 不調의 한 원인이 淸國에 대한 日本의 압력에 있음을 포착하고 對淸交渉의 局面打開 및 日本과의 關係惡化 防止를 일본과의 교섭에서 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⁴⁸⁾ 이러한 腹案을 가진 위테는 러·일 교섭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한국을 中立地域(gebiet)으로 해 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정부에 行政顧問·財政顧問 및 高級警察官吏와 그 下級員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 代償으로서 일본은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優越的地位(vorherrschaft)를 公然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⁴⁹⁾

또한 동맹국 프랑스로 하여금 日本의 外債發行 引受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다시 고려하였다.⁵⁰⁾ 이러한 구상은 한국의 중립화 및 러시아의 對滿 優越的 地位를 일본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위테의 러·일 교섭의 원칙을 두고 이를 단순히 한국의 內政과 外交를 분리하여 생각한 결과로만 보려는 피상적인 시각⁵¹⁾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內政 전반에 걸쳐 고문과 상하급 관리의 파견을 규정한다는 것은 保護國化 논리이지 자주독립을 전제로 한 中立化와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한국을 어느 정도 일본에 양보하겠다는 의도의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위테는 이러한 協商案件을 전술한 1차 협상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려

일본의 기본 태도를 결정할 閣議 開催를 요청하면서부터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미 동년 1월 중순 이후 滿洲문제와 한국문제를 불가분 일체의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國策의 기본방침이 확립되어 있었다. 《日本外交文書》34, No.174, 「滿洲問題ニ關シ請議ノ件」.

48) 森山茂德, 앞의 책, p.134.

49) 베·아·로머노프 著, 山下義雄 譯, 《滿洲に於ける露國の利權外交史》(原書房: 1973) pp.447 ~ 448.

50) 위의 책, p.448.

51) 森山茂德, 앞의 책, p.134.

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직업적 외교관에 의하지 않고 주러 일본공사 珍田捨己에게 직접 제시하였다(1901.7.25). 이에 珍田 공사는 위테와 장시간 회담을 가진 결과 위테가 어떠한 회생을 치르더라도 한국에 관한 러·일 간의 협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명백한 인상을 받았다.⁵²⁾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의 공식적 회답은 없었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러시아측 제안의 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본측은 이미 다른 여하한 유보조건을 붙여서라도 중립화안을 내용으로 함축한 제안이라면 아예 교섭의 기초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⁵³⁾ 둘째, 그러한 案이 러시아에 호의적인 伊藤 内閣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6월에 이에 교체된 好戰의인 桂太郎 内閣에 제출되었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사정은 이즈볼스키가 伊藤 등 일본정부 내의 소위 穩健派 勢力이 쇠퇴 도중에 있고 따라서 러·일 협상의 성립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외상 램스돌프에게 보고한 사실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⁵⁵⁾ 셋째, 이 시기에 英·日同盟論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곧 동년 7월 15일에 주영 일본공사 林董은 휴가차 런던에 와 있던 주일 영국공사 맥도날드(Sir Claude MacDonald)로 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

영국 왕 에드워드 7세(King Edward VII)가 英·日 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것은 당시의 暫定的 理解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 영국수상 솔즈버리(Robert Gascoyne-Cecil

52) Germany, Auswärtigen Amt,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Berlin, 1922~1927), Vol. XVII, pp.141~144, Eckardstein to Foreign Office, July 19-26, 1901; *Krasnyi Arkhiv*, LXIII, pp.36~37, Izvolsky to Lamsdorf, July 25, 1901(Tel); Malozemoff, op.cit., pp.167~169; 베·아·로마노프, 앞의 책, p.447.

53) White, J.A.,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64) p.84;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未刊行,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The Archives in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kyo, Japan, 1868~1945. (Microfilmed for the U.S. Library of Congress, 1945~1951), TEL.1901, 1753 P. 1901년 7월 5일 林宛曾禰外相信.

54) 베·아·로마노프, 앞의 책, p.448.

55) *Krasnyi Arkhiv*, LXIII, pp.31~32, 36~41, Izvolsky to Lamsdorf, July 17-25, October 6, 1901(Tel.Secret and No.35).

Salisbury)도 만일에 두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제휴된 국가가 공격을 가하여 올 경우에 동맹국은 침공을 받은 다른 일방국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게 될 동맹이 영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⁵⁶⁾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의 길을 택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테의 제의는 약간 시기가 늦었던 것이었으며⁵⁷⁾ 만약 그러한 제의가 좀 일찍 행해졌더라면 성과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위테 제안이 일본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좌절되었지만 러시아가 이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데는 러시아 측으로서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를테면 이 提案 發想 자체가 露・清協約 交渉의 不調에 있었던 만큼 이의 妥結展望이 보였기 때문이다. 즉 러・清 관계의 惡化와 그에 따른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李鴻章이 다시 러시아에 접근해 옴으로써 (러시아로서는) 清과의 協約交渉 再開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이었다.⁵⁸⁾ 이에 러시아는 위테·람스돌프·쿠로파트킨 등이 회합을 가져 清과의 교섭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고 滿洲還附條件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어 놓게 되었다.⁵⁹⁾ 이로써 러시아 정부측의 한국중립화 제안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2. 러시아 海外駐在 外交官들의 韓半島中立化 構想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 당국에 의한 두 차례의 한반도중립화 제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그 제안의 배경이 됐던 러・清 간의 滿洲問題處理가 순조로운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日本의 滿・韓 不可分論에 입각한 滿・韓 交換論이 고착화하기 시작했고 또한 일본 국내의 러・일 협상파들이 퇴조하

56) A.M.Pooley 역음, 申福龍・羅洪柱 譯註, 《林董秘密回顧錄》(建國大學校 出版部, 1989) pp.106~107.

57) 베·아·로마노프, 앞의 책, p.448.

58) Malozemoff, op.cit., p.169.

59) *Krasnyi Arkhiv*, LXIII, pp.32~35, Lamsdorf to Witte, Kuropatkin, July 19, 1901(letter), pp.35~36, Giers to Lamsdorf, July 22, 1901.(Tel); Malozemoff, op.cit., pp.169~170.

는 대신 英・日同盟論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영・일 동맹론은 이 시기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변화 중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점차 可視化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義和團事件의 재발을 계기로 滿洲에 출병한 러시아가 撤兵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淸의 영토보전을 주장해 온 일본과 아시아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고자 하는 영국이 각 각 自國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동맹을 제의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1902년 9월에 들어 또다시 해외주재 외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중립화를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재론하거니와 러시아 정부당국이 일본의 滿・韓 不可分論과 英・日 同盟의 추진이라는 벽에 부딪쳐 韓國中立化 提案을 포기한 사실을 상기할 때 현지 외교관들이 오히려 이 案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려 한 점은 흥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지 러시아 외교관들의 제안이 과연 정부당국과 하등의 사전 교감이 없는 전혀 돌발적인 것이었던가 아니면 당국의 지시를 교묘하게 은폐한 극적인 방법의 연출이었던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低邊에 깔고 우선 현지의외교관들이 한국중립화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이러한 상황 외에도 또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좀 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으로 천착한 다음 본 제안의 논의 과정 및 그 추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1) 背景—日本の 積極的 對外發展政策 —

1901년 9월에 小村壽太郎이 日本의 桂太郎 內閣의 외무대신으로 등장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가 곧 동아시아 정세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駐美・駐러・駐淸公使 시절에 歐美列強의 ‘帝國主義的 外交政策’을 目前에서 관찰해 온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⁶⁰⁾ 桂 내각의 전 각료와 山縣有

60) 岡本俊平, 〈明治日本の對中國態度の一斷面—小村壽太郎の場合—〉, 佐藤誠三郎・デイングスマン 編, 《近代日本の對外態度》(東京大學出版會, 1974); 黒木勇吉, 《小村壽太郎》(講談社, 1968) 참조.

朋 등 원로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⁶¹⁾ 외무성 내에서도 小村外相을 필두로 山座圓次郎 政務局長, 杉村濤 通商局長 등 對韓外交의 경험자들이 전례 없이 알맞게 포진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²⁾ 이러한 여건에서 그가 내 건 정책이 곧 外相 취임 직후에 밝힌 '內政 外交에 관한 10年計劃意見'이라는 이른바 '積極的 對外發展政策'이었다.⁶³⁾ 小村은 “지금 東洋의 局面은 列強들의 상호 경쟁과 角逐戰의 초점이 되고,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餘勢가 격심한 바, 국제적인 禍根을 양성하여 平和攪亂의 危機가 그 사이에 숨어있다.”⁶⁴⁾ 라고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의 절박함을 전제한 다음, 종래 伊藤・井上 등의 소극적 退嬰方針을 비판,⁶⁵⁾ 이른바 '小村路線'을 표방하였다.

小村路線은 그의 적극적 대외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서울・義州間 鐵道 敷設權 獲得을 중요 목적으로 삼고 對韓政策의 재편성을 도모한 것이었다. 즉 小村은 스스로 “鐵道經營은 우리 對韓政綱의 骨髓”⁶⁶⁾라고 표현하면서 장차 한국 관통의 幹線鐵道を 송두리째 일본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61) 桂와 山縣이 청일전쟁 때에 小村을 알고, 그 才腕을 평가하여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小村을 신뢰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森山茂德, 앞의 책, pp.101, 181의 주9).

62) 森山茂德, 앞의 책, p.101.

63) 小村의 '內政外交에 관한 10年計劃意見'은 다음과 같다. 곧 ① 財政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統一・敏活을 도모해야 한다. ③ 陸海軍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④ 海軍의 軍備를 확장해야 한다. ⑤ 교육제도의 刷新改良을 도모해야 한다. ⑥ 諸 法典을 民情의 실재에 집합하도록 改正해야 한다. ⑦ 교통기관을 완비해야 한다. ⑧ 海外貿易의 발달을 期할 것 ⑨ 海外事業을 보호・경영해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해외 사업의 보호・경영을 위해서는 다시 a.京釜鐵道を 速成하여 馬山浦와 연결시키고 이를 더욱 연장하여 義州를 지나 營口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른바 東清鐵道와 關外鐵道로 연결시킨다. b.中國의 福建省 福州에서 江西省 南昌을 경유, 湖北省 漢口에 이르는 南清鐵道を 건설한다. c.清・日人의 공동사업의 장려. d.對清經營에 대한 機關의 創立 등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적극적인 대외발전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日本外務省, 《小村外交史》(東京:原書房, 1966), pp.206~215.

64) 위의 책, p.213.

65) 小村의 〈內政外交에 관한 10年計劃意見〉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지금 中外의 大勢에 비추어 보아 열강과 角逐하고 우리가 國利國權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종래의 소극적 退嬰方針을 一變해서 적극적 進取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바 … ” 《小村外交史》 pp.206~207. 또 小村이 伊藤과 井上に 비판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岡本俊平, 앞의 논문 참조.

66)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卷- 文書の部 (日本國際聯合協會, 1957, 原書房 復刻, 1966) p.207, 1902년 9월 29일 桂首相宛 小村外相 〈清韓事業經營費要求 請議〉.

완전히 그들의 세력범위에 넣고,⁶⁷⁾ 나아가서는 유사시 철도보호를 위한 出兵權을 주장하여 그들이 東洋大局을 보전할 수 있도록 軍備擴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다.⁶⁸⁾

이러한 외교정책은 장래의 전쟁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小村路線의 眞髓가 京義鐵道敷設權 획득에 있었던 만큼 경의철도가 종래부터 러시아가 자국의 세력범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던 한국 북부를 관통하여 滿洲에 접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철도의 부설권을 일본이 획득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일본의 세력범위가 한국 북부에 까지 확대되고 전 한국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외에 다른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획의 成敗는 滿洲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동 여하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러시아와의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⁶⁹⁾

이와 병행하여 일본은 한국이 京義鐵道を 自力으로 부설하려 하면서도 資金難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파한 뒤 이에 返濟不可能한 資金을 借款으로 공여하고 그 담보로서 경의철도와 海關稅 收入 등을 억제하여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일본의 사실상의 관리 하에 둬으로써 韓國經濟를 실질적으로 장악한다는 것까지도 획책하였다.⁷⁰⁾ 京義鐵道敷設權 獲得과 借款供與 計劃을 연계시키는 이러한 구상은 1901년 12월 하순 桂 수상의 棄山別邸에서 桂 수상·小村 외상·주한 林權助 공사가 회동한 이른바 ‘棄山會議’에서 방침으로 결정되었던 바 그 구체적인 추진은 第一銀行 名義로 300 만원 정도의 차관을 공여한다는 것이었다.⁷¹⁾

또한 京義鐵道敷設權 獲得工作은 英·日同盟 構想과도 連動해서 進행되었다. 왜냐하면 이 철도 부설계획을 爭點으로 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적 대립에 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합의 보증이 바로 英·日同盟 構想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일 동맹 구상의 실현가능성 여하는 철도부설권 획득의 방법에 영향을

67) 위의 문서.

68) 《小村外交史》 p.213.

69) 森山茂德, 앞의 논문, pp.101~102.

70) 위의 논문, pp.102~103.

71)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Tel. 1902(필 33~35卷) pp.579~581, 1902년 3월 31일 小村宛林 電報.

주지 않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설권 획득 그 자체를 단념해야 하는 것도 예상되었다.⁷²⁾ 그런데 英·日同盟이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⁷³⁾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됨으로써 小村路線은 정치적으로 한층 보강되었다.

小村路線은 당시 여론화하고 있던 韓·日秘密攻守同盟 구상과도 연계되었다. 원래 이 同盟案은 東亞同文會 등에서 주장하는 民間世論에 불과했지만 小村路線의 추진을 위해 정부당로자들이 이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당시 한국 정부가 資金難에 시달리면서도 京義鐵道敷設을 自力으로 추진하려 함에 따라⁷⁴⁾ 韓·日 양국 간에 부설권 양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駐韓 林 공사는 본국 정부에 “京仁·京釜鐵道와 같이 暫定條約에 依據한 당연한 讓與조차도 賣國行爲로서 비난받는 現下의 사정에서 새로운 西北鐵道の 양여를 얻으려고 하는 교섭은 곤란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⁷⁵⁾ 이 보고가 시사하는 바는 日本으로서는 甲午改革時의 ‘韓·日暫定合同條款’과 꼭 같은 새로운 約定을 양국 간에 체결하는 것이 이러한 장애를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 또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맹조약 체결은 유사시 한반도에로의 日本軍 出兵의 명분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小村은 이를 환영하여 그의 對韓政策의 일부로 채택

72) 森山茂德, 앞의 책, pp.101~102.

73) 英·日同盟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세력과 이익이 타국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것, 그리고 그 사실의 확인을 전제로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의 이익과 세력을 보호해야 할 자유행동(Free hand)을 갖는 것’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에 관한 일본측의 집요한 요청과 영국의 망설임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조약체결에 이르러 영국정부는 그 제 1조에 ‘일본이 한국에서 현격한 이익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썼으나 일본의 한국병합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자유행동’이라는 표현은 승인하지 않고 다만 ‘該 利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였다.

《日本外交文書》34, pp.9~10, 1901년 4월 17일 加藤外相宛林董駐英公使 電報, pp.66~69, 12월 7일, 小村外相 意見書, pp.41~46, 80~83, 86, 11월 7.8일, 12월 17, 19일, 小村宛林駐英公使 電報, 《日本外交文書》35, pp.32~92, 1902년 5월 6일, 小村宛林駐英公使信; 《小村外交史》pp.286~290; 角田順, 앞의 책, pp.96~99;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卷-文書の部, pp.199~200(日英協約締結の件), pp.203~205(日英同盟協約)

74) 京義鐵道는 이미 한국의 宮內府 內藏院 소속의 西北鐵道局에서 李容翊의 지도 아래 自力敷設計劃이 수립되어 있었다.

《日本外交文書》34, pp.610~613, 1901년 10월 23일, 小村宛林機密信.

75) 위의 문서.

하게 되었다.

한편 韓廷內에서는 英·日 同盟의 성공과 小村의 強硬路線에 영향을 받아 친러파가 쇠퇴하고 친일파가 득세하는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이를테면, 친러파인 閔種默(1835~1916)과 朱錫冕 등은 위축되어 자파세력 유지에 급급하였고 李容翊(1854~1907)은 ‘雲南 신디게이트 차관’을 성립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內閣員들에 의해 배척 당하고 있었다.⁷⁶⁾ 반면에 申箕善(1851~1909)과 韓圭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의 새 내각이 2월 15일에 성립되자⁷⁷⁾ 3월에 와서 度支部大臣이 된

76) ‘雲南 신디게이트’(Yunnan Syndicate, Syndicat du Yunnan, 隆興公司)는 1896년에 英·佛 資本家 들의 合資에 의해서 淸國 雲南省의 광산채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親露派인 李容翊은 嚴淳妃와 姜錫鎬 등 宮廷派의 지지를 얻어 本位貨로써 金貨를 주조하고 銀行을 설립하는 등의 幣制改革 計劃을 세운다음, 이를 外資導入에 의해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美·日·러 3국의 借款,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은 그것이 자칫하면 그들 차관공여국으로 하여금 對韓經濟支配를 초래하는 端緒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고 그 대신 이 외의 국가를 물색하기로 하였던 바, 결국 雲南 신디게이트와 1250만 프랑(500圓)의 차관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였다(1901년 4월 17일). 이에 주한 영국대리공사 가빈즈는 이 차관계약이 앞서 2월 20일에 단행되던 브라운 총세무사의 해고와 연동된 것으로 인식, 이는 틀림없이 한국정부가 영국 배척을 목적으로 李容翊을 표면에 내세운채 러시아 및 프랑스의 배후조종에 따라 획책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하였다. 일본공사 林權助와 미국 공사 알렌도 한국에 대한 자국의 차관공여의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영국에 동조하면서 역시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韓廷內에서도 점차 李址鎔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파의 반대운동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이와 같은 여러 갈래의 반대운동에 부딪쳐 雲南 신디게이트 차관은 결국 한국정부가 1902년 2월 26일자로 외부대신 朴齊純의 명의로 차관 이행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日本外交文書》34, pp.548~552, 1901년 4월 24일 加藤宛林 電報, pp.542~543, 1901년 4월 19일 加藤宛林 電報, pp.558~563, 1901년 5월 6, 7일 加藤宛林 機密信, pp.543~544, 1901년 4월 22일 加藤宛林 電報, pp.570~574, 1901년 5월 22, 24일 加藤宛林 機密信, pp.595~596, 1901년 12월 24일 小村宛林 電報 《駐韓日本公使館記錄 マイクロ》104號, pp.105~112, 1901년 4월 11일 加藤宛林 機密信, pp.216~222, 1901년 10월 23일 小村宛林 機密信, pp.119~124, 1901년 5월(日字不明) 加藤宛林 機密信, 112號, pp.30~43, 1902년 2월 25일 小村宛林 機密信, 114號, pp.87~88, 1901년 6월 10일 曾爾外相宛林 機密信, 〈明治 34年~35年 佛國借款〉(필 제7권);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6, Allen to Hay, March 23, April 29, 1901, No.17, Allen to Hay, October 11, 14, 1901; 植田捷雄, 〈在支列國權益概説〉(嚴松堂, 1939), p.304; 森山茂德, 〈朝鮮における日本とベルギーシンディケート〉《年報・近代日本研究》2: 近代日本と東アジア, (1980) p.40. 羅愛子, 〈李容翊의 貨幣改革論과 日本第一銀行券〉, 《韓國史研究》45, (1984) pp.70~74.

77) 《高宗實錄》光武 6년 2월 15일條.

沈相薰(1854~?)은 高宗의 內意를 얻어 親日派의 李址鎔(1870~?)·朴齊純과 함께 林 공사를 통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⁷⁸⁾

이러한 제반 여건에 고무된 小村은 드디어 1902년 9월 29일자로 '淸·韓事業經營費要求請議의件'⁷⁹⁾을 閣議에 제출, 이를 통과시킴으로써(10월 2일)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한층 노골화하였다.

2) 러시아 3 外交官의 韓半島中立化 構想 始末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小村의 적극적 대외발전 정책의 표방아래 京義鐵道敷設權 獲得을 통한 일본의 한국북부진출기도, 返濟不可能의 차관공여를 통한 일본의 한국 경제권 장악 기도, 이에 연동시킨 英·日 同盟 체결의 성공, 韓·日 攻守同盟案의 대두, 韓廷內 親露派衰落의 政局變動 등은 상황변화에 민감한 현재의 러시아 외교관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시한 카드가 곧 韓國中立化構想이었다.

러시아 3 외교관의 한국중립화구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02년 9월 주일 미국공사 버크(Buck)가 小村 일본 외상에게 이를 제보한 데서 비롯되었다.

78) 《日本外交文書》35, pp.456~465, 1902년 3월 31일 小村宛林 機密信.

79) 1902년 9월 10일 小村이 각의에 제출한 「淸韓事業經營費要求請議의件」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 대해서는 총경비 140만원으로 ① 경부철도의 속성을 위하여 정부보증으로 사채를 발행시킬 것, ② 경의철도 부설권과 해관수입 관리권의 획득을 위하여 한국정부에 차관을 공여할 것, ③ 馬山·三浪津 간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할 것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국에 대해서는 총경비 339만원으로 ① 日淸銀行창립, ② 天津과 上海에 상품진열소를 건설할 것, ③ 청국 내의 사업(광산·철도·水路·商況)을 조사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가 이러한 「請議」를 내어놓은 배경에는 “만약 경의철도를我國에서 부설하여 이를 경부선에 연결시키게 될 때가 되면 한국관통의 철도는 전적으로 帝國의 소유로 되며 한국전부를 我勢力範圍에 歸케 하는 實을 遂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日淸銀行이 列國경쟁 틈바구니에서 對淸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도저히 美·英와 같이 민간 자본가의 능력에는 의뢰할 수 없음은 물론, 獨·佛 이상의 助力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면 成效를 期할 수 없다.”라는 표현처럼 정부가 對淸 경영을 하는 부르조아지에게 장기 低利貸付를 해주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어느 것이나 극히 제국주의적인 착상이며 러·일전예의 길을 터놓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日本外交文書》35, No.268 「淸韓事業經營費要求請願ノ件」.

내용인 즉, 파블로브 주한 러시아 공사는 귀국 도중에 東京에서 이즈볼스키 주일 러시아공사를 만나 러·美·日 3국 공동보장 하에 한국중립화구상을 실현시킬 것을 서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관해서도 장시간 요담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파블로브는 장차 파리에서 카시니(A.P.Cassini)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만나 이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할 것이며 결국 그들 3 외교관은 ‘이 문제의 成事を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먼저 미국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이를 자국 정부에 3 외교관의 共同陳情 形式으로 勸告한다는 것이었다.⁸⁰⁾ 이를 요약하면, 주한 공사 파블로브·주일 공사 이즈볼스키 그리고 주미 대사 카시니 등 3 자가 미국을 권유하여 한국의 중립화를 실현시키려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중립화안은 러시아가 종래 구상해 왔던 案을 약간 변경시킨 것이었다. 종래의 안은 列國의 共同保證이라는 방식이었으며 그 경우 열국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파블로브 등의 계획은 공동으로 중립을 보장해야 할 국가를 러·일 양국과 미국 등 3국으로 특정지워 놓았던 것이다.⁸¹⁾ 파블로브 등이 특히 미국을 첨가시킨 이유는 명료하지가 않지만 아마도 관계 열국 가운데서 美國의 利害, 특히 경제적 이해가 한국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큰 것이라는 사실이 첫째의 이유일 것이며, 또한 한국정부 내의 친미파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시기 미국 정부가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특수 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이 러시아 외교관들로 하여금 ‘한국에 관해서도 미국은 (러시아의) 권유에 따를 것

80) 《日本外交文書》35, p.393, No.182, 小村外務大臣ヨリ在露栗野公使宛 電報 「パウロフ米國ニ於テ日露米三國共同保障ノ下ニ韓國中立ヲ提議シタル趣通達ノ件」; 《外務省記録》MT.1.4.1.30. pp.234~237, 1902년 10월 8일, 小村宛林董 機密 28號 「朝鮮中立問題ニ關スル電信請訓ノ件」; Seung Kwon Syn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1876~1904*, (Seoul:Yuk phub sa, 1981) pp.332~333.

81) 《日本外交文書》35, pp.393~394, 1902년 9월 19일 栗野駐露公使宛小村 電報; F.O.405, No.129, p.29, Scott to Lansdown, December 25, 190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es from U.S.Ministers to Korea*, Microcopy No.134(이하 U.S.Ministers' Despatches) Roll No.19, Allen to Hay, November 6, 1902.

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⁸²⁾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 헤이(John Hay)는 8월에 카시니에게 ‘미국의 通商과 企業의 자유가 滿洲에서 보장된다면 미국정부는 滿洲에 관한 러시아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⁸³⁾

한국중립화 문제가 또다시 러시아 외교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음이 버크 공사를 통하여 알려지자 일본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小村 외상은 9월 19일 주러 栗野愼一郎(1851~1937) 공사에게 이 사실을 전보로 소상하게 알렸다. 곧 小村은 그 전보에서 자기가 주일 미국공사에게 ‘만약 미국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교섭을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먼저 일본정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자신의 희망을 미국 정부에 알려주도록 요구하였음을 말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현재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일본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교관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중립화안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한 위치를 防碍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滿洲에서의 러시아의 활동을 일본이 견제할 수 없게할 것’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견해도 附言했음을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⁴⁾ 그는 다음 날인 9월 20일 다시 주러 栗野 공사에게 동 전보내용을 駐佛・美 各國 公使에게 轉電할 것을 훈령하면서 동시에 高平小五郎(1854~1926) 공사에게도 打電하여 ‘同 電報에서 언급된 共同陳情은 러시아 정부가 환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카시니가 워싱턴에 귀임한 후의 행동을 상세하게 관찰할 것이며 만약 同 問題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교섭 받았을 경우 미국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는지 세밀히 살피도록 희망한다’고 하였다.⁸⁵⁾

또한 小村 외상은 9월 22일 주한 林 공사에게도 훈령을 내려 러시아 3외교관

82) 森山茂德, 앞의 책, p.138.

83) Zabriskie, E.H, *American-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A Study in Diplomacy and Power Politics, 1895~1914*, (Greenwood Press, Westport, 1973) p.85.

84) 주 80).

85) 《日本外交文書》35, No.183 「在露公使宛電報第97號ヲ在佛・米各國公使へ轉電方訓令ノ件」.

의 한국중립화운동을 알리면서, 아울러 전 주한공사 웨베르(Karl.I. Waeber)가 高宗의 卽位 40周年 記念式典에 賜暇歸國한 파블로브를 대신하여 참석하려고 10월 16일 韓國에 渡來한 사실이⁸⁶⁾ 혹시 이 문제와 연계된 것이나 아닌지 심히 우려하였다. 이를테면, 러시아 외상 람스돌프가 웨베르의 來韓에 대하여 祝典 慶祝 외에 다른 사명이 없다고 주러 栗野 공사에게 밝혔는데도 小村으로서의 절대적인 믿음이 가지 않아서, 만약 한반도중립화 문제로 來韓했다면 그 문제는 앞서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바도 있고 또한 韓廷의 일부에서 尙今도 夢想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來韓이 도화선이 되어 同 問題의 再燃을 보게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의 滯韓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小村은 같은 훈령에서, 웨베르의 來韓이 정치적인 사명이나 한반도의 중립화논의와 관계가 없다면 다른 목적으로써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하나는 한국 황제의 즉위 40주년 慶祝大典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의 財源枯渴에 편승, 甘言으로써 借款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報償으로서 어떤 특권을 보장받으려는 胸算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를 이용하여 京義鐵道敷設權을 얻으려는 것일 터이니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덧 붙였다.⁸⁷⁾

이후 小村 外相은 이러한 러시아 3 외교관의 提案內容을 이미 7월 23일부터 개시되어 왔던 러·日 간의 협상(예비회의) 테이블에 상정함으로써 豫備會議의 場을 러시아 案의 저지를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파블로브 등의 계획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로부터 韓·日秘密攻守同盟案을 승인 받으려고 했다⁸⁸⁾ 그러한 의도는 小村이 뒷날 (11월 1일) 栗野에 보낸 協商案에서 특히 핵심으로 강조한 제4항-‘日本은 韓國內政改革을 위한 助言과 助力(軍事上的의 助力을 포함)의 專權을 가질 것을 러시아가 인정할 것’⁸⁹⁾ 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韓·

86) 《日本外交文書》 35, p.393, 1902년 9월 17일 林宛小村 電報.

87) 《日本外交文書》 35, p.395, 1902년 9월 22일 林宛小村 機密信, 「ウエーバ來韓ニ關シ注意ノ件」.

88) 外務省政務局 第3課 編, 《日露交渉史》(原書房, 1969) 上卷, pp.364~365.

89) 위의 책, pp.365~366.

日秘密攻守同盟案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 것 외에 다름아니었다.

한반도중립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해외주재 일본 외교관들은 본국의 훈령에 따라 각자 진상 파악에 분주하였다. 주미 일본 공사 高平은 10월 6일 미국 국무장관 해이를 往訪하여 한반도중립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를 試探해 보았다.

高平:本件에 대하여 本官이 明解를 바라는 바는 今日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한국의 중립을 담보하려는 것인지, 또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이다. …… 러시아가 중립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중립 그 자체보다도 어떤 深遠한 希圖가 있는 것이 아니면 금일 특히 고려할 理가 없을 것 같다. 즉 군사적 견지에서 그 필요를 간취한 것이 아닌가도 알 수 없다. …… 과연 그럴 때는 本案은 滿洲還附 문제와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헤이:러시아는 滿洲 환부에 관해서는 재삼 증언이 있었고 현재 그 증언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다.

高平:그 점은 제국정부의 의견도 같다. 그러나 청국의 현상은 尙今도 불안정이어서 장래 실로 우려할 것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義和團의 재연이 없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 만약 這般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滿洲還附를 遷延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이것이 我國 세력을 한국에 유지함이 극동 평화를 위하여 緊切하다는 까닭이다. … 本件을 카시니 伯으로부터 제의해 온다면 어떤 이유를 기초로 할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我國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찰이 있을 것을 희망한다.

헤이: 貴意를 알았다.⁹⁰⁾

이날 회견을 통하여 高平 공사는 해이 국무장관으로부터 아직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提言에 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만약 今後 그런 提言이 있을 때에는 본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의견에 충분한 考量을 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10월 9일 高平 공사는 한반도중립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견을 看取하기 위하여 다시 국무장관과 회견하였다.

90) 《日本外交文書》35, p.397, No.188 「韓國中立問題ニ關シ米國務卿談話ノ件」, p.399, No.191, 「韓國中立問題ニ付國務長官ト談話ノ件」.

헤이:我國이 他國과 함께 한국의 중립을 공동보장하는 것은 我 憲法에 이를 금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傳來 襲用政略의 궤도를 逸脫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크게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高平:귀국에는 그와 같은 先例가 없는 것으로 안다.

헤이:‘사모아문제’(1899)⁹¹⁾와 義和團事件 같은 것은 특수 사정이 있어 我國으로 하여금 他 列國과 협동 행위를 취하게 하였던 것이다.

高平:그러면 귀국이 한국중립 파위에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헤이:러시아가 제의하면 대통령에게 稟議한 후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다. 버크 氏의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 외교관들이 직접 귀국에 제의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러시아로부터는 이미 本件에 대하여 貴國에 제의한 일이 없는가?

高平:이번 일에 대해서는 먼저 러시아로부터 귀국에 제의하고 귀국을 거쳐 我國에 제의하여 결국 러·美·日 3국이 협동담보로써 한국의 중립을 도모하려는 意圖 같다. …… 러시아는 滿洲의 중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헤이:귀 정부는 한국중립과 동시에 滿洲중립을 얻게 된다면 본안을 찬성할 것인가?

高平:그것은 卽答할 수 없다. …… 今回 러시아가 한국중립 문제를 귀국에 제출하려 하는 것을 보면 이는 아마 (우리의) 現 內閣에서도 한국중립을 단독으로 考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우선 귀국을 거쳐 본안을 제출해 보자는 의향인 것 같다.

헤이:러시아는 英·獨 양국에 대해서도 본안을 제출할 의향인지?

高平:본관이 들은 바에 의하면 러·日·美의 협동담보로써 한국을 중립화하려는데 불과하다. …… 요컨대 러시아로부터 본안이 제출된 후 만약 귀국이 이에 응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公然의 수단을 취하기에 앞서 我정부와 內議함을 얻는다면 一切 사정은 명료하게 되어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헤이:貴意를 이해하였다.⁹²⁾

高平 공사는 10월 15일에도 한반도중립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의향을 탐지하기

91) 1889년 이래 미·영·독 3국의 공동관리체제 하에 있던 사모아 제도가 1899년 11월 14일 영·독 간의 조약체결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 이 조약에 따라 영국은 독일령 솔로몬 제도와 통가제도를 얻는 대신 사모아의 우폴루·사바이 등 2개섬을 독일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사모아 제도의 동부는 미국에, 서부는 독일에 각각 최종적으로 분할되었다.

92) 《日本外交文書》35, p.399, No.191, p.403, No.192 「韓國中立問題ニ關シ米國務長官ノ意向報告ノ件」.

위하여 국문장관과 요담하였다. 高平은 국무장관으로부터 '13일 러시아대사와 대담하였으나 한반도중립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날 국무장관은 지난 9일의 회견에서 말한 바를 한층 명확한 어조로써 高平에게 반복하면서 “미국정부의 태도로는 현재 본 문제의 제의를 접한다하더라도 이를 대통령에게 具稟하기 전에는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私見으로서라도 미국정부는 새로이 傳來襲用 政略의 궤도에서 逸出하여 한국중립 때문에 자신을 羈束하는 약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⁹³⁾

高平공사는 11월 20일에도 국무장관을 방문하여 滯美中の 파블로브로부터 한국중립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탐지하려 하였다.

高平:각하로서는 러시아로부터 한국중립문제를 제출하려는 의향에 관하여 어떠한 징후도 느낀 바 없는가?

헤이:그들이 該 문제를 제출해도 採納되지 않으리라고 信認한다.

高平:러시아대사와 파블로브 氏 등이 귀 정부가 該 문제를 採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信認한다면 이를 제출함이 없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헤이:나는 그들이 該 문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

高平: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된다면 이 이상의 다행이 없을 것이다.

헤이: 그렇게 생각한다.⁹⁴⁾

이와 같이 주미 高平 공사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제안한 러·美·日 3국 공동담보 하의 한반도중립문제를 러시아정부가 미국정부에 제의하는가의 여부와 이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를 탐지하고, 아울러 가능한 限 한반도중립안을 타파할 수단을 취함으로써 가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수차에 걸쳐 국무장관과 회견하였다. 그 결과 미국정부가 종래부터 이러한 국제적 공동 보증과 같은 대외 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政策으로 삼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⁹⁵⁾ 또한 러시아 대사나 파블로브가 이 문제를 아직도 제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제의한

93) 《日本外交文書》35, p.403, No.192, p.404, No.193 「韓國中立問題ニ付國務長官ト會談續報ノ件」.

94) 《日本外交文書》35, No.204, No.205.

95) 《日本外交文書》35, pp.399~403, 1902년 10월 14일, 小村宛高平 機密信.

다해도 미국정부가 이를 거부할 태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⁹⁶⁾

高平 공사는 국무장관의 태도와 言明을 어느 정도 信認하면서도 다시 그 태도를 확인할 意圖로, 1903년 2월 9일 러시아의 關東管割權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本件을 언급하고 그 후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제의가 없었는가를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장관이 역시 러시아측으로부터 該 문제에 대하여 아무 것도 들은 바 없다고 하였으므로 러시아측이 러·미·일 3국 공동보장 하의 한국중립문제를 미국측에 제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⁹⁷⁾

한편 駐韓 林 公使도 韓國의 情況과 웨베르의 모든 동정을 경계한 다음 1902년 10월 22일 이를 小村 外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稱慶禮式의 延期가 이미 1개월 전에 발표되어 同 特使(웨베르:인용자)도 알터인데 공공연히 稱慶禮式 特派使節의 자격으로서 來韓, 國書를 奉呈하는 따위는 아무래도 異例의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각 국 사신들도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다. …… 혹시 本國政府의 훈령에 따라 불원간 자격변경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 웨베르가 주한 공사로 선임될 것 같다. …… 웨베르의 來韓 前 이곳에는 同使의 來韓과 동시에 韓·露 間에 모종의 교섭이 개시될 것이라는 風說이 있었다. 中樞院 議長 金嘉鎮 氏는 은밀히 本使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소문을 전하는 동시에 “황제 폐하(고종:인용자)는 웨베르가 어떠한 密旨를 지니고 있는지 자못 걱정하는 모양”이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현 外事課長으로서 근간에 遣英大使를 隨行, 다소 기밀을 알고 있는 高義敬은 “韓廷內의 露國派로 지목되는 일당 중에서 웨베르의 來韓 機會를 틈 타 中立의 실행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다”고 塩川一太郎 통역관에게 內話해 주었다. …… 각 방면의 보고에 따른 종합적인 추정에 의하면 이러한 親露派의 策動은 세력만회책의 一端인 것으로써 그 起因은 아마도 웨베르의 來韓에 동행한 李範晉의 아들이 폐하에게 올렸다는 書面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탐지할 수 없다. 그러나 李範晉이 露國當路者의 談論을 직접 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신문에 계속 게재한 내용으로 보나, 또는 여행자·군인·통신원들의 傳言 등을 종합해 볼 때, 근간 한국은 露國에 대한 냉담한 태도 때문에 露國政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親露派들이) 露國의 外交方針을 臆測해서 모종의 보고를 한 것

96) 《日本外交文書》35, pp.403~404, 1902년 10월 16일, 小村宛高平 電報, pp.414~417, 11월 20일 小村宛高平電報, 11월 24일 同 機密信.

97) 《日本外交文書》36-1, No.394: F.O.405, No.137, pp.4~5, Jordan to Lansdowne, February 20, 1903.

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書面報告內容이 다소라도 황제의 眞意를 움직이게 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韓廷內의 이른바 露國派는 이 기회를 이용, 사실을 附會했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한 바와 같은 風說을 낳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98)

林 공사의 이상과 같은 보고는 모두가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웨베르가 한국측과 韓國中立問題를 相議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다.

이 때 주한 미국공사 알렌이 국무성으로부터 러시아 3 외교관의 제안에 관한 內示를 받았다는 것을 林 공사에게 말하면서 林 공사도 그와 같은 보고를 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가의 여부와 該 제안에 관한 林 공사의 의견을 물어왔다. 이에 대하여 林은 이미 본국정부로부터 同様の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該 제안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이미 러시아정부가 일본정부의 협찬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일본정부는 該 제안의 이유를 러시아가 滿洲에서 자유 행동을 얻으려는데 있다고 추측하여 응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林은 滿洲와 北清 전체에 있어서의 門戶開放主義는 美·日 양국정부가 꼭 같이 主唱하는 바이므로 러시아가 한국의 중립을 제안한 배후에 청국의 門戶開放主義에 정반대인 政略을 은닉하고 있는 이상 일본정부는 該 案을 승락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정부도 일본의 결정에 찬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니 알렌도 동감을 표시하였다.99)

지금까지의 論究를 통하여 推論해 볼 때, 파블로브 등 3 외교관의 계획은 실제로 있어서 본국 정부의 승인이나 훈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반도중립화안은 러시아측이 끝내 미국정부에 정식 제의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중립화안은 이른바 小村路線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영·일 동맹에 편승하여 점차 노골화하자 러시아 외교계의 최첨병인 이들 3 외교관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恣意로 구상

98) 《外務省記錄》MT.1.4.1.30, pp.198~204, 1902년 10월 22일 小村宛林 機密 126號 「露國特使ウエバー來韓ニ關スル件」.

99) 《日本外交文書》35, No.190, 194~196, 198~199, 202~203;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9, (原書房, 1981) pp.318~319, No.246 小村宛高平 機密 139號 「韓國中立問題ニ關シ露國外交官ノ提案ニ關スル件」 1902년 11월 4일.

해 본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전에 누설됨으로 해서 급기야 자국을 포함한 관계당사국들에 제대로 한번 상정·논의되지도 못한채 흐지부지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이들 3 외교관의 중립화제안에 민감했던 일본은 오히려 이를 활용, 러·일협상을 위한 豫備會議의 爭點으로 삼아 차제에 韓·日攻守同盟案을 성사시키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속셈도 실현되지는 못했다. 예비회의 자체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크림리아 여행과 위테의 滿洲 시찰로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테가 귀국하는 10월까지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¹⁰⁰⁾ 더구나 위테의 歸朝報告는 '한국문제는 일본과 대립을 회피하는 것이 得策'이라하여 이를 권고하였고,¹⁰¹⁾ 11월 9일 알타에서 개최된 四相會議에서도 한국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¹⁰²⁾ 예비회의는 결국 다음 해인 1903년 초두에 중단되어 버렸다.

만약 러시아정부가 本 案을 러·일 양국에 정식 제의했다손 치더라도 그 귀추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의 意向 如何에 달려 있었던 만큼, 英·日 同盟 후 한국을 독점지배하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는 일본이 동의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미국 역시 滿洲와 北淸 전체를 상대로 門戶開放主義를 주장하는 터에 일본의 對美計略—러시아의 한반도중립화제안 배후에는 청국에 대한 門戶開放主義를 반대하는 그들(러시아)의 政略이 은닉되어 있음을 미국에 주지시키는 戰略—마저 크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 憲法상으로도 타국과 협동하여 어느 일국의 중립을 보장하는 문제는 전혀 論題 外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3 외교관의 한국중립화 제안은 성립될 가능성이 없었다.

100) Malozemoff, op.cit., pp.198~200; White, op.cit., p.89.

101) Malozemoff, ibid., pp.200~201; White, op.cit., p.50.

102) Malozemoff, ibid., pp.201~202; White, ibid., p.50~51.

第 5 章 러·日開戰期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外交

1. 戰時局外中立 外交의 背景

1900년 7월 義和團事件의 재발을 계기로 러시아는 16만 대군으로 滿洲를 재점령하였으나 점차 과병 명분이 퇴색되고 국제적인 여론도 불리하여 마침내 淸과 ‘滿洲撤兵條約’을 체결하였다(1902.4.8).¹⁾ 그러나 러시아가 이 조약에 따라 1차 철병(1902.10.8)을 단행한 다음 돌연 2차철병(1903.4.8 예정)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압록강 연안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그들의 동아시아정책이 더욱 적극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을 띠어 갔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동향은 급기야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列強들의 疑懼心を 증폭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1898년 초부터 당시 外相 무라비요프(M.N.Muraviev)의 ‘對滿集中政策’에 따라²⁾ 한반도를 사실상 일본에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對滿集中政策도 독일의 山東 진출 및 미국의 門戶開放 宣言과 맞물려 적극성을 떨 수 없었고 돌발사태인 義和團事件도 연합군에 의해 진정기미를 보임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이 한 순간(세력균형상) 평온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1차철병기에서 2차철병 약속 일까지의 6개월간은 일본과 英·美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철병이행 여부를 관망하던 시기였고, 러시아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황제 니콜라이 2세(Czar Nicholai II, 이하 ‘짜르’)와 樞密院 顧問 베조브라조프(A.M.Bezobrazov)의 결탁에 의한 ‘前進政策’(forward policy)이 閣僚들의 구체성 없는 동아시아정책과 상호 대립하면서 병존하던 시기였다.³⁾

1) 이 조약에 의하면 “본 협약 조인 후 6개월 간에 盛京省 西南部 遼河에 이르는 지방의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고 또 철도를 淸에 반환할 것, 다음 6개월 간에 盛京省 殘部 및 吉林省에 있어서의 러시아 군대를 철수할 것, 또 다음 6개월 간에 黑龍江 所在의 러시아 군대를 철수할 것”으로 되어있다.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35, (日本國際聯合協會, 1954) No.78~81, 96, 99~100.

2) 拙稿, 〈大韓帝國期(1896~1898)의 韓·日關係〉《史叢》31, (高大史學會, 1987) pp.35~37, 42.

1) 러시아와 日本의 東아시아 政策

上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東아시아 政策은 더욱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어 갔는데, 이러한 갑작스런 方向修正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는 다름아니라 러시아의 2차 철병기일을 전후하여 각료들의 동아시아 정책이 방향을 잃게 되고 반대로 베조브라조프의 전진정책이 이른바 '新路線'(New Course)이란 이름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⁴⁾ 본래 이 新路線政策의 채용은 러시아 정부 내에서의 당파대립에 기인한 것이었던 바, 藏相 위테(S.Y.Witte)·外相 람스돌프(V.N. Lamsdorf) 등의 穩健派와 베조브라조프 등의 宮廷派, 그리고 陸相 쿠로파트킨(A.N.Kuropatkin) 등의 軍部사이에 있어서 동아시아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왔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었다.⁵⁾ 그러나 이 정책의 채택은 '로젠·西協定'(Rosen-Nishi Convention, 1898.4.25)⁶⁾ 이후의 동아시아 평화를 포기한 것이어서 그 결과는 러·日 간의 極限對立이라는 과정을 거쳐 끝내 러·日開戰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정책의 채택 그 자체야말로 하나의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新路線政策의 基本路線은 “양보는 단지 전쟁을 유도할 뿐이며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超強硬政策임을 알 수 있다. 즉 滿

3) 金元洙, 〈龍岩浦事件과 日本의 對應〉《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一潮閣, 1990) p.84.

4) D.S. Crist, "Russia's Far Eastern Policy in the Making,"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XIV, No.2 (June 1942) p.332; E.M.ジェーコフ, 《極東國際政治史 1840~1949》上(平凡社, 1957) pp.213~221;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 政策》(一潮閣, 1979) p.88.

5)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87) p.140.

6) 이 협정은 한국문제에 관한 러·일 간의 협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러·일 양국은 한국의 주권 및 자주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 ② 장래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러·일 양국은 한국이 러시아나 일본에 助言 및 원조를 요구할 경우, 상호 동의 없이 군사교관이나 재정전문가를 파견하지 않는다. ③ 한국에서 상당수의 일본인이 거주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상업 및 산업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정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日本外交文書》31-1, No.164.

洲에서의 러시아의 利害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對 滿·韓 積極策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서, 첫째, 鴨綠江地域防禦政策(Yalu Project)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 滿洲防禦를 위해 門戶閉鎖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한국문제만 국한시켜 보았을 때도 러시아정부 내에서는 의견대립이 있었던 바, 베조브라조프 등 宮廷派가 이처럼 鴨綠江 利權確保 및 滿·韓 國境防禦線 확립에 관한 방침을 밝혔을 때 위테·람스돌프·쿠로파트킨 등은 역시 반대하였다.⁸⁾ 위테 측은 비록 한국을 일단 일본에 맡긴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로 인한 과중한 방위비 부담으로 괴로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러시아는 한국을 세력 하에 넣을 준비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처리를 위한 회의가 1903년 4월 8일에 개최되었을 때는 의견 대립이 쉽게 조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新路線이라는 大勢에 따라 鴨綠江 利權維持의 입장으로 결정되었다.⁹⁾

이제 新路線으로 표현되는 러시아의 對 東아시아 強硬政策이 滿·韓 地域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이미 1903년 3월경부터 森林會社의 보호라는 구실 아래 軍隊를 파견하여 압록강을 渡江, 義州를 거쳐 한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龍岩浦에 주둔시키더니(4.21~), 이어 砲臺를 구축하고 電線을 가설하고 7월 20일에는 한국을 협박, 租借地 25만 평을 획득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이 英·日의 항의로 저지되자 이번에는 동년 10월에 이르러 암암리에 砲臺를 築設하였다.¹⁰⁾ 이와 같은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흔히 ‘龍岩浦事件’이라 하는데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베조브라조프의 前進政策이 新路線으로 채택되어지는 과정(4월 8일~5월 20일)에서 일어났고, 그 목적은 “...러시아의 활동은 일본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서 일본의 利權膨脹을

7) B.A.Romanov, *Rossiia V Manchurloi 1892~1906* (Leniangrad, 1928), Eng. Tran. by S.W.Jones (Michigan: 1952) p.284; ジェーコフ, op.cit., pp.219~220; White, op.cit., p.50; Malozemoff, op.cit., p.207; 金元洙, 앞의 논문 p.86.

8) Malozemoff, Ibid., pp.215~216; White, Ibid., pp.51~52, 54~56.

9) 森山茂徳, 앞의 책, p.141.

10) 《日本外交文書》36-1, No.401~409;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 (鷄鳴社, 1939) pp.571~576.

압록강 지역에서 방지하려는 것이다...”라는 일본측의 견해로 미루어보아 베조브라조프의 前進政策 및 압록강 지역 방어계획의 실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¹¹⁾

한편 러시아는 1903년 5월 20일 이후 그들의 新路線에 따라 滿洲占領을 계속하기로 하여 吉林·奉天에 있는 군대를 南下시켜 遼陽·海城에 집결토록 하고 軍糧·軍馬를 징발하는 한편 본국으로부터 군대를 수송하였다.¹²⁾ 또한 7월 6일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조브라조프·쿠로파트킨 일행과 極東軍司令官 알렉세예프(E. I. Alekseev)·駐淸公使 랫사(P. M. Lessar) 및 駐韓公使 파블로브(A. I. Pavlov)가 旅順에 모여 동아시아 정세와 군사 작전에 관한 密議를 진행하였고,¹³⁾ 드디어 8월에는 동아시아 경영 및 對日交涉窓口로 旅順에다 이른바 極東總督府를 설치하는가 하면, 9월에는 새로이 7개조의 對淸要求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골적인 對淸侵略行爲에 대하여 淸은 러시아가 철병한 후에 商議에 응하겠다고 회답한 다음 오히려 제 3차 철병 기일에 맞춰 러시아군이 철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 외무성은 滿洲問題는 이미 극동총독부의 알렉세예프 총독의 권한 하에 있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에 淸은 다시 극동총독에게 요구하였던 바, 총독은 국가차원의 문제는 짜르의 直裁에 속한다고 말하는 등 역시 그 요구를 회피하면서 불응하였으며, 차제에 旅順의 방비강화를 훈령하였다.¹⁴⁾ 이와 같은 러시아의 挑發的 策動은 러·日 간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동향에 대하여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였다. 1900년 7월 義和團事件이 재발하자 당시 駐淸日本公使였던 小村壽太郎은 義和團事件이 滿·韓 문제해결에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7월말 青木周藏 외상에게 한국과 滿洲에서의 러·日 간의 세력범위 확정을 제안하라고 건의한 일이 있다.¹⁵⁾ 그후 小村은

11) 《日本外交文書》36-1, No.453; 金元洙, 앞의 논문 pp.90~91.

12) 日本外務省 編, 《小村外交史》(原書房, 1966) p.316; 田村幸策, 《世界外交史》上(東京:有斐閣, 1960) p.349; 徐仲錫, 〈近代極東國際關係와 韓國永世中立國論에 對한 研究〉《慶熙大論文集》4, (1965), p.322.

13) 《小村外交史》pp.313~314.

14) Malozemoff, op.cit., pp.216~219; White, op.cit., pp.60~64; 徐仲錫, 앞의 논문, p.322.

15) 《日本外交文書》33, No.522.

外相이 된 뒤에도 일본이 '3국 간섭'(1895) 때에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졌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며 이제 일본이 滿・韓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英・美와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립해야하고, 둘째, 제 3국의 간섭 없이 러시아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외교방침을 가지고 있었다.¹⁶⁾ 따라서 小村 외상은 淸의 慶親王에게 러시아 제안에 대한 거부를 권고하는가 하면¹⁷⁾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활동에 대항하여 龍岩浦의 對岸에 해당하는 義州를 開市하고 龍岩浦와 함께 義州를 각 국 거류지로 해야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⁸⁾ 小村의 이와 같은 對러시아 직접 처리방안은 4월 21일, 東京의 無隣庵(山縣有朋의 別莊)에서 개최된 閣僚會議에서 元老들의 對러시아 宥和論을 제치고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無隣庵會議에서 일본은 滿洲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를 계기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開戰도 不辭한다고 선언하였다.¹⁹⁾ 그 뒤 러시아 陸相 쿠로파트킨의 訪日(6.12~6.16)을 통하여 러시아의 태도가 불변임을 감지하면서부터는 ²⁰⁾ 6월 23일 다시 御前會議를 개최하여 러・日 交渉의 方針을 최종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無隣庵會議의 재확인이었지만 일본이 교섭개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對러 태도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對러 開戰決定이었다.²¹⁾ 이 일본측의 6월 23일자 御前會議와 앞에서 본 러시아측의 7월 6일자 旅順會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러・日戰 決定을 위한 최종 회의였고 향후 전개되는 러・日協商은 피차 간에 開戰의 名分을 탐색하는 의미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6) White, op.cit., p.96; W.L.Langer,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in *Explorations in Crisis*, ed., by Carl, E.Schorske and Elizabeth Schorsk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37; 金元洙, 앞의 논문, p.100.

17) 《日本外交文書》36-1, No.65~66, 79; 森山茂德, 앞의 책, p.141.

18) 《日本外交文書》, No.410.

19) 《小村外交史》p.306;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東京:1955) p.149; 黑羽茂, 《日露戰爭史論》(東京:杉山書店, 1982) p.119; I.Nish, *Japanese Foreign Policy 1869~1942: kasumigaseki to MiyaKazaka*(London:1977) pp.69~70; 大畑篤四郎, 《日本外交政策の史的展開》(東京:成文堂, 1983) p.205;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岩波文庫 D.128, 1966) pp.148~149; 崔文衡, 앞의 책, p.95.

20) White, op.cit., pp.65~67.

21) White, Ibid.,; 大畑篤四郎, 앞의 책, p.205; Nish, op.cit., p.71.

小村은 7월 28일 주러 공사 栗野愼一郎에게 교섭개시의 훈령을 내렸다.²²⁾ 對러 교섭은 8월 12일 하필이면 러시아가 극동총독부를 설치한 같은 날에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러시아의 對滿·韓 積極政策과 일본의 對러시아 直接交涉策이 러·日協商이라는 긴박한 사태로 발전되어 갔다.

2) 러·日協商과 韓國의 對應

일본정부는 1903년 8월 12일 러시아에 대하여 協商基礎案을 제출하였는데 이 안에 의하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優勢 또는 특수 이익을 제안하고 있다.²³⁾ 이 협상기초안을 접수한 러시아정부는 10월 3일에 주일 공사 로젠(B.R.Rosen)을 통하여 그 代案을 제출하였다. 이 러시아측 代案은 한국을 일본의, 滿洲를 러시아의 각자 세력범위로 하면서도 북위 39°선 이북의 한국영토를 中立地帶化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추가한 것이다.²⁴⁾ 러시아 정부가 이 시기 이러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제안으로 야기될 새로운 위험성 곧 러·日戰爭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가지 기이한 사실은 이미 7월에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한국을 한번은 일본의 보호에 맡길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⁵⁾ 그럴 경우 압록강의 利權은 당연히 유지되고 일본과의 전쟁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발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방침이 자칫하면 일본에 대한 러시아측의 양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러시아군의 증강 이후에나 일본측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²⁶⁾ 이러한 결정은 러·日 양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歐美列強의 속셈과 러·日 상호 간의 입장을 직시하지 못한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러·日協商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22)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p.150; 森山茂德, 앞의 책, p.142.

23) 《日本外交文書》36-1, No.9; 같은 문서 37·38 별책 제1장 제1절; 沼田市郎, 《日露外交史》(大阪:屋號書店, 1943) pp.161~162.

24) 《日本外交文書》36-1, No.25; 沼田市郎, 위의 책, pp.162~163.

25) Malozemoff, op.cit., p.220; White, op.cit., p.68; 森山茂德, 앞의 책, p.144.

26) Ibid.

일본은 러시아의 中立地帶 設定 提案을 일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10월 14일의 修正案 제출에 이어 10월 30일 다시 確定修正案을 주일 러시아 공사 로젠에게 제출하였다. 이 확정수정안에 의하면 한국에 관한 제안은 8월 12일자 原案 거의 그대로이며 다만 滿·韓 境界에서 그 양측에 폭 50km의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비무장화한 다음, 러·日이 각자 淸·韓과 이미 체결한 조약에 따라 그 안에서의 商業上 利益 및 居住權을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특수이익과 필요조치를 승인함으로써 滿洲는 일본의 특수 이익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한국은 러시아의 특수이익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²⁷⁾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12월 11일 일본정부에 修正代案을 수교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 일본의 對韓援助는 民政에 대한 助言만으로 국한할 것, 영토의 군사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 중립지대는 그대로 韓國領內 39°선 이북으로 할 것 등으로 하였고, 10월 3일자 제안 중의 “滿洲 및 그 연안은 전혀 일본의 이익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일본은 승인할 것”이라는 조항은 이번에 삭제하였다.²⁸⁾ 이것은 러·日協定을 한국문제에 한정하고 滿洲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기존 條約上의 利益을 배제하려고 한 底意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12월 21일 再修正案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제 1차 수정안에서 명시했던 對韓援助를 행정을 개량하는 助言으로 고치고 大韓 海峽의 自由航海를 迫害하는 兵要工事を 한국연안에서 하지 않을 것과 중립지대는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²⁹⁾

이에 대한 러시아의 회답은 1904년 1월 6일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對韓援助는 일본의 요구대로 하고 한국영토에서의 일체의 兵要工事を 인정하지 않지만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軍備는 인정하기로 하며 한국에서의 중립지대도 원안대로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淸·日追加條約에 대한 언급을 보면 奉天은 개방하나 일본인 거류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淸에 대한 영토보전은 일체 명시하

27) 《日本外交文書》36-1, No.28~31: 沼田市郎, 앞의 책, pp.163~164.

28) 《日本外交文書》, No.43.

29) 《日本外交文書》, No.44: 沼田市郎, 앞의 책, pp.164~165.

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³⁰⁾

이와 같이 러·日 양국은 滿洲와 한국을 둘러싸고 利權의 내용과 관할지역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갈수록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戰雲이 감돌게 하였다.

이러한 러·日 양국의 동향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國家自存을 위한 최후의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곧 독자적인 軍備擴充計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국은 國防力強化의 필요성을 切感한 나머지 1898년에 각 국의 大元帥條例를 참고하여 皇帝가 陸·海軍을 친히 통솔할 것이라는 詔勅을 반포한 다음³¹⁾ 日本을 모방하여 1899년에 군사상의 최고기관인 元帥府를 설치하였다.³²⁾ 동년 6월 22일에 설치된 원수부는 大元帥 아래 元帥가 있고 그 예하에 4개局을 두었는데, 國防·用兵 및 軍事上の 各項 命令 장악이나 軍部를 비롯한 京外 各隊의 지휘 등은 軍務局에서 맡고 軍事上の 償罰·各 兵學校의 教育·京外 各隊 소속 장교의 勤慢 審査 및 試驗·昇進 등은 檢査局에서, 군사상의 詔勅·文簿·圖書의 보존 등은 記錄局에서, 군사상의 會計·調査·認可退還 등은 會計局에서 맡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명령을 받은 武官들이 3개월마다 京外 各隊를 시찰하여 이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大元帥인 皇帝權은 한층 강화되었다.³³⁾ 또한 1900년 10월 28일에는 이 때까지 독립부대로 운영되어 오던 工兵·砲兵·輜重兵 등 志援兵種部隊를 聯隊에 복속시킴으로써 종전의 鍊兵隊的인 성격에서 戰鬪隊的인 성격의 부대로 전환케 하였으며³⁴⁾ 1902년 7월 22일에는 渾成旅團인 團級部隊를 편성하였다.³⁵⁾ 역시 같은 해에 親衛隊가 개편되어 2개 聯隊로 증강되고 2개 聯隊의 侍衛

30) 《日本外交文書》37-1, No.20; 外交時報社 編, 《支那及び滿洲關係條約及公文集》p.627.

31) 光武 2년 6월 29일, 詔勅: 宋炳基 外,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서울:國會圖書館, 1970~1972). pp.377~378; 《日省錄》권 470, 己亥 5월 15일條.

32) 車俊會, 〈韓末軍制改編에 대하여-軍隊解散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22, (1964). p.83.

33) 《舊韓國官報》7, 제 1306호, 光武 3년 7월 6일, p.492의 〈元帥府官制〉제 2관 제2조: 《舊韓國官報》8, 제 1528호, 光武 4년 3월 22일, pp.290~292; 《高宗實錄》권 39, 己亥 光武 3년 6월 22일條; 《日省錄》권 470, 己亥 5월 15일條.

34) 《日省錄》권 488, 庚子 10월 28일 條, 勅令 제 56~58호: 車俊會, 앞의 논문 p.90, 119.

35) 《日省錄》권 510 壬寅 7월 22일條.

隊가 창설되었다.³⁶⁾

지방군도 몇 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900년 6월 4일 러·日 開戰의 조짐이 있고 러시아의 도발도 예상되어 지방의 鎭撫와 邊境의 守備를 專任하도록 함경북도의 鍾城, 함경남도의 北靑, 평안북도의 江界·義州 등 4개 지방에 종전의 地方大隊보다는 훨씬 增強된 西北鎭衛大隊(4개 大隊)를 설치하였다.³⁷⁾ 京軍制의 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이와 같이 새로 설치되었거나 기왕에 설치되었던 地方隊 혹은 鎭衛隊에 대한 대 개혁도 단행하여 전국의 지방군이 鎭衛隊로 통합 개편되었다 (1900)³⁸⁾ 이어서 平壤에는 1개의 鎭衛隊가 더 증설되었고(1900),³⁹⁾ 1901년 1월 18일에는 전국의 海岸에 海口를 防守할 목적으로 砲臺를 설치하였던 것 같다.⁴⁰⁾ 새 편제에 의하면 전국의 鎭衛隊를 6개 聯隊로 나누고 각 연대는 3개 大隊 약 3000명(제 6 연대는 2개 大隊 약 20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연대별 주둔지를 보면 邊境守備에 力點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충된 1902년 10월 현재 韓國軍의 編制⁴¹⁾를 보면 <表 5-1>과 같다.

또한 京軍 및 地方軍을 增設하는 과정에서 兵士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步兵操典》의 간행(1898.6.25)⁴²⁾을 비롯한 각종 訓練敎範들을 간행하였으며⁴³⁾, 이들을 지휘할 초급지휘관의 양성이 시급하여 유명 무실하던 기존의 武官學校를 1898년 5월 14일에 이르기까지의 官制 改正作業을 거친

36) 《舊韓國官報》제 2346호, 壬寅 光武 6년 10월 30일 勅令 16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pp.460~461.

37) 《日省錄》권 448, 庚子 6월 4일條, 勅令 22호

38) 光武 4년 7월 25일 勅令 25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pp.124~128; 宋炳基, 〈光武年間の 改革〉《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84) p.63.

39) 光武 4년 9월 18일 勅令 32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pp.198~200.

40) 《日省錄》권 491, 辛丑 1월 18일條; 車俊會, 앞의 논문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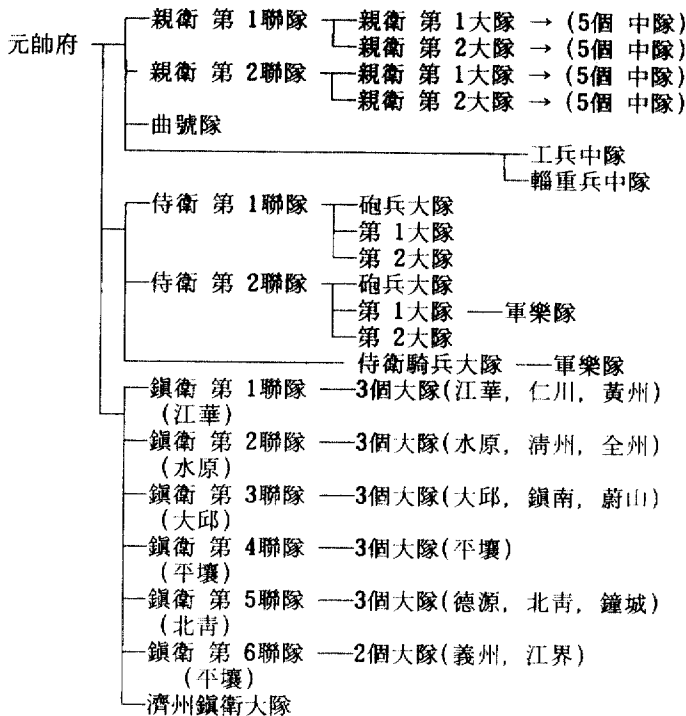
41) 이 편제표는 徐仁漢, 〈大韓帝國 軍事制度研究〉(國民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p.157, 168, 189 의 <도표>들을 합성한 것이다.

42) 閔泳綺, 《步兵操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番號 15015).

43) 이 당시 간행된 훈련 교범으로는 《戰術學敎程》, 《軍制學敎程》, 《兵器學敎程》, 《築城學敎程》, 《地形學敎程》, 《陸軍衛生學敎程》, 《馬學敎程》, 《體操敎範》 등 다양하였는데 대체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부터의 근대 군사학 이론을 도입하여 편찬되었다. 車文燮, 〈舊韓末陸軍武官學校研究〉《亞細亞研究》50, (1973) pp.194~201; 林在讚, 〈舊韓末軍事敎範〉, 《論文集》26, (육군제3사관학교, 1988) p.72.

다음⁴⁴⁾, 7월에 이를 새롭게 출범시켜 1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⁴⁵⁾

<表 5-1> 大韓帝國 軍事 編制表 (1902.10 현재)



한편 러·日 간의 戰雲이 짙어가던 1903년에 와서는 3월에 高宗이 各國 徵兵制와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를 참작하여 國民皆兵을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도록 元帥府에 지시함으로써 원수부는 17세이상 40세 이하의 壯丁을 先備·後備·豫備·國民兵으로 징집하는 「徵兵條例」를 반포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⁴⁶⁾ 7월 29일에는 海軍創設의 필요성을 강조한 軍部大臣 尹雄烈의 上申도 있었다.⁴⁷⁾

44) 光武 2년 3월 20일 <武官學校實施請議書>; 4월 3일 奏議 14 <武官學校實施事>; 光武 2년 5월 14일 勅令 11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pp.355~357.

45) 《皇城新聞》光武 5년 12월 25일; 車文燮, 앞의 논문, pp.181~182; 金泳鎬, <韓末西洋技術의 受容>《亞細亞研究》31, (1968) p.337.

46) 《高宗實錄》권 43, 光武 7년 3월 13일條; 《皇城新聞》光武 7년 3월 18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러·日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차 自體의 軍備를 충실히 하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軍備充實策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개혁에 소요되는 財政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왕권 및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 개편·증강된 진위대·시위대·친위대의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결국 진위대의 軍額을 반으로 줄이고 시위대·친위대를 반으로 나누어 番上시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高宗이 내린 徵兵詔勅도 무효가 되고 말았다.⁴⁸⁾ 따라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일련의 軍制改編은 외면적인 편제에 불과한 것이었고 내면적인 編成員은 여전히 종전의 傭兵制를 벗어날 수 없었다.⁴⁹⁾

2. 戰時局外中立 外交

평시에 있어서 永世中立 등 항구적인 중립화가 곤란하였고 더구나 러·日 開戰 임박이라는 다급한 상황에서 군비충실책의 조급한 실현마저 불가능하게 되자 大韓帝國은 남겨둔 최후의 수단으로써 戰時局外中立案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한국이 수차의 시행착오 끝에 공식적으로 선택한 이 戰時局外中立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도되어 어떤 경로로 宣言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外交

기왕의 中立化案은 既述한 바와 같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外國에 의해 제의되거나 아니면 政府當路者가 제의한 것이었지만, 高宗에 의해 선언된 중립은 1900년 6월의 것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내용인 즉 이 때 프랑스인 변호사출신으로서 大韓帝國의 법률고문으로 부임한 크레마지(M. Crémazy)가 義和團事件의 발

47) 《高宗實錄》권 43, 光武 7년 7월 29일條: 森山茂德, 앞의 책, p.142.

48) 宋炳基, 앞의 논문, p.96.

49) 《日省錄》권 571, 丁未 6월 22일詔: 《秘書監日記》光武 11년 6월 22일詔: 車俊會, 앞의 논문, p.110.

발을 보고 고종에게 프랑스의 中立政策을 外交史的으로 인식시켜주면서 차제에 韓國이 局外中立을 선포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⁵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종이 러·日 角逐과 더불어 北方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變亂을 보고 그 여파가 한반도에 禍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워한 데서 基因하겠지만 그 宣言은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지 官報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⁵¹⁾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그당시 宮內府 顧問으로서 고종의 뜻을 대변한 듯이 한국중립화 실현을 위하여 한창 헌신중이던 미국인 샌즈의 활동과도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혹시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하는 느낌마저 갖게 할 뿐 그 眞僞를 알 수 없다.

러·日協商을 전후하여 러·日戰爭의 風說이 점차 유포되어 가자 고종은 滿洲 문제가 발단이 되어 러·日이 개전한다면 한국영토는 반드시 戰場化하여 러·日 兩軍으로부터 유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러·日 양국에게 한국의 중립을 보장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1903년 8월 18일자로 주일·주러 양 공사에게 내린 外部大臣 李道宰 名義의 다음과 같은 訓令이다.

최근 일반의 관심과 신문 기사는 러시아와 일본의 우호적인 상호 관계를 종말지을 수 있는 滿洲 문제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논란되고 있다. ... 만약 사태가 그들의 말처럼 발전한다면 한국은 양 분쟁국 사이에 끼어들게 될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지금 엄격히 중립으로 남기를 선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해결해 보려고 하나 그 사태는 한국 국경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기게 한다.

이제 貴官에게 命하건대 러시아·日本 두 정부에 접촉하여 ... 양국 간에 만약 적대감이 생긴다면 이제까지의 우호적인 관계는 종말을 고했 것이라는 일반적인

50)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Politique extérieure, Relations avec La France·Français en Corée I (1897~1902), Nouvelle Série 13, p.174; Annexe au rapport Politique, Séoul, No.189, juin 1901; Note sur les travaux confirmés à M. Crémazy pendant la première année de son séjour à Séoul; 洪淳鎬, 〈韓國國際關係史理論—時代狀況의 力學構造〉(서울:大旺社, 1993) p.360.

51) 洪淳鎬, 위의 책.

건해가 유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이 두 적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전략적인 위치가 될 것이다. ... 그래서 한국정부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중립을 선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如何히 사태가 불행하게 발전하더라도 우리들의 준비에는 防礙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와 일본정부에 대해서 한국을 중립국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 영토 내부에서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으며 영토 내에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 우리 영토의 보전을 위해서 보장 조치로서 명백한 확답을 받아야 할 것이며 ... 52)

이 훈령의 요점은 러·日戰爭의 경우 한국의 중립을 파괴하지 않고 영토를 유린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각 국 정부로부터 속히 얻어내도록 盡力하라는 명령이었다.⁵³⁾ 이에 따라 한국은 국외중립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歐美地域에 대한 노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면 이는 한국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던 일본측의 정보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가 자국의 小村 외상에게 연속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03년 8월 18일자 보고에는 한국 황제가 宮內官으로서 프랑스어에 능통한 玄尙健을 密旨를 휴대시켜 프랑스에 파견하였으며 그 密旨의 내용은 러·日 관계가 破鏡에 이르면 프랑스에게 한국의 보호를 의뢰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⁴⁾ 19일자 보고에는 玄尙健의 사명이 프랑스에서 현지 한국공사와 합류한 후 네덜란드로 동행, 萬國平和會議 회원과 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견 안건은 '러·日 開戰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자주독립과 중립유지가 어려워 러·日 양국군에게 국내를 유린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주 프랑스 한국공사 자신도 密旨를 휴대하고 있다고 하였다.⁵⁵⁾

52) 《日本外交文書》37-1, No.695 附屬書〈韓國外部大臣ヨリ在日及露 同國公使宛訓令 英譯寫〉.

53) 拙稿,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國史館論叢》60, (國史編纂委員會, 1994) p.165.

54) 《日本外交文書》36-1, No 690: 李鉉淙, 〈韓末에 있어서의 中立化論〉(國土統一院特殊課題研究報告書, 1978) p.50.

55) 《日本外交文書》36-1, No 691: 李鉉淙, 위의 보고서, pp.50~51.

8월 21일자에는 역시 玄尙健에 대한 情報 報告인 바, 玄尙健이 사명을 띠고 러시아 汽船 편으로 旅順으로 향할, 다시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 수도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 사명은 19일자 정보 보고와 동일하며 특히 웨베르(K.I.Waerber)에게 전달할 고종의 密書를 휴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태도를 偵探하라는 것도 명령되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은 玄暎運의 渡日목적과 같다고 덧붙혔다.⁵⁶⁾

이와 같은 내용들이 비록 歐美측의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일본측의 정보 보고에 의한 것이지만 당시 고종은 국외중립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와 러시아는 물론 네덜란드의 萬國平和會議에도 호소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그 시점에서 만국평화회의와 같은 성격의 국제기구와 '萬國公法'에 최후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⁵⁷⁾ 고종의 이와 같은 密使外交가 일본을 당혹케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 외상 小村壽太郎은 1903년 8월 25일자로 페테르부르크의 栗野 공사에게 韓國密使의 행동을 철저히 정찰하도록 훈령을 내렸으니, 그 훈령은 동시에 주 프랑스 일본공사에게도 전달되었다.⁵⁸⁾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 같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 8월에 접어들어 우선 황실의 신임을 받고 있던 鐵道院會計課長 玄暎運 부부를 일본에 파견하여 伊藤博文·近衛篤磨 등과 접촉, 외부대신 名義의 密書를 전달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歐亞情勢의 推移와 일본의 입장을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⁵⁹⁾ 8월 25일에는 禮式院參書官 高義誠을 파견하여 주일 공사로 하여금 중립실현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⁶⁰⁾

정부의 훈령을 받은 주일 공사 高永禧는 9월 3일 한국중립문제에 관하여 일본

56) 《日本外交文書》36-1, No 692; 李鉉淙, 위의 보고서, p.51.

57) 梶村秀樹, 〈러·일전쟁과 조선의 중립화론〉, 楊尙鉉 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사계절, 1985) p.344.

58) 《日本外交文書》36-1, No 693.

59)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9, (東京:原書房, 1981) pp.256~259.

60) 《日本外交文書》36-1, No 694. 중립보장 요청을 위하여 주러·주일 양공사에게 내린 훈령은 고종의 비밀 명령으로 總稅務司에서 기초되었다는 사실이 주한 영국 공사를 통하여 주한 일본공사 林에게 탐지되었다. 같은 문서 694의 附記, 695 및 附屬書.

정부의 보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小村 외상에게 수교하였다.⁶¹⁾ 그러나 小村은 前述한 바대로 과거 주청공사 시절인 1901년 1월에 이미, 그 당시 논의된 바 있던 러시아의 한국의 중립화안에 대하여 加藤高明 당시 외상에게 ‘한국중립화안은 滿洲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한국 내 일본의 지위를 잃게 하고 일본의 위신도 실추시키는 것’이라 하여 거절할 것을 上申하면서 그 代案으로 ‘滿洲도 한국과 함께 中立地로 하든가 아니면 한국은 일본에게, 滿洲는 러시아에게 각기 러·日 양국의 세력분할지역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⁶²⁾ 따라서 이번의 제의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 회답내용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小村은 ‘이는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숙고한 후에 회답하겠다’고 얼버무리다가⁶³⁾ 드디어 9월 26일 한국 公翰에 대한 회답을 주일 高永禧 공사에게 보내왔다. 이 회답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滿洲 문제로 인하여 러·日 양국 간에 평화가 破裂될 것을 우려하여 차제에 자국을 국외 중립국으로 선언할 터이니 일본정부가 이에 동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書翰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거부하였다.

滿洲問題가 速히 타결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帝國政府는 貴國政府와 함께 同憂하는 바이나 時局에 관한 衆論은 揣摩臆測으로 나와서 사태의 진상과 거리가 멀며 소위 風聲鶴唳에 類함이 比比皆然 狀態인 것이다. 帝國政府는 그 傳來의 政綱을 따라 평화유지와 修睦增進에 盡力하는 外에 餘念이 없으므로 지금 兵戍이나 中立을 말하는 것은 不吉하며 또 時機에 不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趣意를 諒承하고 동시에 帝國政府가 貴國 및 東亞 全局을 위하여 心力을 다하고 있는 微意도 十分 納得하기를 바란다.⁶⁴⁾

이 회답서를 高 공사에게 手交하면서 小村은 本件과 같은 중대 문제를 巷間の 風說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⁶⁵⁾

61) 《日本外交文書》36-1, No 697.

62) 《日本外交文書》34, No 397.

63) 《日本外交文書》36-1, No 698; 梶村秀樹, 앞의 논문, p.344.

64) 《日本外交文書》36-1, No 700.

65) 《日本外交文書》36-1, No 701.

러시아 정부도 역시 한국정부의 전시중립보장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주러 한국공사 李範晉은 10월 21일 러시아 외무차관 오보렌스키(Obolensky)를 방문하여 한국중립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던 바 오보렌스키가 러·日 간의 전쟁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회담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⁶⁶⁾ 러시아 정부 내에는 과거처럼 한국중립화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 한 때 중립론자였던 위테가 외교상의 지도적 위치에서 밀려남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이제 한국측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단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하여 10월 3일에 제안한 ‘로젠案’—한국에 있어서의 러·日 양국의 세력범위 중간에 中立地帶를 설정할 것—을 고집할 뿐이었다.⁶⁷⁾ 그러나 高宗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金仁洙로 하여금 旅順의 極東總督 알렉세예프에게 宮內大臣 名義의 密書를 전달토록 하였다. 밀서의 내용은 10월 28일 서울주재 日本公使館 附武官 野津鎮武 少佐가 大山巖(1842~1916) 참모총장에게 보낸 다음의 情報 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 宮內大臣은 이에 奉勅하여 書를 극동총독에게 보낸다. 近時 러·日 양국의 국교가 다소 곤란에 기울어 심히 불온한 情態에 있다. 한국은 양국의 爭點 사이에 介在하여 사태의 關할 바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만 自衛力이 없어 안심할 수 없는 바 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이 뜻을 諒察하시고 貴國 皇帝에게 奏稟하여 양국 황실의 友誼를 존중하고 특히 不虞에 대비할 法을 取할 것을 희망한다.⁶⁸⁾

이것은 러시아 당국에 대한 우회적인 요청이었을 뿐이지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시국외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시도는 끝내 러·日 양국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지만 11월 23일 한국정부는 ‘장차 러·日戰爭이 발발하면 본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겠다.’고 표명하였고,⁶⁹⁾ 이에 대한 보장을 요청하는 皇帝

66) 《日本外交文書》36-1, No 702; 森山茂德, 앞의 책, p.144.

67) 拙稿,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 pp.166~167.

68) 《日本外交文書》36-1, No 703의 附記·(附記).

69) 《高宗實錄》1903년 11월 23일條.

의 親書가 1904년 1월 16일 이전에 이탈리아 국왕에게 전달되었음이 (이탈리아 의상의 제보로) 駐伊 일본공사 大山綱介에 의해 확인되었다.⁷⁰⁾ 이것이 국외중립 보장을 사전에 요청한 한국정부의 마지막 외교활동이었다.

2) 駐英公使 李漢應의 對英 戰時局外中立 外交

上述한 바 高宗을 중심으로 한 韓國政府의 공식적인 戰時局外中立 外交가 거의 無爲로 끝날 즈음에 영국 주재 한국공사관에서 국외중립을 시도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이 정부와 연계해서 시도된 것인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는 且置하고라도 유사한 내용이 同時多發的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주영 한국서리공사 李漢應⁷¹⁾은 1904년 1월 13일·19일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외무성을 방문, 한반도 정세에 관한 長文의 메모와 覺書를 手交하였다.⁷²⁾

메모에는 범세계적인 세력균형체제의 구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을 매우 圖式的으로 설명해 놓았다. 이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세력이며, 일본과 러시아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보호를 원하며, 제 3국의 두 세력은 동아시아에서 러·日戰爭을 사주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도 이에 휩쓸려 들기를 바라고 있으므로,⁷³⁾ 만약 英·佛·러·日이 상호 ‘四國條約’(A quadruple treaty)을

70) 《日本外交文書》37-1, No 331, 359; 梶村秀樹, 앞의 논문, p.344.

71) 李漢應(1874~1905)은 官立英語學校를 졸업한 후 成均館進士·漢城府主事·관립영어 학교 교관 등을 거쳐 1901년 3월에 駐筭英義兩國公使館 3등 參書官으로 런던에 부임하였다. 1904년에는 서리공사로서 동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외교고문·재정고문 등의 초빙협정으로 되어 있는 데에 반발, 각 국 주재 한국공사들에게 공동 대책의 강구를 호소하였고, 1905년에는 영·일 동맹의 갱신 움직임에 반발하여 영국정부에 항의 하였다. 그러나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국권의 상실이 불가피함을 예견하고서는 유사를 남기고 동년 5월 12일 현지에서 음독 자결하였다. 孫世昌 編, 《殉國烈士李漢應先生遺史》(大邱:文藝弘報社, 1959) pp.27~42.

72) Yi Haneung to Foreign Office, 1904. 1. 13, 1904. 1. 9, F.O. 17/1662: 具沃列, 〈李漢應과 韓·英관계-그의 韓半島中立化案을 中心으로-〉, 《省谷論叢》16, (서울:省谷學術文化財團, 1985) p 511.

73) 李漢應은 국제적 세력균형의 파괴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제 3의 세력

체결한 다음 英·佛 협력체제가 동아시아지역 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해준다면 이는 마치 유럽의 세력균형체제가 영국의 균형자 역할에 의해 (대륙의 어느 일방이 절대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방지됨으로써) 가능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나 일본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 때문에 상쇄되어 마침내 동아시아지역은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영국정부의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선책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노력해서 현재의 ‘英·日 同盟’(Anglo-Japanese Alliance, 1902.2.10)과 ‘러·佛 同盟’(Franco-Russian Alliance, 1891.8.27)을 그대로 지속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⁷⁴⁾

또한 覺書에는 동아시아평화에 대한 이 같은 희망을 깔고 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 “영국정부가 특히 한반도문제에 주목해 줄 것을 요망한다. 만약 러·日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終戰後の 地域情勢는 戰前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므로 영국정부가 열강과의 양해를 통하여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상관 없이 한국의 독립과 주권·영토 및 특권 보존을 위한 새로운 보장을 해 줄 것을 요망한다”라고 大綱을 전제한 다음, 새로운 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영·일동맹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주권 및 영토보존을 보장할 것, 둘째, 어떠한 침략적인 국가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한국정부를 지배하려는 기도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것, 셋째, 어떠한 침략적인 국가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이 동쪽과 서쪽에 각 각 하나씩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메모 전편에 걸쳐서 당시의 동아시아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두 세력은 미국과 독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具次列, 위의 논문, pp. 512, 515.

- 74) 具次列, 위의 논문, pp.514~515. 러·佛 동맹은 본래 프랑스의 (군사적·외교적) 대독일정책과 러시아의 프랑스 자본유치정책이 맞물려 시작되었으나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 이에 영·일 동맹에 불안을 느낀 러시아의 제의로 1902년 3월 16일에 다시 ‘러·佛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재확인·연장되었다. William L.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 (New York: Alfred, A. Knopf, 1951.ed) p.781; 拙稿, 〈露·日開戰의 外因 研究-開戰에 미친 歐·美 列強의 영향력에 주목하여-〉《史學研究》48, (韓國史學會, 1994) pp.102~103.

위협할 만한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韓國內地로 軍隊를 派兵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넷째, 만약 한국 내에 소요나 폭동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먼저 그 주권행사에 의거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의무를 다할 것, 다섯째, 러·日戰爭이 발발할 경우 영국정부는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전쟁의 결과에 관계 없이 열강과의 양해를 통하여 한국의 독립·주권 및 영토보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었다.⁷⁵⁾ 이와 같이 이 각서 내용은 정부의 공식입장과 거의 같은 전시국외중립안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李漢應의 中立化案이 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시도였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案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詳論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公式宣言도 極秘裏에 추진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몇가지 뚜렷한 사실만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개인적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그가 1월 13일자 첫 메모에서 만약 4 國條約案이 영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그의 개인적인 제안으로 고려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⁷⁶⁾ 둘째, 그가 첫 메모를 영국 외무성에 수교한 이틀 후인 15일에 다시 外務省 極東局 담당차관보인 캠벨(Francis Campbell)에게 書信을 보내어 한반도 상황에 관한 본국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회견을 요청한다고 했으며,⁷⁷⁾ 그에 따라 이루어진 19일자의 2차회견 때에 수교한 각서가 첫번째 각서와 거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특히 첫번째 각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영국정부에 그대로 전달하라는 高宗의 電文指示를 받았다고 덧붙여 언급한 점,⁷⁸⁾ 셋째, 뒷날 1월 22일자로 수교된 정부의 공식선언 내용이 ‘러·일 협상 결과에 관계 없이 엄정중립을 준수한다’는 일방적인 조치여서 이는 영국의 보호와 4국조약을 전제로 한 李漢應의 案과 背

75) 具沆列, 위의 논문, p.511.

76) 具沆列, 위의 논문, pp.516~517.

77) Yi Haneung to Campbell, 1904. 1. 15, F.O. 17/1662; 具沆列, 위의 논문, p.517.

78) Yi Haneung to Foreign Office, 1904. 1. 19, F.O. 17/1662; 具沆列, 위의 논문.

馳된다는 점 등이다.⁷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월 22일 이전에 꼭 같은 내용으로 두차례나 영국 외무성에 手交되었던 李漢應의 案은 비록 私見이지만 정부입장과 일치함으로써 도중에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懷疑的이었다. 영국은 1902년의 영·일 동맹에 따라 이미 한반도에서 그 동맹국인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일본에게 미루어 왔다. 이것은 영국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李漢應이 中立案 수교와 동시에 영국에게 京義線鐵道の 독자적 부설을 위한 借款提供을 요청했을 때 캠벨 차관보는 거절했다. 19세기 말 이후로 철도건설이 제국주의적 침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음에 비추어 京義線은 이미 일본의 戰略的인 要路임을 영국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3.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 宣言

러·日協商이 점차 결렬로 치닫고 開戰이 필연적인 사실로 되어가자 韓國은 독자적인 局外中立 宣言을 서둘렀다. 日本이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던 玄尙健은 1904년 1월 11일 러시아 함대 왈리야크號 편으로 仁川으로 귀국하여 열차로 서울에 들어왔다.⁸¹⁾ 중립보장을 얻어내려고 歐美에 파견되었던 玄尙健이 귀국하자 朝野에서는 戰時局外中立案과 韓·日秘密攻守同盟案(이하 密約案)이 팽팽히 맞서 나갔다. 이에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는 偵察을 놓아 이른바 中立派들이 한국황실·정부당국·러시아공사 등과 연계하여 중립화를 성사시키는 일이 없는지 각종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동태파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공사도 끝내 한국정부가 국외중립을 선언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고 그러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였다.⁸²⁾ 政府次元의 中立宣言은 이렇게 極秘裡에 추진되었던 것이

79) Yi Haneung to Foreign Office, 1904. 1. 20, F.O. 17/1662, Enclosure, Lansdowne to Yi Haneung, 1904. 1. 27, F.O. 17/1662.

80) Minutes on Yi Haneung to Foreign Office, 1904. 1. 13, Lansdowne to Yi Haneung, 1904. 1. 28, F.O. 17/1662; 具汰列, 위의 논문, pp.517~518.

81) 《日本外交文書》37-1, No 330.

다.

이제 중립선언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그 주동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뒷 날 일본공사관이 內査한 바에 의하면 한국중립을 선언하게 한 주동 인물은 高宗을 직접 움직인 李容翊·姜錫鎬를 비롯하여 李學均·玄尙健·李寅榮·프랑스인 교사 마르텔(Martel) 및 벨기에인 고문 델코안뉴(M.Delcoigne) 등이었다고 한다.⁸²⁾ 內藏院卿 李容翊과 禮式院 外事課長 玄尙健은 親러 내지 中立派로서 본래부터 고종의 신임이 두터웠는데 이들과 마르텔·델코안뉴 등이 단체를 만들어 博文館을 설립하고 赤十字社 창립의 名義로 궁중에서 외국인 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은 결국 이들이 중심이 되어 특히 李容翊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일 간의 밀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단행되었던 것이다.⁸⁴⁾ 이들 외에 前述한 바 高宗에게 중립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던 크레마지가 이번에도 권고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이 뒷 날 1905년 8월 22일에 한국으로 하여금 ‘外國人顧問傭聘協定’(第一次韓·日協約)을 강제로 체결토록한 다음 크레마지를 1주일 후인 29일에 해임하여 그의 5년 3개월 간의 고문관직 임무를 끝나도록한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한다.⁸⁵⁾ 또한 1903년 가을, 한국정부의 고문으로 초빙되어 왔던 일본의 大三輪長兵衛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국의 중립선언에 협조적이었던 것 같다.⁸⁶⁾ 大三輪이 고문으로 초빙된 연유부터 살핀다면, 그는 이미 1891년 9월 25일 한국정부의 화폐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초빙된 적이 있는데⁸⁷⁾ 그 후로 京釜線鐵道 敷設·韓

82) 崔永禧, 〈露日戰爭前的 韓日秘密條約에 對하여〉, 《白山學報》3: 圓峯劉鳳榮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7) pp.479~480.

83) 《日本外交文書》37-1, No 340. 崔永禧, 위의 논문 p.482.

주한 영국공사 조단에 의하면 국외중립선언 발표문안은 델코안뉴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Jordan to Landsdowne, 1904. 2, F.O. 17/1659 (No.26): 具汰列, 앞의 논문, p.508.

84) 崔永禧, 앞의 논문, p.483.

85) 洪淳鎬, 앞의 책, p.361.

86) 《日本外交文書》37-1, No 350: 金奩春, 〈韓日議定書調印經緯와 日帝의 韓國侵略〉,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1983) p.670.

87) 藤村道生, 〈日韓議定書の成立過程〉《朝鮮學報》61, (東京:朝鮮學會, 天理, 1971) p.201.

日銀行 설립·參政 참여 등의 일에 있어서 비상한 수완을 보여 당시 한국재정을 총 책임지고 있던 李容翊과 친분이 돈독해졌다.⁸⁸⁾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력과 李容翊과의 관계로 1901년 경까지만 해도 그는 적극적인 중립론 제창자였으며, 이런 인연으로 李容翊의 추천에 따라 다시 고문으로 초빙되어 올 수 있었다.⁸⁹⁾ 그런데 고문으로 부임한 후 小村 외상의 特命密使가 되어 뒷 날의 ‘韓·日議定書’ 調印(1904.2.23)에 盡力했다는 드러난 사실 때문에 그의 과거는 묻혀버렸다. 그러나 한국의 戰時局外中立이 선언되었을 때 小村이 ‘大三輪의 한국 고문관 介在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 1904년 1월 28일과 2월 1일 두 차례나 소환전보를 보냈는데 大三輪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 체류했다는 점,⁹⁰⁾ 특히 나중에 한·일 의정서가 성사된 뒤의 論功行賞에서 林 공사가 ‘그의 助力에 힘입은 바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제외시킨 점⁹¹⁾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러·日 戰 발발로 사태가 이마 기울어진 뒤부터 韓·日議定書 체결 이전까지는 은근히 中立宣言에 同調하고 密約締結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외중립 선언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중립파들이 주동이 되고 몇몇 외국인 외교관들의 협조에 의해 內密히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전시 국외중립 선언을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한반도의 電信業務가 이미 일본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었으며 王宮內部에까지 諜者가 많이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발표 직전까지의 보안유지가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방해공작도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종의 직접 명령을 받은 特使가 海外에 나가 기습적으로 각 국에 타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던 바, 이것이 곧 1904년 1월 21일자로 발표된 中國의 ‘芝罘 宣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하필 芝罘에서 선언된 이유와 그 경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大連港의 러시아 電信網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치 못하여 駐韓 프랑스 공사관을 경유, 芝罘라

88) 大陸研究所 編, 《近代朝鮮史》 下 (東京: 1937) p.558.

89) 金炅春, 앞의 논문, p.670.

90) 金炅春, 위의 논문, p.672.

91) 이에 대한 반박으로 집필한 것이 그의 《渡韓始末書》이다. 또한 滯韓中の 備忘錄으로서 매일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諸事抄錄》이다. 《渡韓始末書》 pp.167~193에 의하면 李容翊과 26회 회담했고, 林 공사와도 59회나 면담했다.

는 중국의 개항장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고 있는 프랑스 領事의 힘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은 1904년 1월 21일 芝罘에서 한국 외부대신 李址鎔의 名義로 각 국에 打電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日 간에 발생하고 있는 미묘한 관계를 보거나 또는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당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한국정부는 그 양 국가와 한국과의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되든지 不問하고 엄정 중립을 지킬 확고한 결심을 하였음을 황제 폐하의 어명을 받들어 선언하는 바이다.⁹³⁾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은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평소 중립선언을 반대하고 韓·日密約締結에 진력하던 외부대신 李址鎔조차 자기 명의가 盜用당하였을 뿐, 이 聲明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을 더욱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⁹⁴⁾ 따라서 小村 외상은 1월 21일, 주한 일본공사 林에게 한국의 중립선

92) 《日本外交文書》37-1, No 340; 梶村秀樹, 앞의 논문, p.344; Jordan to Landsdowne, 1904. 2, F.O. 17/1659 (No.26). 한반도의 전신 업무는 러·일 전쟁의 개시와 동시에 완전히 일본에게 장악된다. 그러나 開戰 이전부터 전신의 실질적인 통제는 일본인의 수중에 있었다. Jordan to Landsdowne, 1904. 4. 4, F.O. 17/1692 (No.52); 具汰列, 앞의 논문, p.508~509.

93) 《日本外交文書》37-1, No 332. 전문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일본에 타전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Chefoo, Jan. 21st, 1904, 11-56 a.m.
R'd.. " " " 4-10 p.m.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Tokio.

Vu less complications qui ont surgi entre la Russie et le Japon et vu les difficultés que semblent rencontrer les négociations à amener une solution pacifique le Gouvernement Coréen, par ordre de Sa Majesté l'Empereur, déclare qu'il a pris la ferme résolution d'observer la plus stricte neutralité, quel que soit le résultat des pourparlers actuellement engagés entre les dites Puissances.

Yi Tchi Yong,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e Corée.

94) 李址鎔은 다음 날인 22일 아침에 처음으로 고종의 명에 따라 이 훈령에 加印했을 뿐이다. 《日本外交文書》37-1, No 340.

언 전보의 발송자를 탐색하도록 훈령을 내리기를 “한국의 중립성명 전보는 금일 21일 오전 11시 芝罘 發인 것으로써 다분히 李學均이 旅順에 가서 러시아 극동 총독과 密議한 뒤이거나 혹은 旅順에 가는 도중에 발송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관해서는 懸案의 密約調印을 위해서라도 李址鎔에게 확인하여 電報로 보고 하라”고 하였다.⁹⁵⁾ 이에 대하여 林 공사는 1월 22일 小村 외상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李學均은 아직도 旅順으로 출발한 것 같지 않다. 目下 그의 旅順行 소식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貴 電報와 같이 한국의 중립성명 통고를 芝罘에서 발표한 것은 다분히 타인의 소행인 것 같다. 중립성명의 發電者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훈령에 따라 밀약조인 후 한국 외부대신에게 확인키로 하겠다. 그 대신 駐東京 韓國臨時代理公使로 하여금 한국 외부대신에게 芝罘에서 성명을 발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芝罘發 외부대신의 훈령은 과연 정당한가를 電問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본 공사에게 알려주면 서울에서의 事情探索이 편하겠다.⁹⁶⁾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발진자를 탐색해 보았으나 처음에 玄尙健·李學均으로 지목하다가 당시 그들이 芝罘에 不在하였음이 밝혀짐으로써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뒤에 禮式院 參書官 金祚鉉 또는 李建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⁹⁷⁾

이제 일본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課題를 안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이 혹시 러시아와 가까와 지려는 것이 아닐까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만약 한국이 전시국외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압록강 연안에서의 實例처럼 러시아 한 쪽에만 편의를 준다면 이를 오히려 韓國中立 不承認 口實로 삼겠다고 하는가 하면, 중립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永續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도 하였다.⁹⁸⁾ 또한 일본은 심지어 李容翊 조차도 중립선언에 당혹해한 나머지 후회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다가 마침

95) 《日本外交文書》37-1, No 335.

96) 《日本外交文書》37-1, No 337.

97) 《日本外交文書》37-1, No 348; 崔永禧, 앞의 논문 p.483.

98) 《日本外交文書》37-1, No 343; 李鉉淙, 앞의 보고서, p.57.

내 한국의 중립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⁹⁹⁾ 이런 상황에서 주일한국임시대리공사 玄普運은 중립 승인문제로 일본 외상을 면회하고자 하였던바, 小村 외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계는 특별하며 時局問題에 관한 限 일본은 당사국이기 때문에 제 3국인 영국 등과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라는 평소의 인식대로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을 연기시켰다. 이는 주한 林 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密約交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면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小村 외상은 주한 林 공사와 사전에 긴밀한 談話を 거친 후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중립을 논할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말았다.¹⁰⁰⁾

러시아 측의 반응은 모호하였다. 駐日 韓國公使 李範晉은 한국의 戰時局外中立 宣言에 대하여 러시아측의 당연한 반대를 예상, 그 通告가 불가함을 본국정부에 알려 왔다. 이를테면 그는 외무대신 李址鎔과 玄尙健 앞으로 보내는 書翰에서 "이미 1개월 전에 韓·러 간 모종의 內應條約을 제의해 놓은 상태에서 그 맥물도 마르기 전에 다시 어련에 장난 같은 戰時局外中立 宣言을 통고하면 러시아의 의혹을 살 것인 즉 일본의 군사행동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식의 상당한 변명 거리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痛論했다.¹⁰¹⁾ 일본은 李範晉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아마도 그가 이미 전년도 12월부터 모종의 조약체결을 위한 密旨를 휴대하여 러시아와 교섭했을 것이며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확책한 자들은 李範晉·玄尙健·李璣鍾(李範晉의 장남)일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推移를 예의 주시하였다.¹⁰²⁾ 그러나 결국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이 러시아에 통고되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意外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¹⁰³⁾ 이에 반해 이 당시 러시아의 疆界事務官은 咸鏡南北道 觀察使에게 오히려 한국의 국외중립 선언

99) 《日本外交文書》37-1, No 345.

100) 《日本外交文書》37-1, No 339. pp.316~317. 1904년 1월 28일부 林權助宛小村電報; 李鉉宗, 앞의 보고서, pp.54~55.

101)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9, pp.272~273. pp.233~334, 1904년 5월 2일~7일; 《日本外交文書》37-1, No 354. 364~367.

102) 《日本外交文書》37-1, No 365.

103)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6, 日案 IV, (高麗大學校出版部, 1970) No.7855; 《日本外交文書》37-1, No 353.

을 지지하면서 韓・日議定書 체결을 猛非難, ‘이 議定書로써 韓國 人民은 日本人의 노예가 될 것이므로 러시아는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列國을 상대로 항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만약 日本軍의 명령에 복종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仇敵視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¹⁰⁴⁾

美國은 필리핀의 領有와 中國의 門戶開放을 위하여 러・日戰爭 勃發 時의 中立을, 그것도 일본에 好意的인 중립을 이미 선언한 상태였다.¹⁰⁵⁾ 때문에 주한공사 알렌(H.N.Allen)이 본국 정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한국의 戰時局外中立 宣言’에 대한 回答을 한국정부에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수차 질의하였는 데도 러・日戰爭이 발발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사실이 당시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한 統制가 한국인의 惡政・淸의 干涉・러시아의 官僚的 獨善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으며,¹⁰⁶⁾ 국무장관 헤이(John Hay)도 ‘中國의

104) 《日本外交文書》37-1, No 360.

105) Despatches from U.S.Consul to Korea: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S. Representatives in Korea, 1883~1905(이하 Despatches), Allen to John Hay, January 30, 190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p.32~35, Proclamation by the President, February 11, 1904: Thomas A. Bailey, America Faces Russia-Russian American Relations from early times to our day-(New Yo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0) p.196: 長田彰文, 《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と韓國-韓國保護國化と米國-》(東京:未來社, 1992) pp.43~44.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전에 대비하여 일본에게 對日本 中立을 선언하면서도 만약에 獨・佛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러시아에 가담할 때 일본을 원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가 하면, 開戰과 동시에 獨・佛 양국에 대하여 “1895년에 러・獨・佛 3 국이 일본에 간섭했던 것과 같은 對日敵對를 목적인 연합을 꾀한다면 나는 즉각 일본편을 들어 두 나라에 대항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A.W. Griswold,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66) p.92: Tyler Dennett, *John Hay: From Poetry to Politics*, (New York: 1933) p.2:

106) Tyler Dennett, *Roosevelt and Russo-Japanese War*,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59, New York: Double day, Page&Co., 1925) p.97: Griswold, *ibid.*, p.69: 拙稿, 〈露・日開戰의 外因 研究-開戰에 미친 歐・美 列強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p.98.

中立과 獨立保全·전쟁의 局地化'를 주일 공사 그리스콤(Lloyd Carpenter Griscom)과 주러 대사 맥코믹(Robert S. McCormick)을 통하여 러·日 양국에 요청하면서도 한국을 제외시켰다.¹⁰⁷⁾ 전쟁 발발에 즈음하여 미국정부가 이처럼 중국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중립을 선언한 한국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의 입장을 잘 상징하는 것이었다.¹⁰⁸⁾ 이러한 미국의 불공평한 태도를 목격한 주미 러시아 대사 카시니(Arturo Cassini)가 해이에게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滿洲를 빼앗으면서 어째서 일본으로부터는 한국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중국과 同様으로 한국도 중립을 선언했는데 한국이 빠진 것은 奇妙한 일이다”라고 은근히 비판한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¹⁰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열강들은 저마다 반응을 보여왔다. 前述한 바 주영 한국 서리공사 李漢應의 제의가 런던에서 無爲로 끝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한국정부의 공식 선언인 戰時局外中立 聲明이 1월 22일 서울의 영국공사관에 手交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단순히 외교적 관행에 따라 접수하였을 뿐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 주한 영국공사 조단(J.N. Jordan)은 도리어 “러·일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정부는 서울을 먼저 점령하는 측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의 중립선언이란 중요성이 없다.” “... 러·일 양군의 한반도 상륙을 한국이 저지하려 할 때는 오히려 한국에 불리해진다”는 등¹¹⁰⁾의 부정적 반응만 되풀이하였다.

한국의 중립선언 통고에 대하여 독일 공사는 1월 22일, 프랑스 공사는 25일,

107) FRUS, 1904, p 418. Hay to Griscom, February 10. pp 722~723, Hay to McCormick, February 10.

108) Tyler Dennett, op·cit., pp.27~28.

109) Von Alvensleben to the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12, 1904,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Deutsche Auswärtigen Amt, Berlin, 1927), 19. Band, Vol. I, p.106; Griswold, op·cit., p.97; 拙稿, 〈露·日開戰의 外因 研究-開戰에 미친 歐·美 列強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p.101.

110) Jordan to Landsdowne, 1904. 2. 25, F.O. 17/1659 (No.56); Jordan to Landsdowne, 1904. 2. 10, F.O. 17/1659 (No.36). 위의 논문, p.518.

이탈리아 공사는 29일 각 각 이를 접수하였음을 회신하여 왔던 바, 이탈리아는 영국처럼 한국주재공사를 통하여,¹¹¹⁾ 그 외의 국가들은 자국 내 한국공사를 통해서였다.¹¹²⁾ 한국은 이 회신들을 매우 호의적인 승인(보장)으로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없었다.¹¹³⁾

러·일협상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됨으로써 空轉되는 가운데 점차 戰雲이 짙어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외중립 선언이 이처럼 국제적 승인을 얻어내기가 어렵게 되자 한국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이번에는 ‘京城中立’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2월 8일자로 주한 林 공사가 小村 외상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한 것이 있다.

玄尙健이 프랑스 공사관에 빈번하게 출입함은 근간에 새롭게 宮中の 評議에 상정된 京城을 국외중립지로 하여 각 국에 승인시키고자 하는 의논에 관련한 것이다. 玄尙健은 폐하(高宗)의 命을 받들어 프랑스 공사를 설득, 러시아 공사 또는 프랑스 공사로 하여금 京城中立의 제의를 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佛 양국 공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어 이러한 제의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바 李根澤은 (다시) 폐하의 명에 따라 특히 양국 공사에게 (이를) 제의하고 상의 하기에 이른 것이다.¹¹⁴⁾

이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이 英·美·日 體制로부터 사실상 거부되자 러·佛 同盟體制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京城中立이나마 성사시키려고 프랑스 공사관에 매달려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러·佛 양국 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미 일본의 태도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그들의 침략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러·日協商이 결렬됨에 따라 드디어 러·日戰爭이 발발, 한국은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日本은 2월 4일의 秘密御前會議에서 對

111) 《舊韓國外交文書》6, 英案 II, No.2549~2550; 같은 문서 21 (議案) No.271~272; 위의 논문, p.69.

112) Despatches, Allen to John Hay, 1904년 1월 30일.

113) 《日本外交文書》37-1, No 339, 347.

114) 《日本外交文書》37-1, No 354, 349.

러戰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다음 2월 6일자로 국교단절을 통고하고 드디어 2월 8일 旅順港을 夜襲함으로써 러·日戰爭은 발발하였다. 2월 9일 일본군이 仁川 海戰에서 승리한 후 당일부로 서울에 입성, 다음 날에 宣戰布告를 반포하자 러시아공사 파블로브는 12일에 황급히 서울을 철수하였다. 이제 서울은 일본의 천지로 되었다.¹¹⁵⁾ 이어서 일본은 한국정부에 強壓하여 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는데 2월 23일자로 조인된 의정서를 보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의 施設改善에 관한 충고를 容認할 것이며 일본정부는 軍略上 필요한 지점을 隨機收用할 수 있고 양국 정부는 상호 간의 승인 없이는 本 協定에 背馳되는 協約을 제 3국과 맺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¹¹⁶⁾ 이에 따라 한국의 토지와 諸般 施設이 일본군의 軍用으로 접수당하였으니 이는 중립국으로서의 의무인 '防止의 義務'—중립국은 중립국의 영역이 交戰國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한국 스스로 위반한 꼴이 되었다. 일이 이쯤 되면 굳이 5월 18일자로 선포된, '한·러 간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는 韓·러 간 국교단절의 詔勅¹¹⁷⁾이 없었더라도 한국의 중립선언은 불과 1개월만인 이 때에 이미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戰禍에 위협을 느낀 독일인 볼터(Carl Wolter)가 전쟁 중에 '仁川各國居留地會議'의 議員 자격으로 '仁川居留地の 局外中立'을 제의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는 곧 仁川駐在 日本領事 加藤本四郎에게 다음과 같이 일본측의 동의를 구하였다.

韓·日議定書の 체결로 韓國이 이미 日本의 동맹국이 되었으므로 러·日 間の 전쟁의 진행에 따라 이제는 (국지적인 것에 불과한) 仁川 각 국 거류지의 자격을 淸·日戰爭 당시의 上海居留地와 동일자격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當該 居留地內의 외국인 및 일본인의 생명·재산의 安固를 보호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⁸⁾

115) 위의 문서 37·38의 別冊 : 日露戰爭 I, No.192의 附屬書·宣戰詔勅: Denis and Peggy Warner, 妹尾作太男·三谷庸雄 共譯, 《日露戰爭全史》(東京:時事通信社, 1976), pp.16~20; 金龍德, 〈大韓帝國의 終末〉《한국사》19, pp.171~172.

116) 《日本外交文書》37-1, No 376.

117) 《日本外交文書》37-1, No 450에 수록된 勅宣書.

이에 일본측은 만약 仁川을 국외중립지로 한다면 첫째, 國際法上 韓·日 兩國의 國益에 反함은 물론 何等의 實益이 없고 둘째, 러시아軍이 국제법을 준수하면 無防備의 港口都市를 砲擊侵害하지는 않을 것이고, 반대로 法을 무시하면 그 포격 침해를 저지할 수도 없는 일이며 셋째, 淸·日 양국의 專管居留地와 各國居留地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각 국 거류지만을 中立地帶로 한다 하더라도 實際 効益이 없다는 등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¹¹⁹⁾ 뿐만 아니라 駐韓獨逸代理公使와 仁川駐在 各國 副領事·미국인 타운센트(W.D.Townsend, 湯生,) 등도 모두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提議 역시 묵살됨으로써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運動은 완전히 좌절된 셈이었다.¹²⁰⁾

118) 《日本外交文書》 37-1, No 355, pp.322~323. 1904년 3월 2일.

119) 《日本外交文書》 37-1, No 356~358, pp.323~324. 1904년 3월 3일~4일.

120) 《日本外交文書》 37-1, No 361, p.325. 1904년 3월 15일.

第 6 章 韓半島中立化論의 綜合的 檢討

1. 韓半島中立化論의 性格

앞 장 2, 3, 4, 5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본 韓半島中立化論의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그 大要를 요약하고 이를 年代順으로 나열하면 <表 6-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發議의 主體가 개별적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간에, 또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중립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적다 망라한 결과가 총 30건이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한국중립화론을 어떤 기준에 따라 適宜 분류함으로써 그 類別 意味를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인가와 그에 따라서 총체적인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된다.

한국중립화론에 관한 내용상의 적정 분류와 종합적 성격 규정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통일된 論理는 아직 없다. 예컨대 梶村秀樹는 한국중립화론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갈래로 구분하여 보았다.¹⁾ 첫째, '列強 角逐'의 渦中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의 한국측의 主體的인 構想, 둘째, 한국을 침략·지배하고자 경쟁을 벌인 러·日 양국이 상호 간의 세력관계에서 自國이 불리하다고 느낀 국면에서 표명한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中立論, 셋째, 한국에 대한 정치지배의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없더라도 '列強' 사이에서 利害調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시장의 '門戶開放'을 확보하자는 英·獨·美의 중립론 등이다. 이 외에도 論者에 따라서 中立化의 類型과 選好하는 모델·提案된 動機構造·參加國의 實態 등으로 나누는 경우와²⁾ 類型別·時代的 背景·提案 目的·提案者의 性格·中立化 모델·中立 保障國·主導國·地政學的 與件·受容 能力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³⁾ 또는 周邊勢力 間의 利害關係·提案 目的·提案者의 性格·時代別 特徵 등으로 나누는 경우⁴⁾ 등 韓國中立化論의 성

1) 梶村秀樹, <러·일전쟁과 조선의 중립화론>, 楊尙鉉 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사계절, 1985) p.340~341.

2) 姜光植, 《中立化政治論》(인간사랑, 1989), pp.149~152.

3) 劉明喆, <韓國中立化論研究>(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pp.106~109.

격규정을 위한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表 6-1> 近代 韓國中立化運動 年表

時期	內容 提案	背景		主要內容			
		事件	競爭勢力	動機·目的	參加國	特徵	모델
1882.9	井上毅	壬午軍亂	淸·日	淸의 屬邦論否定	淸·日·美·英· 獨	永世中立	벨기에 스위스
1882.9	郵便報知 新聞	"	"	"	淸·英·美·獨· 佛·日	"	스위스 벨기에
1882.9	東京橫濱 毎日新聞	"	"	"	淸·英·美·日	"	불가리아
1882.9	보아쑤나드	"	"	러시아 견제	淸·러·日	"	벨기에 스위스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1882.12	井上馨	"	"	淸 견제	유럽列強	"	벨기에 스위스
1884.11	竹添進一郎	淸·佛戰爭	"	淸·韓連帶 견제		戰時局外 中立	
1885.	필렌도르프	甲申政變	"	引俄拒淸	淸·日·러 (러시아주도)		벨기에
1885.2	부들러	"	"	세력균형 안전보장	淸·러·日	"	스위스
1885.2	오코너	러·日密約說	淸·러·日	러시아 견제	淸·日	공동보호	
1885.5	한국정부 (金允植)	巨文島事件	英·러·淸· 日	세력균형 안전보장	諸 修交國	永世中立	벨기에
1885.末	俞吉濬	"	"	러시아 견제	英·佛·日·러 (淸주도)	"	벨기에 불가리아
1886.4	로즈베리	"	"	러시아 견제 (撤軍保障)	淸·英·日	"	벨기에
1886.7	金玉均	"	"	세력균형 안전보장	淸·歐美列強 (淸주도)	"	
1890.3	山縣有朋	淸의 監國	淸·러·日	러시아 견제 淸·日戰 준비은폐	淸·日	공동보호	
1890.11	金嘉鎮	"	"	淸·러 위협탈피	佛·伊·獨·日· 淸·러·英 (美주도)	永世中立	스위스

4) 權寧培, <韓末朝鮮에 대한 中立化論議와 그 性格>《歷史教育論集》17, (大邱:歷史教育學會, 1992.12), pp.58~64.

時期	內容 提案	背景		主要内容			
		事件	競爭勢力	動機·目的	參加國	特徵	모델
1894.7	폭스 윌킨슨	淸日戰爭	淸·日	日本軍仁川上陸 및 軍事行動 저지	英·美·獨·佛	仁川港 局外中立	
1894.8	陸奧宗光	"	"	淸 배제, 先中 立 後侵略	淸·歐·美·列 強 (日 주도)	永世中 立	벨기에 스위스
1896.5	英國政府	俄館播遷	러·日	韓國의 러시아 保護國化 우려, 러·日協商 방해	日·獨·美·러 (英 주도)	"	
1899.봄	한국정부 (알렌)	러·日角 逐	"	러·日 격돌 때 한반도 격리	列強 (美 주도)	"	
1899.11	한국정부 (샌즈)	"	"	"	러·日·英·美 (美 주도)	"	스위스 벨기에
1900.8	한국정부 (趙秉式)	"	"	러·日 戰 임박, 日 本의 한국 병합 획책	러·日·美 (美 주도)	"	스위스
1900.10	러시아정부 (파크레프스 키)	義和團事 件	"	러시아의 滿洲支配權 확 보	러·日	"	
1901.1	러시아정부 (이즈볼스키)	러시아의 滿洲점령	"	"	관련 列強	"	
1901.7	러시아정부 (위테)	"	"	"	"	"	
1902.9	러시아 3외교관	"	"	日本의 北韓 진 출정책 및 영·일 동맹에 따른 국 면타개	러·日·美 (美 주도)	"	
1903.8	한국정부 (李道宰)	러·日戰 爭 예상	"	러·日戰爭 회피	관계 列強	戰時局 外中立	
1904.1	李漢應	"	"	세력균형 안전보장	4국조약 (英·佛·러· 日) (英·佛 주 도)	"	
1904.1	한국정부	"	"	러·日戰爭 회피	관계 列強	"	
1904.2	한국정부 (玄尙健)	러·日戰 爭	"	러·日戰爭 戰禍방지	러·佛	京城局 外中立	
1904.2	볼터	"	"	"	관계 諸國	仁川港 局外中立	

本章에서는 이러한 諸 方法論을 참고한 결과 그 公約數가 될만한 사항으로서
○類型別 分布, ○時期別 論議의 特徵, ○選好하는 中立化 모델, ○提案者の 動
機構造, ○參加國의 樣態 등을 抽出하여 이를 項目化한 다음 이 순서에 따라 한
국중립화 운동의 성격을 究明하고자 한다.

첫째, 指向하는 바의 類型을 보면, 永世中立論 21件, 戰時局外中立 7건(이 가운데는 地域中立이 3건), 列強의 共同保護 2건으로서 永世中立論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은 弱小國인 한국의 國際的 存在樣式에 있어서 영세중립화만이 확실한 보장이 될수 있다는 보편적인 念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戰時局外中立運動은 淸・日戰爭 때의 仁川港 局外中立運動이 한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英國 領事에 의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치더라도, 대체로 러・日戰爭이라는 위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한 마지막 宣言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時期別 論議의 特徵을 보면, 우선 그 발생 빈도수에 있어서, 壬午軍亂으로 淸・日 對決構圖가 처음으로 可視化하자 日本에 의한 중립화론이 활발하였고(4건), 주변정세가 淸・日・러・英의 多極體制 樣相을 띤 巨文島事件 전후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중립화론을 가장 활발히 제기하였다(7건). 이 후에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1900년 이후에는 러・日 간의 균형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러시아에 의한 중립화 제의는 물론이고(4건) 한국정부 차원의 주체적인 중립화 추진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5건)

셋째, 選好하는 中立化 모델을 보면, 19세기 유럽의 中立化 先例에 따라 벨기에 형(10건)과 스위스 형(9건)을 선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東京橫濱海日新聞이나 兪吉濬 등은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저지하는 데에 중립화의 주된 목적을 두고 불가리아의 例를 援用하고 있으며, 보아소나드는 유일하게 세르비아・룩셈부르크도 중립국으로 소개하여 눈에 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인 형태는 武裝中立의 스위스 형이겠으나 一時에 그것을 가능케하는 軍備를 갖추어 줄수 없는 당시의 한국으로서는 非武裝中立의 벨기에 형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어서 이를 가장 선호하였던 것 같다.

넷째, 提案者의 動機構造面에서 살펴 본다면, 제안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偏差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淸이 제외된 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제기한 한국중립화론에서 보는 것처럼⁵⁾ 제안자의 성격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 전제된 政策提議가 있는 반면에,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한 構想내지 勸告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인에 의해서 제기된 것은 내국인의 경우와 대비되는 또다른 동기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⁶⁾ 이러한 諸樣相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霸權主義를 추구하는 국가가 自力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경쟁관계에 있는 세력들과 제휴하여 어느 단일 세력에 의하여 한반도가 독점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중립화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壬午軍亂 직후에 일본인이 제기한 중립화론은 모두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수개 세력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임으로써 한국의 安全이 우려되고 있을 때 한국의 安全保障 方法의 하나로써 霸權主義를 추구하지 않는 제 3국이 중립화를 권고하는 경우이다. 독일 총영사대리 부들리의 한국중립화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들리의 案은 天津條約이 체결되기 전부터 구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淸·日 양국에 의한 한국의 주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으며 國際條約에 의한 보장을 필요로 하면서

5) 한반도 주변세력인 淸·日·러시아와 域外勢力인 英·美 중에서 청국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유일하게 한국중립화론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淸·韓宗屬關係를 끝까지 유지·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80년대 중반에 淸은 조선이 러·日の 지배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의도에서 조선을 각국이 공동보호하는 중립국으로 할 것을 구상했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곧 王信忠은 “당시 조선에 대한 청국의 목적이 영토적 경제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 중요점이 있었던 만큼 淸은 국력을 충실히 하여 조선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차라리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名을 버리고 實을 구한다는 목표 하에 각국이 보호하는 중립국의 지위에 두는 것을 一良策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했다. 王信忠, 《中日甲午戰爭之背景》(臺北:文海出版社印行, 1937) pp.106~107.

이러한 견해는 淸廷內 淸流派들의 강경 노선에 대한 洋務派들의 유화정책을 확대 해석한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以夷制夷에 의한 속방화 유지정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6) 姜光植, 앞의 책, pp.149~150.

도 스위스의 예를 들어 그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天津條約의 체결로서 한국의 안전이 일단 보장되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됨에 따라 독일정부의 公式見解로도 채택되지 못한 이 案은 그 자신의 고집스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었다.⁷⁾

③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가 다른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특정국이 한반도로 세력팽창을 시도할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반도중립화를 제기한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활용되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중립화일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이 러시아의 南下阻止라는 그들의 世界戰略에 따라 한반도중립화를 거론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영국은 巨文島事件을 일으켜 놓고 撤軍에 따른 事後保障 措置로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기하였으며, 1896년 5월에도 俄館播遷期間(1896.2~1897.2)의 한국이 러시아의 保護國化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目下 進행중이던 러·日協商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국중립화를 구상하여 국제적인 각광을 받은 일이 있다.⁸⁾ 뿐만 아니라 뒷날 英·日 同盟에 따라 러시아와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을 지원하였던 사례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⁹⁾ 또한 개인적으로도 러·日 이 외의 한국주재 列強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중립화안을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흔히 「샌즈 案」의 경우를 예로 들곤 한다.¹⁰⁾ 그러나 샌즈의 구상은 그가 고종의 총애를 받는 궁내부 고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한국정부의 구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④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던 양대 세력 중 어느 一方이 다른 지역으로 정책적 전환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의 이익의 확보와 그를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한반도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他方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배권 설정을 견제할 수단으로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의하는 경우

7) 梶村秀樹, 앞의 논문, pp.341~342.

8)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9, (東京:日本國際連合協會, 1954), pp.582~595.; 梶村秀樹, 위의 논문, pp.342~343.

9) 姜光植, 앞의 책, p.151.

10) 梶村秀樹, 앞의 논문, pp.343.

이다. 러시아가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획득한 滿洲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본에 의한 한반도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립화를 제기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경쟁적 양대 세력 사이에 개재한 한반도가 양대 세력의 開戰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수단으로서 주체적으로 중립화를 제기한 경우이다. 주체적인 중립화 시도는 兪吉濬의 中立論을 계기로 처음에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안되다가 그것이 점차 政治結社나 韓廷當國에 共鳴됨으로써 外交戰略의 기본 구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특히 모든 상황이 러·日 開戰쪽으로 더욱 긴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외교전략은 戰時局外中立 宣言 쪽으로 일원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動機構造側面에서의 특징들을 종합하면, ①·④의 경우는 한반도를 침략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對抗關係에 있는 國家들이 자국의 세력관계가 불리하다고 느낀 국면에서 상대방 국가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침략 의도를 大前提로 한 일시적인 제안으로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독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이해관계 당사국 간의 세력균형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한반도중립화 자체는 副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이처럼 外勢 또는 외국인에 의해 제기된 한국중립화론은 참으로 한국을 위한 것이 못되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중립화의 先決條件으로서 뮐렌도르프가 國家의 自衛力을, 샌즈가 內政改革과 教育改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들은 외국인이라기 보다도 차라리 한국정부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를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섯째, 上程되고 있는 參加國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 분포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편의상 保障國과 主導國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保障國이 相異함은 提案者의 주변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며 보장국의

11) 劉明喆, 앞의 논문, p.107.

選定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직접적인 대항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보장국에 포함시키지만 직접 대항관계에 있지 않는 域外勢力을 仲裁勢力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膨脹主義的 性向이 강한 국가들이 현상 타파를 위한 상호 대결을 추구하여 한반도의 중립화를 쉽게 보장하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만에 의한 보장은 어느 순간에 對決로 변모할지도 모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정치적 야심이 적은 국가들을 포함시켜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郵便報知新聞(英·佛·美·獨), 兪吉濬(佛)·金嘉鎭(美·佛·伊·獨)·趙秉式(美)·러시아 3 외교관(美)·李漢應(英·佛)이 그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兪吉濬은 미국을 보장국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미국을 通商大國으로 간주할 뿐, 미국에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기대하는 당시의 聯美論이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對美依存 感情이 농후한 한국정부의 親美政策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淸·日戰爭 이후에는 淸이 보장국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戰爭에서의 敗北로 한국을 둘러싼 세력경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보장국 분포와의 관련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외국인에 의해서 제기된 한국중립화론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경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中立化 主導國에 관해서 살펴보면, 주도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案은 提案國家가 중립화를 주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화 대상국가인 한국 (또는 한국인) 스스로가 選好하여 명시한 주도국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서 그 발상 자체가 국제적 상황판단에 대한 未熟性의 露呈임은 물론 본래의 제안동기마저 결과적으로 褪色시켜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兪吉濬과 金玉均은 特異하게도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淸도 唇亡齒寒의 위기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淸이 중립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淸·韓宗屬關係를 고집하는 淸이 이에 응할 까닭이 없었으며, 金嘉鎭과 趙秉式은 미국을 私心없는 友邦으로 보고 居中調停의 역할을 기대하여 미국의 주도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不干涉 中立政策과 親日政策으로 일관함으로써 한반도 중립화에 아

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李漢應 역시 英·佛 양국에게 그들 국가가 유럽에서와 같이 동아시아에서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중립화의 주도국이 되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영국으로서는 동맹국인 일본의 이익에 배치되는 역할은 그 어떤 것도 수행할 이유가 없었다.

2. 中立化 挫折의 要因

上論한 바와 같이 韓國中立化論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으나 그 어느것이나 결과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年代記的인 사실만으로 中立化論議가 霧散되었다고 단순히 感傷的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본래 中立化는 國際政治의 力學關係 속에서 一國의 存立이 규정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냉엄한 현실과 韓國의 실정을 대입하여 객관적으로 深層究明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挫折의 原因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고찰한다면 이는 韓半島中立化論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多角的인 檢證作業이 된다.

따라서 제1장에서 소개하여 정리한 ‘中立化의 可能條件’에 관한 理論을 韓半島中立化論에 적용하여 이를 檢證할 기본 틀로 삼되 一國의 安危에 대한 理解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對內的인 側面과 對外的인 側面으로 大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① 軍備充實 및 經濟自立度에 관련한 自衛力 問題, ② 中立化 必要에 대한 國民的 信念으로서의 內的合意 問題, ③ 지속적인 中立政策 追求를 통한 국제적인 信賴와 尊重確保 與否, ④ 弱小國으로서의 現狀維持國인가 하는 문제 등을 事例를 들어 검증하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① 地政學的인 與件, ② 국제 간의 勢力均衡 問題, ③ 強大國 상호 간의 中立 保障合意의 문제 등을 역시 사례를 들어 집중 검증하여 한국중립화론이 좌절된 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1) 挫折의 對內的 要因

① 軍備充實 및 經濟自立度에 關한 國家自衛力의 問題

挫折의 對內的 要因을 究明하기 위해서 맨 먼저 檢證해야 할 사항은 뭐니해도 國家의 自衛力 問題일 것이다. 원래 中立國은 戰時가 되면 ‘중립국의 영역이 交戰國의 軍事基地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¹²⁾ 있기 때문에 外勢의 개입을 제어하고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軍事力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어떤 특정국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 인하여 중립에 대한 餘他國들로부터의 신뢰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經濟的 自立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당시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자립도를 총칭하는 자위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선 軍事力부터 살펴 본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東學農民軍蜂起 당시(1894) 中央軍 兵力이 3,000명에 불과하여 東學農民軍에 참패함으로써 결국 淸國에 援兵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¹³⁾ 1895년 9월~1900년 10월 간의 경우, 中央軍은 수도 방위 임무를 가진 親衛隊(3,400명)와 왕실경호 임무를 가진 侍衛隊(1,600명)로 구성되어 兵力은 5,000명 수준이었으며, 地方軍은 鎮衛隊 兵力 15,300명이었다. 따라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한 총 병력수는 20,300명인 셈이었다.

그나마 한국의 군사력은 前述한 바와 같이 大韓帝國 時期 이후에 와서 일련의 軍制改編과 增強을 통하여 韓國 近代史에 있어서 가장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表 6-2>와 <表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년 이후에는 政府 歲出豫算의 40% 가까이 防衛費로 확보하여 軍備增強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00년 10월부터 1905년 3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中央軍은 親衛隊가 5,100명, 侍衛隊가 4,100명, 憲兵隊 500명, 輜重兵隊 200명으로 총 9,900명이었으며 지방군인 鎮

12) 李漢基, 《國際法講義》(서울:朴英社, 1977), pp.448~449; 崔鳳潤·盧承禹, 앞의 책, p.168; 石本泰雄, 《中立制度の史的研究》(東京:有斐閣, 1958), pp.26~32.

13) 車俊會, 〈韓末軍制改編에 대하여 -軍隊解散에 이르는 過程-〉《歷史學報》22, (1964), p.75; 金昌洙, 〈淸日戰爭 前後 日本의 韓半島 軍事侵略 政策〉, 韓國史研究會 編, 《淸日戰爭과 韓日關係》(一潮閣, 1985.6) pp.3~9.

衛隊는 여전히 15,300명이었다.¹⁴⁾ 따라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한 총 병력수는 25,200명 정도였다.¹⁵⁾

<表 6-2> 1896~1904年度 軍部歲出豫算表

(단위:元)

년 도	군 부 예 산	정부 총예산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1896	1,209,101	6,316,831	19.1%
1897	979,597	4,190,427	23.4%
1898	1,251,745	4,525,530	27.7%
1899	1,447,351	6,471,132	22.4%
1900	1,636,704	6,161,871	26.6%
1901	3,594,911	9,078,682	39.6%
1902	2,786,290	7,585,877	36.7%
1903	4,123,582	10,765,491	38.3%
1904	5,180,614	14,214,298	36.4%

※ 군부예산은 경상부세출·임시부세출·예비비를 합친 것임.

[자료] 金玉根,《朝鮮王朝財政史研究 IV:近代編》(一潮閣, 1992) pp.46~47.

<表 6-3> 1900~1904年度 「軍事歲出」豫算表

(단위:元)

년 도	軍 事 豫 算	政府 總豫算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1900	12,733,207	6,161,871	28.1%
1901	3,724,185	9,078,682	41.0%
1902	2,907,357	7,585,877	38.3%
1903	4,247,534	10,765,491	39.5%
1904	5,349,521	14,214,298	37.6%

※ 軍事豫算은 1900년도 부터 元帥府 예산이 軍部예산과 별도로 편성됨에 따라 元帥府·軍部·憲衛隊 예산을 합친 것이다.

[자료] 徐仁漢,《大韓帝國軍事制度研究》(國民大博士學位論文, 1996) p.119.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의 군사력과 비교해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군

14) 《日省錄》권 426. 乙未 10월 6일; 권 457. 戊戌 4월 8일; 권 458. 戊戌 5월 14일; 권 472. 己亥 7월 24일; 권 483. 庚子 6월 4일; 劉明喆, 앞의 논문, p.116.

15) 이중 유럽식으로 훈련된 군인의 수는 17,000명 정도라고 한다. C.I. Eugene Kim & Hankyo Kim. Korea and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20; 劉明喆, 위의 논문, p.116.

은 60만으로서 한국군의 24배에 달하여 그들이 이미 12개 師團으로 확장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1개 旅團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¹⁶⁾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 前述한 바대로, 1647년에 36,000명으로 聯邦軍을 결성하여 武裝中立의 전통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니¹⁷⁾ 1907년에는 20만 예비군을 포함한 28만의 軍隊를 창설하였던 것이다.¹⁸⁾ 이처럼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전보다 증강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숫적인 증가도 그 목적이 國防이 아닌 義兵 鎮壓에 있었고 그나마 財政窮乏으로 현상유지가 점차 어려워져 갔다.

또한 한국군의 軍需品 조달방식을 보면 매우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4월 17일 陸軍參將 白性基는 上疏를 올려 “機局은 … 수년간 하나의 兵器도 만들지 못하고 헛되이 經費만 소모하니 현재로는 閒局을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였고¹⁹⁾ 1904년 1월 15일 元師府 軍務局 總長인 副將 申箕善의 상소에도 “… 器仗이 없으면 이는 곧 兵이 없는 것이다. 機械局을 설치한 지 20여년인데 아직 하나의 砲丸이나 銃丸도 제조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사들이고 있다. …”라고 하였다.²⁰⁾ 이러한 사정이었으므로 드디어 “所謂 我國 兵丁은 또한 그 소용이 없음을 알았다.”라는 당시의 軍事에 대한 無用論까지 나오기도 했다.²¹⁾

軍事編制도 너무 頻數하였다. 1900년 3월 18일 參將 白性基는 “… 현재 兵隊를 설치해도 6, 7년이 지나지 않아 將領의 遞改가 頻數하여 將은 兵을 모르고 兵은 將을 모른다 …”라고 하는가 하면,²²⁾ “… 體統이 嚴하지 못하고 規定을 정하지 않으니 上下가 紊亂하고 尊卑가 渾淪하여 言辭가 別로 敬謹한 禮가 없다.”라고 하여²³⁾ 편제의 빈박한 개편이 오히려 군대를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軍部協辦 朱錫冕도 일찍이 “數年間に 6, 7차 改遞하려 하나 오랜 동

16) 《日省錄》권 464, 戊戌 11월 28일, “朕曰 日本陸軍近多増設云果否 夏榮曰 増設六師團爲十二師”; 德富蘇峰 編述, 《公爵山縣有朋》下卷, (山縣有朋公記念事業會, 1933, 原書房復刊, 1969), pp.240~244; 車俊會, 앞의 논문, p.95.

17) Edgar Bonjour, op.cit., p.30; 劉明喆, 앞의 논문, p.27.

18) Cyril E. Black et. al., op.cit., p.39.

19) 《高宗實錄》권 40, 光武 4년 4월 17일條.

20) 《秘書監日記》光武 8년 정월 15일條.

21) 위의 日記, 광무 9년 乙巳 2월 2일條; 車俊會, 앞의 논문, pp.95~96.

22) 위의 日記, 광무 4년 庚子 3월 18일條; 車俊會, 위의 논문, p.110.

23) 위와 같음.

안의 積弊로 卒伍는 단속할 수 없고 將者도 마찬가지이다.”라고 評한 일이 있다.²⁴⁾

이상과 같이 한국군은 1900년대 이후 軍備增強에 힘썼지만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 숫적으로 劣勢였을 뿐만 아니라 內實面에서도 脆弱하여 중립국으로서 갖는 ‘防禦의 任務’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皇城新聞은 이러한 사정을 직시하여 ‘우리 정부는 마땅히 自主 防衛의 方針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開戰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對應策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자세를 강력히 비판하는가 하면, ‘우리 韓國은 中立國으로서 러·日 간의 대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정부의 聲明에 대하여 自力으로 中立을 관철시키려는 자세가 약하다고 痛烈하게 비판하였다.²⁵⁾

이러한 韓國軍의 실정을 일본은 잘 파악하고 있었다. 1904년 당시 日本의 言論이 한국의 戰時局外中立 宣言에 대하여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앞 서 중립을 선언했으나 … 도대체 중립을 지키기에 충분한 실력 없이 중립을 선언해도 하등의 효과 없음은 이미 本紙에 記한 대로이며 公法上으로 말하자면 가령 중립을 선언해도 만약 繫爭國 일방의 군대가 그 영토에 들어올 때 이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이미 그 국가의 중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한국은 현재 이와 같은 事情下에 있다. 하물며 보통 다른 중립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그 국가 자신이 러·일전쟁의 목적물이라는 데서 결코 이로써 無關係의 제 3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의 擇할 바는 러시아와 더불어 일본에 對敵하든가 일본과 더불어 러시아에 對敵하든가 二者 擇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今後의 되어가는 추세는 일본과 동맹하여 러시아에 당하는 형세에 서기에 이른 것이다.²⁶⁾

이처럼 일본의 언론은 한국이 분쟁국인 일본이나 러시아의 군대가 침입했을 때 自國 軍隊로써 능히 방어할 군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립국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한국 자체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목적물인 만큼 일본과 동맹하는

24) 《日省錄》 권 444, 丁酉 5월 15일條: 위의 논문.

25) 《皇城新聞》 제 8권, (1976 復刻版) p.538.

26) 《新聞集成明治編年史》 12권, (財政經濟學會, 1934~1936), p.187. 1904년 2월 10일.

편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國家自衛力’이라는 觀點에서 中立化論을 평가한다면 확실히 韓半島中立化론은 무모한 것이었음에 틀림 없다. 물론 개별적인 提案 가운데서 뮐렌도르프가 러시아식 軍隊訓練을 언급했다든지 부들러가 수천 병력으로 國防과 治安을 감당하는 自衛力確保를 강조하였고, 俞吉潸이 兵政·商務의 時急 등 內修의 未備를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궁내부고문 샌즈는 內政과 教育의 改革을 中立化의 先決要件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려는 적도 있지만 이러한 提案들에 대하여 당장의 현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역시 무모한 理想論일 뿐이었고, 그 외 餘他の 中立論들은 그나마 이러한 理想마저 찾아 볼 수 없는, 단순한 國際的 力學關係의 논리만 내세운 虛構일 뿐이었다. 따라서 韓國中立化論은 梶村秀樹도 지적했듯이 맹렬한 군사적 침략에 대항할 만한 물리적 힘을 일찍부터 준비할 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부르짖은, 더욱이 國內 民衆의 비판처럼 ‘變革을 기반으로 한 自疆의 構想’도 수반하지 않은 그러한 弱點 투성이의 空論에 불과하였다.²⁷⁾

〈表 6-4〉 1896~1904년의 年度別 歲出豫算과 歲入實績의 比較
(단위:元)

년 도	탁지부 세출예산액	세입 실적	과·부족액
1896	6,316,831	2,428,025 (38.4%)	-3,888,806
1897	4,190,427	4,869,931 (116.2%)	+679,504
1898	4,525,530	3,520,768 (77.7%)	-1,004,762
1899	6,471,132	4,256,093 (65.7%)	-2,215,039
1900	6,161,871	5,908,553 (95.8%)	-253,318
1901	9,078,682	6,571,683 (72.3%)	-2,506,999
1902	7,585,877	5,868,559 (77.3%)	-1,717,318
1903	10,765,491	7,056,333 (65.5%)	-3,709,158
1904	14,214,298	11,207,591 (78.8%)	-3,006,707

()은 세출예산에 대한 비율임.

[자료]金玉根, 앞의 책, p.48.

27) 梶村秀樹, 앞의 논문, p.348.

다음으로 이러한 國家防禦 能力과 직결되는 財政自立度 問題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表 6-4>에 의하면 1896~1904년 간의 세출예산에 대한 세입실적이 평균 76.4% 정도이며 예산에 대한 세입 부족이 1902년 까지는 평균 156 만원에 이르렀고 특히 1903년 이후부터는 300 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경제는 일본의 무역을 통한 경제침탈, 이를테면 그들의 상품 판매시장화, 원료 및 식량의 약탈기지화, 해상운수독점 등으로 점차 일본에 예속되어 갔다. <表 6-5>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다. 수입에 있어서는 평균 65.3% 내외의 선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는 83.5%의 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외무역 전반에 있어서 貿易逆調現狀을 빚어 1896년에 180만원 赤字이던 것이 1904년에는 2천 만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는 回生不能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表 6-5> 1896~1904년의 年度別 商品輸出入 比較

(단위:千圓)

년 도	수 출			수 입			수출입 차이
	對日수출	기타	계	對日수입	기타	계	
1896	4,396 (93.0)	333 (1.0)	4,729	4,294 (65.7)	2,237 (34.3)	6,531	-1,802
1897	8,090 (90.1)	884 (9.9)	8,974	6,432 (63.9)	3,635 (36.1)	10,067	-1,093
1898	4,523 (79.2)	1,186 (20.8)	5,709	6,777 (57.3)	5,040 (42.7)	11,817	-6,108
1899	4,205 (84.1)	793 (15.9)	4,998	6,658 (65.1)	3,571 (34.9)	10,227	-5,231
1900	7,232 (76.6)	2,208 (23.4)	9,440	8,241 (75.3)	2,699 (24.7)	10,940	-1,500
1901	7,402 (87.5)	1,060 (12.5)	8,462	9,052 (61.6)	5,644 (38.4)	14,696	-6,234
1902	6,550 (78.8)	1,767 (21.2)	8,317	8,689 (64.2)	4,852 (35.8)	13,541	-5,224
1903	7,600 (80.2)	1,878 (19.8)	9,478	11,555 (63.4)	6,664 (36.6)	18,219	-8,741
1904	5,697 (83.5)	1,237 (17.8)	6,934	19,007 (65.3)	7,798 (29.1)	26,805	-19,871

()은 백분비율임.

[자료] 《經濟年鑑(1948)》(朝鮮銀行);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도); 《통계로 본 開化期の 經濟·社會相》(統計廳, 1994.7) p.155.

정부는 국가재정이 갈수록 피폐해짐에 따라 이를 타개할 근본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관례대로 借款으로만 해결하려 하였다. 1901년 5월 내장원경 겸 탁지부 협판 李容翊이 일본의 三井物産 지점장 吳大五郎에게 金鑛 및 鐵鑛採掘權을 代償으로 300 만원의 起債를 교섭한 일이 있다.²⁸⁾ 이 차관문제는 曾禰荒助(1849~1910) 外相의 電文으로 중단되었지만²⁹⁾ 李容翊은 1903년 1월에 다시 大三輪長兵衛에게 300 만원 내지 500 만원의 起債斡旋을 의뢰하기도 했다.³⁰⁾ 大三輪이 고종의 신임을 받고 한국정부의 고문이 된 데는 그가 한국중립론 제창자라는 사실이 외에도 그를 통하여 對日借款을 교섭해보려는 李容翊의 숨은 배려도 있었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가 한국 황제 밀사인 玄尙健의 使命을 偵探할 때에 “玄尙健의 사명 중에는 얼마 간의 차관을 歐洲에서 얻으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라고 小村壽太郎 外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³¹⁾ 玄尙健이 한국중립선언 문제와 결들여 對 유럽 차관교섭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차관교섭 노력은 수치적자를 對外借款으로 미봉하려한 것인바 이는 결과적으로 가장 財源이 확실한 關稅만 저당잡힐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으며 차관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다.³²⁾

이와 같이 한국은 中立化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中立化 必要에 대한 國民的 信念으로서의 內的 合意의 問題

中立化 실현의 成敗를 결정 짓는 또 하나의 문제는 中立化의 必要에 대한 國民的 信念으로서의 內的 合意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었나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韓國 朝野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近代韓國이 격

28) 《日本外交文書》34, No.432, 438의 機密 72호.

29) 위의 문서, No.439의 機密 77호.

30) 위의 문서, 35, No.255의 機密 136호.

31) 위의 문서, 36-1, No.699.

32) 金玉根, 앞의 책, pp.148~149.

동하는 世界情勢에 아무런 예비없이 노출되어 밖으로는 방향 감각을 잃게되고 안으로는 外壓에 쉽게 搖動됨으로써, 이에 대한 順應과 自愧의 相衝現象이 階層間에 날로 深化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開港過程에서 보여준 開化論과 守舊論의 분열을 비롯하여 壬午軍亂 때의 保·革의 갈등 뿐만 아니라 주변세력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여준 外勢와 연계된 극심한 갈등·대립-甲申政變 때의 親淸 既存官僚層과 親日 急進官僚層 간의 충돌이라든가, 淸日戰爭과 三國干涉 이후의 親러·親美派의 대두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親淸·親日·親러·親美派 등의 상호 갈등 이 외에도 ‘半封建 反侵略’ 鬭爭 과정에서 自生된 韓末 내셔널리즘의 諸 形態 - 衛正斥邪思想·開化思想·東學思想 등도 그 실현 수단의 相剋性 때문에 또다른 분열을 고착화시킨 요인이 되었다.³³⁾

아와같이 執權層 內部가 親淸·親日·親러·親美 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在野가 衛正斥邪·開化·東學으로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內的인 ‘統合危機’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합위기 상황이 ‘代表性的 危機’와 연결됨으로써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련 외부세력들에게까지 (한국을) 自存 能力이 결여된 국가로 간주되게하는 작용을 하였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日本과 러시아에 의해 정책적으로 제의된 中立論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 이를테면 提案者가 日本人이건 러시아人이건 간에 中立化協商對象에서 당사국인 韓廷當局을 원초적으로 제외하는가 하면 他國의 中立化提議를 거부할 경우에도 의례이 ‘韓廷當局의 自存能力缺如’를 이유로 내세워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³⁴⁾

韓國中立化 實現에 있어서의 痼疾인 國民的 合意의 缺如是 中立化 推進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던 러·日 開戰 직전의 戰時局外中立 宣言 때까지 계속되었

33)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사상과 현실-》(서울:청계연구소, 1989) pp.369~379.

氏는 한국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된 것은 韓末의 衛正斥邪思想·開化思想·東學思想 등이 상호 대립하여 통일적인 내셔널리즘으로 결집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34) 姜光植, 앞의 책, pp.153~155.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이 당시의 韓國 朝野는 크게 戰時局外中立을 추진하는 ‘中立派’와 韓·日 密約을 체결하려는 ‘密約派’로 대립되어 있었다. 中立派는 李容翊을 필두로 李學均·玄尙健·李寅榮 및 외국인 외교관들이 加勢하고 있었던 반면에 밀약파는 한국의 중립을 방해하는 일본에 포섭된 세력들로서 외부대신서리 李址鎔·군부대신 閔泳喆(1864~?)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李址鎔은 自請하여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로부터 買收運動資金 條로 1 만원을 收賄한 후 궁중의 비밀을 날날이 林 공사에게 보고하면서 밀약체결에 盡力하고 있었고³⁵⁾ 閔泳喆은 林 공사의 使喚을 받고 고종을 알현하여 “한·일 간에 交誼를 두텁게 하여 러시아에 對峙할 필요가 있으며” “國難에 際하여 폐하가 만약 외국공사관 또는 京城 이 외에 播遷한다면 이는 즉시 한국의 멸망을 자초하고 말것”이라고 上奏하기도 하였다.³⁶⁾ 또한 원수부 회계국 총장 李根澤(1865~1919)은 원래 러시아파로 알려진 중립론자였으나 林 공사가 李址鎔에게 준 買收運動費 1 만원에 매수당함으로써 밀약체결에 찬성, 李址鎔·閔泳喆과 함께 동분서주하였더니, 林 공사가 이를 보고 본국정부에 보고하기를 “韓廷懷柔에 관한 帝國政府訓令의 취지를 이미 達하였다”라고 하였다.³⁷⁾

이제 이들 밀약파가 한국정부의 中立宣言 試圖에 정면으로 대치하여 밀약체결에 狂奔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李址鎔·閔泳喆 2인은 1월 14일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李根澤과 함께 고종의 뜻에 어긋나게 밀약체결의 受任을 自請하여 이를 上奏하는가 하면, 1월 16일에는 이들 3인이 林 공사를 만나 그 간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³⁸⁾ 李址鎔·李根澤·閔泳喆 3인은 1월 19일에 다시 ‘日韓兩國間障礙掃除友誼親密交渉委任事’라는 고종의 위임장을 휴대하여 林 공사를 방문하였다.³⁹⁾ 그들은 밀약체결을 위한 會晤를 가지면서 “이번은

35) 國史編纂委員會 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하 日館記錄)》18, (時事文化社, 1997), 〈日韓議定書(이하 議定書)〉 pp.455~456 往電 14號, p.457 來電 4號, p.458 往電 46號; 崔永禧, 〈露日戰爭前의 韓日秘密條約에 對하여〉 《白山學報》3: 圓峯劉鳳榮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7), p.474.

36) 위의 기록, 〈議定書〉, pp.456~457 往電 16號.

37) 《日本外交文書》37-1, No.369, 370, 553.

38) 《日館記錄》18, 〈議定書〉, p.459 往電 55號.

자신들의 생명을 賭하고 本件의 성립에 盡瘁할 터이니 일본정부는 十分의 信賴를 與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또 “本件 알선을 위하여 만일 우리들에게 위협이 따를 경우에는 十分 일본이 보호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등 비굴한 태도를 그치지 않았다.⁴⁰⁾ 밀약안은 이들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드디어 字句修正이 끝나 1월 22일에 調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일에 한국측 대표 李址鎔이 明憲太后崩御에 관한 親書作成의 일로 불참함에 따라 조인이 연기되어 이들 3인과 林 공사는 1월 23일에 다시 李根澤 家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때 林 공사가 明日을 期하여 條約案을 반드시 교환할 것을 강요하던 중에 느닷없이 李容翊이 入室함으로써 회합은 중단되었다. 그래도 밀약은 이 날 李址鎔과 林 공사에 의해 調印되어 李址鎔이 이를 고종에게 보였던 바 고종이 先 中立宣言 後 密約承認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李容翊 또한 外部를 상대로 밀약체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밀약체결은 한국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李址鎔에게 “만약 밀약안에 조인하면 大罪人으로 처분된다.”는 등 강력한 警告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차나에 저지되었다.⁴¹⁾ 이에 李址鎔·李根澤·閔泳喆 3인은 밀약체결이 좌절될 때 받게 될 일신상의 위험과 일본공사에 대한 체면, 그리고 일본공사의 強勸 때문에 1월 24일에야 고종을 알현하고 밀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한국독립이 위험하다고 上奏하였다. 이에 고종은 3인이 일본과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직을 떠나도 좋다고 하였다.⁴²⁾

이처럼 정부 내의 지도층들은 국외중립선언을 전후하여 中立派와 密約派라는 이름으로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립화 필요에 대한 國民的 信念으로서의 內的 合意는 多數大衆의 輿論向背는 且置하고라도 우선 指導層 內部에서 조차 贊·反 兩論으로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39) 위의 기록, pp.460~461 往電 65號.

40) 위의 기록.

41) 《日本外交文書》37-1, No.376; 위의 기록, p.471 往電 76號, pp.472~473 往電 78號, pp.473~474 往電 80號.

42) 위의 기록, pp.476~477 往電 83號.

③ 持續的인 中立政策追求를 통한 國際的인 信賴와 尊重確保의 問題

이어서 檢證해야할 문제는 ‘中立의 歷史的 經驗이나 그와 類似한 傳統이 있었던가’의 여부와 근대 한국이 ‘지속적인 중립정책 추구를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信賴와 尊重을 확보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사실 한국은 全 歷史를 통하여 볼 때 주체적이었던 타율적이었던 간에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한 中立의 立場에서 현상을 유지하려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힘의 強弱을 살펴서 신속히 어느 일방에 대한 事大나 字小의 명분을 설정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5세기의 高句麗가 中國 南北朝 및 塞外民族과의 폭 넓은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주변을 안정시킨 다음 內實을 다졌던 일이나,⁴³⁾ 朝鮮時代의 光海君이 明과 後金(淸) 간의 等距離外交와 朝·日 國交正常화를 꾀하여 戰後復舊事業에 열중하였던 일⁴⁴⁾ 등 ‘中立主義’(neutrality)에 가까운 외교적 시도는 있었으나 近代에 이르도록 확고한 ‘中立’(neutrality)의 유지라는 역사적 경험은 없었다.

開港 以後에도 새로이 전개된 주변정세의 多極化現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名分論과 힘의 논리에 얽매임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强者를 탐색하는 偏重外交一邊倒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壬午軍亂과 東學農民軍 蜂起 때는 淸國을, 韓·러 密約 그 자체는 러시아를, 俄館(러시아 공사관)으로의 播遷 행위는 러시아 또는 美國을 (自意든 他意든) 事態解決 및 向後의 힘의 보증을 위해 실제로 끌어들었거나 끌어들인 결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外勢依存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淸·日 兩軍 共同進駐를 허용하였고, 韓·러 密約은 英國의 巨文島占領(1885)을 유발하였고, 東學農民軍에 대한 대책은 淸·日戰爭의 導火線이 되었는가 하면, 俄館播遷은

43)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1. 古代篇, (一潮閣, 1983), pp.170, 192~193.

44) 蔡鉉錫, 〈光海君의 外交政策〉《文理論叢》3, (建國大, 1974), pp.124~126; 이병도, 〈광해군의 대후금정책〉《국사상의 제문제》1, (국사편찬위원회, 1959) pp.154~170.

러·日대립의 深化와 列強의 對韓 利權侵奪의 加熱을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近代 以後에 간간히 시도되던 中立化政策은 과연 持續的이어서 국제 사회로부터의 信賴와 尊重을 확보하였던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大韓帝國 이후를 주목해야 하고 특히 高宗의 中立意志가 어떠한지 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중립화 논의가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宗은 皇帝로서 大韓帝國의 法制上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1903년 8월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중립정책은 高宗의 中立意志 때문이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04년 1월 21일의 戰時局外中立 宣言이 몇몇하게 정부에서 발표되지 못하고 외부대신의 名義를 盜用, 중국의 芝罘에서 발표된 점이나 불과 하루 뒤에 韓·日密約案이 조인될 수 있도록 그 교섭이 추진되어 왔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國家元帥로서의 고종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종은 러시아나 일본, 기타 외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전쟁에서 局外國이 되어 전쟁의 피해를 피하려함과 동시에 일본이 제안한 密約 締結에도 응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한국의 主權擁護를 企圖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종의 二重政策-두 마리 토끼 물이 작전을 두고 일본공사 林은 '애매한 태도'라고 하거나 고종의 성격이 '形勢傍觀主義的'이고 '優柔不斷'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⁴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종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고종은 列強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波瀾을 겪은 왕이었으므로 모든 사태를 現實的·流動的으로 해결하려 하였다”라는 評도 있다.⁴⁶⁾ 어쨌거나 고종은 결과적으로 국외중립을 확채하면서도 일본측의 밀약안 제안에 응하려는 모순을 저질렀던 것이다.

더욱이 고종은 밀약 체결에 응하는 조건을 일본에 亡命 中인 한국인 政客의 처리문제에 결부시켰다. 1903년 10월 27일 고종의 일본인 고문인 大三輪長兵衛가 小村壽太郎 외상과 회담할 때 밀약 체결의 교환조건으로 내 건 것이 바로 그

45) 《日館記錄》〈日韓間秘密條約締結ニ關スル件(이하 密約)〉, pp.430~431 機密 163號.

46) 崔永禧, 앞의 논문, p.473.

러하였다. 이는 분명히 公私를 혼동한 처사였다. 이들 망명자는 乙未事變(閔妃弑害事件, 1895.10.8)에 연루된 자들로서 한국정부는 이들(27명)의 罪狀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1등급으로 烙印된 11명의 處分을 요구했던 것이다. 李垿鎔·朴泳孝·兪吉濬·張博·趙義淵·李斗璜·李軫鎬·李範來·趙義潤·權東鎮·具然壽 등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와 같이 고종은 公人으로서의 中立化案을 고집하면서도 私人으로서의 개인적인 怨恨 때문에 중립화안과 背馳되는 일본측의 밀약안에 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密約條文을 둘러싼 수차례의 修正案이 한·일 간에 상호 왕래한 결과 급기야 망명자 처분마저도 삭제되고 말았다.⁴⁷⁾ 이러한 밀약안을 놓고 고종은 중립선언을 승인받은 후에 밀약안을 교환하겠다고 下敎한 것은 이것 역시 지도자의 확고한 中立意志라 볼 수 없다.

또한 고종의 중립정책은 對外依存的인 外交政策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부터 한국정부의 中立化 推進外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열강에 의한 한국의 중립보장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 왔었다. 兪吉濬의 中立案 등은 이미 그 발상에서부터 각 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그 능력에 비추어 '保障'이 갖는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종이나 정부는 그 보장을 盲信하는 경향이 있었다.⁴⁸⁾ '알렌 문서'(Allen Paper)에 의하면, 러·일 開戰 직전의 전시국외중립 선언의 경위에 대해서 알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국외중립선언을 통하여 他列強들에게 러시아에 同調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러·日을 제외한 歐美列強의 공동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지위가 안전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에 최후의 비상조치 수단으로써 러·일전쟁을 목전에 두고 국외중립을 선언한 것 같다"고 하였다.⁴⁹⁾ 이와 같은 알렌의 견해를 사실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잇따랐다. 芝罘宣言에 대한 최초의 회답이 영국으로부터 왔

47) 1903년 12월 29일 주한 林 공사가 기초한 밀약안에는 "乙未亡命者는 일본 國法の 범위 내에서 엄중히 조치하고 ..." 라는 명시가 있었는데 1904년 1월 18일의 한국측 수정안에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日館記錄》18, 〈議定書〉, p.452 韓國人亡命者處分交渉에 대한 勅旨, p.460 修正案, pp.463~464 往電 67號, pp.464~466 來電 27號, p.467 往電(議定書本案)

48) 具汝列, 앞의 논문, p.509.

49) Despatches, Allen to the Secretary of Dtate, 1904년 1월 30일: 金銀姬, 앞의 논문, p.68.

을 때 정부는 이를 영국으로부터의 정중한 수교로 받아 들여 심심한 謝意를 표한 다음,⁵⁰⁾ 영·일동맹에서의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중립선언의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영국의 충고와 지원을 구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⁵¹⁾ 이 때 정부의 한 관리는 놀랍게도 영국공사 조단(J.N.Jordan)에게 한국은 평화보다 전쟁을 더 원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중립선언이 열강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해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평화가 유지되면 러·일 협상 여하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정치적 통제아래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었다.⁵²⁾ 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에 李容翊도 당시 영국인 기자로서 전쟁특파원이 되어 한국에 온 맥켄지(Frederick Mckenzie)를 만나 서로 對話하는 중에 “러·일 간에 전쟁을 하게 하라. 한국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 우리 황제폐하의 이미 중립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준수할 뿐이다. 만약 우리의 중립이 깨어지면 열강은 지체 없이 행동을 개시하여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가 하면⁵³⁾ 특히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얻고 있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우리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소”라고 강조했다.⁵⁴⁾ 나중에 고종이 알렌을 통하여 미국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자 알렌은 헤이(John Hay) 국무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가운데 “한국황제는 미국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終戰後에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능한 限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무슨 일을 해 줄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황제는 1882년의 「朝·美修好通商條約」 제 1조를 대단히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⁵⁵⁾

50) 《舊韓國外交文書》 14. (英案 II), No 2550.

51) Jordan to Lansdowne, 1904. 1.28. F.O. 17/1659 (No.25); 具沆列, 앞의 논문, p.509.

52) Jordan to Lansdowne, 1904. 2. 1. F.O. 17/1659 (No.26); 具沆列, 위의 논문, pp.509~510.

53) F. 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New York: 1908), p.109; 金源模, 〈美國의 對韓居中調停〉《史學志》 8, (檀國大學校 史學科, 1974), p.40.

54)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Jersey, The Fleming H. Revell Co. Old Tappan, 1920), p.78; 具沆列, 앞의 논문, p.509.

55) Despatches, Allen to John Hay, 1904년 4월 14일; 金銀姬, 앞의 논문, pp.69~71. 한·미수호통상조약(제 1조): 미합중국대통령과 조선국왕 및 各其 政府의 公民과 臣民 間에 영구한 평화와 우호가 있을 것을 기약하고 만일 別國이 일방 정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타방 정부는 그 사건의 통지를 받는

위의 事例가운데서 특히 미국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미국이 기왕의 한·미 수호조약대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居中調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한국이 확신하고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끝까지 이러한 확신을 지우지 못하였다. 예컨대 한국은 러·일전쟁 중인데도 1904년 12월 22일 전 주미 한국공사관 고문인 니담(Charles W. Needham)을 통하여 “...日兵을 驅逐하고 일본의 暴戾를 峻拒하는 方策을 세워주기를 切望한다”는 내용의 密書를 헤이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후로⁵⁶⁾ 1905년 7월 12일에는 李承晩·尹炳求로 하여금 ‘獨立請願書’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⁵⁷⁾ 1905년 12월까지 무려 여섯 차례나 救濟를 哀訴하였다.⁵⁸⁾ 그러나 미국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親日的 中立을 선언한 터라 20여 년전의 조약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다만 1905년 3월 反日的 性向을 띤 주한 공사 알렌의 해임사태만 몰고 왔을 뿐이다.⁵⁹⁾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당시의 한국정부가 국외중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미 러·일 양국으로부터의 승인은 포기하고 그 대신 域外勢力인 歐美諸國에 지나친

대로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하여야 한다.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編, 《舊韓末의 條約》中 (서울: 新書苑, 1989), pp.288~289.

56) 《日本外交文書》38-1, No.437.

57) 위의 문서, No.462~464, 468; Henry Chung, *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leming H. Revell Co., 1919), pp.241~245; Howard K. Beale, *Theodore Roosevelt and The Rise of America to World Power*,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73), p.280.

58) 니담의 밀서와 李承晩 일행의 독립청원서 외에도 알렌의 후임인 모건(Edwin V. Morgan) 공사를 통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던 사실(1905. 7), 來韓한 엘리스(Alice Lee Roosevelt) 양을 통한 호소, 헐버트(Horner B. Hulbert)의 밀사파견(1905. 10), 주프랑스공사 閔泳瓚의 을사조약 무효화 호소(1905. 12) 등이 있다. Despatches from the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이하 Korea Despatches] (The U.S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 C.), Vol. 21, Allen to Hay, September 30, 1904; Vol 22, Morgan to Root, September 30, October 19, 1905; New York Times, August 4 and 5, 1905; Henry Chung, *ibid.*, pp.241~245; Yur-Bok Lee, "Korean-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1882~1905" in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82*, eds., Yur-Bok Lee and Wayne Patters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p25; Fred H. Harrington, "American View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05," in *One Hundred Years*, eds., p 60.

59) 《舊韓國外交文書》12, 美案 Ⅲ, No.3138, 3140; 長田彰文, 《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と韓國》-韓國保護國化と米國-, (未來社, 1992), pp.74~77.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책은 英·美·日 連帶體制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국외교의 未熟性을 드러내었을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었다.

④ 弱小國으로서의 現狀維持國인가의 問題

마지막으로 한국은 弱小國으로서의 現狀維持國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이 점에서만은 中立化의 가능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근대 이후에 와서 주변세력인 淸·日本·러시아의 角逐場인 약소국이며 軍事力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國防 能力은 물론 治安維持 能力마저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재정 파탄과 외세의 경제침탈로 1900년 대에 와서는 거의 半植民地化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강국과의 全面戰을 감당한다거나 영토적으로 대외팽창을 도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현실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내 놓은 처방이 곧 永世中立國 提案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戰時局外中立 宣言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論究를 통하여 근대 한국의 對內的인 諸般 條件上 중립화가 성립되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리말하면, 經濟自立을 통한 國家 防衛力의 充實과 중립화를 위한 國民的 合意, 中立外交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信賴 確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만 弱小國으로서의 現狀維持國일 뿐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종합적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한 일본공사 林權助가 1902년 11월 4일자로 한국중립화외교에 대하여 지극히 侮蔑的인 言辭로 본국정부에 보고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 내용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保證下에 中立國化 한 다른 국가는 그 중립국 자신의 文化가 既存의 列強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지만 단지 그 영토의 狹小 혹은 武力의 貧弱한 때문에 외국의 침략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국가여야만 했다. 그런데 현재 韓國과 같이 文化水準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는 도저히 자치 독립의 가망이 없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腐敗, 司法制度의 문란 및 地方行政의 惡習 등을 고려

하면 도저히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 문화수준이 그 같은 국가를 담보로해서 局外中立의 위치에 두는 것은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列國不和의 要因을 발생시킬 것이다.⁶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적은 1903년 9월 3일 한국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국외중립보장을 요청하는 公翰을 보냈을 때 小村 외상이 9월 26일자로 중립선언이 시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는 答書를 주일 한국공사 高永禧에게 수교함과 동시에 거의 私見을 피력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도 종래 他國의 交戰에 즈음하여 局外中立을 선언함이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때마다 帝國은 만약 交戰국이 중립적인 帝國의 권리를 유린하려는 경우에는 단연코 이를 배척할 결심을 가졌었다. 이는 戰時國際法에 기초한 중립선언이며今回の 한국정부의 제의와는 스스로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중립국으로 되려는 이상 자신이 이를 保持할 결심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今回 한국의 最大急務는 國力充實, 國家富強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皇室의 安固, 둘째, 財政의 刷新, 셋째, 兵制의 改革을 眞實하게 해야한다.⁶¹⁾

또한 맥켄지도 그당시 한국정계의 대표적인 중립론자인 李容翊이 ‘한국중립에 관한 列國의 협조요청 문제’를 그에게 거론했을 때 “당신네가 당신네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데 남들이 당신네를 보호해 줄 덕이 있겠소”라고 말하면서⁶²⁾ 비록 國際條約을 통하여 書面上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약 준수를 진심으로 바라다면 이에 상응하는 改革과 國力培養이 뒤따라야 제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꼭 같은 주장은 한국인으로부터도 있었다. 이미 1894년 2월에 朴泳孝가 亡命地 日本에서 ‘內政改革에 관한 建白書’를 高宗에게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 吟味할 만 하다.

60) 《日本外交文書》 35, p.412, 1902년 11월 4일.

61) 《日本外交文書》 36-1, No.701.

62)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Jersey: The Fleming H. Revell Co. Old Tappan, 1920) pp.49~50.

마야흐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도리어 옛날 戰國時代와 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兵勢로써 英雄이 되어 强者는 弱者를 아우르고, 大國은 小國을 삼키며, 항상 武備를 익히고 兼하여 文藝를 닦은 나머지 서로 競爭하고 서로 勉勵하며, 先頭를 다투지 않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 비록 萬國公法과 均勢公義가 있다고는 하나 나라가 自立自存할 힘이 없으면 모름지기 빼앗기고 흩어져 유지할 수 없게 되니, 公法 公義는 본래 믿을 것이 못 됩니다.⁶³⁾

2) 挫折의 對外的 要因

국가에 대한 중립화의 가능조건을 검증함에 있어서 그 內在的인 與件의 具備如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對外的인 與件 곧 周邊 環境이다. 왜냐하면 중립화 그 자체가 본래 국제질서 속에서의 自存을 위한 상대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舊韓末의 한국이 국외중립선언에 실패한 요인을 이러한 대외적 여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

① 地政學的인 與件의 問題

대외적 여건으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검증되어야 할 분야는 뭐니해도 地理的 環境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어떠한가? 한국은 半島國家로서 남동쪽으로 120 마일의 좁은 海峽을 사이에 두고 日本과 對峙하고 있고 북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약 150마일 정도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일부를 따라 러시아와 약 11마일을 접경하고 있으므로⁶⁴⁾ 동아시아 지역의 긴요한 十字路의 中央 곧 淸·러시아·日本 間 3 極點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63) 方今 宇內萬國 猶昔之戰國也 一以兵勢爲雄 强者并其弱 大者吞其小 常講武備兼修文藝 相競相勵 無不爭先 …… 雖有萬國公法 均勢公義 然國無自立自存之力 則必致削裂 不得維持 公法公義 素不足以爲恃也. 《日本外交文書》21, p.296, No.106, 1894년 2월 24일 〈朴泳孝建白書〉.

64) Bong-Youn Choy, *A Histor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Illinois: Bradley University, 1984), p.1; 劉明喆, 앞의 논문 p.122.

大陸과 海洋을 연결하는 橋梁的, 關門的, 兵站的 役割을 하는 戰略的 要衝地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일찍부터 아시아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경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⁶⁵⁾ 이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노리는 短刀” 또는 “아시아대륙에로의 편리한 軍事的 侵略路를 제공해 주는 橋梁”으로 보았고,⁶⁶⁾ 중국은 “중국의 首腦部를 강타하는 쇄망치”, 아니면 “唇齒關係”로 간주하는가 하면 러시아는 “自國의 팽창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행동반경” 또는 “러시아 영토상에 있는 우호적 기지”로 생각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한반도가 東아시아지역의 戰略的 交叉路(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3 강국 간의 경쟁의 초점이 되어 왔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러한 주변 3 강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域外勢力인 歐美勢力들에게도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시되어 왔던 것이다.⁶⁸⁾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입지조건 및 그와 관련된 전략적 가치면에서 중립화 適用對象으로서의 기본적인 要件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화 할 국가의 地形·地勢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한 弱小國이 列強競爭의 中間地帶에 위치한다해도 軍事的 通路로서 유일한 곳일 경우에는 중립을 유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⁶⁹⁾ 이러한 의미에서 韓半島는 3 면이 바다

65) 木內信藏, 《政治地理學》(東京:朝倉書店, 1968), pp.54~64; 한국은 스파이크만(N. J. Spykman)이 말하는 이른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적 주변지대(rimland)에 속해있는 것이다. 劉明喆, 위의 논문.

66) 1903년 6월 23일의 일본 御前會議에서는 당시 러·일전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일본제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短刀와 같이 大陸에 돌출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日本國際連合協會, 1957), p.201.

67) 중국인 들은 한반도의 중요성을 지칭하여 그들의 속담에 나오는 ‘唇亡齒寒’ ‘唇齒輔車’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Soo-Bock Choi, “Korea’s Response to America and France in the Decade of Taewongun,” Young-Han Jo (ed.), *Korea’s Response to the West* (Kalamazoo: The Korean Research Publication, inc., 1971) p.123; Shanon McCune, *Korea’s Heritage: A Regional and Social Geography* (Rutland, VT: Charles E. Tuttle Co., 1956) pp.3~24; 黃仁寬, 〈한반도 中立化論과 주변 強大國〉, 梁好民 外 編, 《民族統一論의 展開》(형성사, 1982), p.122; 姜光植, 앞의 책, p.128.

68) 白鍾基, 〈事大交隣外交의 地政學的 및 歷史的 考察〉《人文科學》10, (성균관대학교, 1981) pp.84~89; 車胤,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와 安全保障〉《韓國安全保障論叢》3, (국가안전보장회의, 1963) pp.101~103.

69) 高山岩男, 앞의 책, pp.137~138.

여서 효율적 방어가 어렵고 北邊入口마저 반도의 幅에 비하여 너무 넓어서 역사상의 무수한 침략세력을 언제나 初戰 退治에 실패하고 國內로 끌여들여 싸워야만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은 그 자연조건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半島國家이며 天惠의 要塞地가 많지 않기 때문에 南의 해양문명과 北의 대륙문명이 교차하는 교량 역할이나 兩極體制下의 橋頭堡 역할에 접합할 뿐 多極體制下에서와 같은 완충지 역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건은 중립화가 가능하더라도 대등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나 6개국에 둘러싸인 오늘의 오스트리아와 같은 완전한 중립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관련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국가의 입장은 다시 그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수행하는 役割半徑에 따라서 차원이 달리 규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또는 러시아)이나 일본 같은 隣接 域內勢力에게는 한반도 그 자체가 ‘本源的 利益’이 결부된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데 비하여 미국 같은 域外勢力에게는 ‘誘導된 利益’을 적용한 간접적 중요성 밖에 고려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地政學的 位置에 관한 限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대한 本源的 利益이 결부되어 있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상태, 곧 域內 兩極體制下에 놓이게 된다.⁷⁰⁾

② 國際間 勢力均衡의 問題

이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국을 둘러싼 周邊 強國들 간의 勢力均衡 問題이다.

70) 클라우(Ralph. N. Clough)는 미국의 안보에 대하여 한반도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와 같이 ‘本源的 利益’과 ‘誘導된 利益’의 두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한국은 ‘본원적 이익’을 갖고 있는 일본의 방위와 안전을 위해 긴요한 국가라고 보고 ‘유도된 이익’의 적용 범주에 넣고 있다. Ralph N. Clough,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29~34; 姜光植, 앞의 책, p.130.

한반도가 청·러·일 간 3극점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하나 임오군란 이후의 청·일 각축전과 청·일전쟁 이후의 러·일 각축전에서 보듯이 대체로 3파전 체제가 아닌 양극 체제하에 놓여 있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여건상 양극체제 하에 놓여 있다. 그런만큼 양극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 강대국이 번번이 배타적으로 독점지배하려 들거나 또는 최소한 경쟁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들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강력한 일방의 배타적인 독점지배를 위한 전쟁이나 그로 인한 관계국 사이의 분할지배 구상으로 나타나는 수 밖에 없게 된다.⁷¹⁾

또한 前述한 바대로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均衡體制가 兩極化할수록 中立化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多極化할수록 증가한다면 舊韓末의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多極體制下의 均勢狀況'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만 多極體制이든 양극체제이든 均勢와 유사한 狀況이 1880년대 중반과 1890년대 후반에 있었을 뿐인데 그 기간은 잠깐이었다.

이를테면, 1885년~1887년의 3년 간은, 天津條約(1885)으로 淸·日 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軍事的 進退를 함께 함으로써 勢力均衡이 실현되었고, 또한 英國이 韓·日修好條約(1884)과 韓·日密約事件(1885) 등으로 러시아의 對 韓國 立地가 커진 데에 자극받은 나머지 巨文島를 점령함으로써(1885~1887) 러·英의 대치국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만큼은 외형상으로 淸·日·러·英의 다극체제가 형성된 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고무된 재야 인사와 외국인들은 저마다 百家爭鳴式的 韓國中立化論을 다투어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다극체제는 그야말로 외형상의 모습이었고 실제에 있어서는 韓國에 대한 淸의 內政干涉이 極에 달할 정도로 아무런 均勢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英·러의 대치국면마저도 그들 국가의 世界戰略이 一時 한반도 주변에서 相衝된 신기루 현상에 지나지 않았을 뿐 韓國 政府當局은 여전히 淸·韓宗屬論의 立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런만큼 內外로부터 제기된 中立化案들은 公論化될 수

71) 한반도 분할 지배 구상의 역사적 사례로는 임진왜란(1592~1598) 때에 제의된 바 있는 일본의 豊臣秀吉 案과 明의 魏學曾 代案, 청·일전쟁 때에 제기된 영국의 김벌리(Lord Kimberly) 案(1894), 俄館政府 時期的 일본의 山縣有朋 案(1896), 러·일전쟁 때에 제기된 러시아의 로젠案(1903) 등이 있다. 盧啓鉉, 〈韓國分割에 관한 歴史的考察〉《韓國外交史研究》(海文社, 1967) pp.152~179.

없었다.

淸・日戰爭(1894)으로 淸이 물러간 이후에 있었던 러・日 간의 안정된 세력균형은 俄館播遷期間에 성사된 ‘베베르・小村覺書’(Waeber-Komura Memorandum, 1896. 5.14)⁷²⁾에서 부터 還宮 후에 성사된 ‘로젠・西協定’(1898.4.25)⁷³⁾까지의 만 2년 간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에는 ‘베베르・小村覺書’에 따라 俄館播遷으로 出帆한 親美・親리의인 俄館政府가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日 同數의 駐兵權도 규정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기도했던 한국 독점지배가 좌절되고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 내에서 정치・군사면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韓國의 在野勢力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獨立協會를 조직(1896.7), 中立主義外交를 부르짖었지만 주변 정세가 워낙 薄氷의 兩極體制인 데다가 政府自體가 러시아 公使館에 播遷해 있었고 還宮後에도 外勢와 결탁한 政派들로 구성된 舉國內閣의 속성 때문에 역시 在野의 絶叫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나마 ‘로젠・西協定’ 이후부터 러・일 개전까지는 불안정한 세력균형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1898년 초부터 추진한 그들의 對滿集中政策에 따라 그 해 4월에 들어와 한국으로부터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 韓・러銀行을 폐쇄하더니 다시 ‘로젠・西協定’을 통하여 일본에게 경제적 優位마저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우위는 기정 사실화하였다.⁷⁴⁾ 이후 한국은 각 분야에 걸쳐 일본의 영향권 안에 깊이 빠져들었고 일본은 英・日 同盟(1902.2)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됨으로써 러・일 간의 균형은 급속하게 허물어져

72) 이 각서는 아관파천 이후, 한국에 대한 러・일간의 懸案問題에 대하여 러・일 양국 공사가 협상한 결과 조인한 것으로, 그 내용 가운데 “만약 한국인으로부터 습격될 경우에 대비하여 각 개항장의 일본인이나 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漢城에 2개 中隊, 釜山에 1개 中隊의 日兵을 두나, 단 1개 中隊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거류지 습격의 우려가 없어지면 점차 이를 撤退할 것. 러시아도 또한 각지에 日本兵員 수에 초과하지 않는 수의 위병을 둘 수 있으나 靜謐해지는대로 撤退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한국에서 일본은 그만큼 減員과 철수를 감수해야 했고, 러시아는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 셈이 되었다. 日本外務省 編, 《小村外交史》(原書房, 1966) pp.88~89; 拙稿, 〈大韓帝國期(1896~1898)의 韓・러關係-韓國朝野의 反러化過程과 러시아의 對應策을 中心으로-〉《史叢》31(高大史學會, 1987) pp.3~4.

73) 《日本外交文書》31-1, No.164.

74) F. A. McKenzie, op.cit., p.70; 拙稿, 앞의 논문, pp.44~46.

갔다. 이를 두고 데넷(Tyler Dennett)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러·일 간의 대립은 1898년에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⁷⁵⁾

③ 強大國 相互間의 中立保障 合意의 問題

마지막으로 검증되어야 할 중립화의 가능조건으로는 ‘주변 강대국 간의 利害關係의 一致를 통한 中立化에의 合意와 保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緩衝地는 가히 숙명적인 것이고 勢力均衡은 그 자체의 함수관계상 可變인 것으로서 다소 우연일 수가 있지만 列強 상호 간의 合意와 保障이라는 것은 당시의 利害關係로 볼 때에 協商을 통하여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한국은 완충지로서 부적합하고 세력균형도 다소 불안한 兩極體制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國際間의 協商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그러나 舊韓末의 中立化 問題를 둘러싼 주변 열강 간의 협상은 실제로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相衡됨으로 해서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

예컨대, 淸·日戰爭의 戰雲이 짙어갈 무렵 仁川駐在 英國 領事が 전쟁으로 입게 될 海上物動量의 損失은 물론, 만약 日本이 승리하면 거대한 淸 市場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仁川港의 局外中立을 시도했던 바, 러시아는 淸이 패배한다면 그들의 對淸浸透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 오히려 전쟁 발발을 원하여 이를 반대했었다.⁷⁶⁾

또한 1896년 5월, 英國이 高宗의 俄館播遷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고 있던 러·日, 러·淸, 韓·러 간의 회담을 주시하면서 혹시 차제에 한국이 러시아의 保護國으로 되는게 아닌가 우려하여 한국의 영세중립화를 제안했는데,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러·日 간의 팽팽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이와같은, 한반도에서의

75) Tyler Dennet, *Roosevelt and Russo-Japanese War*,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59) p.96; 劉明喆, 앞의 논문, p.128.

76) 仁川府廳 編, 《仁川府史》(京城: 近澤商店, 1933) p.411; 杉村濤, 《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東京: 勇喜社印刷所, 1932) 한상일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건국대학교 출판부, 1993) p.113.

實益이 적은 제 3국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았다.⁷⁷⁾

뿐만아니라 1900년 8월 이후의 趙秉式的 對日・對美 中立化 추진 外交 때에도 전통적인 불간섭・중립태도를 견지해 온 美國은 물론이고, 일본은 러시아를 그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여 반대하였고, 러시아는 이를 日本의 對韓 接近策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는 등 국제사회는 온통 韓廷自體의 中立化 試圖를 방해하였다.⁷⁸⁾

帝政러시아政府에 의한 한반도중립화안(1900.9~1901.7)도 제안 그 자체가 그들의 滿洲經營을 위한 韓半島 安定化가 목적이었던 만큼 日本은 滿・韓 同時中立이나 滿・韓 交換論 등의 滿・韓 不可分論이라는 새로운 代案으로 맞서는가 하면,⁷⁹⁾ 러시아 3외교관이 일본의 적극적 대외발전 정책인 이른바 ‘小村路線’을 저지하기 위하여 韓半島中立化를 제안했을 때도(1902.9)⁸⁰⁾ 일본은 英・日同盟의 성공에 고무되어 한국을 독점지배 하려는 意志를 굳힘으로써 역시 이에 반대하였다.

이처럼 국제 간의 利害關係의 一致가 어려운 데다가 러・日 兩極體制下的 무계중심마저 점차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마침내 러・日 開戰이 임박해지자 한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독자적인 戰時局外中立 宣言을 强行하였다(1904.1.21).

이제 러・日 양국은 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 러・日 양국 간의 상호 배타적인 對韓半島政策이 향후 한국의 運命을 결정 짓는데 크나큰 要因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77) 《日本外交文書》29, No.300, p.582.

78) 《日本外交文書》35, pp.411~413, 1902년 11월 4일 小村宛林 機密信; 山脇重雄 所藏, 《駐韓日本公使館記錄 マイクロ》81號, pp.269~272, 1900년 10월 31일 加藤宛林 機密信; 具永祿・裴永洙 編, 《韓美關係:1882~1982》(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82) pp.26~27.

79) 《日本外交文書》34, No.174 〈滿洲問題ニ關ル請議ノ件〉: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p.144, 163~165.

80) 《日本外交文書》35, No.182 p.393: 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所藏未刊行, 《外務省記錄》MT.1.4.1.30, pp.234~237, 1902년 10월 8일, 小村宛林董 機密 28號.

우선 日本의 對韓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한국의 중립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 하에 둘 것을 획책하였다. 일본은 1901년 9월 小村을 桂太郎 내각의 외상으로 기용하여 그의 滿·韓 交換論에 따라⁸¹⁾ 한국을 保護國으로 한다는 政綱을 채택한 이래 滿·韓 문제를 둘러싼 對 러시아 협상을 진척시키는 한편, 한국과의 밀약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일본이 밀약을 체결하고자 한 목적은 小村 외상이 이 밀약체결 교섭을 위하여 주한 林 공사에게 내린 훈령과 그 뒤에 있는 日本 閣議 의결의 내용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小村은 1903년 9월 29일 부 機密 72호로 林 공사에게 ‘日·韓 間の 秘密條約締結에 관한 件’이란 題下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첫 훈령을 보냈다.

아는 바와 같이 目下 我方은 滿·韓 問題에 관하여 직접 러시아와 교섭 중에 있는 바 그 終局이 如何히 歸着되던지를 不拘하고 此際에 한국 황제를 我方에 끌어들여 두는 것은 帝國의 정책상 極히 艱難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 까닭은 러·일 간의 교섭이 다행히 만족한 타결을 본다고 할지라도 미리 韓國 皇帝를 我方에 끌어들여 두지 않고서는 同國에 있어서의 우리 장래의 施設上 크게 불편을 느낄 것이며, 더욱이 교섭이 만일 不調에 歸하여 러·일 간에 평화의 破裂을 보게 되는 경우에 이르면 한국황제의 向背는 全局의 利害上 위대한 관계를 有하는 것은 물론의 일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今日부터 이러한 목적에서 어떤 密約을 韓·日 간에 체결해 두고자 하는 바, 이에 관한 각하의 貴考案 및 이를 수행하는 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熟考하고 貴意見을 회보하여 주기 바람.⁸²⁾

즉 일본정부는 한국 독점을 위한 러시아와의 滿·韓 문제 교섭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든 또는 결렬되어 전쟁에 이르든 간에 한국의 항배는 全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리 한국 황제를 일본편으로 끌어들이는 밀약을 체결해 두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훈령과 그에 대한 林 공사의 회신이 오고 간 결과 동년 12월 31일에 일본 閣議는 ‘日·韓 間の 관계에서 발생하는 我的 對清 및 對韓 政策’이라는 이

81) 《日本外交文書》34, No.397.

82) 《日館記錄》1903, 〈密約附韓國中立〉p.430 機密送 72號.

름으로 다음과 같이 政策方向을 결정하였다.

한국에 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 임하더라도 實力으로써 이를 我的 權勢下에 두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될수 있는 한 名義가 바른 것을 擇함이 得策이므로 만약 往年의 日・淸戰役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攻守同盟 또는 다른 保護的 協約을 체결할 수 있으면 가장 便宜할 것이다. 故로 時機到來하면 이와 如한 締約을 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하기 위하여 過般來 既히 필요한 勳령을 駐韓 公使에 내려 기타 여러 수단을 취하고 있다. 또 今後에 있어서는 일층 尤效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我 目的을 관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必然의 成效는 처음부터 豫期할 수 없다. 또 假令 이것이 奏效할지라도 한국황제가 始終一貫 此 締約을 遵守할지는 도저히 期하기 힘든 일이므로 최후의 成效는 실력의 여하에 歸하는 것은 거의 말할 바 없다. 요컨대 한국에 대한 정책은 직접 간접으로 軍事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 더 크므로 軍事上과 併考함으로써 帝國의 취할 바 方策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⁸³⁾

이는 러・日 간의 이른 바 ‘滿・韓 問題’라는 정치적 흥정에 있어서 한국만큼은 전쟁에 호소해서라도 실력으로써 그들의 세력 하에 두겠다는, 곧 植民地化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 내에 팽배하고 있는 反日思潮가 두렵고 국제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限 名義가 서는 것을 택함이 得策 일 것으로 판단되어 청・일 전쟁 때와 같은 攻守同盟(朝・日盟約)이나 保護的 協約類의 조약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조약체결은 그 당시 先進帝國主義 國家가 後進國家에 대하여 체결하던, 武力的 威脅을 수반한 外交的 欺瞞條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⁸⁴⁾

일본이 밀약을 체결하려는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國運을 건 러・일전쟁을 앞두고 한국의 황제와 정부가 친러 내지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였다.⁸⁵⁾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列國의 지지를 얻어 중립이 선언된다면 러・일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던 일본 육군의 작전

83) 위의 기록, 〈密約〉 pp.434~437 機密號外: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日本國際連合協會, 1957, 原書房 復刻, 1966) p.217의 〈對露交渉決裂の際日本の探るべき對淸韓方針〉.

84) 崔永禧, 앞의 논문, pp.468~469.

85) 위의 논문, p.469.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강행한다면 列國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중립선언을 존중하여 用兵地域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면 黃海의 制海權을 확보할 때까지는 육군의 대륙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이에 러시아군이 增兵하게 될 것이므로 속전 속결에 의한 승리의 가능성을 피하려고 한 일본으로서는 일이 잘못될 염려가 있었던 것이다.⁸⁶⁾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러·일전쟁 중 또는 전쟁 후에 있을 韓國主權의 侵奪을 이 조약체결로써 명분을 세우고 기만적인 방법으로써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⁸⁷⁾

또한 일본은 밀약체결 추진과 동시에 한국점령 정책을 병행해 나갔다. 1903년 1월 2일 林 公사와 日本公使館 附武官 伊知地幸介 少將은 고종을 알현하여 “러·日 평화교섭이 단절된 결과 제국정부는 먼저 러시아 때문에 侵迫된 한국의 지위를 극복함으로써 東洋 全般의 災厄을 제거할 것을 필요로 하여 陸兵 2千餘를 先發隊로 韓國 沿岸에 상륙시켰다 …”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伊知地가 2월 9일에 다시 고종을 알현했을 때 고종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황제를 아주 폐하고 한국을 일본 영토로 하든가 적어도 군사·외교·재정의 3건을 장악하여 保護의 實을 올리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히 具申하기도 했다.⁸⁸⁾ 더욱이 伊知地는 일본의 韓國經營이 急務임을 느낀다고 하여 러·일전쟁 중인 2월 17일에 ‘半島總督府’ 설치를 위한 의견도 具申하였던 바,⁸⁹⁾ 뒷날 1910년의 ‘朝鮮總督府’가 이미 이 때부터 태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러시아측도 앞 章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우리의 중립선언을 부당하다고 하면서 한·일 간의 밀약교섭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러시아공사 파블로브는 한·일 간의 밀약체결교섭을 感知하여 고종에게 “근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

86) 信夫清三郎·中山治一, 《日露戰爭史の研究》(東京: 河出書房新社, 1959) p.352; 黃元九, 〈日本軍에 對한 國土-露日戰爭〉 《韓國現代史》2, (新丘文化社, 1972) pp.297~301.

87) 崔永禧, 앞의 논문, p.469.

88) 谷壽夫, 《機密日露戰史》(原書房, 1966) p.71.

89) 위의 책, p.72.

으로 하려는 제안을 내고 궁중에서 目下 熟議中이라고 轉聞한 바 과연 사실이라
면 러시아로서도 각오하는 바 있다”는 내용의 封書를 올려 한국정부를 협박하더
니,⁹⁰⁾ 드디어 2월 6일에 러·일 국교가 단절되고 2월 7일 情勢가 急轉回하
기에 이르자 다시 고종에게 “時局이 크게 절박하므로 한국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차제에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得策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독립을 위태
롭게 하고 국토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脅喝的 上奏를 하였다.⁹¹⁾

이와 같이 러시아가 베조브라조프(A.M.Bezobrazov) 등장 이후에 ‘新路線’
(new course, 1903.5.20 확정)이라 일컫는 초강경 동아시아정책에 따라 滿洲經營
은 물론 한국진출을 적극화하고 있고, 일본 또한 小村의 滿·韓 交換論에 따라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이상, 한반도를 둘러싼 利害關係는 일치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일방의 배타적 독점지배 이 외에는 아무런 합의와 보장이 있을 수 없었
다.

이상의 論究를 통하여 당시 한국의 對外的인 與件도 중립화를 성립시키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再論하거니와 한반도가 비록 戰略的
要衝地이기는 하나 완벽한 緩衝地로서는 부적합하며, 주변의 세력분포도 외견상
으로는 域內·外勢力을 포함한 多元的 樣相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二
元的 構造를 견지해 왔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도 이들 상호 간의 霸權競爭으
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利害關係마저 相衝됨으로 해서 한국의 중립화는 현실적
으로 難望이었다. 본래 중립화는 多元的 勢力構造와 協調的 狀況을 나타내는 國
際體系에서만 그 적용이 가능한 勢力管理 手段이기 때문이다.

90) 《日館記錄》〈議定書〉p.454 往電 475號.

91) 《日本外交文書》37-1, No.540, 542.

結 論

지금까지 開港 이후부터 韓·日 合邦 이전 기간에 걸쳐 제기되었던 韓國中立化論에 관하여 그 當爲性과 經緯 그리고 適實性を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제 이를 요약·정리하면서 이에 내포된 歷史的 意義와 이것이 示唆해주는 敎訓을 吟味하는 것으로써 結論을 삼고자 한다.

韓國中立化論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전통적인 ‘華夷體制’에서 西洋式的 ‘萬國公法’ 논리에 따른 새로운 近代 外交體制로 再編되는 과정에서 弱小國 韓國에게 요청되던 主權維持 方案의 一表現이었다.

帝國主義的인 世界秩序에 아무런 豫備없이 노출된 한국의 存在樣式을 둘러싸고 中立化問題가 맨처음 제기된 곳은 日本에서였다. 일본은 한국과의 ‘江華島條約’(1876.2)에서 한국을 自主獨立國으로 명시함으로써 淸의 對韓宗主權行事に 제동을 걸었으나 한국에서의 壬午軍亂(1882.7)과 그에 따른 淸國軍의 한국 출동으로 그들의 상대적 劣勢가 露呈되고 말았다. 이에 日本은 그들의 大陸進出政策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는 선상에서 한국의 獨立을 전제로 한 列國保障下的 中立化方案을 제시하였다(1882.9). 즉 그들은 한국 중립화를 위하여 두 가지 方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그들 본래의 방침대로 한국의 完全自主獨立을 전제로 한 中立化方案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淸의 優位를 인정하여 형식상으로는 淸의 貢國, 실제로는 獨立國을 전제로 한 中立化方案이었다. 이 당시 日本의 國家 諮問役이었던 프랑스인 ‘보아쏘나드의 案’을 비롯하여 「東京日日新聞」·「自由新聞」·「朝野新聞」등 言論의 論旨가 전자의 입장이라면, ‘井上毅의 案’·「郵便報知新聞」·「東京橫濱毎日新聞」의 論旨 등은 후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느 方案이든 그 근본적 底意에 있어서 淸·韓宗屬關係를 부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

한편 韓國은 尤甚해지는 淸의 內政干涉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朝·美修好通商條約’(1882.5)을 근거로 美國의 助力을 渴求하였다. 그러나 美國이 무관심함에 따

라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1884년 중반부터는 러시아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외교 방향의 새로운 모색은 결국 한반도 주변을 多極體制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테면 甲申政變(1884.12)으로 淸·日 간의 霸權競爭이 더욱 노골화한 데다가 ‘朝·露修好條約’(1884.7)과 ‘朝·露密約說’(1885.2)에 자극받은 英國이 巨文島를 불법점령함으로써(1885~1887) 바야흐로 한반도 事情은 淸·日·러·英이라는 多極體制下의 國際紛爭地域化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韓國中立化案은 그야말로 百家爭鳴이었다. ‘윌렌도르프의 案’(1885)이 한국을 위한 引俄拒淸의 방편이었고 ‘부들러의 案’(1885.2)이 均勢 속의 安全保障이었다면 英國人 ‘오코너의 案’(1885.2)과 ‘로즈베리의 案’(1886.4)은 ‘朝·露密約’의 방해와 巨文島撤收名分 축적 및 동아시아에서의 勢力均衡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韓國政府의 中立化 試圖’(金允植의 案, 1885.5)·‘俞吉潸의 案’(1885. 末)·‘金玉均의 案’(1886.7) 등 韓國 朝野로부터의 제안도 있었는데, 이들의 案은 한국에 있어서의 淸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가운데서 俞吉潸의 「中立論」은 전통적인 淸·韓宗屬關係를 國際法 가운데서 위치짓고자 그 特有의 ‘贈貢國’의 理論으로서 한국독립을 보장받으려 한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淸·日 兩軍 共同 撤兵 실현으로 平和維持를 약속하는 듯 했던 ‘天津條約’(1885.4)은 其實 淸·日 양국의 軍備競爭期間으로 활용됨으로써 空文化하였고, 巨文島事件의 해결을 위한 ‘李·라디겐스키協約’(1886.10)도 결과적으로 淸의 對韓宗主權行事만 강화시켜준 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안된 韓國中立化案 가운데서 일본인 ‘山縣有朋의 案’(1890.3)은 淸의 對韓既得權을 인정한 종래의 ‘井上毅의 案’의 再現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러·日戰爭의 緒戰格인 淸·日戰爭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서 제안되었을 뿐이며, ‘金嘉鎮의 案’(1890.11)은 淸과 러시아의 威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歐美勢力과 日本의 保障을 기대한 것이었지만 그 스스로 保障國들을 차등화 함으로써 淸·日 兩極體制에 대한 현실의 부정과 실효성 없는 域外勢力에의 依存이라는 弱點을 보였다.

淸·日戰爭(1894.7) 발발 직전에 駐韓英國領事들이 그들의 對淸貿易 활동을 전

쟁으로 부터 보전하고자 仁川港局外中立을 列國에 제안했다가(1894.7) 日本의 방해와 러시아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지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894년 8월 17일에 日本外相 陸奧宗光이 韓國中立化案을 제기했다는 것은 異色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쟁으로 얻은 명예와 이익을 한국중립화로 인하여 다른 유럽 열강에 양도할 수 없다'는 相反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의 意圖를 의심스럽게 했다. 陸奧의 이러한 모순된 행위는 결국,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 자신의 (對韓政策의 長期 布石인) 中立化 構想에다가 현실적인 日本의 國內 輿論이 混淆된 것이었으며 또한 日本 스스로 戰爭挑發國임을 證言한 것으로 되었다.

淸・日戰爭에 뒤이은 三國干涉(1895)은 向後 韓半島를 둘러싼 對決構圖를 기왕의 淸・日 대결에서 러・日 대결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더욱 적극화 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英國은 1896년 5월부터 한국의 러시아 保護國化 방지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Czar Nicholai II)의 대관식에 즈음하여 진행되던 러・日 協商을 방해할 목적으로 日本에게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意向을 타진해 보았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이러한 試圖는 俄館播遷期間(1896.2~1897.2)의 한국이 이에 호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러・日 양극체제의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의 實利益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제 3 국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때문에 영국은 이를 계기로 그들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을 英・日 同盟 쪽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義和團事件(1899.11~)으로 인한 러시아 軍의 滿洲出動을 계기로 러・日 간에는 한반도에 대한 分割論・出兵論 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국은 危機解消를 위하여 美國에 期待를 걸고, 이미 1899년 봄에 駐韓美國公使 알렌(H.N.Allen)을 중개자로 하여 미국 주도의 한국중립화 실현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玄奘運을 日本에 파견하여 韓・日國防同盟案을 모색하고 내부적으로는 宮內府顧問 샌즈(W.F.Sands)로 하여금 '先改革 後中立化'(1899) 실현을 추진하는 등 陽動作戰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샌즈의 내정개혁은 內外로부터의 강한 挑戰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對美中立化期待도 美國에

의해 거부되어 버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趙秉式을 日本에 파견하여 日本 主導의 한국 중립화를 요청하는 동시에(1900.8) 駐日美國公使 버크(A.E. Buck)를 통한 미국 주도의 중립화를 다시 시도해 보았다(1900.10).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日本이 중립화의 전단계로서 韓・日國防同盟案이 優先이라고 하다가 한국이 이에 응하지 곧장 취소해버리는 欺瞞行爲를 일삼음에 따라 虛事로 끝나 버렸고, 對美中立化外交도 ‘趙秉式・버크會談’의 眞僞야 어떻든 미국이 外面하였음은 물론, 趙秉式의 활동 그 자체에 대한 러・日 상호 간의 疑心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되고 말았다.

한편 러시아는 그들의 滿洲占領을 固着化시킬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생각하여 이의 장애요소가 되는 러・日 대결양상을 잠재우려 하였던 바, 그 方案이 곧 韓半島 中立化였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1901년 1월에 주일 공사 이즈볼스키(A.P.Iswolskii)를 통하여 이를 일본에 제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로젠・西協定」(1898.4)의 遵守를 再闡明하면서 러시아軍의 滿洲撤兵 이후에야 協商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는 바람에 좌절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를 계기로 오히려 ‘滿・韓 同時中立論’ 또는 ‘滿・韓 交換論’ 등 ‘滿・韓 不可分論’을 그들의 大陸政策의 基底로 채택하였다. 동년 7월에 러시아는 또다시 對清交渉의 局面打開 및 러・日관계의 惡化防止를 위하여 ‘한국을 中立地帶로 하되 日本의 內政干涉을 허용하며 그 代價으로 滿洲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는다’는 一見 모순되면서도 自國의 讓步를 시사한 새로운 案을 日本에게 제시했지만 역시 英・日同盟論의 擡頭에 고무된 日本의 승인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런데 1902년 9월에 ‘러시아의 3 외교관 즉 주한 공사 파블로브(A.I.Pavlov)・주일 공사 이즈볼스키・주미 대사 카시니(A.P.Cassini) 등이 러・美・日 3국 공동보장 하의 한국중립화 실현을 위하여 미국을 권유하도록 본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情報가 흘러나와 日本을 긴장시켰다. 이에 日本은 주미 공사 高平小五郎과 주한 공사 林權助로 하여금 眞相 把握에 盡力하게 했던 바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들 3 외교관이 ‘小村路線’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英・日 同盟(1902.2)에 편승하여 점차 노골화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恣意로 構想해 본 것인데 이처럼 사전에 누설됨으로 해서 결국 호지부지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903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의 '新路線政策'(New Course)과 일본의 '小村路線'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인 결과 러시아의 북위 39°선 이북의 中立地帶化 주장과 日本의 압록강 兩岸 50km 이내의 중립지대화 주장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戰雲이 짙어갔다.

한국은 이를 대비하여 帝國宣布 이후부터 전례 없는 豫算을 투입, 防衛力強化에 주력하였지만 러・日 開戰의 임박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으로 戰時局外中立 宣言을 선택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玄尙健을 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만국평화회의)로, 金仁洙를 旅順의 러시아 극동총독부로, 玄暎運・高義誠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중립의 국제적 보장을 얻기 위해 진력하였으며, 특히 주영 한국서리공사 李漢應은 1904년 1월에 영국 외무성을 상대로 英・佛・러・日 '4국조약'을 통한 세력균형의 전제 하에 한국을 중립화 하도록 영국이 보장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남에 따라 한국정부는 최후 수단으로서 독자적인 국외중립선언을 추진하여 이를 1904년 1월 21일 중국의 芝罘에서 기습적으로 각 국에 打電하였다. 이에 대한 列國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일본은 경악한 나머지 그 發電者를 탐색하다가 결국 거절을 통보하였고 러시아는 방관적이었으며, 미국은 친일적인 중립을 선언, 끝까지 회답을 하지 않았고 英・獨・佛・伊・덴마크 등은 접수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지지 표명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국외중립선언이 英・美・日 체제로부터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이번에는 京城中立이나마 성사시키려고 러・佛 同盟(1891~)체제에 건의해보았던 바 이것마저 러・佛 양국 공사의 소극적 태도와 일본의 침략정책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마침내 1904년 2월 8일 러・日戰爭이 발발하자 일본은 2월 23일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軍略上 필요한 지점의 隨機收用'을 골자로 하는 '韓・日議定書'를 체결

해 버렸다. 이로써 한국의 국외중립선언은 굳이 同年 5월 18일자 의 '한·러 간 국교단절'의 詔勅이 없었더라도 선언후 1개월만인 이 때에 이미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며, 독일인 볼터(Carl Wolter)가 '仁川居留地의 局外中立'만이라도 제의해 보았지만 이제 이에 同調할 국가가 있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論究된 구한말의 중립화 논의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鳥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그 총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指向하는 中立化 類型을 보면, 약소국 한국의 국제적 存在樣式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保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永世中立을 압도적으로 選好하였으며, 그러면서도 1890년 대 이후부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응 논리로서 單純 暫定中立(戰時局外中立)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가기도 하였다.

둘째, 提案主體의 立場에서 보면, 한국중립화론은 대내·외를 不問하고 처음에는 개인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다가 1890년대 이후부터는 그것이 서서히 政府當路者 중심의 公論으로 收斂되어 갔고, 1900년 이후 러·日 대립의 격화기에는 드디어 정부의 政策으로 채택되어 외교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발전적인 변화를 보였다.

셋째, 중립화 모델로는 19세기 유럽의 중립화 先例에 따라 벨기에 형과 스위스 형을 選好하였는데 객관적으로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인 것은 武裝中立의 스위스 형이었지만 일시에 그것을 가능케 할 軍備를 갖추 수 없는 당시의 한국으로서는 非武裝中立의 벨기에 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넷째, 提案者의 動機構造面에서 볼 때, 外勢에 의한 제안들은 그 대부분이 對抗勢力에 대한 自國의 戰列整備를 위한 시간 확보 戰略이거나 侵略勢力 상호 간의 利割調停을 위한 限時的인 口號였을 뿐 한국의 실질적 獨立을 전제로 한 진정한 한국중립화론은 아니었으며, 韓國의 主體的인 제안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受用與件에 대한 對內的인 自家診斷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에 대한 動向把握도 미숙한 채 단순히 급박한 상황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지극히 도피적인 主張이나 宣言에 불과하였다.

韓國中立化論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挫折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은 그 자체가 韓國史上의 한 시대에 경험했던 一大事件이었던 만큼 이를 단순한 年

代記로만 기억하여 感傷에 젖는다면 意味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中立化의 可能條件’이라는 국제 정치·외교학계의 일반론에 따라 한국중립화의 논의들을 집중한 결과 좌절의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선 內在的 側面에서 보았을 때 첫째, 무엇보다도 國家自衛力이 결핍되어 있었다. 軍事面에 있어서 1900년대에 와서 전체 병력 수가 겨우 일본의 1/24이라는 수준에 이르는 등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였고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財政自立度가 미비하였다.

둘째, 중립화의 필요성에 대한 國民的 信念으로서의 內的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開港 전후부터 朝野에서는 시대상황에의 대응 논리로서 저마다 衡正 斥邪·開化·東學 등으로 이념적 갈등을 일삼았는데, 집권층은 外壓에의 向背에 따라 親淸·親日·親러·親美 등으로 분열되어 갔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분열상은 名分이야 어떻게 변질되어 갔던 간에 정부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戰時局外中立宣言 순간까지도 지속되어 ‘中立派’와 ‘韓·日密約派’라는 兩分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內的인 ‘統合性的 危機’는 곧장 ‘代表性的 危機’로 연결됨으로써 관련 외부세력들에게 한국이 종종 自存 能力的 缺如로 비쳐져 급기야 中立化協商對象國에서 제외되는 受侮를 겪기도 하였다.

셋째, 中立의 歷史的 經驗이나 그와 유사한 傳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持續的인 中立化政策追求를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信賴와 尊重의 確保도 없었다. 한국은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名分論과 힘의 논리에 얽매임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强者를 탐색하는 偏重外交 一邊倒를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외세의존은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련국가들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否定的 結果만 초래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內在的인 側面에서 볼 때, 中立化의 可能條件으로서 어느 一國과의 全面戰을 감당할 수 없고 영토적 목적의 대외팽창도 불가능한 ‘弱小國으로서의 現狀維持國’이라는 조건 외에는 갖춘 것이 없었다.

國際的 環境面에서 보았을 때도 첫째, 한반도의 地政學的 與件이 중립국가화하는 데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반도가 동아시아지역의 십자로의 중앙, 이를테면 淸·러·日 3 極點의 심장부에 위치한 戰略

的 要衝地라는 점에서는 중립화의 일차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위낙의 立地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半島인 한에서는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교차하는 橋梁 또는 兩極體制下의 橋頭堡 역할에 적합할 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多極體制下에서의 緩衝地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地形·地勢마저 3 면이 바다이고 북변이 넓으며 天惠의 要塞가 적은 까닭에 強大國의 軍事的 通路로 되기 쉬운 弱點도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여 왔다.

둘째, 주변 列強들 간의 勢力均衡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본래 세력 균형 하의 중립화는 多極體制下에서 보다는 兩極體制下에서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같은 양극체제 하에서는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대국의 강압이 쉽기 때문이다. 만약 균형이라도 깨어진다면 弱小國을 둘러싸고 강력한 일방의 배타적 독점지배를 위한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로 인한 관계국 사이의 분할지배 구상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셋째, 주변 強大國 간의 利害關係의 一致를 통한 중립화에의 合意와 保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실령 緩衝國으로서 적합하고 주변 강국 간의 勢力均衡이 잘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관계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중립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있어서 韓國中立化論은 提案 主體의 內·外國(또는 內·外國人)을 不問하고 번번이 관련 당사국 간의 利害關係의 불일치로 좌절되었으며 특히 러·日開戰을 앞두고 한국이 아무리 국외중립을 호소해도 러·日 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韓國近代史에 있어서의 中立化論議는 그 당시 한국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성과 한국을 둘러싼 周邊列強의 상호 갈등 때문에 애당초 성사될 수 없는 무리수였다. 可能條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중요한 要素나마 충족됨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強大國에 의한 國際關係上의 局面轉換用으로서 또는 韓國 자체에 의한 긴급상황 탈피용으로서 제기되는 中立化論議는 이처럼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중립화는 국제체제 속에서의 弱小國이라는 한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언제나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念願이다. 따라서 舊韓末에 한번 시도되다가 실패로 끝난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은 향후 그 실현을 위한 先

決條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테면, 어느 一國이 복잡다기한 國際體系 속에서의 自存을 위한 方案으로 中立化를 택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그 스스로에 의한 國力培養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信賴와 尊重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 날 우리에게 제시된 絶對命題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先決課題이다. 따라서 지난 날의 挫折이 제시해 준 이러한 命題를 歷史的 敎訓으로 吟味하는 데서 本 研究의 意義를 찾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史料

<國內>

《高宗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秘書監日記》《民會實記》.

《漢城旬報》《皇城新聞》《독립신문》《舊韓國官報》.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編,《舊韓國外交文書》1~22, 高麗大學校出版部, 1965~1970.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編,《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外衙門日記 6,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宋炳基 外,《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國會圖書館, 1970~1972.

國史編纂委員會編,《修信使記錄》, 國史編纂委員會, 1958.

金允植 著·國史編纂委員會史料叢書 6,《陰晴史》, 探求堂, 1971.

俞吉潸 著,《俞吉潸全書》I.IV, 一潮閣, 1971.

金玉均 著, 韓國學文獻研究所編,《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國史編纂委員會編,《尹致昊日記》1~5, 探求堂, 1974~1975.

仁川府廳 編,《仁川府史》, 京城:近澤商店, 1933.

閔泳煥,《閔忠正公遺稿》, 國史編纂委員會, 1969.

鄭喬,《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黃玪,《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文一平 著, 李光麟 校註,《韓美五十年史》, 探求堂, 1978.

具永祿·裴永洙 編,《韓美關係:1882~1982》,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82.

朴定陽,《朴定陽全集:竹泉稿》2, 亞細亞文化社, 1984.

閔泳綺,《步兵操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書番號 15015.

徐載弼 手記, 卞榮魯 譯, <回顧甲申政變> 閔泰瑗,《甲申政變斗 金玉均》, 1947.

孫世昌 編,《殉國烈士李漢應先生遺史》, 大邱:文藝弘報社, 1959.

<國外>

日本外務省 編,《日本外交文書》1~38,東京:日本國際連合會,1947~1954.

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所藏未刊行,《外務省記錄》MT.1.4.1.30.

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所藏未刊行,《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TEL 1900, 1902.

日本外務省 編,《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日本國際連合協會,1957,原書房復刻,1966.

山脇重雄 所藏,《駐韓日本公使館記錄 マイクロ》81號,104號.

國史編纂委員會編,《駐韓日本公使館記錄》18, 서울:(株)時事文化史,1997.

市川正明 編,《日韓外交史料》9,原書房,1981.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8,巖南堂書店,1964.

故宮博物院 編,《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上,臺北:文海出版社 印行,1970.

中國近代史資料彙編,《清季中日韓關係史料》1~7,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72.

王彥威 等輯,《清季外交史料》,臺北:文海出版社(影印),1932.

《新聞集成明治編年史》12,日本財政經濟學會,1934~1936.

《朝野新聞》《郵便報知新聞》《自由新聞》.

《東京橫濱每日新聞》《東京日日新聞》《時事新報》.

同治3年京都崇實館存板,《萬國公法》,東京:老皂館印刊,1981.

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編,《井上毅傳》-史料編1~4,國學院大學圖書館,1966~1971.

國學院大學圖書館 所藏,《梧陰文庫:井上毅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編,《伊藤博文關係文書》1~6,塙書房,1973~1981.

平塚篤 校訂,伊藤博文 編《秘書類纂-外交篇》上,秘書類纂刊行會,1934.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上,秘書類纂刊行會,1936.

日本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 未刊行資料,《井上馨關係文書》・都築馨六關係文書,《齊藤實關係文書》《陸奥宗光 關係文書》.

井上馨侯傳記編纂會編,《世外井上公傳》,內外書籍,1933~1934,原書房復刻,1968.

- 武田勝藏,《明治十五年 朝鮮事變と花房公使》,東京:花房子爵家刊,1929.
- 李鴻章 撰,吳汝綸 編,《李文忠公全集》5,臺北:文海出版社印行,1962.
- 杉村濤,《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東京:勇喜社印刷所,1932.
- 大山梓 編,《山縣有朋意見書》,東京:原書房,1966.
- 德富蘇峰 編述,《公爵山縣有朋》下卷,山縣有朋公記念事業會,1933,原書房復刊,1969.
- 陸奥宗光,《蹇蹇錄》,東京:岩波書店,1933.
- 淺野長武外 編,《近衛篤磨日記》全5・附屬文書,鹿島研究所出版會,1968~1969.
- 大日本帝國議會誌刊行會 編刊,《大日本帝國議會誌》全17,1926~1930.
- 宮內省臨時帝室編修局 編《明治天皇紀》全13,吉川弘文館,1968~1977.
- 井上角五郎,《漢城之殘夢》,東京:春陽書樓,1891
- 近藤吉雄《井上角五郎先生傳》,1943.
- 멜렌도르프夫婦 지음,申福龍・金雲卿 옮김,《멜렌도르프文書》,서울:평민사,1987.
- A.M.Pooley 엮음,申福龍・羅洪柱 譯註,《林董秘密回顧錄》,建國大學校 出版部,1989.
- Despatches from the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 1883~1905. The U.S National Archives, M.F. Record Group No.134.
- The Horace Newton Allen Manuscript Collection.
- Politis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cta betreffend Korea.
- Germany, Auswärtigen Amts, *Die Groosse Politik der europaischen Kabinette, 1871~1914*. Berlin, 1922~1927.
- British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 China, 1848~1922*. Microfilm F.O. 405 Vols. Great Britain Public Record Office.
-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1856~1905*. Microfilm F.O. 46.678 Vols. Great Britain Public Office.
-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sentral'ny Arkhiv Krasnyi Arkhiv* (Red Archive). Moscow, 1922~1941.
- Sands, W.F. *Undiplomatic Memories*. New York: Whittlesey House McGraw-Hill Book Co. Inc, 1930.

2. 著書

<國內>

- 姜光植,《中立化政治論》, 인간사랑, 1989.
- 姜萬吉,《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 金景昌,《東洋外交史》, 集文堂, 1982.
- 金泳模,《朝鮮支配層研究》, 一潮閣, 1977.
- 김영작,《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사상과 현실-, 청계연구소, 1989.
- 金玉根,《朝鮮王朝財政史研究》IV: 近代編, 一潮閣, 1992.
- 朴宗根 著, 朴英宰 譯,《清日戰爭과 朝鮮-外侵과 抵抗-》, 一潮閣, 1989.
- 宋炳基,《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清交涉 -, 檀大出版部, 1985.
- 愼鏞廈,《獨立協會研究》, 서울:一潮閣, 1891.
- 柳永益,《甲午更張研究》, 서울:一潮閣, 1990.
- ,《韓國近現代史論》, 서울:一潮閣, 1992.
- 李光麟,《韓國史講座》5:近代編, 一潮閣, 1982.
- 李基白·李基東,《韓國史講座》I:古代篇, 一潮閣, 1983.
- 李相禹,《國際關係理論》, 서울:博英社, 1987.
- 李瑄根, 震檀學會 編,《韓國史》最近世篇, 서울:乙酉文化社, 1962.
- 李碩崙,《韓國貨幣金融史研究》, 博英社, 1984.
- 李漢基,《國際法講義》, 서울:朴英社, 1977.
- 鄭相九,《韓半島의 永世中立化統一論》, 서울:內外新書, 1987.
- 趙璣濬,《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 蔡中默,《韓國外交史》, 螢雪出版社, 1993.
- 崔文衡,《列强의 東아시아政策》, 一潮閣, 1979.
- 崔鳳潤·盧承禹,《民衆主體中立化統一論》, 서울:전예원, 1988.
- 洪淳鎬,《韓國國際關係史理論》- 時代狀況의 力學構造 -, 서울:大旺社, 1993.
- 黃仁寬 著, 洪停杓 譯,《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韓公營方案:中立化統一論》, 新丘文化社, 1988.

<國外>

- 石本泰雄,《中立制度の史的研究》,東京:有斐閣,1958.
- 伊津野重滿,《永世中立と國際法》,東京:學陽書房,1982.
- 木內信藏,《政治地理學》,東京:朝倉書店,1968.
- 高山岩男,《國際的 中立の研究》,東京:原書房,1980.
- 社會科學大事典編集委員會,《社會科學大事典》13,東京:鹿島研究所出版會,1971.
- 葛生玄暉 編,《金玉均》,東京:民友社,1916.
- 日本外務省,《小村外交史》,東京:原書房,1966.
- 黒木勇吉,《小村壽太郎》,講談社,1968.
- 椎川龜五郎 編,《クロバトキン回想録》1,東京:偕行社,1910.
- 酒田正敏,《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1978.
- 澁澤青淵記念財團龍門社編,《澁澤榮一傳記資料》16,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1957.
- 角田順,《滿洲問題と國防方針》- 明治後期における國防環境の變動 -, 原書房,1967.
- 伊藤正徳編,《加藤高明》,加藤高明傳記編纂會,1929,原書房復刊,1970.
- J. チェン 著・守川正道 譯,《袁世凱と近代中國》,東京:岩波書店,1980.
- ベ・ア・ロマーノフ 著・山下義雄 譯,《滿洲に於ける露國の利權外交史》,原書房:1981.
- 菊池謙讓,《朝鮮王國》,東京:民友社,1986.
- ,《近代朝鮮史》下,京城:鷄鳴社,1939.
- 大陸研究所 編,《近代朝鮮史》下,東京:1937.
- 山邊健太郎,《日韓併合小史》,東京:岩波書店,1966.
- 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背景》,臺北:文海出版社印行,1937.
- 王芸生 著,長野勳・波多野乾一 編譯,《日本外交六十年史》1,東京:建設社,1933.
- 永井秀夫,《明治國家形成期の外政と内政》,北海道大學出版會 1990.
- 林明德,《袁世凱與朝鮮》,臺北:中央研究院,1970.
- 長田彰文,《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と韓國》- 韓國保護國化と米國 -, 未來社,1992.
- 鈴木福一,《アメリカ史》下卷,東京:新潮社,1958.
- 谷壽夫,《機密日露戰史》,原書房,1966.

- 信夫清三郎・中山治一，《日露戦争史の研究》，東京：河出書房新社，1959.
- 波形昭一，《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早稻田大學出版部，1985.
- 瀧澤直七，《稿本日本金融史論》，有斐閣，1912.
- 森山茂徳，《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1987.
- ，《日韓併合》，吉川弘文館，1992.
- 吉野作造外 編，《明治文化全集》22：雜史編，日本評論社，1923.
- 黒羽茂，《日露戦争史論》，東京：杉山書店，1982.
- 佐藤誠三郎・ディングスマン 編，《近代日本の對外態度》，東京大學出版會，1974.
- 藤村道生，《日清戦争-東亞細亞近代史の韓換点》，東京：岩波書店，1973.
- 坂野正高，《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大學出版會，1973.
- 沼田市郎，《日露外交史》，大阪：屋號書店，1943.
-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서울：朝鮮總督府中樞院，1940.
- 장탕부 지음, 김기주・김원수 옮김, 《清日韓外交關係史》，민족문화사，1991.
- 田中彰編，《近代日本思想史大系》I：開國，岩波書店，1991.
- 植田捷雄，《在支列國權益概説》，巖松堂，1939
- 外務省政務局 第3課編，《日露交渉史》上卷，原書房，1969.
- 信夫清三郎，《日本外交史》1，東京：毎日新聞社，1974.
- 鹿島守之助，《日本外交史》5：支那における列強の角逐，東京：鹿島平和研究所，1970.
-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東京：鹿島研究所，1959.
- 田村幸策，《世界外交史》上，東京：有斐閣，1960.
- 大畑篤四郎，《日本外交政策の史的展開》，東京：成文堂，1983.
- ヴェエ, アヴァリン, 《列強對滿工作史》，東京：原書房，1973.
- E.M.ジェーコフ, 《極東國際政治史 1840～1949》上，平凡社，1957.
- F.H.해링튼 著・李光麟 譯, 《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1983.
- Denis and Peggy Warner 著, 妹尾作太男・三谷庸雄 共譯, 《日露戦争全史》，東京：時事通信社，1976.
- Bader, William B. *Austria between East and West 1945～195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 Bauer, Robert A. *The Austrian Solution*. Charlottesville: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2.

- Beale, Howard K. *Theodore Roosevelt and The Rise of America to World Power*.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73.
- Beaton, L. and Maddox, J.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London: chatto & windus, 1982.
- Black, Cyril E. Folk Richard A., Knorr Klaus, and Young Oran R.,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 Bonjour, Edgar. *Swiss Neutrality: Its History and Meaning*, translated by Mary Hotinge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46.
- Chien, Fredrick Foo. *The Opening of Korea: A Study of Chinese Diplomacy 1876~1885*, Handen. Conn: The Shoe String Press, 1967.
- Choy, Bong-Youn. *A Histro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Illinois: Bradley University, 1984.
- Chung, Henry. *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leming H. Revell Co., 1919.
- Clough, Ralph N.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 Dallin, David J. *The Rise of Russia in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 Dennet, Tyler. *Roosevelt and Russo-Japanese War*. New York: Double day, Page & Co., 1925,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59.
- _____,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York, 1922.
- _____, *John Hay: From Poetry to Politics*. New York: 1933.
- Hakovirta, Harto. *East-West Conflict and European Neutr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and Co. Ltd., 1981.
- Harrington, F.H.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 Hertslet, Edward. *The Map of Europe by Treaty*: 4 Vols, London 1875~1891.
- Hwang, In-kwan.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Korea in Perspecive*.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Inc., 1980.
- Jessup, Philip C. *Neutrality: Its History, Economics and Law*. Vol. V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6.
- Kim, C. I. Eugene & Kim, Hankyo. *Korea and Politics of Imperialism 1876~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Kim, Key-Hiuk.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Langer, William L.,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0*. New York: Alfred A. Knopf, 1972.
- Lee, Yur-Bok.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66~1887*. New York: Humanities Press, 1970.
- Lensen, Gerge Alexander.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 Lyon, Peter. *Neutralism*. Leicester, 1963.
- _____, *War and Peac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 McCordock, R. S. *British Far Eastern Policy, 1894~19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1.
- McCune, Shanon. *Korea's Heritage: A Reginal and Social Geography*. Rutland, VT: Charles E. Tuttle Co., 1956.
- Mckenzie, F. A.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Jersey. The Fleming H. Revell Co. Old Tappan, 1920.

- , *The Tragedy of Korea*. New York, 1908.
- Morgenthau, H.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 Morse, Hosea B.,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2. Shanghai, 1910. Taipei Reprint, Book of World Co., 1963.
- Nish, I. *Japanese Foreign Policy 1869~1942 : Kasumigaseki to Miya-Kezaka*. London: 1977.
- Oppenheim, L. *International Law*, Vol. I, 6th ed. by H. Lauterpacht, London: 1940.
- Pooley, A. M. ed. *The Secret Memoirs of Count Tadasu Hayashi*, New York and London: G.P. Putnam's Sons, 1915.
- Rappad, William. E.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New York, London and Toronto: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36.
- Rhee, Syngman.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12.
- Schlesinger, Thomas O. *Austrian Neutrality in Postwar Europe*. Wien: Wilhelm Braumüller, 1972.
- Schuman, Frederick L.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69.
- Swartout, Jr. Robert R. *Mandarins, Gunboats and Power Politics: Owen N. Denny and the International Rivalries in Korea*.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 Synn, Seung Kwo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1876~1904*. Seoul: Yuk phub sa, 1981.
- Vigor, P. M.,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 White, J. A.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64.
- Zabriskie, E. H. *American-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A Study in Diplomacy and Power Politics, 1895~1914*. Greenwood Press, Westport, 1973.

3. 論文

<國內>

姜光植, <國際體系的 勢力管理方案으로서 中立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姜萬吉, <兪吉濬의 韓半島中立化論>,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서울:創作과 批評社, 1979.

高柄翊, <朝鮮海關과 淸國海關과의 關係의 變動>,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 大出版部, 1970.

具汰列, <李漢應과 韓·英관계-그의 韓半島中立化案을 中心으로->, 《省谷論叢》16, 서울:省谷學術文化財團, 1985.

具仙姬, <開化期 朝鮮의 對淸政策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權寧培, <韓末朝鮮에 대한 中立化論議와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17, 大邱:歷史教育學會, 1992.

金光玉, <近代開港期 日本의 琉球·朝鮮政策>, 《港都釜山》1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4.

金炅春, <韓日議定書調印經緯와 日帝의 韓國侵略>,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3.

金敬泰, <丙子開港과 不平等條約關係의 構造>, 《梨大史苑》11, 1973.

金順德, <1876~1905년 關稅政策과 關稅의 運用>, 《韓國史論》15, 서울大 國史學科, 1986.

金榮作, <韓末 내쇼날리즘과 金玉均>, 《法政論叢》4, 國民大學校 法學研究所, 1981.

——, <金玉均 暗殺事件과 韓·淸·日 三國 - 既存學說에 대한 批判的 再檢討 ->, 《김옥균 암살·갑오개혁·청일전쟁 100주년 학술대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동북아문화연구원, 1994.

- 金泳鎬, <韓末 西洋技術의 受容>, 《亞細亞研究》31, 1968.
- 金容燮, <書評 獨立協會研究>, 《韓國史研究》12, 1976.4.
- 김우현, <P.G.von Möllendorff의 조선중립화 구상>, 《平和研究》8, 慶北大學校 平和問題研究所, 1983.5.
- 金元洙, <龍岩浦事件과 日本의 對應>,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一潮閣, 1990.
- 金源模, <美國의 對韓居中調停>, 《史學志》8, 檀國大學校史學科, 1974.
- 金銀姬, <舊韓末中立化問題에 관한 韓美關係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 金昌洙, <東學農民革命과 外兵借入問題>, 《東國史學》15·16, 東國史學會, 1981.5.
- , <清日戰爭 前後 日本의 韓半島 軍事侵略 政策>, 韓國史研究會 編,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一潮閣, 1985.6.
- 羅愛子, <李容翊의 貨幣改革論과 日本第一銀行券>《韓國史研究》45, 1984.
- 盧啓鉉, <韓國分割에 관한 歷史的 考察>, 《韓國外交史研究》, 海文社, 1967.
- 盧武志, <19世紀 韓半島의 中立化論에 관한 考察>,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韓國民族獨立運動의 諸問題》, 서울:범우사, 1992.
- 朴熙琬,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 《國史館論叢》60, 國史編纂委員會, 1994.
- , <日本人이 提起한 1880년대의 韓國中立化論>, 《東國史學》30, 東國史學會, 1996.
- , <露·日開戰의 外因研究-開戰에 미친 歐·美 列強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史學研究》48, 韓國史學會, 1994.
- , <大韓帝國期 (1896~1898)의 韓·러關係-韓國朝野의 反러化過程과 러시아의 對應策을 中心으로->, 《史叢》31, 高大史學會, 1987.6.
- 白鍾基, <事大交隣外交의 地政學的 및 歷史的 考察>, 《人文科學》10, 성균관대학교, 1981.
- 徐仲錫, <近代極東國際關係와 韓國永世中立國論에 對한 研究>, 《慶熙大論文集》4, 1965.

- 徐仁漢, <大韓帝國軍事制度研究>, 國民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宋炳基, <소위 “三端”에 대하여>, 《史學志》6, 檀國大學校 史學科, 1972.
- 宋麟在, <韓半島를 圍繞한 列強間の 交渉關係:1805~1902>, 《省谷論叢》7, 서울:省谷學術文化財團, 1976.
- 申基碩, <安全保障과 韓末政局>, 《國際法學論叢》11-1, 1966.
- 申東俊, <近代日本軍部の 獨走原因>, 《史學研究》36, 惠庵柳洪烈博士古稀紀念論叢, 1983.4.
-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 《東方學志》46·47·48 合輯,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5.6.
- , <光武改革論의 問題點>, 《創作과 批評》49, 1978 가을.
- 劉明喆, <朝鮮朝 末期에 있어 中立化의 可能條件充足問題>, 《논문집》35, 진주:진주교대, 1991.
- , <韓國中立化論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 柳永益, <『西遊見聞』과 俞吉濬의 保守의 漸進改革論>, 《韓國近現代史論》, 一潮閣, 1992.
- , <清日戰爭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 - 井上馨公使의 朝鮮保護國化 企圖를 中心으로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日戰爭을 戰後한 韓國과 列強》, 1984.
- , <大院君과 清日戰爭>, 柳永益 외, 《清日戰爭의 再照明》, 春川: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6.
- 尹炳奭, <獨立協會의 思想>, 《韓國史》18, 國史編纂委員會, 1977.
- 李玟源, <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1895~1898>, 韓國精神文化研究院博士學位論文, 1993.
- 李培鎔, <舊韓末美國의 雲山金鑛採掘權獲得에 대하여>, 《歷史學報》50·51合輯, 歷史學會, 1971.
- 이병도, <광해군의 대후금정책>, 《국사상의 제문제》 1, 국사편찬위원회, 1959.
- 李炳柱, <李鴻章의 對韓政策>, 《論文集》2, 陸軍士官學校, 1965.
- 李鉉宗, <韓末에 있어서의 中立化論>, 國土統一院特殊課題研究報告書, 1978.

- 林在謨, <舊韓末軍事教範>, 《論文集》26, 육군제3사관학교, 1988.
- 車文燮, <舊韓末陸軍武官學校研究> 《亞細亞研究》50, 1973.
- 車 胤,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와 安全保障> 《韓國安全保障論叢》3, 국가안전보장회의, 1963.
- 車俊會, <韓末軍制改編에 대하여 - 軍隊解散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22, 1964.
- 蔡鉉錫, <光海君의 外交政策>, 《文理論叢》3, 建國大, 1974.
- 崔德壽, <獨立協會의 政體論 및 外交論研究 - 獨立新聞을 中心으로->, 《民族文化研究》13,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8.
- 崔文衡, <列強의 對韓政策과 韓末의 情況 - 특히 1882~1894년의 美·英·露의 態度를 中心으로->, 《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 <美國의 필리핀 占有過程>, 《金聲近博士 還曆紀念 西洋史學論叢》, 1969.
- , <Theodore Roosevelt의 極東政策에 대한 一考究>, 《史學論志》, 1973.
- 崔韶子, <伊犁事件에 대한 考察 - 事件發生前後의 經緯 및 新疆出師를 中心으로->, 《梨大史苑》5, 1964.
- 崔永禧, <露日戰爭前的 韓日秘密條約에 對하여>, 《白山學報》3: 圓峯劉鳳榮先生 古稀紀念史學論叢, 1967.
- 崔鐘庫, <舊韓末의 韓獨關係 - 政治的·文化的 側面->, 韓國史研究協議會編, 《韓獨修交100年史》, 正和印刷文化社, 1984.
- 崔熙在, <中華帝國秩序의 動搖>,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編, 《講座中國史》V - 中華帝國의 動搖 -, 지식산업사, 1989.
- 韓哲昊, <甲午更張中(1894~1896) 貞洞派의 改革活動과 그 意義>, 《國史館論叢》36, 國史編纂委員會, 1992.
- 黃元九, <日本軍에 佔領한 國土 - 露日戰爭>, 《韓國現代史》2, 新丘文化社, 1972.
- 黃仁寬, <韓半島中立化의 蓋然性과 當爲性>, 《民族統一》, 서울:民族統一促進會, 1985.7~8.
- , <한반도 中立化論과 주변 強大國>, 梁好民 外 編, 《民族統一論의 展開》, 형성사, 1982.

<國外>

- 神川彦松, <中立主義概観>, 日本國際問題研究所編, 《中立主義の研究》上,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1.
- 田岡良一, <スイス>, 日本國際問題研究所編, 《中立主義の研究》上.
- 今井潔, <スイスの永世中立>, 日本憲法研究所編, 《永世中立の諸問題》, 京都: 法律文化史, 1969.
- 今井淳子, <1878年 ブルガリア公國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國際關係學研究》11, 津田塾大學, 1985.3.
- 西里喜行, <洋務派外交と亡命琉球人(Ⅰ)>, 《琉球大學校育學部紀要》36-Ⅲ, 1990.
- , <琉球分割交渉とその周邊>, 《新琉球史-近代・現代編》, 琉球新聞社, 1992.
- 栗原純, <臺灣事件(1871~74)-琉球政策の轉期としての臺灣出兵> 《史學雜誌》87~9, 1978.
- 金城正篤, <臺灣事件(1871~74)についての一考察-琉球處分の起點として> 《琉球處分論》, 沖繩タイムス, 1978.
- 高良倉吉, <琉球處分と朝鮮・東南アジア-清佛戰爭と琉球問題との關連を中心に->, 《沖繩歷史論序說》, 三一書房, 1980.
- 松田道之, <琉球處分, 1879> 下村富士男編, 《明治文化資料叢書 4: 外交編》, 1962.
- 石井孝, <日本軍臺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1982.
-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塙書房, 1969.
- 中島昭三, <井上毅と朝鮮問題>, 《國學院法政論叢》6, 1985.
- 多田嘉夫, <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江華島事件及び壬午甲申京城事變をめぐる> (一)~(四), 《國學院法政論叢》18~21, 1991~4.
- , <甲申政變と井上毅> 《明治國家形成と井上毅》, 木鐸社, 1992.
- 津田多賀子, <1880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 《史學雜誌》91-12, 1982.12.
- 林子候, <朝鮮壬午軍亂之探討(下)> 《食貨》16, No.5~6, 中華民國, 1987.

- 長谷川直子,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朝鮮史研究會論文集》32, 東京: 綠蔭書房, 1994.
- , <壬午軍亂後の自由民権派の朝鮮論>, 《國際關係學研究》別冊 16, 津田塾大學, 1990.3.
- 高橋秀直, <壬午事變と明治政府-講和條約より壬午事變までの朝鮮政策の展開->《歴史學研究》601, 1989.
- ,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史林》72-5, 1989.9.
- , 1880年代の朝鮮問題と國際政治-日清戦争への道をめぐって->《史林》71-6, 1988.11.
- 野瀬和紀, <甲申政變の研究(一)-清佛戦争と日本外交->, 《朝鮮學報》82, 1977.
- 渡邊勝美, <巨文島外交史>《普專學會論集》1, 1935.
- 月脚達彦, <開化思想の形成と展開-兪吉濬の對外觀を中心に->《朝鮮史研究會論文集》28, 綠蔭書房, 1991.3.
- 重吉萬次, <韓露保護密約締結の企に就いて-1884年より1886年に至る->, 《稻葉博士還歷記念滿鮮史論叢》, 1937.6.
- 井上角五郎, <故友金玉均の回想>《古筠》創刊號, 東京: 古筠會, 1935.3.
- 中塚明, <日清戦争>《岩波講座 日本歴史》17, 1962.
- 梅溪昇, <日本側からみた日清戦争一補論>, 《歴史教育》10卷 2號, 1962.
- , <教育勅語成立の歴史的背景>《明治前期政治史の研究》, 未來社, 1963.
- 坂井雄吉, <近衛篤磨と明治三十年代の對外硬派-《近衛篤磨日記》によせて->《國家學會雜誌》83卷 3・4號, 1970.8.
- 森山茂徳, <朝鮮における日本とベルギー・シンディケート>, 近代日本研究會編《年報・近代日本研究》2-近代日本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80.
- 藤村道生, <日韓議定書の成立過程>《朝鮮學報》61, 東京: 朝鮮學會, 天理, 1971.
- 梶村秀樹, <朝鮮からみた日露戦争>《史潮》7, 1980.9.
- Bohn, David E. "Neutrality- Switzerland's Policy Dilemma: Options in the New Europe", ORBIS, Vol.21, No.2, 1977.
- Cassey, John W. "The Mission of Charles Denby and International Rivalries in the Far East 1885~1898",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 of Southern California, 1959.
- Choi, Soo-Bock. "Korea's Response to America and France in the Decade of 'Taewongun," Jo, Young-Han. (ed.), *Korea's Response to the West*, Kalamazoo: The Korean Research Publication, inc., 1971.
- Crist, D. S. "Russia's Far Eastern Policy in the Making,"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XIV, No.2, June 1942.
- Deutsch, Karl W. and Singer, J. David.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XVI, April 1964.
- Hägglöf, Gunnar M. "A Test of Neutrality: Sweden in the Second World War", *International Affairs*, Vol.36, No.2, 1960.
- Hakovirta, Harto. "The Soviet Union and the Varieties of Neutrality in We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35, July 1983.
- Harrington, Fred H. "American View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05, " in *One Hundred Years*, eds.
- Hwang, In Kwan. "A Translation and Critical Review of Yu Kil Chun's On Neutrality", *Korean Studies*, Vol. 9, 1985.
- Jones, F. 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Unpublished Ph.D. Dirssertation. University of Harvard, 1935.
- Kim, Ho-dong. "The Muslim Rebellion and the Kashighar Emirate in Chinese Central Asia, 1864~1877". An Unpublished Thesis Presented to Harvard University, 1986.
- Krupinski, K. "Russland und Japan, ihre Beziehungen bis zum Frieden von Portsmouth, 1940", 《日本國家學會雜誌》55-上, 1940.
- Langer, W. L.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in *Explorations in Crisis*, ed., by Carl. E. Schorske and Elizabet Schorsk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Lee, Yur-Bok. "Korean-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1882~1905" in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82*, eds., Lee Yur-Bok and Patterson Wayne,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 Lew, Young Ick. "Yüan Shih-k'ai's Residency and the Korean Enlightenment Movement(1885~1894)"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4.
- Lin, T. C. "Li Hung-Chang: His Korean Policies 1870~1885",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XIV, July 1935.
- Lingelbach, William E. "Belgian Neutrality: Its Origin and Interpret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October 1933.
- Liska, George. "The Third Party: the Rationale of Non-Alignment," in Martin L. W., (ed)., *Neutrality and Non-alignment*, New York: Praeger, 1962.
- Mills, E. W. "Gold mining in Korea", *The Transaction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7, Seoul : May 1916.
- Pollard, R. T. "American Relations with Korea. 1882~1895".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VI. No.3, October 1932.
- Rosecrance, Richard N.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X, September, 1966.
- Tarschys, Daniel. "Neutrality and the Common Market: the Soviet 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Vol.7, 1971.
- Treat, Payson J. "China and Korea, 1885~1894," *Political Science Quarterly* 49.4, December 1934.
- , "Early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I , No.1, March 1932.
- Vonliarliarsky, A.M. "Why Russia Went War wiht Japan, the Sroy of the Yalu Concession," *Fortnightly Review*, May and June 1900.
- Waltz, Kenneth N. "International Structure, National Force,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XXI, 1967.
- Weiner, Myron. "Neutrality and Non-alignment,"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Free Press, 1968.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als for Neutralization of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eriod from 1882 to 1904

Hee-ho PARK
History Department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A series of the discussions on the neutralization of Korea was aimed at serving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recarious national sovereignty of Korea as a weak nation surrounded by big powers. Such was a result of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rom the traditional bilater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o the multilateral system of modern diplom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alyze and evaluate the various proposals for the neutralization of Korea by Koreans as well as foreigners for the twenty two years period from 1882 to 1904.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the helpless Korea was pushed around by China and Japan that the former insisted on maintaining the suzerignty over Korea while the latter plotted making Korea into her protectorate. Under the circumstance, the neutralization issue was raised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a way to put the imperialistic scheme at rest.

An advise for the neutralization was advanced by the Japanese in 1882 for the first time when her comperative position remained weak agaist

China, and since then the clamors for neutralization broke out from all sides as Korea turning into an arena of hot competition among multilateral establishments such as Russia, Great Britain, in addition to China and Japa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eutralization plans at this early stage were advanced by various individuals at random basis.

The neutralization ideal was gradually taken up seriously by the court officials as a good foreign policy alternative by the turn of the century. By then Korean saw the repeated humiliations of Chinese by the big powers, and also the Korea as a weak nation was helplessly exposed to the imperialists' aggression. Consequently, the stage was set whereby the neutralization of peninsula was formally adopted as national policy, and the Korean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to declare it on January 21, 1904.

The erstwhile arguments for the neutra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to ensure security of a weak nation in the midst of imperialistic powers, and Korea would preferred a form of "the permanent neutrality". Still, this Korean version of neutralism entailed a certain flexibility such as "simple occasional neutrality" which was formally proposed in 1890's.

Secondly, neutralism was modelled after the precedents of European practices, namely those Belgium and Swiss models. Although, it was obvious that Korea preferred the Swiss styled armed neutrality, the country could not possibly muster up sufficient defense capability, and thus the nation had prepared to settle with that Belgium model of the unarmed neutrality.

Thirdly, it was obvious that the proposals offered by Japan, Great Britain and Russia were motivated by the self-interests of the respective nations which invariably aimed at either stalling tactic for an appropriate time to strike or mediating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expansionist powers. At the same time, analyzing the neutralist ideas forwarded by Kim Ok-kyun and Yu Kil-jun, the opposition leaders, and such courtisans as Kim Yun-shik, Kim Ka-jin and Cho Byung-shik were no more than escapists' declaration to avoid political debacle for themselves for these people failed to grasp the domestic conditions nor did they understand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power politics at that time.

The neutralism for Korea failed to materialize in the end. But given it was a great event in the Korean history, the experience was too precious to treat it just a part of the chronology.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is writer wish to evaluate carefully of the problems surrounding neutralism and then make a thorough analysis on the reasons behind the abortive plan.

Why the grand idea of neutralism was immaterialized at the critical period of Korean history? Needless to say, Korea had no power to defend itself for its standing army was only 4 percent of that Japan's and it had no money to support them.

Secondly, there was no consensus regarding neutralism, even among ruling elite whose conservatism was such that still insisting on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even after opening the country to foreigners. The factionalism of Korean ruling class was seriously disruptive without mechanism for reconciling differences. Policy differences degenerated into factional divisions of pro-Japanese, pro-

Chinese, pro-Russian and pro-Americans, etc, and they engaged in ferocious power struggle often backed by the respective foreign powers. Because they were suspected to be lacking in integrity and independence, Korean officials were not invited to any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would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utralization of Korea.

Thirdly, the neutralism was an idea that strange to Korean and there was no consistent support for the policy by any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Korea kept alive the traditional one sided diplomacy toward one domineering power at given time, and such one-sided policy helped to foment open conflicts among the powers which had a certain stake in Korea.

Actually, Korea during this period held little strength to repel onslaught of any majore power. Weakness invites aggression, and hence Korea fell into easy target of the those surrounding neighbors.

In geopolitical point of view, Korean peninsula was unfit to be a neutral state. It is located at center of East Asia and occupies a strategic position to the surrounding powers of China, Japan and Russia, thereby each tends to be very suspicious of other's move. More likely role for Korea in this respect was to play as a bridgehead linking oceanic culture to the land mass in Asia rather than playing a part as buffer state like Swiss or Belgium in Europe. Worse still, lacking in natural barrier against the foreign invaders made Korea vulnerable to foreign aggression.

Secondly, Unlike the nineteenth century Europe, There was hardly any power balance among the competing nations in northeast Asia. Under the shadow of a domineering power at one time or another, Korea as a weak nation scarecely had any room to maneuver, not to mention pursuing a

neutral policy. It was under these environments that Korea had no choice but to bend its will for any particular power which prevailed over the scene at any given time.

Thirdly, in the age of imperialism, it was impossible to build a neutral state in Korea unless those vitally interested powers,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could agreed on. But they have never achieved any consensus on that issue, and that there is no record that they have ever engaged in earnest discussion over the neutral issue. When Korea declared itself being the neutral state on the eve of Russo-Japanese War, 1904-1905, the belligerent powers had simply ignored it.

Summing up, because of the weakness of Korea and well as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concerned powers surrounded Korean peninsula, the idea of neutralism had no chance to be materialized. The neutralistic idea had instead been utilized often as an excuse to break deadlocks by certain powers at certain times. The Korean, on the other hand, no matter how much interested in, how serious about the neutralism, was simply powerless to enforce it. Therefore, any lesson we learned through this historic case is that a neutral status may be achieved with the backing of its own strength, and it could be maintained by the respect and confid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